제 11 집

의정 백서

제6대 후반기

(2016. 7. 1 ~ 2018. 6.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북구상징물

심벌마크

● 산, 육지 / 자연 ● 바다 / 자연 ●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 공단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 중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캐릭터

차돌이

컨 셉 _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형 태 _ 돌고래
의 미 _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 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

구 상징물

구화 | 참나리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구목 | 느티나무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구조 | 산까치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발간사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제6대 후반기 북구의회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6대 후반기 2년간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7명의 의원님들이 북구 관내 곳곳에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모아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간의 의회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제6대 북구의회 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담은 「제11집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의정을 추진하고, 화합과 통합의 주민자치를 통한 선진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전문성 있는 의회,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만 북구 주민 모두가 풍요와 행복, 그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자료수집과 편찬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료(史料)로서의 역할은 물론 주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의회운영 모델을 정립하는데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축 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6대 후반기「의정백서」발간을 21만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개원한 이래, 북구의회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는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북구의회의 노력과 땀방울이 주민의 행복한 생활과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며, 그 간의 열정과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북구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민선 7기 제6대 집행부는 제7대 북구의회와 협력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을 구현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산업 도시,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문화복지 공동체, 변화를 창출하는 신성장 복합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6대 북구의회 후반기「의정백서」발간을 축하드리며, 2년 동안의 소중한 기록이 주민의 행복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의회

의 장 단

(재임기간 : 2016. 7. 1 ~ 2018. 6. 30)

의 장	부 의 장
정 복 금	강 진 희

제6대 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원구성(2016. 7. 1)

안 승 찬

가 선거구
(농소1동.강동동.송정동)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65,
103동 205호 (화봉동, 대우아파트)
E-mail asc1963@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an-janggun/
H.P 010-6587-1287

학력
연산초.동래중.브니엘고 졸업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대 졸업

경력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지방의정봉사상 수상)
호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역임
송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역임
화봉중학교 학교운영위원 역임
울산청년회(새날여는 청년회) 회장 역임
북구주민회 창립 초대회장 역임
울산 북구 작은도서관 협의회 대표 역임
엄마손 도시락 배달봉사 초대단장 역임
북구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 역임
북구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 역임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
화봉고등학교 운영위원 역임
현) '마중물' 가족봉사단 회원(초대 회장 역임)
현) 북구주민회 참사랑봉사대 고문(초대 대장 역임)
현)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북구 구립도서관위원회 위원
현) 도서관친구들 회원
현) 농소1동 수복독서회 회원
현) 울산 호계어린이집 운영위원
현) 강동 블루마시티 어린이집 운영위원
현) 호계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현) 북구 주민회 줌마행복대학 학장
현) 송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현) 박상진 의사를 지키는 사람들 지도위원
현) 민중당 울산시당 의원단 대표 및 대변인

이 상 육

가 선거구
(농소1동.강동동.송정동)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19 (호계동) ☎ 282-1069
E-mail sy23622@hanmail.net
H.P 010-5535-2362

학력
농소초 · 농소중 · 울산고 졸업
동의공업전문대학 졸업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
효성 바스프 재직
동부 한농화학 재직
울산고등학교 24회 동기회 회장 역임
농소1동 통정회장 역임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 역임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역임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현) 농소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울산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이 수 선

나 선거구
(농소2동.농소3동)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31 (천곡동)
☎ 295-1929 FAX 281-1929
E-mail lss1929@naver.com
H.P 010-2833-1929

학력
농서초.농소중.울산고 졸업
울산과학대학 토목과 졸업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초대단장 역임
농소농협이사 역임
새누리당 중앙위원, 전국위원, 울산시당 부대변인 역임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선거 북구 총괄선대본부장 역임
새누리당 울산시당 안전위원회, 연수위원회 위원장 역임
민주평통 북구지회 수석 부회장 역임
천곡초등학교, 달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역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2015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역임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현) 농서초·농소중·울산고 총동창회 부회장
현) 울산 강북교육발전협의회 위원
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

윤 치 용

가 선거구
(농소1동.강동동.송정동)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5, 214동 204호(상안동, 쌍용아진아파트) ☎ 292-7321
E-mail ycy7321@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
H.P 010-2299-7321

학력
화랑초, 경주중, 경주공고, 서라벌대학 졸업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재학

경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상무집행위원 역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 역임
동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천곡중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동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초대회장 역임
쌍용아진 2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역임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 및 민주노동당 북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북구 소년소녀합창단 초대단장 역임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역임
현) 호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농소3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회원
현)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고문
현) 울산그린산악회 회장
현)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강 진 희

다 선거구
(효문동.양정동.염포동)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 106동 401호 (염포동, 성원상떼빌아파트) ☎ 288-4745
E-mail greenjin70@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greenjin70
H.P 010-8610-4748

학력
수암초.태화여중.울산여고 졸업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경력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가족대책위 활동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 가족대책위 자문위원 역임
동구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역임
울산 상담소·시설협의회 부회장 역임
밀양성폭력대책위 위원 역임
울산학교성폭력추방대책위 집행위원장 역임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명예감시관 역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 강사 역임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현) 양정.염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 위원장
현) 염포.양정 어머니 한글교실 교장
현) '명촌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문위원
현) 효정중학교 학교운영위원
현) 울산한부모가족센터 자문위원
현)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이사
현) 울산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장
현) 울산 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
현) 울산 북구 노동역사박물관 운영위원
현)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백 현 조

다 선거구
(효문동.양정동.염포동)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379, (양정동) ☎ 287-6822
E-mail bh6605@hanmail.net
H.P 010-3801-8364

학력
효문초 · 제일중 · 경주문화고 졸업
대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경력
양정동 주민자치위원 역임
양정동 선거관리위원 역임
양정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역임
북구 축구연합회 사무국장 역임
제18대 대통령선거 북구지역 상황실장 역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수행팀장 역임
제19대 대통령선거 북구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국회의원 비서관 역임
새누리당 북구 양정동협의회 회장 역임
효문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역임
새누리당 북구 동협의회 간사 역임
현)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부대변인
현)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현)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정 복 금

비례대표

학력
동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
화봉유치원 원장 역임
울산광역시 사립유치원연합회 북구회장 역임
울산중부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송정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
울산 태연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울산북구 문화원 이사 역임
울산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역임
울산광역시 체육회 이사 역임
울산광역시 교육청 명예감시관 역임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회 회장 역임
화봉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 수석부회장 역임
현)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 이사
현)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4길 9 (송정동) ☎287-1211
E-mail kmk20550303@nate.com
H.P 010-3446-2002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강동119지역대 개청식 (2016. 7. 28.)

2016 을지연습 실제훈련 (2016. 8. 25.)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식당 봉사활동 (2016. 9. 12.)

2016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2016. 9. 1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지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2016. 9. 22.)

2016. 10월 의원 간담회 (2016.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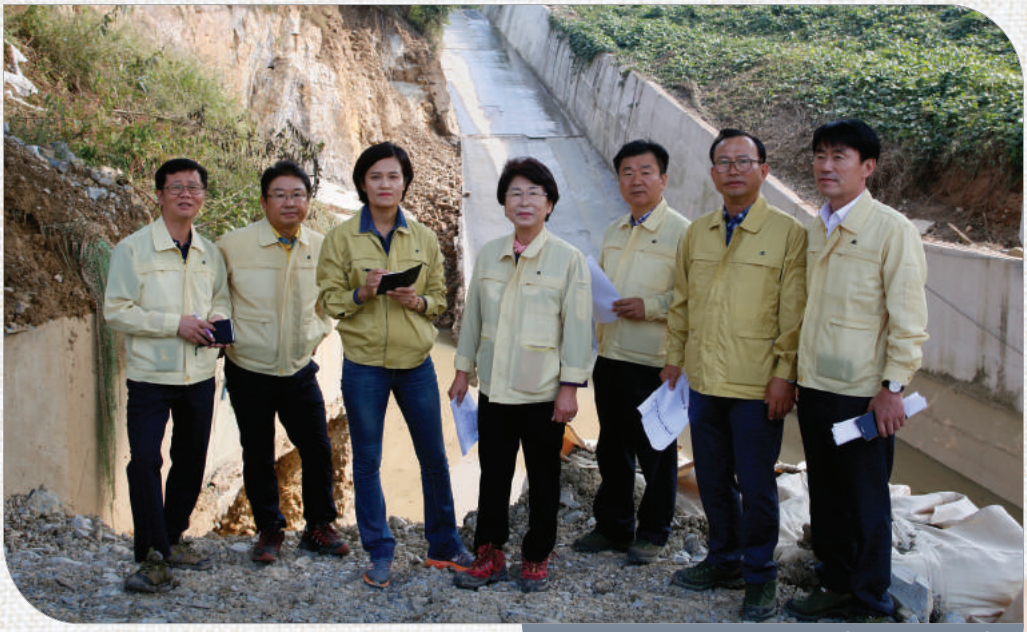

주요 태풍 피해지역 현장 방문 (2016. 10. 12.)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2016. 10. 2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원 청탁금지법 교육 (2016. 11. 7.)

집행부 현안업무 및 2017 당초예산 설명회 (2016. 11. 7.)

제16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1. ~ 12. 22.)

베트남 롱쑤엔시 대표단 북구의회 방문 (2016. 11. 3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016. 12. 5.)

자동차 부품 조립 자원봉사 활동 (2016. 12. 21.)

2016 북구의회 종무식 (2016. 12. 22.)

2017 구정발전기원 간담회 (2017. 1. 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7 북구의회 의원·직원 합동연수 (2017. 1. 17. ~ 1. 19.)

강동산하변전소 설치 관련 설명회 (2017. 2. 9.)

2017. 2월 의원 간담회 (2017. 2. 22.)

애호박 모종심기 자원봉사 활동 (2017. 2. 2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울산시민안전체험센터 기공식 (2017. 2. 23.)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2017. 3. 23.)

제72회 나무심기 행사 (2017. 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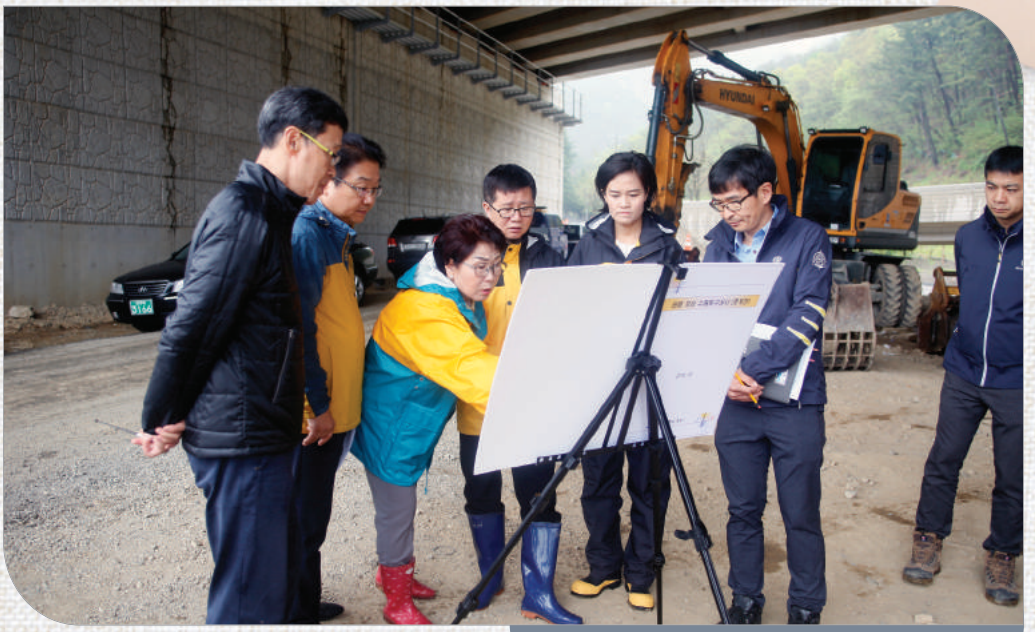

태풍 차바 피해복구 현장 방문 (2017. 4. 1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7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17. 4. 24.)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6. 12. ~ 6. 2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강동 정자해변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7. 7. 11.)

신명중대 군 장병 위문 방문 (2017. 7. 1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식수 (2017. 7. 13.)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 (2017. 7. 13.)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식 (2017. 7. 14.)

2017 하반기 선진지 견학(정선) (2017. 7. 1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매곡도서관 개관식 (2017. 9. 1.)

자동차 부품 조립 자원봉사 활동 (2017. 9. 1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오토밸리로 준공식 (2017. 9. 22.)

2017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방문 (2017. 9. 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쇠부리체육센터 신축 현장 방문 (2017. 10. 18.)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 (2017. 10. 18. ~ 10. 1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 (2017. 11. 1.)

쇠부리체육센터 개관 기념식 (2017. 11. 1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 12. 22.)

상안동 야산 산불 진화 작업 (2017. 12. 13.)

2018 북구의회 의원·직원 합동연수 (2018. 1. 17. ~ 1. 19.)

2018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018. 2. 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강동문화센터 신축 현장 방문 (2018. 3. 29.)

효문운동장 공사 현장 방문 (2018. 3. 2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쇠부리소리 학술 심포지엄 (2018. 5. 4.)

제14회 울산쇠부리축제 (2018. 5. 11. ~ 5. 13.)

목 차

■ 발간사
■ 축 사
■ 제6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 현황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49
제2절 의회연혁 ····· 51
제3절 의회일반현황 ····· 53
1. 제6대(후반기)의회 원구성 ····· 53
2. 의회기구 ····· 54
3. 의원현황(직업,학력,연령,성별) ····· 54
4. 의회예산(당초)현황 ····· 55
5. 의사당 시설현황 ····· 56
6. 사무과 직원현황 ····· 56
7. 의회의 권한 ····· 57
8. 의회의 역할 ····· 58
제4절 구정기본현황 ····· 59
1. 지역여건 ····· 59
2. 구정현황 ····· 59
3. 구민생활지표 ····· 60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 62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 63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 67
1. 의회역대 집회현황 ····· 67
2. 연도별 집회현황 ····· 68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 69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 70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 71

제3장 제6대 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62회 임시회 ····· 77
1. 개회이유 ····· 77
2. 개 회 사 ····· 79
3. 의사일정 ····· 8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84

제2절 제163회 임시회 ····· 114
1. 개회이유 ····· 114
2. 의사일정 ····· 115
3.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16

제3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 130
1. 개회이유 ····· 130
2. 개 회 사 ····· 132
3. 의사일정 ····· 13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38

제4절 제165회 임시회 ····· 180
1. 개회이유 ····· 180
2. 개 회 사 ····· 180
3. 의사일정 ····· 18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84

제5절 제166회 임시회 ····· 188
1. 개회이유 ····· 188
2. 개 회 사 ····· 188
3. 의사일정 ····· 18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92

제6절 제167회 제1차 정례회 ····· 200
1. 개회이유 ····· 200
2. 개 회 사 ····· 201
3. 의사일정 ····· 20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04

제7절 제168회 임시회 ····· 220
1. 개회이유 ····· 220
2. 개 회 사 ····· 221
3. 의사일정 ····· 22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25

제8절 제169회 임시회 ····· 243
1. 개회이유 ····· 243
2. 의사일정 ····· 243
3.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44

제9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 246
1. 개회이유 ····· 246

2. 개 회 사 ····· 247
3. 의사일정 ····· 24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53

제10절 제171회 임시회 ····· 277
1. 개회이유 ····· 277
2. 개 회 사 ····· 278
3. 의사일정 ····· 27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81

제11절 제172회 임시회 ····· 289
1. 개회이유 ····· 289
2. 개 회 사 ····· 289
3. 의사일정 ····· 291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93

제12절 제173회 임시회 ····· 304
1. 개회이유 ····· 304
2. 의사일정 ····· 304

제4장 예산 · 결산심의사항

제 1절 2016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07
제 2절 2017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 311
제 3절 2016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16
제 4절 201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19
제 5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24

제 6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28
제 7절 2017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31
제 8절 2018년도 예산안 ····· 335
제 9절 2017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41
제10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44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351
1. 감사개요 ····· 351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 352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354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355
5.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 355
6. 증인 선서 방식 ····· 356
7. 행정사항 ····· 356
8. 동주민센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 356
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357

제2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398
1. 감사의 목적 ····· 398
2. 근거 ····· 398
3. 감사기간 ····· 398
4. 감사대상 기관 ····· 398
5. 감사실시 경과 ····· 398
6. 감사결과 ····· 401

제3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424

제4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26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 426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42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468
1. 감사개요 ····· 468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 469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471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472
5.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 472
6. 증인 선서 방식 ····· 473
7. 행정사항 ····· 473
8. 동주민센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 473
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474

제6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516
1. 감사의 목적 ····· 516
2. 근거 ····· 516
3. 감사기간 ····· 516
4. 감사대상 기관 ····· 516
5. 감사실시 경과 ····· 516
6. 감사결과 ····· 519

제7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543

제8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545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 545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546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 589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 602

제3절 5분 자유발언 ····· 643

제4절 진정 · 건의서 처리현황 ····· 718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 737

제6절 의정활동일지 ····· 753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 775
2. 초대의원 명단 ····· 777
3. 초대의원 사진 ····· 778
4. 제2대 의원 명단 ····· 779
5. 제2대 의원 사진 ····· 780
6. 제3대 의원 명단 ····· 781
7. 제3대 의원 사진 ····· 782
8. 제4대 의원 명단 ····· 783
9. 제4대 의원 사진 ····· 784
10. 제5대 의원 명단 ····· 785
11. 제5대 의원 사진 ····· 786
12. 제6대 의원 명단 ····· 787
13. 제6대 의원 사진 ····· 788
14.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 이전) ····· 789
15. 역대 구청장 명단 ····· 790
16.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 790
17. 역대 전문위원 명단 ····· 791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2절 의회연혁
제3절 의회일반현황
제4절 구정기본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 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 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8개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지침>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 임기 : '91. 4. 15 ~ '95. 6. 30
-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 임기 : '97. 7. 15 ~ '98. 6. 30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06. 7. 1 ~ 2010. 6. 30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 제5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제3절 의회일반현황

1. 제6대<후반기>의회 원구성

○ 의장단 선거

2016년 6월 29일 10:00에 개회된 제1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수선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정복금 의원, 부의장에 강진희 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 : 7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 총 투표수 7표 중 정복금 의원이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
- 총 투표수 7표 중 강진희 의원이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

2. 의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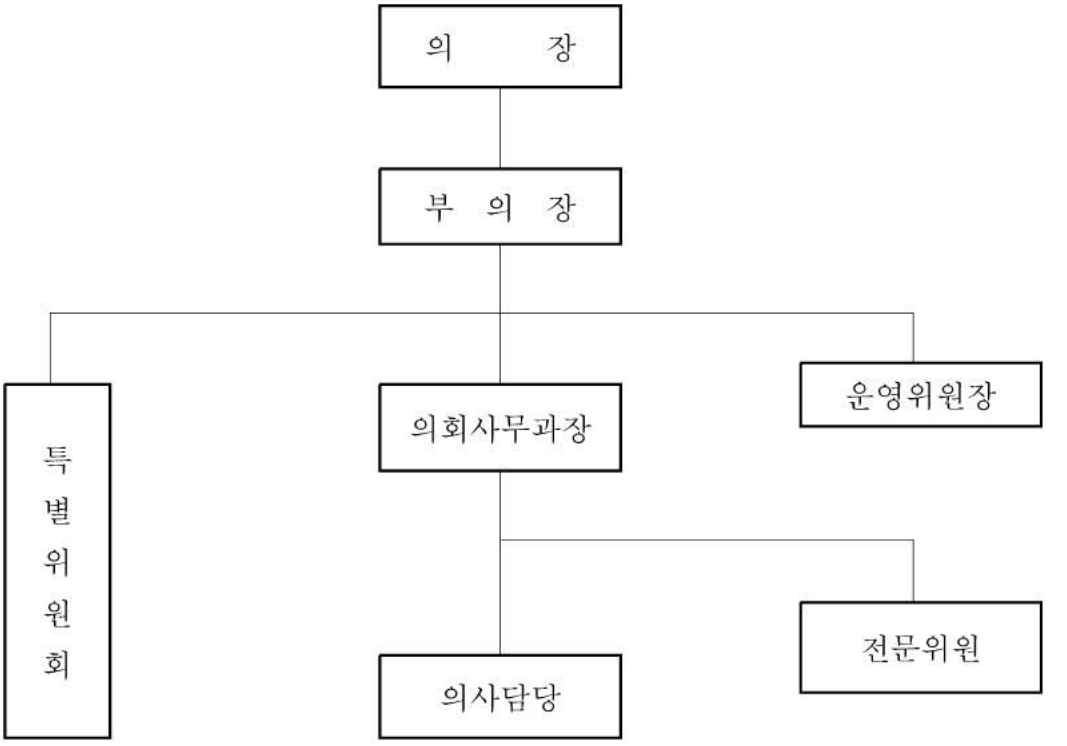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3동	효문·양정·염포동	
7	2	2	2	1

□ 직업별

직업별 / 의원수	농 업	상 업	회사원	기 타	비 고
7			2	5	

□ 학력별

학력별 / 의원수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졸	기타
7					6	1	

□ 연령별

연령별 / 의원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			3	3	1

□ 성 별

의 원 수	계	남	여	비고
7	7	5	2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행정운영경비 (의사운영)
2007년도	949,808	315,442	634,366
2008년도	1,190,896	579,370	611,526
2009년도	1,287,155	664,987	622,168
2010년도	1,227,266	596,134	631,132
2011년도	1,125,438	499,923	625,515
2012년도	1,183,542	505,561	677,981
2013년도	1,200,978	501,063	699,915
2014년도	1,249,983	545,085	704,898
2015년도	1,281,039	540,605	740,434
2016년도	1,347,643	555,035	792,608
2017년도	1,492,632	627,858	864,774
2018년도	1,563,071	683,869	879,202

5.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 면적 : 북구청 5층 1,174.55㎡ (355.30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평)	비 고
본 회 의 장	211.23(63.90)	
방 청 객 실	60.23(18.22)	
소 회 의 실	108.00((32.67)	
의 장 실	70.47(21.32)	
부 의 장 실	60.70(18.36)	
의 원 사 무 실	201.05(60.82)	1인실 5개
다 목 적 실	129.00(39.02)	
의 회 사 무 과	102.85(31.11)	
전 문 위 원 실	51.43(15.56)	
방 송 실 등 6 실	179.59(54.33)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3	13	
5급(과 장)	1	1	
5급(전문위원)	1	1	
6급(의사담당)	1	1	
6급(전문위원)	1	1	
7급	4	6	행정4, 속기1, 운전1
8급	4	2	행정1, 통신1
9급	1	1	속기1

7.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
(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8.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어촌적 요소 공존
○ 도·농 복합적 지역특성에 따른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존재

2. 구정현황(2018. 6. 30.현재)

□ 면 적

○ 행정구역 ------- 157.32㎢
○ 도시계획구역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보전	생산	계획	
157.87	120.60	12.96	1.07	11.07	95.50	6.67	4.01	1.49	1.16	30.60

※ 개발제한구역 76.30㎢(48.5%)

□ 인 구

가 구	총 인구수			외국인 등록수
	계	남	여	
74,379세대	204,877명	106,031명	98,846명	2,407명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현 황	3국 1실 20과	1과 2전문위원	1소 1과	8개동

○ 공 무 원 (정원/현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577명/578.5명	433명/435명	13명/13명	39명/38.5명	92명/92명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16년도	246,550	245,233	1,317	33.59%
2017년도	265,513	260,368	5,145	31.04%
2018년도	302,033	298,498	3,535	28.86%

3. 구민생활지표(2018. 6. 30.현재)

□ 보건복지 (개소)

식품접객	공중위생	의료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명)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분뇨 수거량
		기관	병상수	소계	일반	시설	조건부	특례	1인1일 발생량	월발생량	
2,846	592	194	1,511	1,793/2,713	1,336/1,994	188/188	161/376	108/155	0.24kg	1,503ton	23.75ton

□ 지역경제

경 지 면 적				기 업 체		노동조합		
소 계	전	답	과수원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
1,924ha	738ha	1,092ha	94ha	816개	47,528명	20개	11개	9개

□ 도시건설

도 로				주 택	상 수 도			하 수 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562㎞	40.4%	265㎞	92.2%	65,921 107.7%	62,577 ton/일	323.4ℓ	99.0%	204,877명	202,418명	98.8%

□ 교 통

자 동 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04,253대	89,902대	2,687대	11,294대	370대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44개소 / 28,477명	20 / 13,729	13 / 7,035	11 / 7,436	0 / 0	2 / 277

4. 동별 인구·면적현황(2018. 6. 30.현재)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명)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32	27	204,877	
농소1동	14.91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신천동 (2개동중복)	38,502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경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재래시장 및 신개발주거지역임**
농소2동	11.42	중산동 매곡동 신천동 (2개동중복)	35,801	
농소3동	31.07	가대동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시례동	41,402	
강동동	60.71	무룡동 구유동 정자동 신명동 대안동 당사동 신현동 산하동 어물동	15,195	강동지역은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친혜의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1	명촌동 진장동 연암동 효문동	31,310	효문은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많은 **준공업지역**임
송정동	10.78	화봉동 송정동	20,284	송정은 큰 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임**
양정동	6.68	양정동	11,269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소재해 있고, **7,800여평의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있음.
염포동	5.54	염포동	11,114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군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음.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2018. 6. 30.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7.32	1,168,893	596,415	563,179	19,817
중 구	37.00	237,012	119,562	115,286	2,164
남 구	72.20	331,940	169,197	162,743	4,974
동 구	35.80	166,536	87,275	79,261	3,137
북 구	**157.32**	**204,877**	**106,031**	**98,846**	**2,407**
울주군	755.00	228,528	114,350	107,043	7,135

□ 재정규모현황(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3,426,874	2,742,320	684,554	54.95%
중 구	345,927	334,515	11,412	19.61%
남 구	450,065	427,488	22,577	30.96%
동 구	255,299	251,020	4,279	21.04%
북 구	**302,033**	**298,498**	**3,535**	**28.86%**
울주군	1,081,625	866,515	215,110	38.39%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제1절 집회현황

1. 의회역대 집회현황

구 분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초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제3대	계	8	152	29	168	37	320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2	34	8	46	10	80
	2005	2	48	5	29	7	77
	2006			3	21	3	21
제4대	계	8	184	22	170	30	354
	2006	2	40	3	12	5	52
	2007	2	44	5	31	7	75
	2008	2	50	6	50	8	100
	2009	2	50	6	51	8	101
	2010			2	26	2	26
제5대	계	8	197	21	191	29	388
	2010	2	50	5	46	7	96
	2011	2	50	3	32	5	82
	2012	2	50	6	45	8	95
	2013	2	47	5	46	7	93
	2014			2	22	2	22
제6대	계	8	192	19	175	27	367
	2014	2	48	3	18	5	66
	2015	2	49	4	42	6	91
	2016	2	47	5	44	7	91
	2017	2	48	4	45	6	93
	2018			3	26	3	26

2. 연도별 집회현황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39	900	134	887	171	1,787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 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 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35	7	45	9	80	〃
2003	2	35	8	45	10	80	〃
2004	2	34	8	46	10	80	〃
2005	2	48	5	29	7	77	연 80일
2006	2	40	6	33	8	73	정례회 45일 이내, 임시회 매회기 15일 이내
2007	2	44	5	31	7	75	연 11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08	2	50	6	50	8	100	〃
2009	2	50	6	51	8	101	〃
2010	2	50	5	46	7	96	〃
2011	2	50	3	32	5	82	〃
2012	2	50	6	45	8	95	연 10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13	2	47	5	46	7	93	〃
2014	2	48	5	40	5	88	〃
2015	2	49	4	42	6	91	〃
2016	2	47	5	44	7	91	〃
2017	2	48	4	45	6	93	〃
2018			3	26	3	26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회 기	회 별	소 집 요 구 인	집 회 기 간	일수
제162회	임시회	안승찬 외 2명	2016. 8.25.~ 9. 5.	12
제163회	임시회	이수선 외 2명	2016.10.11.~10.13.	3
제164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6.11.21.~12.22.	32
제165회	임시회	강진희 외 2명	2017. 2. 9.~ 2.22.	14
제166회	임시회	백현조 외 2명	2017. 4.14.~ 4.28.	15
제167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7. 6.12.~ 6.26.	15
제168회	임시회	안승찬 외 2명	2017. 9. 5.~ 9.18.	14
제169회	임시회	이수선 외 2명	2017.10.18.~10.19.	2
제170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7.11.20.~12.22.	33
제171회	임시회	백현조 외 2명	2018. 1.29.~ 2. 8.	11
제172회	임시회	이상육 외 2명	2018. 3. 27.~ 4. 9.	14
제173회	임시회	북구의회의장	2018. 5.15.	1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2016.7.1.~2018.6.30.) 2016~2018년도

회수	기 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 계		166	228	10	1	147	7	1	5	0	2	11	44
소 계	2016년도	47	97	3	0	70	2	0	2	0	0	4	16
제162회	2016. 8.25.~ 9. 5.	12	38	1		30						2	5
제163회	2016.10.11.~10.13.	3	19			12	1					1	5
제164회	2016.11.21.~12.22.	32	40	2		28	1		2			1	6
소 계	2017년도	93	102	5	1	64	5	1	3	0	0	5	18
제165회	2017. 2. 9.~ 2.22.	14	9			4		1	1			1	2
제166회	2017. 4.14.~ 4.28.	15	12	1		6	2		1			1	1
제167회	2017. 6.12.~ 6.26.	15	19		1	13	2					1	2
제168회	2017. 9. 5.~ 9.18.	14	25	1		19						1	4
제169회	2017.10.18.~10.19.	2	6				1						5
제170회	2017.11.20.~12.22.	33	31	3		22			1			1	4
소 계	2018년도	26	29	2	0	13	0	0	0	0	2	2	10
제171회	2018. 1.29.~ 2. 8.	11	16			7					2	2	5
제172회	2018. 3. 27.~ 4. 9.	14	12	2		6							4
제173회	2018. 5.15.	1	1										1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62회 (임시회)	의 원	2016. 8. 25. ~ 9. 5.	12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조례안 30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 ○ 구정질문의 건 - 북구 체육회 운영에 관하여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제163회 (임시회)	의 원	2016. 10. 11. ~ 10. 13.	3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조례안 1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1. ~ 12. 22.	32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출연 의결의 건 2건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의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례안 29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 ○ 구정 질문의 건 -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에 대하여
제165회 (임시회)	의 원	2017. 2. 9. ~ 2. 22.	14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4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구정질문의 건 -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제166회 (임시회)	의 원	2017. 4. 14. ~ 4. 28.	15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조례안 6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구정질문의 건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와 무룡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17. 6. 12. ~ 6. 26.	15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조례안 1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 구정질문 - 지방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68회 (임시회)	의 원	2017. 9. 5. ~ 9. 18.	14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조례안 19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구정질문의 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북구청의 계획 및 북구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제169회 (임시회)	의 원	2017. 10. 18. ~ 10. 19.	2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 의결(심의보류)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 12. 22.	33	○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출연 의결의 건 2건 의결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례안 18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 구정 질문의 건 - 농소2동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71회 (임시회)	의 원	2018. 1. 29. ~ 2. 8.	11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7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 구정질문의 건 - 북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제172회 (임시회)	의 원	2018. 3. 27. ~ 4. 9.	14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 조례안 6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6건)
제173회 (임시회)	의 장	2018. 5. 15.	1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의 건 의결

제6대 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62회 임시회
제2절 제163회 임시회
제3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4절 제165회 임시회
제5절 제166회 임시회
제6절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제7절 제168회 임시회
제8절 제169회 임시회
제9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0절 제171회 임시회
제11절 제172회 임시회
제12절 제173회 임시회

제1절 제16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안승찬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6. 8. 25.(목) 10:00

다. 회　　기 : 2016. 8. 25. ~ 9. 5.(12일간)

라. 부의안건

-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 외 2명)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에는 저를 비롯하여 강진희 부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6대 전반기 북구의회는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한,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주신 전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기의 경험을 발판삼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북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2회 임시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계획이 타당한 지 등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래 없는 폭염으로 다들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에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재충전의 여유을 주기 위해 각종 콘서트 및 체육 행사를 준비하고, 물놀이장 운영 등으로 바쁘게 보냈을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치지 않는 열정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제6대 후반기 북구의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풍성한 북구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3. 의사일정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6. 8. 25~9. 5(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8. 25. (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19호)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구정 질문의 건 ○ 북구 체육회 운영에 관하여(강진희 의원)	
2016. 8. 26. (금)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9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0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기획홍보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건설도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1호, 건설도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2호, 건설도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4호, 복지경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5호, 복지경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호, 복지경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복지경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복지경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복지경제국)	
2016. 8. 27. (토)		휴 회	
2016. 8. 28. (일)		휴 회	
2016. 8. 29. (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2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행정지원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행정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행정지원국)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행정지원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호, 행정지원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보건소)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4호, 보건소) 1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5호, 보건소) 1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보건소) 15.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보건소)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보건소)	
2016. 8. 30. (화) 10:00	4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8. 31. (수) 10:00	5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6. 9. 1. (목) 10:00	6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6. 9. 2. (금) 10:00	7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016. 9. 3. (토)		휴 회	
2016. 9. 4. (일)		휴 회	
2016. 9. 5. (월) 10:00	8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구정 질문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이수선 의원)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사무의 위탁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 폐지된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안 제1조)

○ 수탁기관 선정방법 일원화(안 제5조제2항)

○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9조제2항)

○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개정(안 제15조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 및 사무의 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 폐지된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규정(제1조)을 삭제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일원화하며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 폐지된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오수·분뇨 관련 사무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에서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되고 주거복지 사무가 건설도시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이관되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 개정(제1조 관련)

○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오수·분뇨 사무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주거복지 사무 : 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며(제1조) 국 단위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정비 권고 및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각각 제정하여 운용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함으로써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훈령 및 조례 통합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과제 반영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따라 입법예고의 방법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 게재 외에도,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각기 제정하여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훈령 및 조례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 알기 쉬운 법

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제 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각기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불합리한 조문정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등 상위법령 반영

나)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중 새긴 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중 새긴 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건강검진,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권장하기위하여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나) 주요내용

○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5호)

○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6호)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제24조제2항)

○ 자녀 입영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4항)

○ 학교 참여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휴가의 구체화, 자녀 입영 및 학교 참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며 출산휴가에 대한 기간 등을 구체화하며 자녀 입영 및 학교 참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휴가의 구체화, 자녀 입영 및 학교 참여 특별휴가 신설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물품의 회계연도와 물품의 가격 범위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수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재기재 및 상충되는 사항 삭제 등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물품의 회계연도와 물품의 가격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재 기재,

상충사항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내용 반영 및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재기재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라 연임 폐지(안 제3조제2항)

○ 상위법령(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에서 정한 재기재사항 삭제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안 제4조~제6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

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개정하며, 위촉위원 임기 연임조항을 폐지 및 재 기재 사항을 삭제하며,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자 함.(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

○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조례에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

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며)제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출의무보고서 일부 삭제(안 제16조)

- 사업개시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부분 삭제

○ 상위법령 조항 적용, 용어정비,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 제1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업개시보고서 등 제출의무보고서 일

부를 삭제하며, 상위법령 조항 적용, 용어정비,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대집행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북구 문화예술 융성에 적극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안 제3조제3항)

○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구청장 미책임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사용자 미철거 설비 및 홍보물 철거(안 제16조제3항)

○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20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북구 문화예술 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하며,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구청장 미책임 조항을 삭제하며,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대한 법령 미근거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제2호)

○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 사용료 등 기준 인용 조문 수정(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도서관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하며, 사용료 등 기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법」 과 중복 조문 정비 - 15개 조항으로 간소화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사항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25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수정(제1조 ~ 제15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 「지방세기본법」과 중복 조문 정비

- 현행 4장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간소화
-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 위탁(안 제4조)
-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등(안 제5,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현행 4장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조

문을 정비(제4조, 5조, 6조, 7조, 8조, 9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추가(안 제2조제1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확인한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제2조) 추가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조례 중 적용 대상을 실제 운영에 맞게 확대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을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 종사하는 외국인
⇒ 거주하거나 생계활동 종사 외국인으로 조정(안 제2조제2호)

○ 정의된 용어 사용 정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 인용 조례명 표기 정정(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거주외국인 지원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제2조)하고 용어 및 인용 조례명 표기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거주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제2항(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중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단서 조항을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내용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 법령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제4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관련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임. 다만, 근거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맞게 "어느 한 쪽의 성"을 "특정 성별"로 통일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는 문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권장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오인할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

- 안 제9조제1항 : "5년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안 제9조제3항 :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다"

○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개정(안 제11조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임의적 오인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하며(제9조), 상위법령 개정에 다른 조항을 개정하며(제1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임의적 오인 소지가 있는 조문을 근거법령으로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만, 개정안 제9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은 "법"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제11조의 "「환경정책기본법」"은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 조문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나)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10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일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수정(제10조)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조문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나) 주요내용

○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맞게 조문 수정(제10조)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15.12.22)으로 자체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8

조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발생량이 적은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20조)

○ 납부필증을 필름형에서 밴드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보관함' 문구 삭제(안 제13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제10조, 14조)을 수정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중고가전제품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조례를 폐지하였고,

환경부에서 가전제품 무상 수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 구도 “재활용교환판매장”을 2011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시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2001. 4. 6. 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 조례안은 2011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재활용교환판매장”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시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중고 가전제품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조례를 폐지하였고, 또한 환경부에서 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조례) 대상 중 행자부 정비실적 관리대상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반영 근거규정조항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

- 안 제1조(목적) : “제45조의9” ⇒ “제45조의9제2항

- 안 제2조(기능) : “다음 각 호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반영 문구 수정

- 안 제3조제2항(구성) : 위원 대상자 문구 수정
- 안 제11조제1항(간사) :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8제4항 반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관련 문구 수정 및 삭제

- 조례 제5조(회의)부터 제8조(현지조사)까지 삭제 ⇒ 훈령으로 제정
- 안 제13조 : “위원장” ⇒ “구청장”

○ 용어 순화 및 의미 명확화

- 제3조제4항 : “위원” ⇒ “위촉직 위원”
  “보궐 위원”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 및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 수정 및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산림보호법」의 근거조항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제1조, 2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근거조항 변경(제3조, 5조, 11조, 1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보호법」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명확화 및 용어 순화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6. (제1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 규정이 불일치하는 조항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자격 및 납부금액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안 제6조)

○ 노상주차장에서 제한되는 주차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규정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정비 (안 제7조)

○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16조)

○ 장애인주차구획 의무설치 비율 지정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을 포함하여 정비(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규정이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자격 및 납부금액 관련사항 정비(제5조) 노상주차장 주차 위반의 경우 가산금 부과규정 정비(제7조) 장애인주차 구획 의무설치 비율을 노상 및 노외 포함 개정(제20조)

○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과 용어 불일치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시설물 운영 재정적자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며,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기준을 하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용어 변경, 개념추가(안 제2조제2호, 제7조제2항제5호, 제12조)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 (안 제12조제2항 신설)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기준 하향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감면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5%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인체조직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용어 변경, 개념을 추가하며(제2조, 7조, 제12조),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며(제12조)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기준 하향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령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다만, 개정조례안 제12호제2항 조문의 "(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는 후속 조례 조문에 적용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1조

-「지역보건법」 제14조 ⇒「지역보건법」 제25조

- 삭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안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 (변경) 「의료급여법」
- 단서 삭제 :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 안 제14조제2항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 : 전염병 ⇒ 감염병

○ 안 제14조제2항제6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제1조, 5조, 14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내용이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 없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을 삭제(안 제2조제4호)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성별영향분석 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안 제3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며(제2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규정을 반영하며(제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

⇒ 「지역보건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3조)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사망 삭제 등 정비(안 제5조)

○ 위원회 소집요건 변경(안 제7조)

-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위원회 소집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제1조, 2조, 3조, 5조, 7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 알

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정신보건법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종류)에“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으므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

나) 주요내용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삭제 (안 제6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 문구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삭제(제6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8. 29. (제16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사항 반영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상위법령으로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안 제1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별표 (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 중 과태료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수정함.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안 제3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 문구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목적을 「지역보건법」에 따라 규정하였으며(제1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라 정비(제3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임. 다만, 본 조례가 「지역보건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전면 개정되므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2절 제16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수선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6. 10. 11.(화) 10:00

다. 회　　기 : 2016. 10. 11. ~ 10. 13.(3일간)

라. 부의안건

-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3호)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34호)
-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 선양등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이상육·백현조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수선 의원 발의)

2. 의사일정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6. 10. 11.~ 10. 1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10. 11. (화) 10:00	1	◆ 5분 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 5분 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1.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3호)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34호) 6. 구정질문의 건 ○ 호계 호수지구 사업승인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상육 의원)	
2016. 10. 12. (수) 10:00		<현장방문 활동>	
2016. 10. 13. (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6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행정지원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 선양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2호, 이수선의원·이상육의원·백현조의원 발의-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안승찬의원 발의-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안승찬의원 발의-행정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복지경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4호, 이수선의원 발의-복지경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호, 건설도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3호, 이수선의원 발의-보건소)	

3.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약상대자(사업주)의 책무 중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자료제출 등 법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5조)

○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계약상대자(사업주)의 책무 중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자료제출 등 법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제8조, 제15조),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7조)

○ 검토결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부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삭제 (안 제26조, 안 제28조제4항제2호)

○ 토석채취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 개정 (안 제29조)

○ 대부료·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시 시중 변동금리 반영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2조, 안 제66조)

○ 은닉된 공유재산 보상금 추가 지급을 위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63조)

○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업자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안 제65조)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부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삭제(안 제26조, 제28조) 토석채취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 개정(안 제29조) 대부료·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시 시중 변동금리 반영(안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6조) 은닉된 공유재산 보상금 추가 지급을 위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63조)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업자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안 제65조)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중산행복샘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현행) 법인, 단체 ⇒ (개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현행) 제27조제4항 ⇒ (개정) 제27조제6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현행) 3년 ⇒ (개정) 5년 이내

○ 「헬스」 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

- (현행) 헬스(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개정) 삭제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수정 및 중산행복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헬스」 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산행복샘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이수선·이상육·백현조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안 제4조)

○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 ~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안 제4조)

-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 ~ 10조) 등으로 구성 됨.

○ 검토결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조문 개정

-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2조)
- 별표 중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하고, 기관명 란의 "효문동주민센터"를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임.

○ 검토결과,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안승찬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위원 간 상이한 임기로 인한 혼란과 조례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해촉(안 제20조제2항)

-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0조 제2항(해촉)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변경함.

○ 검토결과, 주민자치위원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위원 간 상이한 임기로 인한 혼란과 조례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안승찬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혼란이 없도록 함.

○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에 추천 인원을 명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분명히 하고 추천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안 제10조제2항제1호~3호)

- 동장 추천 위원 4명
- 통장 대표 추천 위원 1명
- 지역단체 대표 추천 위원 4명

○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6항)

- 추천위원회는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

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회의 장의 임기 및 직무의 수행(안 제11조제1항~4항)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자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자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자치회 위원장의 연임 제한(안 제18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혼란 방지 및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에 추천 인원, 자격을 명시하여 그 권한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검토결과, 주민자치회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혼란이 없도록 하고, 추천위원회 추천 인원을 명시하여 그 권한을 분명히 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어업권에 대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지정토록 수산업법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구성체계 : 3개 조문 및 부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척수기준
- 제3조 준용

○ 어업종류, 어업방법별 어장관리선 척수기준 제정(별표)

어업종류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비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어류등양식	○수하식,바닥식 : 2.0ha당 1척 -잔여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가두리식 : 0.5ha당 1척	※공유어업권은 면적과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정치망어업	○규모별 1척~3척 이내	
마을어업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수협,법인,어촌계어업권, 협동양식	○행사 계약자마다 1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업권에 대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지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목적, 척수기준, 준용(안 제1조 ~ 3조) 어업종류, 어업방법별 어장관리선 척수기준 제정(별표)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구성체계 : 3개 조문 및 부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 제3조 시행규칙

○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안 제2조)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공연장)
  -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 사용 계약·승인 등에 관한 서류
-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점용 허가증
-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사용 계약 승인 등에 관한 서류
-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

○ 검토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 완화 및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예산지원, 지원신청 등(안 제3조 ~ 제6조)

○ 업무 위탁, 처리 등의 기준,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시행규칙(안 제7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

○ 검토결과,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6. 7. 7)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기금 명칭"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1조)

○ 법률 인용 조문 정리(안 제2조제1호, 안 제4호, 안 제7호)

○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임.

○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4.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6. 10. 13. (제1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구민 등의 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사후관리(안 제4조 ~ 안 제6조)

○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안 제7조 ~ 안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검토결과,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6. 11. 21.(월) 10:00

다. 회　　기 : 2016. 11. 21. ~ 12. 22.(32일간)

라. 부의안건

-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강진희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외 6명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구청장)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애로사항을 함께 하고자 지역의 곳곳을 다니며 현장 의정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과 재해를 온몸으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지진과 태풍은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견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대책과 계획만이 우리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이면 북구가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97년에 2백 5십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2천 6백억원으로 10배가 증가하였고, 인구는 10만명에서 2배가 증가하여 20만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북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 울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

가야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북구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큰 틀의 정책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와 변화하는 북구 건설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모든 안건이 원활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 혹시, 놓치고 지나쳐 소홀해진 이웃이 없는 지 돌아보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북구가 되길 바랍니다. 길고 긴 여정이지만 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3. 의사일정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1.~ 11. 22.(3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21.(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 5분 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1.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66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61호, 강진희 의원)	
11. 22.(화) ~ 11. 30.(수)		행 정 사 무 감 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 붙임 일정 참조)	
12. 1.(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호, 이상육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7호, 안승찬의원 외 6명 발의 - 의회사무과)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38호, 이수선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1호, 기획홍보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호, 건설도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이수선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53호, 건설도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8.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건설도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호,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건설도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건설도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건설도시국) 1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7호, 복지경제국)	
12. 2.(금)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2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4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의안번호 제268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269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호, 행정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9호, 이수선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복지경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복지경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복지경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복지경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복지경제국)	
12. 3.(토)		휴 회	
12. 4.(일)		휴 회	
12. 5.(월) 10:00	4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3호, 행정지원국) 2.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262호, 행정지원국)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265호, 행정지원국)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67호, 기획홍보실) 5.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12. 6.(화) 10:00	5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12. 7.(수) 10:00	6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12. 8.(목) 10:00	7	◆ 5분 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9.(금) 10:00	8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2. 10.(토)		휴 회	
12. 11.(일)		휴 회	
12. 12.(월) 10:00	9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264호, 건설도시국)	
12. 13.(화) 10:00	10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12. 14.(수) 10:00	11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15.(목) 10:00	1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구청장) - 5. 구정 질문의 건 ○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강진희 의원)	
12. 16.(금) 10:00	13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 기획홍보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7.(토)		휴 회	
12. 18.(일)		휴 회	
12. 19.(월) 10:00	14	1.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호, 복지경제국) 2.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 보 건 소	
12. 20.(화) 10:00	15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 의회사무과	
12. 21.(수) 10:00	16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22.(목) 10:00	17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이상육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1호)에 의거하여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 '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6대 북구의회 의원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월정수당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정비심의위원회-1호)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안승찬 의원외 6명 발의)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조정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

한 규정 등을 규정함.

○ 신규서식의 추가 및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분화·구체화하여 신설함.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조정(안 제11조제3항제1호)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안 제13조)

○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조정(안 제11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안 제13조)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검토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기의 기면 중앙 무궁화속의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안 제2조제2호)

○ 의회기의 기면 하단의 “蔚山廣域市北區議會”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변경(안 제2조제3호)

○ 의원배지의 별표 2의 모형 중 “議”를 “의회”로 변경(안 제6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부 개정규칙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회기의 기면 중앙 무궁화속의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안 제2조) 의회기의 기면 하단의 “蔚山廣域市北區議會”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변경(안 제2조) 의원배지의 별표 2의 모형 중 “議”를 “의회”로 변경(안 제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이며,

○ 검토결과,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어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 증원 : 9명(553명 → 562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53명 → 562명(증 9명)
- 일반직 계 : 551명 → 560명(증 9명)
  • 6급 이하 계 : 514명 → 523명(증 9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원 증원 :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9명(553명 → 56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별표 3)으로,

○ 검토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나) 주요내용

○ 생활민원 정의 확대(안 제2조)

- 생활민원을 일반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으로 확대

○ 생활민원담당 임무 확대(안 제4조)

- 생활민원처리사항을 기존 저소득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

○ 생활민원담당 운영 용어 및 처리비용 변경(안 제5조)

-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 “생활민원담당”
- 처리비용(재료비) 부담 구분

○ 용어 정비(안 제7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생활민원을 일반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으로 정의 확대(안 제2조) 생활민원처리사항을 기존 저소득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안 제4조) 생활민원담당 운영 용어 및 처리비용 부담 변경(안 제5조) 용어 정비(안 제7조 등)등이며,

○ 검토결과,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다만, 일반가정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민간경제 영역 침해 소지 우려 및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1조 ~ 제4조)

○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안 제5조 ~ 제8조)

○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0조)

○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4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 규정(안 제5조 ~ 제8조)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 제10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3년 5월 24일 제정·시행된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만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법규가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전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 20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만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법규가 없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추진 중이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전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구성체계 : 10개 조문 및 부칙

○ 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 수립·시행
-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

○ 예산의 확보(안 제4조)

- 구가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의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여 지원 가능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름

○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안 제6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의무 성실 이행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등 수행

○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9조)
-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 구축 가능
- 안전감시망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안 구성체계 : 10개 조문 및 부칙
-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의 확보(안 제3조 ~ 제4조)
-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안 제6조)
-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안 제3조(구성)

-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
- 단장이 부단장 지명권 추가(현재 부단장도 선출)
-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단원이 호선 변경

○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 단원 위촉 해제시 의사결정 사항 이행하도록 보완: 안 제5조(위촉 해제)

○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집주체 추가: 안 제8조(소집)

- 동장이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삭제: 안 제11조(금지행위)

- 단장 및 단원의 권리 제한사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안 제3조)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안 제5조)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집주체 추가(안 제8조)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삭제(안 제11조) 등이며,

○ 검토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개정안 제3조(구성) 제2항 조문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안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안 제4조)

○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안 제6조)

○ 실무반 근무시간 등(안 제7조)

○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안 제12조)

○ 대책본부의 지휘 등(안 제13조)

○ 재난 예·경보의 발령 등(안 제14조)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등(안 제15조)

○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안 제16조)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안 제18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안 제20조)

○ 피해상황 신고 등(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용어의 정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 제4조)

-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근무시간 등 (안 제6조 ~제7조)
-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지휘, 재난 예·경보의 발령 등(안 제12조 ~ 제14조)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안 제15조 ~ 제16조)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안 제18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안 제20조 ~ 제21조)이며,

○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명 및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안 제4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안 제12조)
○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제명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 용어의 정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안 제2조, 제4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12조, 제20조) 등 이며,
○ 검토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장대응,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및 복구 등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명 및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안 제4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안 제12조)

○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제명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 용어의 정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안 제2조, 제4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12조, 제20조) 등 이며,

○ 검토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현장대응,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및 복구 등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구성, 임기, 연임기간,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개정(안 제6조, 안 제6조의2)

○ 위원회 운영 및 반복심의 제한 등에 대한 개정(안 제8조)

○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반자 제재 등에 대한 개정 (안 제8조의2)

○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에 대한 개정(안 제11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구성, 임기, 연임기간,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조문 개정(안 제6조, 제6조의2)

- 위원회 운영 및 반복심의 제한 등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8조)
-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반자 제재 등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8조의2)
-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11조, 제20조 ~ 제23조) 등이며,

○ 검토결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개정안 제6조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관련법령인 「경관법」, 「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및 용어정비(안 제9조제3항)

○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안 제19조제4항)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22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관련법령인 「경관법」, 「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및 용어정비(안 제9조)
-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안 제19조)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안 제22조) 등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경관법」, 「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및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운영업무을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 인용 제명 변경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안 제5조의2)

○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신설(안 제20조의3)

○ “전자게시대 신고수수료” 신설(안 별표 3)

○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옥외광고물 운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23조)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안 제5조의2)
-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신설(안 제20조의3)
- 전자게시대 신고수수료" 신설(안 별표 3)
-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이며,

○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및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 시설위치 도로명 주소로 정비 : 안 제3조 별표1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 계약기간, 계약방법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 사용료 면제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 : 안 제9조제3항제1호

○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변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임.

○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9조)
-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등이며,

○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 시설위치 도로명 주소로 정비 : 안 제3조 별표1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 계약기간, 계약방법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 사용료 면제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 : 안 제9조제3항제1호

○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변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임.

○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9조)
-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등이며,

○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발명진흥법」 개정('16. 4. 28)으로 직무발명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 정비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5조, 14조, 20조, 23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개정(안 제18조)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4조, 6조, 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5조, 14조, 20조, 23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개정(안 제18조)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4조, 6조, 15조) 등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 1. 6)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내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현실화(안 제3조2 별표 개정)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

○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국내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현실화(안 제3조2 별표 개정)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
-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5조) 등이며,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날로 급증하는 행정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중산행복샘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현행) 법인, 단체 → (개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현행) 제27조제4항 → (개정) 제27조제6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현행) 3년 → (개정) 5년 이내

○ 「헬스」 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

- (현행) 헬스(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수정 및 중산행복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헬스」 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참여의식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7월 15일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로 제정(안 제2조)

○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행사 명문화(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민 참여의식 제고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7월 15일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로 제정(안 제2조)
-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행사 명문화(안 제3조) 등이며,

○ 검토결과, 1997. 7. 15일 울산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신설된 자치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날로 발전하는 자치 구정의 구심점 역할 및 구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을 제정함에 있어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울산 북구의 위상을 높여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구성체계 : 11개 조문 및 부칙

○ 시상부문 및 인원 명시(안 제2조)

- 2개 부문 : 효행·봉사·교육·환경 / 산업·경제·문화·체육
- 인원 : 부문별 각 1명(연 1회)

○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시상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
- 구민의 날 또는 구민 참여 행사시 수여

○ 수상자의 예우 규정(안 제10조)

-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울산 북구의 위상을 높여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안 구성체계 : 11개 조문 및 부칙
- 시상부문 및 인원 명시(안 제2조)
-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시상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7조)
- 수상자의 예우 규정(안 제10조) 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확산하여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축제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

- 15명 이내의 위원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안 제3조제1항)
-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안 제3조제4항)
-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로 정정(안 제3조제4항제4호)

○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

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안 제3조)
-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제1호) 등이며,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개정)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6. 9.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위원회의 명칭 변경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 위원회의 성별 구성 문구 변경 (안 제2조제1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변경

○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6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 지원센터설치·운영(안 제5조 ~ 제7조)

○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의 취소 등,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명 변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10조)

○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안 제15조)

○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토록 함(안 제16조, 안 제17조)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4조 ~ 제10조)
-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5조)
-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안 제18조) 등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일자리지원센터를 재위탁할 시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를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를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

○ 용어 변경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 녹색제품 구매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 (안 제4조)

○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없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 및 구매실적 제출시기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근거 없이 규정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조항 삭제(현행 조례 제13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 정비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

- 용어 변경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등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대상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모 규정(안 제3조제2항)

○ 공중화장실 범위 내 간이화장실 추가에 따른 문안 수정 및 신설(안 제2조, 안 제1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 정비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대상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모 규정(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범위 내 간이화장실 추가에 따른 문안 수정 및 신설 (안 제2조, 제1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이며,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2.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동물의 정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육동물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안 제2조)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육동물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안 제2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조의2) 등이며,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5. (제164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조성(건물 증축) 및 농소2동운동장 조성 등 8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8건

- 취득사유

• 생활문화센터 조성(건물 증축)

• 농소2동운동장 조성(토지 매입, 건물 신축)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건물 신축)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토지 및 건물 매입)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건물 신축)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건물 신축)

- 취득내용

• 토지 매입(26필지, 29,450㎡)

• 건물 매입(1동, 700.75㎡)

• 건물 신축 및 증축(5동, 6,530㎡)

- 추정가격 : 22,907백만원

• 토지 매입(6,080백만원)

• 건물 매입(697백만원)

• 건물 신축 및 증축(16,13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농소2동운동장 조성 건 등 8건에, 229억 7백만원임.

○ 검토결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현대자동차(주)의 주간 연속 2교대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염포양정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증축 및 리모델링 대상인 구 양정동주민센터 건물에 대한 지진 대비, 건물구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 농소2동운동장 조성은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및 균형있는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보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은 달천운동장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건강증진과 활기찬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은 염포운동장 조성 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관내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정양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균형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건립계획 등의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는 협소한 건물에 비해 이용자가 너무 많아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건물을 확장·이전하고 노인복지의 상대적 취약지역인 염포·양정 권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건물에 대한 지진 대비, 건물구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등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시설이 하천 구역 내에 건립되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봉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교통사고 예방, 상가 이용객 및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5. (제164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50백만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구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 다만, 재단 설립 이후 2009년도에 3억원, 2010년도에 5억원을 각각 출연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은 중단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출연하였고, 2017년도에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5. (제164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8,596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2009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구 부담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4.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5. (제164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

2) 기금운용 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614,896	732,071	5,000	48,500	4,516,552	115,773	197,000	5,614,896	515,400	180,000	4,895,496	24,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13,130	0	0	0	210,241	2,889	0	213,130	0	0	213,130	0
문화진흥기 금	1,055,565	200,000	0	0	800,011	55,554	0	1,055,565	0	0	1,055,565	0
사회복지기 금	1,568,037	0	0	48,500	1,476,346	19,191	24,000	1,568,037	25,400	180,000	1,362,637	0
식품진흥기 금	449,103	0	5,000	0	380,073	4,030	60,000	449,103	30,000	0	395,103	24,000
재난관리기 금	1,436,646	532,071	0	0	879,342	25,233	0	1,436,646	420,000	0	1,016,646	0
옥외광고발전기금	892,415	0	0	0	770,539	8,876	113,000	892,415	40,000	0	852,415	0

○ 수입은 56억 1,489만 6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7억 3,207만 1천원, 보조금 500만원, 융자금 회수액 4,850만원, 예치금 회수액 45억 1,655만 2천원, 이자수입 1억 1,577만 3천원, 기타수입이 1억 9,700만원임.

○ 지출은 56억 1,489만 6천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1,54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8,000만원, 예치금 48억 9,549만 6천원, 기타지출 2,400만원임.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6년도 말 현재액ⓐ	2017년도 기금운용		2017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4,516,552**	**1,098,344**	**719,400**	**4,895,496**	**378,944**
남북교류협력기금	210,241	2,889	0	213,130	2,889
문화진흥기금	800,011	255,554	0	1,055,565	255,554
사회복지기금	1,476,346	91,691	205,400	1,362,637	△113,709
식품진흥기금	380,073	69,030	54,000	395,103	15,030
재난관리기금	879,342	557,304	420,000	1,016,646	137,304
옥외광고발전기금	770,539	121,876	40,000	852,415	81,876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1,655만 2천원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0억 9,834만 4천원, 지출이 7억 1,940만원으로 3억 7,894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549만 6천원으로 예상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2. 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12. 19.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만, 개정안 제2조(정의) 제4호 중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혼선 예방을 위해 “30개”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제16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강진희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7. 2. 9.(목) 10:00

다. 회　　기 : 2017. 2. 9. ~ 2. 22.(14일간)

라. 부의안건

-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 외 2명)
-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상육 의원 발의)
-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윤치용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육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 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

갑습니다.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유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작할 때는 새로운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2017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겨울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축산농가에 많은 시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사전차단방역으로 현재까지는 안전하지만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여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자세로 본분을 다하고,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1년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고 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사업설명과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

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항상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3. 의사일정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7. 2. 9.~2. 22.(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9.(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79호, 이상육 의원)	
2. 10.(금) 10:00	2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 11.(토)		휴 회	
2. 12.(일)		휴 회	
2. 13.(월) 10:00	3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세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2. 14.(화) 10:00	4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15.(수) 10:00	5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2.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랄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81호, 윤치용 의원)	
2. 16.(목) 10:00	6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2. 17.(금) 10:00	7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창조경제과, 농수산과)	
2. 18.(토)		휴 회	
2. 19.(일)		휴 회	
2. 20.(월) 10:00	8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 21.(화) 10:00	9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22.(수) 10:00	10	1.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6호, 강진희의원 발의-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75호, 이상육의원 발의-보건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호, 윤치용의원 발의-의회사무과)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 2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2. 22. (제165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순직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지급하며,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12.15.)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1만원 인상)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명예수당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3조)

○ 명예수당 지원사업 중 명예수당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1만원 인상),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4조,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3조), 명예수당 지원사업 중 명예수당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1만원 인상),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4 ~ 6조)

○ 검토결과, 조국 수호 및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순직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지급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2. 2. (강진희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2. 22. (제165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추첨기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추첨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안 제6조)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2. 2. (이상육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2. 22. (제165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장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사후 관리,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3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사후 관리,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8조 ~ 9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2. 2. (윤치용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2. 22. (제165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호, '16.9.9.)함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소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절 제16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강진희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7. 4. 14.(금) 10:00

다. 회　　기 : 2017. 4. 14. ~ 4. 28.(14일간)

라. 부의안건

-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 외 2명)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강진희 의원)
-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마당에 어느

새 벚꽃이 지고 초록의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계절에 제1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우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생활방식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6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지역을 보다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야외활동이 잦은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구민의 안녕과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3. 의사일정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7. 4. 14.~4. 28.(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14.(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86호)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안번호 제287호, 강진희 의원)	
4. 15.(토)		휴 회	
4. 16.(일)		휴 회	
4. 17.(월) 09:00		<현장방문 활동> 1.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 현장 2. 산업로 확장 공사 현장 3. 호계천 태풍피해 복구 현장	
4. 18.(화) 10:00	2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 도서관과, 세무과)	
4. 19.(수) 13:00	3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4. 20.(목) 10:00	4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4. 21.(금) 10:00	5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보 건 소	
4. 22.(토)		휴 회	
4. 23.(일)		휴 회	
4 24.(월) 10:00	6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25.(화) 10:00	7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의회사무과	
4. 26.(수) 10:00	8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4. 27.(목) 10:00	9	1.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292호, 행정지원국) 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91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이수선의원 발의-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안승찬의원 발의-기획홍보실) 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호, 기획홍보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기획홍보실) 7.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9호, 이수선의원 발의-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 복지경제국)	
4. 28.(금) 10:00	10	◇ 5분 자유발언(안승찬 의원)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구정 질문의 건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와 무룡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강진희 의원)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4. 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4. 27. (제166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　　칭 :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 구　　성 :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37개 시·군·구)

○ 주요사업

-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 발굴 추진
-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 청년의병 및 청소년의병 조직 구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 의병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 의병사례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협의회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

○ 회비 : 일반 연회비(1백만원), 특별회비(필요에 따라 별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의병정신의 선양 계승,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 및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등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4. 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4. 27. (제166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사　　유 :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
- 취득내용 : 건물 신축(1개동, 지상 1층, 330㎡)
- 추정가격 : 1,0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달천철장 전시관조성사업으로, 지상 1층 1개동, 연면적 330㎡로, 총사업비는 10억원임.

○ 검토결과, 본 건은 달천동 1-7번지 내의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유구한 철의 역사 홍보와 산업역사 관광과의 연계를 위해 달천철장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4. 7.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4. 27. (제166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안 제4조 ~ 안 제6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7조)

○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현재까지 지원근거가 갖춰지지 못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근무해 온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제공, 사기진작 등 직장 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4. 7. (안승찬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4. 27. (제166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이어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심사위원회 등(안 제5조 ~ 안 제7조)

○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8조 ~ 안 제9조)

○ 책임의 소재, 사무처리 지원, 지휘·감독 등(안 제10조 ~ 안 제13조)

○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 금지, 이의신청 등(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3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심사위원회 등(안 제5조 ~ 7조)
-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8조 ~ 9조)
- 책임의 소재, 사무처리 지원, 지휘·감독 등(안 제10조 ~ 13조)
-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 금지, 이의신청 등(안 제14조 ~ 17조)

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사람은」을 안 제1조와 일치되게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으로 변경하고, 또한 담당부서 의견청취 및 토론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4. 6.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4. 27. (제166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신설

○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

나) 주요내용

○ 과 신설 : 관광해양과

○ 명칭변경 : 도시행정과 → 도시과

○ 담당신설 :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

○ 담당통합 : 평생교육+창의놀이터 → 평생교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 담당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과 신설 : 관광해양과
- 명칭변경 : 도시행정과 → 도시과
- 담당신설 :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
- 담당통합 : 평생교육+창의놀이터 → 평생교육으로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울산방문의 해」 선정에 맞춰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부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원활한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4. 6.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4. 27. (제166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나) 주요내용

○ 정원 증원 : 4명(562명 → 566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62명 → 566명(증 4명)
- 일반직 계 : 560명 → 564명(증 4명)
  - 5급 : 증 1명(32명 → 33명), 6급 이하 : 증 3명(523명 → 526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에서 인력을 증원,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정원 증원 : 4명(562명 → 566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62명 → 566명(증 4명)
- 일반직 계 : 560명 → 564명(증 4명)

- 5급 : 증 1명(32명 → 33명), 6급 이하 : 증 3명(523명 → 526명)으로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4. 7.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4. 27. (제166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안 제4조 ~ 안 제5조)

○ 생산품 우선구매 등, 경비보조, 보험가입(안 제6조 ~ 안 제8조)

다) 시행규칙(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3조)
- 추진계획의 수립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안 제4조 ~ 5조)
- 생산품 우선구매 등, 경비보조, 보험가입(안 제6조 ~ 8조)

- 시행규칙(안 제9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4. 6.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4. 27. (제166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적기업 등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사회적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수행 경비 지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내외 우수 사회적 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사업수행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제6항)

다) 시행규칙(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내외 우수 사회적 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사업수행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제6항)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절 제167회 제1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7. 6. 12.(월) 10:00

다. 회　　기 : 2017. 6. 12. ~ 6. 26.(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이수선 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은 울산쇠부리축제를 비롯하여 어린이날, 각종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으로 우리 주민들은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없이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결산은 지난 2016년 한해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지표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3. 의사일정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6. 12. ~ 6. 26.(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12.(월) 10: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94호) - 제 안 설 명(행정지원국장) -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강진희 의원) 5.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구정 질문의 건 ○ 지방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이수선 의원)	
6. 13.(화) 13: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0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2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3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4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306호, 행정지원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7호, 행정지원국) 9.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8호, 윤치용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8호, 복지경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9호, 건설도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9호, 이수선 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6. 14.(수) 10:00	3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6. 15.(목) 10:00	4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6. 16.(금) 10:00	5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6. 17.(토)		휴 회	
6. 18.(일)		휴 회	
6. 19.(월) 10:00	6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6. 20.(화) 10:00	7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97호, 건설도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21.(수) 10:00	8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6. 22.(목) 10:00	9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6. 23.(금) 09:00	10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93호) (기획홍보실, 농수산과, 건설과, 안전정보과, 공원녹지과) 2.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96호, 행정지원국)	
6. 24.(토)		휴 회	
6. 25.(일)		휴 회	
6. 26.(월) 10:00	11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23. (제167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쇠부리 체육센터가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천곡동 451 - 4번지 일원(상안초등학교 앞)
- 기　　간 : 2012. 1월 ~ 2017. 7월
- 규　　모 : 부지면적 9,524㎡, 연면적 5,314㎡
  (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7. 9. 1 ~ 2018. 12. 31(1년 4개월)
- 범　위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전반
  ※ 카페, 매점, 판매용품점은 별도 임대
-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단체・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위탁 운영비 : 60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8월 준공예정인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7. 9. 1. ~ 2018. 12. 31.(1년 4개월)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6억원임.

○ 검토결과, 날로 증가하는 지역 주민의 체육·문화·여가선용 수요에 부응하고, 체력단련, 문화향유, 정서순화 등 건전한 주민의식 제고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쇠부리체육센터는 우리 구에서 직영함이 바람직하나,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충원 제한 등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주민들의 불편 및 우려가 없도록

구립 시설관리공단 설립,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다각도의 방안을 함께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강동권개발을 포함한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신설

○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

나) 주요내용

○ 과 신설 : 관광해양개발과

○ 명칭변경 : 도시행정과 → 도시과

○ 담당신설 :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 담당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관광해양개발과를 신설하고, '도시행정과'를 → '도시과'로 명칭변경,

-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울산방문의 해」 선정에 맞춰,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원활한 국가시책 추진 담당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나) 주요내용

○ 정원 증원 : 4명(562명 → 566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62명 → 566명(증 4명)
- 일반직 계 : 560명 → 564명(증 4명)
  - 5급 : 증 1명(32명 → 33명), 6급 이하 : 증 3명(523명 → 526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에서 인력을 증원,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정원 증원 : 4명(562명 → 566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62명 → 566명(증 4명)
- 일반직 계 : 560명 → 564명(증 4명)
  - 5급 : 증 1명(32명 → 33명), 6급 이하 : 증 3명(523명 → 526명)으로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안 제2조제2호, 별표 2)

○ 개정사항 반영 : 영 별표 9의 제7호→ 영 별표 9의 제8호 (안 제3조)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27766호(2017. 1. 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명칭 변경 :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안 제2조제2호, 별표 2)
- 개정사항 반영 : 영 별표 9의 제7호 → 영 별표 9의 제8호 (안 제3조)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쇠부리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에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및 사용시간·휴무일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쇠부리체육센터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및 사용시간·휴무일 명시(안 제2조, 안 제10조, 별표 1,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쇠부리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에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및 사용시간·휴무일을 명시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쇠부리체육센터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및 사용시간·휴무일 명시(안 제2조, 안 제10조, 별표 1, 별표 2)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쇠부리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에 시설의 기본적인 사항 및 운영관리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북구체육회 통합에 따른 명칭 정비

- "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 "체육회",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 으로 변경(안 제4조제7호, 제12조제2항제4호~제5호)

○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1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북구체육회 통합에 따른 명칭 정비 : "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 "체육회",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 으로 변경(안 제4조제7호, 제12조제2항제4호~제5호),
-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를 삭제(안 제13조제2항)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명칭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7. 5월 매곡도서관 준공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매곡도서관 명칭 및 위치 표기(안 제2조제2호)

- 매곡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에 위치한다.

○ 관외대출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안 제16조제1항제1호)

- 도서관에 독서회원 → 도서관 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7. 5월 매곡도서관 준공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매곡도서관 명칭 및 위치 표기(안 제2조제2호)

매곡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에 위치한다.

- 관외대출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안 제16조제1항제1호)

도서관에 독서회원 → 도서관 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매곡도서관 준공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 제정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른 정비

○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12.27.공포, 2017. 3.28.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

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명시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범위 규정(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명시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범위 규정(안 제3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제정,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행정자치부 기본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른 정비

○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

세징수법」을 분리·제정(2016.12.27.공포, 2017. 3.28.시행)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인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조문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인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조문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 및 행정자치부 기본 안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

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범위 및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 사업 및 예산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4조제1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함.
- 경로당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5조)

-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 관련,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범위 및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사

업 및 예산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4조제1항),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5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범위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함

○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

나) 주요내용

○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 추가(안 제10조)

○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양성평등 참여 확대·문화 확산·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 추가(안 제10조),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유공

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에 명시된 용어 정의 삭제 : 자전거주차장 (안 제2조제4호)

※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는 조례에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고, 해석규정을 두거나 다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이중으로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의 제명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제명, 안 제24조, 안 제26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법령에 명시된 용어 정의 삭제 : 자전거주차장 (안 제2조제4호)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이중으로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안 제10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의 제명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제명, 안 제24조, 안 제26조 등)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하수 인·허가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정함(안 제4조)

○ 이용부담금 납입절차에 대하여 인용법령명과 조항 정비(안 제13조)

- 지방세 징수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하수 인·허가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정하고(안 제4조) 이용부담금 납입절차에 대하여 인용법령명과 조항 정비(안 제13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5.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6. 13.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협력(안 제1조 ~ 제4조)

○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안 제5조 ~ 제8조)

○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0조)

○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협력(안 제1조 ~ 제4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안 제5조 ~ 제8조)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0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제7절 제168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안승찬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7. 9. 5.(화) 10:00

다. 회　　기 : 2017. 9. 5. ~ 9. 18.(14일간)

라. 부의안건

-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선 의원 발의)
- ○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 의원 발의)
-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2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북구 개청 20주년 행사와 투게더콘서트, 물놀이장 운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참석과 민원해결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회가 지역에서 늘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8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을 보다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제법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3. 의사일정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7. 9. 5.~9. 18.(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5.(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15호)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 북구체육회 운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울산북구청의 계획에 대하여(안승찬 의원)	
9. 6.(수) 10:00	2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9. 7.(목) 10:00	3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9. 8.(금)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2호, 강진희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9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0호, 복지경제국) 4.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9. 9.(토)		휴회	
9. 10.(일)		휴회	
9. 11.(월) 10:00	5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9. 12.(화) 10:00	6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9. 13.(수) 10:00	7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4.(목) 10:00	8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9. 15.(금) 10:00	9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6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8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9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0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1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2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3호, 행정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4호, 행정지원국) 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5호, 행정지원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6호, 행정지원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호, 행정지원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8호, 행정지원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3호, 이수선 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4.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호, 기획홍보실)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호, 이수선 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16.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1호, 건설도시국) 17.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건설도시국)	
9. 16.(토)		휴회	
9. 17.(일)		휴회	
9. 18.(월) 10:00	10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사　　유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 취득내용 : 토지매입(451㎡), 건물신축(1개동, 지상2층, 450㎡)
- 추정가격 : 1,5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토지매입 451㎡, 건물신축 1개동, 지상2층, 450㎡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임.

○ 검토결과, 본 건은 호계동 703-5번지 일원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호계지구의 부족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확충,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지역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명예구민증 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및 수여대상자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구체화 (안 제3조)

○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결정 방법 변경 (안 제4조)
○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사유 및 절차 구체화 (안 제7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구민증 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및 수여대상자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전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구체화 (안 제3조),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결정 방법 변경 (안 제4조),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사유 및 절차 구체화 (안 제7조) 등이며,
○ 검토결과, 명예구민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18조에 상위법 근거조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 제18조에 상위법 근거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3항에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 중에,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장인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장인 울산중부·동부경찰서장, 중부·동부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

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반영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한 첨부서류 변경 등 서식 변경(별지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반영,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한 첨부서류 변경 등 서식 변경(별지 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문 개정

- 별표 기관명 란의 “농소1동주민센터”를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별표 기관명 란의 “농소1동주민센터”를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

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정비(안 제2조)
- 북구 ⇒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정비(안 제2조제1항)

○ 상위법령 조항 적용(안 제3조)
-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상위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북구⇒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정비(안 제2조제1항),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상위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조항인 수탁자의 의무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10조)

- 수탁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조항 용어 정비
- 관계법령, 위탁계약사항, 구청장 지시사항 등 준수 의무 조항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조항인 수탁자의 의무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10조)
  - 수탁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조항 용어 정비
  - 관계법령, 위탁계약사항, 구청장 지시사항 등 준수 의무 조항 추가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2017.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

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17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 기금 출납폐쇄기간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때”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기금 출납폐쇄기간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때”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

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수산업관련 수수료 5종 무료화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어업휴업·재개신고,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산물가공업 신고

○ 의료기관 개설사항변경 시 장소이전에 한해서만 수수료 부과

○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련 수수료 인상 및 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1건 7,000원 →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신설 1건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 신설 1건 8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산업관련 수수료 5종 무료화, 의료기관 개설사항변경 시 장소이전에 한해서만 수수료 부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 수수료 인상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9.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안 제1조 ~ 제3조)

○ 상담의 범위, 상담대상 등, 법률상담관 등(안 제4조 ~ 제6조)

○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방법 등, 상담처리, 기록유지(안 제7조 ~ 제10조)

○ 수당 등,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따른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안 제1조 ~ 제3조)
- 상담의 범위, 상담대상 등, 법률상담관 등(안 제4조 ~ 제6조)
-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방법 등, 상담처리, 기록유지(안 제7조 ~ 제10조)
- 수당 등,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등이며,

○ 검토결과,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따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정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사망” 삭제(안 제7조)

○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사망” 삭제(안 제7조),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안 제8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9.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에 관한 지원대상을 확

대 및 정비하여 더욱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5조, 안 제9조)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확대(안 제4조의2)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작은도서관의 설치·유지보수
-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 국기게양대·국기봉 등의 설치 및 개보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원대상을 확대 및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5조, 안 제9조)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확대(안 제4조의2)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작은도서관의 설치·유지보수
  -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 국기게양대·국기봉 등의 설치 및 개보수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공동체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

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 추가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지붕 정의 규정 추가 등

○ 제설·제빙 범위(안 제4조)

- 책임범위의 명확화, 시설물 지붕 범위 추가

○ 제설·제빙 시기(안 제5조)

- 장소별, 상황별 작업시기 구체화, 명확화

○ 제설·제빙방법(안 제6조)

- 제설작업 안전에 위험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단 등 안전조치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 추가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지붕 정의 규정 추가 등 제설·제빙

범위(안 제4조) 책임범위의 명확화, 시설물 지붕 범위 추가 제설·제빙 시기(안 제5조) 장소별, 상황별 작업시기 구체화, 명확화 제설·제빙방법(안 제6조) 제설작업 안전에 위험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단 등 안전조치 등이며,

○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의무 추가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8.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9. 15. (제16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구성 체계 : 9개 조문 및 부칙

○ 기능(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 구성(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위원회 개최 사유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규정

○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안 제8조)

-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조례안 구성 체계 : 9개 조문 및 부칙 기능(안 제2조)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구성(안 제3조)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위원회 개최 사유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규정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안 제8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 등이며,

○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16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수선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7. 10. 18.(수) 10:00

다. 회　　기 : 2017. 10. 18. ~ 10. 19.(2일간)

라. 부의안건

- ○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

2. 의사일정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7. 10. 18.~10. 19.(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18.(수) 10:00	1	◆ 5분 자유발언 (백현조 의원) ◆ 5분 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1.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33호) 3.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35호)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34호)	
10. 18.(수) 11:00		<현장방문 활동> 1. 쇠부리체육센터 2. 대안동 수해복구 현장	
10. 19.(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 (의안번호 제336호)	

3.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0. 11.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0. 19. (제16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구는 개청 이래 지속적인 자원봉사 진흥시책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개인 및 단체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따른 보다 강화된 전문성과 소통구조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우리구가 채택하고 있는 직영 운영형태는 소속 직원들의 잦은 순환 전보 등에 따른 전문성 부족, 확장된 자원봉사규모에 비해 부족한 소통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법인 운영형태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꾀하고자 하며,

○ 이와 관련, 2018년 세출예산(본예산)에 미리 반영코자 「울산광

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산업로 1016
- 규　　모 : 연면적 110.7㎡ (지상 1층)
- 주요시설 : 사무공간, 자원봉사자실(회의실), 문서고, 탕비실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8. 3. 1 ~ 법인해산 시
- 범　　위 : 자원봉사센터운영 전반
- 수탁대상 : (사)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2018년 3월중 해당 법인 설립 예정

- 위탁운영비 : 연359,689천원('18년 : 295,889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8년 3월중 설립 예정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8. 3. 1 ~ 법인해산 시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3억 6천만원임.

○ 검토결과, 날로 늘어나고 다양한 지역 주민의 생활복지, 체감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은, 자원봉사의 다양화, 전문화, 생활화 등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구 직영 시의 문제점을 보완, 제3영역의 장점인 자율성과 공익성, 중립성을 확보하여 민관협력 강화, 민간재원확보 다양화 등 봉사활동 진흥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제9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7. 11. 20.(월) 10:00

다. 회　　기 : 2017. 11. 20. ~ 12. 22.(33일간)

라. 부의안건

-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이수선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육 의원 발의)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현조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참석과 민원해결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북구가 성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97년에 2백 5십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2천 6백억원으로 10배가 증가하였고, 인구는 10만명에서 2배로 증가하여 20만명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북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 울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북구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큰 틀의 정책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와 변화하는 북구 건설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모든 안건이 원활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 혹시, 놓치고 지나쳐 소홀해진 이웃이 없는 지 돌아보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북구가 되길 바랍니다. 길고 긴 여정이지만 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3. 의사일정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12. 22.(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20.(월) 10: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 5분 자유발언(백현조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상육 의원) ◆ 5분 자유발언(안승찬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진희 의원) 1.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55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357호, 이수선 의원) 6. 구정질문의 건 ○ 농소2동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이수선 의원)	
11. 21.(화) ~ 11. 29.(수)		행 정 사 무 감 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 붙임 일정 참조)	
11. 30.(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2호, 이상육 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1호, 백현조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4.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48호, 복지경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1호, 복지경제국)	
12. 1.(금) 10:00	3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37호, 행정지원국) 2.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338호, 행정지원국)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339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47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353호, 건설도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4호, 건설도시국)	
12. 2.(토)		휴 회	
12. 3.(일)		휴 회	
12. 4.(월) 10:00	4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56호, 기획홍보실) 2.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5.(화) 10:00	5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12. 6.(수) 10:00	6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2. 7.(목) 10:00	7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12. 8.(금) 10:00	8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미화과)	
12. 9.(토)		휴 회	
12. 10.(일)		휴 회	
12. 11.(월) 10:00	9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12. 12.(화) 10:00	10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12. 13.(수) 10:00	11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14.(목) 10:00	1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구청장)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5.(금) 10:00	13	1.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0호, 백현조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0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9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2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3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0호, 기획홍보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호, 기획홍보실) 8.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12. 16.(토)		휴 회	
12. 17.(일)		휴 회	
12. 18.(월) 10:00	14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12. 19.(화) 10:00	15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12. 20.(수) 10:00	16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1.(목) 10:00	17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22.(금) 10:00	18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이상육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11. 30.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안 제4조 ~ 안 제8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1조)

○ 우수기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

고 보조금 지급,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안 제12조 ~ 안 제15조)

○ 민간협력,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행규칙(안 제16조 ~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안 제4조 ~ 안 제8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1조)
- 우수기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안 제12조 ~ 안 제15조)
- 민간협력,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행규칙(안 제16조 ~ 안 제19조)

○ 검토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1. 30.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17.7.26. 공포·시행)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17.7.26. 공포·시행)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17.7.26. 공포·시행)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백현조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11. 30.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

의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08. 12. 17)이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구의원에게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개정(안 제11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08. 12. 17)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구의원에게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개정(안 제11조 제1항)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지방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1. 30.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참전·유족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확대·지급하여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 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유족⇒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 명예수당 지급 : 월 10만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안 제4조)
○ 부칙 : 2018년 1월분부터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확대·지급하여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 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유족⇒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 명예수당 지급 : 월 10만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안 제4조)
- 부칙 : 2018년 1월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국가에 헌신한 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현재 참전·유족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확대·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1. 30.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령상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규제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띄어쓰기 잘못된 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제10조, 제16조제1항)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17조)

- 편의용품 비치, 지시사항 이행 등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규제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띄어쓰기 잘못된 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제10조, 제16조제1항)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17조) 편의용품 비치, 지시사항 이행 등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법령상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재원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12. 31.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 12. 31.까지 연장(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7. 12. 31.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재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5년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 12. 31.까지 연장(안 제9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2017. 12. 31.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재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조항 등을 신설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관광자원 홍보 조항 신설(안 제5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3호)

- 각종 공모전(스토리텔링 및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일반 참가자 시상 근거 마련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반영하고, 관광통계 조사 및 관광자원 홍보 조항 등을 신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관광자원 홍보 조항 신설(안 제5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3호)
  • 각종 공모전(스토리텔링 및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일반 참가자 시상근거 마련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7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반영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개정안 제5조 제2항 조문 내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18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를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및 입장료에 관한 징수 근거 마련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3조)

○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약체결 사항 등 규정(안 제6조)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낚시공원의 운영시간, 휴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및 입장료에 관한 징수 근거 마련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3조)
-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약체결 사항 등 규정(안 제6조)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낚시공원의 운영시간, 휴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8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및 입장료에 관한 징수 근거를 마련 하고,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만, 조례안 제5조 제4항 조문 내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사회재난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 지원대상 및 결정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재난피해자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지급방법 및 반환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사회재난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 지원대상 및 결정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재난피해자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지급방법 및 반환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10조)
-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본조신설(2016.12.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행정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제처 정비요구사항 반영 삭제 (안 제8조 제4항)

○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규정 신설 (안 제19조 제3항)

○ 미반환 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25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법제처 정비요구사항 반영 삭제 (안 제8조 제4항)
-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규정 신설 (안 제19조 제3항)

- 미반환 수수료 규정 개정(안 제25조 제2항)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백현조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7. 12. 15.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 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 안 제7조)

○ 회의 등, 수당 등, 비밀준수 의무,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 ~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 7조)
- 회의 등, 수당 등, 비밀준수 의무,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 ~ 12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5.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용어 정의 및 시행계획과 시설 수행 기능의 상위법 적용

나)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상위법 적용(안 제5조제2항)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수행 기능 규정(안 제1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 용어 정의 및 시행계획과 시설 수행 기능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학교 밖 청소년”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상위법 적용(안 제5조제2항)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수행 기능을 규정(안 제12조제3

항)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 용어 정의 및 시행계획과 시설 수행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5.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위탁 대상·기간·능력 평가 등의 상위법 적용

○ 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주요내용

○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안 제3조, 안 제7조1항)

○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2항)

○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 평가 절차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도화(안 제7조의2,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위탁 대상·기간·능력 평가 조항 명확화 및 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안 제3조, 안 제7조1항)
-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2항)
-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 평가 절차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도화(안 제7조의2,3)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위탁 대상·기간·능력 평가 조항 명확화 및 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2. 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5.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안제8조(이용 제한)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안 제8조(이용 제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2. 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5.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기본안”에 따라 개별 일몰제 및 최소납부세제 신설 등의 규정을 반영하고,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유효기한이 2017. 12. 31. 도래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감면위임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 울산항만공사 감면기한 종료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 삭제

○ 조례에 의한 감면에도 최소납부세제 신설(안 제12조)

- 재산세가 100% 면제되어 재산세 감면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 적용(면제세액의 15%는 부담)

○ 조례 유효기간 3년 일몰제 조문 삭제(조문별 일몰제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기본안”에 따라 개별 일몰제 및 최소납부세제 신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유효기한이 2017. 12. 31.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감면위임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 울산항만공사 감면기한 종료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 삭제

- 조례에 의한 감면에도 최소납부세제 신설(안 제12조)

• 재산세가 100% 면제되어 재산세 감면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 적용(면제세액의 15%는 부담)

- 조례 유효기간 3년 일몰제 조문 삭제(조문별 일몰제로 변경)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기본안"에 따라 개별일몰제 및 최소납부세제 신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유효기한이 2017. 12. 31.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2. 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5.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가족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 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 도시개발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 기반 구축

나) 주요내용

○ 과 신설 : 여성가족과

○ 담당신설 : 건축주택과 건축관리

○ 복지지원과(생활보장) 재배치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동복지허브 신설 : 권역형 2개소(농소3동, 송정동)

- 기설치 유형변경 : 농소1동(권역형 → 기본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전담부서 신설, 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도시개발에 따른 생활안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과 신설 : 여성가족과
- 담당신설 : 건축주택과 건축관리
- 복지지원과(생활보장) 재배치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동복지허브 신설 : 권역형 2개소(농소3동, 송정동)
  • 기설치 유형변경 : 농소1동(권역형 → 기본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우리 구는 인구 증가, 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복지분야에 다수의 인력 확보가 절실한 만큼, 주민의 행정서비스욕구 충족 및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2. 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5.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 하반기 추가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나)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66명 → 577명(증 11명)
- 일반직 계 : 564명 → 575명(증 11명)
  • 5급 : 증 1명(33명 → 34명), 6급 이하 : 증 10명(526명 → 536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증원 가능인력 범위(11명)에서 인력 조정 및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운용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정원 증원 : 11명(566명 → 577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66명 → 577명(증 11명)
  - 일반직 계 : 564명 → 575명(증 11명)
  - 5급 : 증 1명(33명 → 34명), 6급 이하 : 증 10명(526명 → 536명)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우리 구는 인구 증가, 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복지·도시개발 분야 등에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등 제반 여건과 주민의 행정서비스욕구 증가 현실을 감안할 때 직원 증원이 필요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 매입(1필지, 652.1㎡), 건물 신축(2동, 연면적 1,290㎡)
- 취득사유
  - 북구 노인회관 건립(토지 매입, 건물 신축)

- 추정가격 : 5,940백만원
  - 토지 매입(1,650백만원), 건물 신축(4,29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북구 노인회관 및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토지매입 652.1㎡, 건물신축 2개동, 연면적 1,290㎡로, 총 사업비는 59억 4천만원임.

○ 검토결과, 북구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이 자체적인 사무 및 생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보훈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해오는 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음. 관내 어르신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어르신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등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시설이 하천 구역 내에 건립되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100백만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구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 다만, 재단 설립 이후 2009년도에 3억원, 2010년도에 5억원을 각각 출연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은 중단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출연하였고, 2018년도에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855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6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65,702,342천원 × (1.5/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2009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부담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7.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2. 14.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2차본회의)

2) 기금운용 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6,196,483	584,590	4,450	45,900	5,332,846	60,697	168,000	6,196,483	638,044	70,000	5,464,439	24,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15,932	0	0	0	213,140	2,792	0	215,932	0	0	215,932	0
문화진흥기금	1,068,054	0	0	0	1,054,334	13,720	0	1,068,054	15,000	0	1,053,054	0
사회복지기금	1,529,601	0	0	45,900	1,441,672	19,029	23,000	1,529,601	79,579	70,000	1,380,022	0
식품진흥기금	457,846	0	4,450	0	389,304	4,092	60,000	457,846	45,465	0	388,381	24,000
재난관리기금	1,948,850	584,590	0	0	1,354,806	9,454	0	1,948,850	480,000	0	1,468,850	0
옥외광고발전기금	976,200	0	0	0	879,590	11,610	85,000	976,200	18,000	0	958,200	0

○ 수입은 61억 9,648만 3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5억 8,459만원, 보조금 4,45만원, 융자금 회수액 4,590만원, 예치금 회수액 53억 3,284만 6천원, 이자 수입 6,097만 7천원, 기타수입이 1억 6,800만원임.

○ 지출은 61억 9,648만 3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3,804만 4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54억 6,443만 9천원, 기타지출 2,400만원임.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 말 현재액ⓐ	2018년도 기금운용		2018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332,846**	**863,637**	**732,044**	**5,464,439**	**131,593**
남북교류협력기금	213,140	2,792	0	215,932	2,792
문화진흥기금	1,054,334	13,720	15,000	1,053,054	△1,280
사회복지기금	1,441,672	87,929	149,579	1,380,022	△61,650
식품진흥기금	389,304	68,542	69,465	388,381	△923
재난관리기금	1,354,806	594,044	480,000	1,468,850	114,044
옥외광고발전기금	879,590	96,610	18000	958,200	78,61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1,655만 2천원으로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0억 9,834만 4천원, 지출이 7억 1,940만원으로 3억 7,894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549만 6천원으로 예상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제17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백현조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8. 1. 29.(월) 10:00

다. 회　　기 : 2018. 1. 29. ~ 2. 8.(11일간)

라. 부의안건

- ○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 의원 외 2명)
- ○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 ○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상육 의원 발의)
-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수선 의원 발의)
-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백현조 의원 발의)
- ○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술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작할 때는 새로운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구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여,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자세로 본분을 다하고,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1년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고 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진사업

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3. 의사일정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1. 29.~2. 8.(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 29.(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1.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 북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강진희 의원)	
1. 30.(화) 10:00	2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1. 31.(수) 10:00	3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1.(목) 10:00	4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2.(금) 10:00	5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 3.(토)		휴 회	
2. 4.(일)		휴 회	
2. 5.(월) 10:00	6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 6.(화) 10:00	7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도서관과, 총무과)	
2. 7.(수) 10:00	8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374호, 보건소)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건 소 ○ 기획홍보실 ○ 의회사무과	
2. 8.(목) 10:00	9	1.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66호, 건설도시국)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7호, 이상육 의원 발의-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8호, 이수선 의원 발의 -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69호, 강진희 의원 발의 -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70호, 이상육 의원 발의 - 행정지원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71호, 이수선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72호, 백현조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73호, 복지경제국)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 22. (이상육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2. 8. (제171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심의결과에 따라" → "심의를 거쳐" (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심의결과에 따라" → "심의를 거쳐" (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 22.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2. 8. (제171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기의 게양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신설 (안 제4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기의 게양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을 신설(안 제4조제3항)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 22. (강진희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2. 8. (제171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항 신설(안 제12조제2의2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항 신설(안 제12조제2의2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제3항)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 22. (이상육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2. 8. (제171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내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 적용범위, 기부자 관리 등, 기부자 예우(안 제4조 ~ 안 제6조)
○ 위원회 기능, 위원의 해촉 등(안 제7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 적용범위, 기부자 관리 등, 기부자 예우(안 제4조 ~ 안 제6조)
- 위원회 기능, 위원의 해촉 등(안 제7조 ~ 안 제8조)을 규정(안 제12조제3항)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 22. (이수선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2. 8. (제171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 등, 사업추진 및 지원, 지원대상(안 제4조 ~ 안 제6조)

○ 표창, 시행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 등, 사업추진 및 지원, 지원대상(안 제4조 ~ 안 제6조)
- 표창, 시행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으로 구성되었으며,

○ 검토결과,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시대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 22. (백현조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2. 8. (제171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안 제3조)

○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안 제8조)

○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3조)
-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8조)
-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12조)으로 구성되었으며,

○ 검토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래의 주역이며, 국가 성장 동력의 중추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 22.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2. 8. (제171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예산지원 규정(안 제7조)
○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업무위탁 및 포상
-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업이 밀집된 우리 구 특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7조)
-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9조)
- 업무위탁 및 포상(안 제 10조 ~ 11조)으로 구성되었으며,
○ 검토결과,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하는 자동차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1절 제17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상육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8. 3. 27.(화) 10:00

다. 회　　기 : 2018. 3. 27. ~ 4. 9.(14일간)

라. 부의안건

-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육 의원 외 2건)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승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인 봄을 맞아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

며,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어느덧 민선 6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금리인상, 한·중 갈등과 급변하고 있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은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 없으며,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민원 현장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과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72회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지역을 보다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계획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야외활동이 잦은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구민의 안녕과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3. 의사일정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3. 27.~4. 9.(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27.(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1.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6호)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8.(수) 10:00	2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77호, 행정지원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378호, 기획홍보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3. 29.(목) 10:00	3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임시회 후		<현장방문 활동> 1. 염포운동장 조성 공사 현장 2. 강동문화센터 건립 현장	
3. 30.(금) 10:00	4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31.(토)		휴 회	
4. 1.(일)		휴 회	
4. 2.(월) 10:00	5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4. 3.(화) 10:00	6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4. 4.(수) 10:00	7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4. 5.(목) 14:00	8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4. 6.(금)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84호, 안승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379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0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1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82호, 건설도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3호, 건설도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7.(토)		휴 회	
4. 8.(일)		휴 회	
4. 9.(월) 10:00	10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3. 28. (제17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및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필지, 1,320㎡), 건물신축(2개동, 3,490㎡)
- 취득사유
  -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
- 추정가격 : 총 12,000백만원
  -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건물신축 9,900백만원)
  -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토지매입 600백만원, 건물신축 1,5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및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으로, 토지매입 1필지 1,320㎡, 건물신축 2개동, 연면적 3,490㎡로, 총 사업비는 120억원임.

○ 검토결과,

-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국가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헌신해 온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및 중·장년층의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학교 밖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성인들의 안정적인 생애설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구 이탈 방지 및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은 날로 심해지는 국가 간 보호무역, 금리인상(미국)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 속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및 공간을 마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적성은 물론 지역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4. 9. (제172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사회복지기금	3,029,601	0	1,500,000	45,900	1,441,672	19,029	23,000	3,029,601	2,179,579	70,000	780,022	0

- 수입은 30억 3,960만 1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보조금 15억원, 융자금 회수액 4,590만원, 예치금 회수액 14억 4,167만 2천원, 이자수입 1,902만 9천원, 기타 수입이 2,300만원임.
- 지출은 30억 2,960만 1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7,957만 9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7억 8,002만 2천원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당초) ⓐ	기금운용계획변경		2018년도 말 조성액(변경) ⓓ=ⓐ+ⓑ-ⓒ	증 감 ⓔ=ⓓ-ⓐ
		수입ⓑ	지출ⓒ		
사 회 복 지 기 금	1,380,022	1,500,000	2,100,000	780,022	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당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002만 2천원임
  -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을 보면 수입은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15억 증가하고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신축으로 21억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002만 2천원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입금,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됨.

○ 2018년 지출계획 중 지역자활센터 신축비 19억 6,884만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0 (안승찬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4. 6. (제17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 사항을 수렴하여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 정비(안 제3조)

- “지역선거구 순서” →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

○ 체포·구금 관련 청가 특례 신설(안 제7조)

- 의원의 체포·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 갈음

○ 의장·부의장 선거 및 임기 정비(안 제8조 및 제9조)

- 의장단 선출시기 및 임기 명확화

○ 의안의 제출방법 설정(안 제19조의3)

-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 정비(안 제3조)
- 체포·구금 관련 청가 특례 신설(안 제7조)
- 의장·부의장 선거 및 임기 정비(안 제8조 및 제9조)

- 의안의 제출방법 설정(안 제19조의3)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4. 6. (제17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됨.

○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선발기준, 업무처리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납세자보호관 배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24조까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 세무조사의 연기 및 연장 신청의 처리
-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에 따라 납

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선발기준, 업무처리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납세자보호관 배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조 ~ 7조)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 24조)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 세무조사의 연기 및 연장 신청의 처리
  -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 25조 ~ 28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4. 6. (제17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7.12.26.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된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조문 변경

○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20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5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의 일부개정(2017.12.26.)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조문 변경
-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20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5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일부개정(2017.12.26.)으로 위임된 관련 조례 조문 중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4. 6. (제17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12.26.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된 세액공제 요건에 전자송달 방식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조문 변경

○ 전자송달 방식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하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6조)

- 세액 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50원
-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2017.12.26.) 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에 전자송달 방식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조문 변경
- 전자송달 방식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하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6조)
  - 세액 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50원
  -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2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2017.12.26.)으로 세액공제 요건에 전자송달 방식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4. 6. (제17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안으로,

○ 주요 폐지 내용을 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0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4. 6. (제17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적으로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주차장은 노외·부설 주차장에 한하므로 법률상 근거 없는 노상주차장 제외(안 제5조)

○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시 규정과 통일(안 제6조)

○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저공해 자동차" 까지 확대하고,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조항 신설 (안 제6조)

-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신설 →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삭제 →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법적으로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주차장은 노외·부설 주차장에 한하므로 법률상 근거 없는 노상주차장 제외(안 제5조)
-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

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시 규정과 통일 (안 제6조)

-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저공해 자동차” 까지 확대하고,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조항 신설 (안 제6조)
-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11조의2)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제17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북구의회의장

나. 개회일시 : 2018. 5. 15.(화) 10:00

다. 회　　기 : 2018. 5. 15.(1일간)

라. 부의안건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의사일정

제17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5. 15.(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15.(화) 10:00	1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의 건	

예산·결산심의사항

제1절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절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절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6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7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절 2018년도 예산안
제9절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0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절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6. 8. 1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6. 8. 25.(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6. 9. 5.(제8차 본회의)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6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80,409,763	100	267,482,216	100	12,927,547	8,412,293
일반회계		276,585,030	98.64	263,652,483	98.57	12,932,547	8,297,551
특별회계		3,824,733	1.36	3,829,733	1.43	△5,000	114,74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73,212	0.10	278,212	0.10	△5,000	8,1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2,390	0.02	42,390	0.02	-	1,272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	0.44	1,244,313	0.47	-	37,329
	기반시설	10,483	0.00	10,483	0.00	-	314
	주차장	2,254,335	0.80	2,254,335	0.84	-	67,630

3.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280,409,763	0	120,000	0.04	4,672,265	4,792,265	280,409,763	8,412,293
일반회계		276,585,030	0	120,000	0.04	3,340,199	3,460,199	276,585,030	8,297,551
특별회계		3,824,733				1,332,066	1,332,066	3,824,733	114,74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73,212				5,000	5,000	273,212	8,1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390						42,390	1,272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						1,244,313	37,329
	기반시설	10,483						10,483	314
	주차장	2,254,335				1,327,066	1,327,066	2,254,335	67,630

4. 심의의결 요지

□ 세입 분야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억 2,755만원이 증액된 2,804억 97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24억원, 세외수입 8억 3,180만원, 지방교부세 5억 6

천만원, 조정교부금등에 3억원, 보조금 28억 3,295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 2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29억 2,75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3,84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억 9,821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9,984만원, 보건 분야에 2,40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억 7,95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 4,74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억 2,55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산세 및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안테니스장 샤워실 설치'의 경우, 지난 연말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안테니스장을 준공한 이후, 2016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많은 체육시설간 형평성과 한정된 우리구 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앞서 삭감된 상안테니스장 샤워실 설치와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상안테니스장 확정 측량비 등 각종 체육시설 설치 예산과 관련하

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제반절차 등 사업 추진에 누락됨이 없이 한 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관내 체육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따져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겠음

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투자된 마리나 시설이 강동권 개발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하겠음.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1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가 38억원에서 61억원으로 60%를 넘는 예산을 증액한 것은 당초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임. 향후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계획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림.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조선업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들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성과 못지 않게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현장지도를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2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6. 11. 1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6. 11. 21.
○ 본회의 의결일자 : 2016. 12. 15.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7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15년 당초)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65,739,376	100	245,550,411	100	19,188,965	7,972,181
일반회계		260,593,698	98.06	245,233,114	99.47	15,360,584	7,817,811
특별회계		5,145,678	1.98	1,317,297	0.53	3,828,381	154,37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40,220	0.05	145,432	0.06	△5,212	4,20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82,100	0.29	38,800	0.02	743,300	23,463
	주차장	4,223,358	1.59	1,122,582	0.46	3,100,776	126,701

3.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등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265,739,376	226,000	586,607		3,034,825	3,395,432	265,513,376	7,965,401
일반회계		260,593,698	226,000	586,607		2,756,883	3,117,490	260,367,698	7,811,031
특별회계		5,145,678	-	-		277,942	277,942	5,145,678	154,37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40,220	-	-		5,000	5,000	140,220	4,2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82,100	-	-		-	-	782,100	23,463
	주차장	4,223,358	-	-		272,942	272,942	4,223,358	126,701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91억 8,896만원이 증액된 2,657억 3,93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05억 9,369만원, 특별회계는 51억 4,569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세수입 100억 1,000만원, 세외수입 9억 8,575만원, 조정교부금 57억 4,347만원, 보조금 87억 94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70억 6,868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8.76%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정교부금은 15%정도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7.15% 증가되었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억 8,896만원이 증액된 2,657억 3,938만원임. 이중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에 150억 2,702만원, 문화및관광에 236억 1,217만원, 환경보호에 96억 4,933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149억 8,859만원, 보건분야에 89억 7,58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3억 3,287만원, 산업및중소기업에 19억 523만원, 수송및교통에 110억 3,911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19억 2,405만원, 예비비에 27억 5,688만원, 기타 465억 7,15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처음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견학' 예산의 경우, 매년 안보견학을 주제로 해외에 나가는 것 보다 국내에서 국가안보 현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체육회 행사 지원용 차량구입' 은 민간 단체에 차량을 구입·지원하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여타 다른 민간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함.

마지막으로 경기의 침체 속에 우리 북구도 긴축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자 전체 부서별 운영비 중 680만원을 삭감함.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식' 관련 예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2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추억의 학교 운영'의 경우, 매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억의 학교가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투게더 콘서트 공연'의 경우, 작은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행사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연 횟수 등을 조정하여 다양한 지역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람.

'약수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개설'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계획 중에 있는 농소2동 운동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운동장 이용 예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폭이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길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구청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마다 증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신축을 검토하길 바람.

'직원 한마음 연수'의 경우, 올해 시행 실적 및 결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수상을 함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상의 기회가 적음. 발표회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은 북구를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공원화 계획과 함께 유적기념관 건립도 검토하고, 사전에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텃밭으로 활용되던 명촌 지역이 황폐하게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끝으로, 우리 구는 현재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더 나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구 레지던스 사업과 접목하여 문화예술이 지역의 재생사업에 녹아들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함.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3절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6. 12.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6. 12. 15.(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6. 12. 22.(제17차 본회의)

2.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6년 예산액 (3회추경)	%	기정 예산액 (2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28,933,512	100.00	280,409,763	100.00	48,523,749	9,868,005
일반회계		325,097,669	98.83	276,585,030	98.64	48,512,639	9,752,930
특별회계		3,835,843	1.17	3,824,733	1.36	11,110	115,07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84,322	0.09	273,212	0.10	11,110	8,5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2,390	0.01	42,390	0.02	-	1,272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	0.38	1,244,313	0.44	-	37,329
	기반시설	10,483	0.00	10,483	0.00	-	314
	주차장	2,254,335	0.69	2,254,335	0.80	-	67,630

3.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328,933,512	-	-	-	16,264,739	16,264,739	328,933,512	9,868,005
일반회계		325,097,669	-	-	-	14,896,335	14,896,335	325,097,669	9,752,930
특별회계		3,835,843	-	-	-	1,368,404	1,368,404	3,835,843	115,07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84,322	-	-	-	5,000	5,000	284,322	8,5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390	-	-	-	-	-	42,390	1,272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	-	-	-	-	-	1,244,313	37,329
	기반시설	10,483	-	-	-	-	-	10,483	314
	주차장	2,254,335	-	-	-	1,363,404	1,363,404	2,254,335	67,630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5억 2,375만원이 증액된 3,289억 3,351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83억 400만원, 세외수입 14억 4,258만원, 지방교부세 54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등에 6억원, 보조금으로 327억 5,51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회 추경 대비 485억 2,375만원이 증액된 3,289억 3,351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4억 6,32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1억 4,21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억 8,142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억 2,69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5억 4,987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2억 9,646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66억 1,170만원, 예비비로 114억 3,61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올해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무엇보다 태풍 차바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농로 등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피해 복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사업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그리고,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조성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여 예산을 1, 2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함.

따라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고, 계약 집행잔액 등은 적기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7. 4.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7. 4. 14.(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7. 4. 28.(제10차 본회의)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7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94,843,061	100	265,513,376	100	29,329,685	8,845,292
일반회계		291,046,917	98.71	260,367,698	98.06	30,679,219	8,731,408
특별회계		3,796,144	1.29	5,145,678	1.94	△1,349,534	113,88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73,188	0.06	140,220	0.05	32,968	5,1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85,367	0.27	782,100	0.29	3,267	23,561
	주차장	2,837,589	0.96	4,223,358	1.59	△1,385,769	85,128

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294,843,061	0	289,000	-	5,032,025	5,321,025	294,843,061	8,845,292
일반회계		291,046,917		289,000	-	3,148,136	3,437,136	291,046,917	8,731,408
특별회계		3,796,144	0	0	0	1,883,889	1,883,889	3,796,144	113,88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73,188	-	-	-	5,000	5,000	173,188	5,1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85,367	-	-	-	0	0	785,367	23,561
	주차장	2,837,589				1,878,889	1,878,889	2,837,589	85,128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3억 2,969만원이 증액된 2,948억 4,30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0억 7,919만원, 지방교부세 5억 7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에 82억 3,289만원, 보조금 33억 8,607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160억 6,1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 대비 293억 2,969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1,19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6,209만원, 교육 분야에 4,0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5억 9,7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6억 5,963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3억 4,032만원, 보건 분야에 4억 7,82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억 5,926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39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5억 1,36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8억 8,46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도비보조금 및 2016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유동 공영주차장 풋살구장 설치'의 경우, 사업을 계획하고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여건, 구체적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향후 지역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는 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쇠부리체육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예산을 심의하며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방법, 위탁운영에 대한 주민 설명회, 관리감독 기능강화 등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이번에 요구된 위탁금의 일부 중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수준보다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함.

'승강기 내 구정 홍보시스템 구입'의 경우, 구청 청사의 경우 5층 건물로 민원인들이 승강기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홍보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함.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단순히 물품구입·지원 하는 예산으로 집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빠른 시일내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치안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결정하고 추진하여야 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기를 조절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 개보수비의 경우, 소규모로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으로 그러한 집행은 최소화하고, 개별 사업의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설정하여야 함. 향후 금회와 같이 6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은 사업예산의 취지에 맞게 별도 사업으로 설정하기 바람.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수성천 나무데크 조성)과 관련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로 편성된 사업들로써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초에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편성함이 타당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원, 등산로, 체육시설 뿐 아니라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발생도 많아지고 있음. 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이후 유지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접 수 일 자 : 2017. 5. 2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 의 일 자 : 2017. 6. 14. ~ 6. 22.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 결산액 : 362,744,098,867원
- 세출 결산액 : 266,827,642,378원
- 세계 잉여금 : 95,916,456,489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668,492,732,783원
  - 부 채 : 8,811,480,331원
  - 순 자 산 : 659,681,252,452원
- 재정운영
  - 수 익 : 310,057,214,502원
  - 비 용 : 250,200,637,096원
  - 재정운영결과 : 59,856,577,406원

4. 심의의견 요지

□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세입부문

○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 3,598억 4,15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27억 4,41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560억 574만원에 수납액은 3,582억 6,708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2,669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8억 3,5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억 7,702만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233만원임.

○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차단하도록 하고, 발생한 체납액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당부드림.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의 경우, 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한 재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인·분석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3,598억 4,15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68억 2,76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560억 57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43억 9,1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8억 3,584만원, 지출액은 24억 3,567만원임.

○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다음해 사업 추진시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유포석보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과 같이 용역사업은 완료 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연차별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진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결국,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로 남을 여지가 많음에 따라 부서에서는 중앙부처·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국·시비 보조사업 중, 공동생활가정지원, 아동급식지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사업비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추진하여야 하겠음.

○ 2016년도 예산집행사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태풍 '차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연말에 각 부서별로 많이 편성·집행되었음.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우기가 시작되기 전, 피해 복구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 하천, 도심 맨홀 등 사전 점검을 통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절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접 수 일 자 : 2017. 5. 2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 의 일 자 : 2017. 6. 23.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9건		1,878,471,000	1,741,815,547	136,414,800	240,653	
일반 회계	산림병해충방제 [보조]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	2. 2.	490,000,000	490,000,000	-	-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 구비부담분
	산림병해충방제[자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6. 8.	7,659,000	7,658,400	-	600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축사의 한우 송아지 3두 사산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효율적인 송무업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6.29.	497,982,000	497,981,947	-	53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수변공원 관리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낙석 예방사업)	7.29	70,000,000	70,000,000	-	-	하절기 우수기 대비하여 낙석방지망 미설치 구간에 대해 낙석 예방사업
	재해응급 복구 (재해복구비 (재난지원금) 지급)	10.18.	100,000,000	100,000,000	-	-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 중 구비부담분
	긴급도로복구 하천응급복구 공사 (태풍 피해 복구)	11. 7	390,000,000,	338,527,000	51,473,000	-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항구복구 추진을 위해, 피해복구 사업비 결정 전 사전 실시설계용역비
	하천응급복구 공사 (태풍피해 하천응급복구)	11.11.	100,000,000	100,000,000	-	-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 임차료
	재해응급복구 (재해복구비 (재난지원금) 지급)	11.28	196,190,000,	111,248,200	84,941,800	-	태풍 '차바'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을 추가 교부되었고, 이에 따른 최종 구비부담분
	가축방역관리 (AI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12.21	26,640,000	26,400,000	-	240,000	AI의 지역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

4.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9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18억 7,847만원 중 17억 4,1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641만원을 이월하고 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6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AI 긴급 방역,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낙석 예방사업, 그리고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지원 사업비 4건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7. 8. 2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7. 9. 5.(제 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7. 9. 18.(제10차 본회의)

2.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7년 예산액 (2회추경)	%	기정 예산액 (1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11,957,289	100	294,843,061	100	7,114,228	9,358,719
일반회계		300,138,584	96.21	291,046,917	98.06	9,091,667	9,004,158
특별회계		11,818,705	3.79	3,796,144	1.94	8,022,561	354,56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93,188	0.06	173,188	0.05	20,000	5,7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85,367	0.25	785,367	0.27	-	23,561
	폐기물처리시설	8,002,182	2.57	-	-	8,002,182	240,065
	기반시설	379	0.00	-	-	379	11
	주차장	2,837,589	0.91	2,837,589	1.59	-	85,128

3.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311,957,289		50,000		4,073,366	4,123,366	311,957,289	9,358,719
일반회계		300,138,584		50,000		2,301,998	2,351,998	300,138,584	9,004,158
특별회계		11,818,705				1,771,368		11,818,705	354,56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93,188				5,000		193,188	5,7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85,367						785,367	23,561
	폐기물처리시설	8,002,182						8,002,182	240,065
	기반시설	379				379		379	11
	주차장	2,837,589				1,765,989		2,837,589	85,128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1억 1,423만원이 증액된 3,119억 5,729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81억 8,334만원, 지방교부세 8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등에 9억, 보조금 52억 3,273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19억 53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71억 1,422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97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4,11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26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2억 1,299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3억 3,210만원, 보건 분야에 3억 2,50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억 2,633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 7,49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억 6,24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 7,33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 필수사업비 부족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삭감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의 경우, 긴급공사 및 피해복구사업 발생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니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주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비용 절감,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용역으로 전문가 등 학계의 자문과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충분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또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 심도있게 수지 분석하여 너무 성급하게 설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에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람.

'국민체육센터 증축'의 경우, 사업 시행 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즉각 사업을 중단하기 바람. 또한 시설 이용자 및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안내와 홍보를 당부드리며,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들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의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올해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주민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문화와 스포츠, 먹거리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이 계속 찾을 수 있는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또한 내년에도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해 한 해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최근 신규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니, 열악한 공간에도 신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하수도정비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과 관련하여, 지난 해 태풍 '차바'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우·오수관로에 대한 준설 및 세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주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내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및 우천 시 재해를 예방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8절 2018년도 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7. 11. 1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7. 11. 20.(제 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7. 12. 14.(제12차 본회의)

2. 2018년도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8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02,323,031	100.00	265,513,376	100.00	36,809,655	9,069,691
일반회계		298,788,216	98.83	260,367,698	98.06	38,420,518	8,963,646
특별회계		3,534,815	1.17	5,145,678	1.94	△1,610,863	106,04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2,020	0.05	140,220	0.05	21,800	4,86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83,000	0.09	782,100	0.29	△499,100	8,490
	기반시설	379	0.00			379	11
	주차장	3,089,416	1.02	4,223,358	1.59	△1,133,942	92,682

3. 2018년도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등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302,323,031	290,000	618,600		4,181,535	4,510,135	302,033,031	9,060,991
일반회계		298,788,216	290,000	618,600		3,932,331	4,260,931	298,498,216	8,954,946
특별회계		3,534,815				249,204	249,204		106,04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2,020				-	-		4,8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83,000				-	-		8,490
	기반시설	379				379	379		11
	주차장	3,089,416				248,825	248,825		92,682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339억 966만원이 증액된 3,020억 3,30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84억 9,822만원, 특별회계는 35억 3,482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48억 2,000만원, 세외수입 2억 1,019만원, 조정교부금 39억 8,084만원, 보조금 210억 7,789만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7억 2,07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변동 없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7.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정교부금은 9.06%, 보조금은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16.18% 각각 증가하였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39억 966만원이 증액된 3,020억 3,303만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에 26억 2,309만원, 공공질서및안전에 2억 1,413만원, 교육에 2억 6,871만원, 환경보호에 3억 2,68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22억 5,794만원, 보건분야에 15억 2,298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억 537만원, 수송및교통에 21억 6,023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75억 2,852만원, 예비비에 8억 1,484만원, 기타 30억 7,36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및관광에 48억 1,892만원, 산업·중소기업에 2억 6,771만원 각각 감액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예산의 경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다른 민간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견학 시기를 후반기로 계획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와 '투게더 콘서트 공연' 예산의 경우, 매년 행사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요구액을 삭감하였음.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우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 재검토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구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의 경우,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시 외관에만 치우치지 말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방문객과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청사 청소용역 소모품 구입 및 비데 등 임차 계약' 의 경우, 청소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 바라며, 비데 등 임차 계약 시 시설마다 용역 단가가 차이나는 만큼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바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축 시 공공시설의 효율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설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최근 신규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니, 전체적인 틀에서 골고루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연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표사업과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들을 포함하여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관용차량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 정비, 운행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체 관용차량 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 운영하는 방안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시 폭설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4륜 구동차량 구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운영 성과가 미비하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환원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양정동 주민센터 내 입주단체들의 이전장소를 확보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준공 전 입주 문화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양정·염포권의 문화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주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정책 연수’를 추진함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일부 특정단체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중소기업 차세대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 분야로 안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향후 성과보고회, 기업인 간담회 개최 시 성공사례들을 공유하여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천 시 우수배제 지연과 하천 역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산기반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고 용수장을 확충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속심이·제전보 통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집

중호우 등 우천 시 하천수 월류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차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었는데 구조 개선을 통하여 통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교량 설치가 바람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리더 양성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리더 교육 수료자들이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축제 등 안전 점검에 참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천의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및 주민쉼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 특색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끝으로, 우리 구는 현재 각종 용역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학계 등 전문가의 자문과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과업지시서 작성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여야 함.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9절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7. 12.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7. 12. 14.(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7. 12. 22.(제18차 본회의)

2.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7년 예산액 (3회추경)	%	기정 예산액 (2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20,604,196	100.00	311,957,289	100.00	8,646,907	9,618,126
일반회계		303,785,491	96.21	300,138,584	98.06	3,646,907	9,113,565
특별회계		16,818,705	3.79	11,818,705	1.94	5,000,000	504,56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93,188	0.06	193,188	0.05	-	5,7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85,367	0.25	785,367	0.27	-	23,561
	폐기물처리시설	13,002,182	2.57	8,002,182	-	5,000,000	390,065
	기반시설	379	0.00	379	-	-	11
	주차장	2,837,589	0.91	2,837,589	1.59	-	85,128

3.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320,604,196	-	-	-	7,442,403	7,442,403	320,604,196	9,618,126
일반회계		303,785,491	-	-	-	7,442,403	7,442,403	303,785,491	9,113,565
특별회계		16,818,705	-	-	-	-	-	16,818,705	504,56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93,188	-	-	-	-	-	193,188	5,7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85,367	-	-	-	-	-	785,367	23,561
	폐기물처리시설	13,002,182	-	-	-	-	-	13,002,182	390,065
	기반시설	379	-	-	-	-	-	379	11
	주차장	2,837,589	-	-	-	-	-	2,837,589	85,128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억 4,691만원이 증액된 3,206억 420만원임.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6억원, 세외수입 64억 7,202만원, 지방교부세 1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등에 1억 8,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6억 1,3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86억 4,691만원이 증액된 3,206억 420만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억 4,193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8억 4,865만원, 보건 분야에 2,38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7억 2,40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028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5억 2,092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9억 168만원, 예비비로 50억 9,04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 9,848만원, 교육 분야에 587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0억 8,438만원, 사회복지 등에 37억 7,61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고, 각종 용역비 등 삭감할 사유가 있을 시 1, 2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국·공유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국유지 무단점용 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함.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신청 시 주민불편 해소 방안이 필요하며, 농촌폐비닐 뿐만 아니라 부직포에 대한 수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당초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8. 3. 2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8. 3. 27.(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4. 9.(제10차 본회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8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16,921,828	100.00	302,033,031	100.00	14,888,797	9,507,655
일반회계		313,385,666	98.88	298,498,216	98.83	14,887,450	9,401,570
특별회계		3,536,162	1.12	3,534,815	1.17	1,347	106,08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4,620	0.05	162,020	0.05	△7,400	4,6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1,747	0.09	283,000	0.09	8,747	8,752
	기반시설	379	0.00	379	0.00	-	11
	주차장	3,089,416	0.97	3,089,416	1.02	-	92,682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316,921,828	-	1,600,000	-	4,071,339	5,671,339	316,921,828	9,507,655
일반회계		313,385,666	-	1,600,000	-	4,071,339	5,671,339	313,385,666	9,401,570
특별회계		3,536,162	-	-	-	-	-	3,536,162	106,08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4,620	-	-	-	-	-	154,620	4,6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1,747	-	-	-	-	-	291,747	8,752
	기반시설	379	-	-	-	-	-	379	11
	주차장	3,089,416	-	-	-	-	-	3,089,416	92,682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8억 8,880만원이 증액된 3,169억 2,183만원이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6억 3,960만원, 지방교부세 5억 600만원, 보조금 101억 8,547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억 5,77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 대비 148억 8,88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4,453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억 1,191만원, 교육 분야에 30억 4,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 689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7억 3,81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억 1,749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억 6,73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3억 7,23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18억 8,67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또한 환경보호 분야에 2억 4,199만원, 보건 분야 등에 6억 5,56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및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3월 29일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전액 구비를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 시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운영 시 벤치마킹과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청취로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노후화된 체육시설와 관련하여 최근 공원, 등산로, 운동장 등에

각종 체육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 관내 체육시설 이용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과감히 철거하고, 보수 및 교체할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바라며, 미비한 소방 설비, 피난대비 시설 등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경로당 시설 개선의 경우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경로당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이 많음. 지속적인 기능보강 및 개보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배수장의 위치 선정 시 공청회와 동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기 바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행정사무감사

제1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2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3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4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5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6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7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8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1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6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기간 : 제16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 11. 22 ~ 2016. 11. 30.〕

라.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정 복 금

○ 부 의 장 : 강 진 희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김용종, 박은정

○ 사무직원 : 정 은 희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고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임상진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총무과장	박경란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김현동		
		세무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	강홍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보건소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고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전 동	농소1동장	손 기 익		
		농소2동장	허 사 영		
		농소3동장	김 기 항		
		강동동장	최 해 관		
		효문동장	안 희 수		
		송정동장	강 걸 수		
		양정동장	서 준 영		
		염포동장	홍 성 욱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제16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 11. 22. ~ 2016. 11. 30.]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6. 11. 22.(화)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6. 11. 23.(수)	10:00	〃	○행정지원국 •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 농소1동·농소3동 ·효문동·양정동) • 도서관과	
2016. 11. 24.(목)	10:00	〃	○행정지원국 • 총 무 과 • 문화체육과 • 민원지적과 • 세 무 과	
2016. 11. 25.(금)	10:00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2016. 11. 26.(토)		휴 회		
2016. 11. 27.(일)		휴 회		
2016. 11. 28.(월)	10:00	소회의실	○복지경제국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6. 11. 29.(화)	10:00	〃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안전정보과 • 도시행정과	
2016. 11. 30.(수)	10:00	〃	○건설도시국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50	25	24	138	140	88	28	7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 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기본 현황(기구, 정원·현원, 분장사무현황) : 실·국·소, 과·동별 작성
  -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15. 10. 1.~2016.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동주민센터 보고서는 연초 구청장 동순시 업무보고 서식 적의 조정 작성
- 감사범위 : 2015. 10. 1. ~ 2016.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6. 9. 30. 현재

○ 작성요령 : 「붙임 3」 참조

○ 제출기한 : 2016. 11. 7.(월)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동장 일괄 실시 - 33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1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대표) : 행정지원국장

○ 선서문 : 「별첨 4」 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6급 전문위원 박은정 및 전직원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5」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6급 전문위원 박은정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속기사 허순자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 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8. 동주민센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비 고
계	4개동	4개동	
농소1동	○		
농소2동		○	
농소3동	○		
강동동		○	
효문동	○		
송정동		○	
양정동	○		
염포동		○	

※ 감사자료는 전체 동에서 작성 제출하고 해당연도 감사대상은 동장이 출석하여 답변

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450	
공 통 사 항		25	
기 획 홍 보 실		24	
행정지원국	소 계	138	
	총 무 과	30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39	
	문화체육과	35	
	도 서 관 과	12	
	세 무 과	10	
	민원지적과	12	
복지경제국	소 계	140	
	복지지원과	12	
	사회복지과	39	
	창조경제과	19	
	농 수 산 과	28	
	환경위생과	20	
	환경미화과	22	
건설도시국	소 계	88	
	건 설 과	24	
	안전정보과	12	
	도시행정과	14	
	공원녹지과	16	
	교통행정과	11	
	건축주택과	11	
보 건 소		28	
의 회 사 무 과		7	

【전부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공정률</th><th>시공업체</th><th>예 산
확보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종류</th><th>용역비</th><th>착수일자</th><th>완료일자</th><th>용역결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2016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5.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해당동</th><th>통보일자</th><th>공사명</th><th>공사개요</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통사항〕	14. 지방보조금(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 집행내역 - 2015. 10. 1. ~ 2016. 9. 30. (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환수일	사업명	환수대상		환수사유	금액	비고
		성명(업체,기관,단체명)	주소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비고
						일자	내역	비용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 기간	사역 목적	단가 (원)	채용 방법	비 고
				○구 ○○동					

- 작성기간 : 2015. 10. 1 ~ 2016. 9. 30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	목적	비고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23. 국가·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 기획홍보실 개별사항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자료 중 당선(채택)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24.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
<tr><th>위원회명</th><th>개최일시</th><th>주요안건</th><th>심사방법</th><th>심사결과</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5. 행사·축제 개최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사 업 명</th><th>개최일시</th><th>장 소</th><th>예산액
/집행액</th><th>주요내용
(요약)</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td></tr>
</table>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6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 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6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행정지원국	총무과			:												
		…			: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															
	…	…															
의회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6.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6.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홍보실</td><td>
1.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현황, 공약이행율, 향후계획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3.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 운영 실적과 내용
4.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5. 구민창안제도 운영 실적
6.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6. 9. 30. 현재)
<table>
<tr><th>구 분</th><th>총계</th><th>법령</th><th>조례</th><th>기타 규정</th></tr>
<tr><td>설치근거별</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총계</th><th>심의</th><th>의결</th><th>자문</th><th>협의</th></tr>
<tr><td>성격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② 위원회 위원 현황
<table>
<tr><th rowspan="3">위원회명</th><th rowspan="3">위원장</th><th colspan="6">위 원 수</th><th rowspan="3">임 기</th></tr>
<tr><th rowspan="2">계</th><th rowspan="2">남</th><th rowspan="2">여</th><th rowspan="2">당연직
임명직</th><th colspan="3">위 촉 직</th></tr>
<tr><th>공무원</th><th>시·구
의원</th><th>민간위원
(시민단체)</th></tr>
<tr><td>총계</td><td>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td><td></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③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
<tr><th rowspan="2">위원회명</th><th rowspan="2">회의주기</th><th rowspan="2">개최횟수
(서면)</th><th rowspan="2">회의록</th><th colspan="3">예산집행내역</th></tr>
<tr><th>예산액
(천원)</th><th>인원
(명)</th><th>집행액
(천원)</th></tr>
<tr><td>총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
④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위원회명</th><th>설치일자</th><th>설치근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집행내역
<table>
<tr><th rowspan="2">소관부서</th><th rowspan="2">위원회명</th><th colspan="4">집행내역</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시</th><th>장소</th><th>참석인원</th><th>소요금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홍보실	7.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성과, 워크숍 개최 현황, 예산집행액, 워크숍 내용 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2015년도, 2016년도)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6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황 및 실적(일정, 교육대상, 주제, 참석인원)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 소규모 사업 및 정책사업 제안 주민 의견 수렴 자료 10. 주민참여예산제 2016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승진점수 가산,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3.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4.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5.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 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16.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 17.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18.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9.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행자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0.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 21. 구정성과, 구정홍보 영상물 예산집행 내역 (※ 영상물 별도 제출) 22. 규제개혁 사업 추진 현황 23. 구청장 공약 변경사항(변경 전, 후 발췌 작성) 24. 국민신문고 접수현황, 처리절차, 수상현황 등	

(행정지원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
1.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사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3.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
4.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직 직원현황과 급여 지급내역
(기준단가, 성과금, 가족수당등 각종수당 지급 현황)
6.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
(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 비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2016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5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4년도(9.30기준)</th></tr>
<tr><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부서별, 월별 현황(2015, 2016)
8. 5급 공무원 전보내역
<table>
<tr><th>대상자</th><th>부서명</th><th>근무기간</th><th>비 고</th></tr>
<tr><td rowspan="2"></td><td></td><td></td><td></td></tr>
<tr><td></td><td>~ 현재</td><td></td></tr>
</table>
9.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직급</th><th>계약기간</th><th>업무</th><th>채용방법</th><th>월평균급여</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포함
10. 인사관련 민원 또는 직원고충 처리현황(건수, 처리결과)
※ 건수 : 주요내용별 건수
11.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5, 2016년)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
12. 공개입찰 계약 현황 -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table>
<tr><th>발주부서</th><th>계약일자</th><th>건명</th><th>사업량(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입찰참여업체수</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3. 관급공사 계약 현황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4. 수의계약 현황 -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부서명,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15.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16.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7.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18.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19.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득방법</th><th rowspan="2">취득가격</th><th rowspan="2">취득목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지목</th><th>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건물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득방법</th><th rowspan="2">취득가격</th><th rowspan="2">취득목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건축면적(㎡)</th><th>건축연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20.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21. 구청사 개보수 내역
<table>
<tr><th>사업명</th><th>사업기간</th><th>사업내역</th><th>사업비</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2.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23.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5, 2016년 월별 비교)
24. 중산행복샘 운영현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25. 직원 한마음 연수 실적
26. 구청장과 직원의 「미니데이트」 운영 실적
27. 수의계약 구별 업체 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단위 : 건)
<table>
<tr><th>구 분</th><th>물 품</th><th>공 사</th><th>용 역</th></tr>
<tr><td>계</td><td></td><td></td><td></td></tr>
<tr><td>북 구</td><td></td><td></td><td></td></tr>
<tr><td>중 구</td><td></td><td></td><td></td></tr>
<tr><td>남 구</td><td></td><td></td><td></td></tr>
<tr><td>동 구</td><td></td><td></td><td></td></tr>
<tr><td>울 주 군</td><td></td><td></td><td></td></tr>
<tr><td>울 산 외</td><td></td><td></td><td></td></tr>
</table>
28. 제한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와 사유
29. 구청장 비서실 업무 분장 현황 및 운영현황(실적)
30. 동 주민센터 내 카페 시설 계약 현황(계약방법 등)</td><td></td></tr>
</table>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6. 9. 30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6. 9. 30. 기준)

구 분		지방공무원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										
	: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소1동											
:											
: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6.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 분		업 무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전 문 실무원	시설 관리원	환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180일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기획 홍보실															
행정지원국	총무과	:													
		:													
		:													
	자치행정과														
	:														
:	:														
의회 사무과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td><td>
1. 주민참여 추진현황
2. 주민참여학교 운영 실적
(참여자치아카데미, CB학교)
3. 주민자치한마음, 통장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상황
4.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추천기관, 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 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자부담 포함)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구청장 (연초)동순회방문 주민건의내용 처리 현황
7.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상황
8.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9. CB 공모사업 현황
10.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실적, 향후계획
11.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2016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요약분),
예산 포함
1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3.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실적, 식전공연 추진내용 및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14.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15. 제3대학 졸업 후 활동실적 16.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 현황 17.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8.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19. 추억의 학교 운영실적 20. 방범대 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정산서 21. 생활공감모니터 운영 현황 22. 창의놀이터 운영 실적 23.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실적 (접수 및 선정, 진행현황, 공동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24.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 해외연수 관련 실적, 정산, 사진 등 25. 구청장 공동주택 등 주민간담회 주민건의내용 및 처리현황 26. 통장 문화탐방 운영 실적 27.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28. 각 동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2015, 2016년 월별 비교) 29. 지역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정산내용, 활동일지 30.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 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강사계약기간, 보조금 지원 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 표기 - 동별 취합) 31.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성명, 성별, 직업, 연령, 주소) 및 위원의 타 단체 가입 현황, 여성위원 현황, 사무국장 현황, 주민자치위원장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32.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제목(안건) ※ 2016. 1월~9월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출 33.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34.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체계 개선실적 35. 소통과 공감의 힐링문화 조성(양정동) 실적 36. 농소3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 37. 주민자치위원회내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록 ※ 회의록 제출은 2016. 1월~9월 분 38.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사업실적 39.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문화체육과</td><td>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향후 사업운영 계획
(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 현황
4. 문화쉼터 몽돌 운영 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5.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 조 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양정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7.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8.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9.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현황
10.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1. 운동장별 대여 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2.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13. 2016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생활)체육회 운영비
- 보조금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5.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16.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 17.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 운용 현황 18. 문화예술회관·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가스·전기·수도)월별 사용량, 요금 및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2015, 2016년 월별 비교) 19.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20.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프로그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21. 투게더 콘서트 운영 현황(당초 계획서 및 진행 결과), 예산액, 집행내역(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22.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 23.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동아리 현황과 추진사업 24. 체육회 조직도, 조직현황, 임원, 이사회, 대의원 현황(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활동경력) 25. 쇠부리 복원사업 관련 실적 및 정산 26. 생활체육시설 현황, 운영주체, 수익금 27. 장애인 실업팀 운영실적 28.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실적 29.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적, 관련 공문(최근 3년간) 30. 서머페스티벌 실적 및 정산 31. 강동관광단지 조성 지원 TF팀 구성현황 32. 관광주간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 실적 33. 맞춤 관광 책자 제작 및 홍보실적 34. 관광 특산품 상품개발 용역 실적 35.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 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울산 북구의 책 사업 추진성과 - 도서 대출 현황 - 독서 감상문 참여 현황 및 독서릴레이 참여현황 - 주민 홍보 현황 -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전략 6.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7. 5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5, 2016년 월별 비교) 8.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사업내역 등) 9. 자원봉사자 현황, 활동내역 10. 자원봉사자(도서관 친구들 포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지원 현황 11. 공중전화부스 활용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실적 12. 주민 및 자원봉사자 교육 현황 및 내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세 무 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세목별 부과, 징수, 예산편성액)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 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단위:천원)

체 납 자		결손내역			결손처분 일 자	결손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결손액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선진지 견학 추진상황
9. 주민세 종업원분 기업별 현황

(단위:천원)

종업원수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1 ~ 50					
51 ~ 100					
101 ~ 200					
201 ~ 300					
301 이상					

10. 시세 지방소득세 기업별 현황(종업원 50인 이상) (단위:천원)

종업원수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50 ~ 100					
101 ~ 200					
201 ~ 300					
301 이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지적과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 6.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8.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 1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2.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복지지원과</td><td>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세부지출내역
(사업별, 사업기간)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체별 구분 작성,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지원월,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5.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
- 국비, 시비129, 희망365 구분(지원금액 등)
6.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6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2015~2016년 사업실적
- 총 매출액 및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 자활사례관리 추진현황
7.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8.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
10.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
11. 동 복지위원 현황(명단, 직업) 및 활동 현황
12. 주거급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실적</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복지과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주소, 이용인원, 건물형태, 소유형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 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6.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근무시간 등 7. 2016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8. 북구 양성평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9.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 현황 10.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11.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13.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14. 다문화가족 현황(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예산지원, 지원사업 현황, 중점 추진시책,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15.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복지과</td><td>16.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내역
17.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상세 작성
18. 어린이집 점검 내용
19.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에 대한 현황
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21.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현황
22.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23.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24.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25.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26.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기본 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2015~2016년도)
- 직원 현황(작성일 현재)
<table>
<tr><th>성명</th><th>나이(성별)</th><th>부양가족수</th><th>장애유형</th><th>장애등급</th><th>월 평균임금</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2015~2016년도)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2015~2016년도)
- 자원봉사 현황(2015~2016년도)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2015~2016년도)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2015~2016년도)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 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복지과</td><td>27.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서식 적의 조정〉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지체</td><td colspan="3">지적장애</td><td colspan="3">정신장애</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2016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6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28.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동산 2015년도 예산 지원, 사업 실적, 정산서
29.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30.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31.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32. 노인대학 운영실적
33.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현황
34. 관내 아동학대 사건 현황
35.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
36. 어린이집 관련 민원현황
37.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
38. 아동학대관련 실태조사 현황
39. 구청내 성희롱 상담건수, 기타 성희롱 관련 실적</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창조경제과</td><td>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7.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8.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9.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10.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11.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12.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table><tr><th rowspan="2">설립일</th><th rowspan="2">기업명</th><th rowspan="2">주생산품</th><th colspan="3">투 자 비</th><th rowspan="2">종사자 수</th><th rowspan="2">월평균 매출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13.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14. 협동조합 등록 현황
15.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적
16.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실적
17.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 실적
18.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실적
19.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산제품 우선 구매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일시, 지원내용, 수급자, 지원금액)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8.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 현황 10.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 실적 11.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성과, 시장대비 가격 비교 12.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3.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실적 15.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6.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 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17.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18.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19.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0.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21.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22.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농수산과</td><td>23.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24.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 학교별 세부지원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각종 간담회 포함)
25.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
26.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적
27. 친환경 작목반 현황 및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납품현황
<table>
<tr><th rowspan="2">농가명</th><th rowspan="2">농가규모</th><th rowspan="2">농산물종류</th><th colspan="2">납품현황</th></tr>
<tr><th>납품여부</th><th>납품실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8.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환경오염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계약 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4, 2015, 2016년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 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8.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9.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 현황, 사업내용 10.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1.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 결과 보고 - (2014, 2015, 2016년도 작성) 12.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소재지) 13. 음식문화 개선 추진실적 -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식단, 위생영업주 교육 등 ※ 모범음식점 포함 14.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 현황 포함) 15.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6.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 최근 3년(2014년 ~ 2016년) -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17.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18.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19.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 실적 2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미화과	1. 기본 현황(2016.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6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3.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청소차량 현황 및 운행 실적 ※ 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과태료 부과내역 등) 8.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0.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5~2016)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5~2016)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 현황(2015~2016)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15~2016)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2.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미화과</td><td>
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4, 2015, 2016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table>
<tr><th>구 분</th><th>계</th><th>1월</th><th>2월</th><th>…</th><th></th></tr>
<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4. 음식물폐기물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민원 발생내용 등
15.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정책 실패 이후 추진 현황
16.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 교환판매장 관련
- 위탁 실적 현황(기간, 업체명, 위탁금액)
- 입찰계약서, 입찰조건, 인건비, 소요인력
- 재활용품 선별장 수익 현황
- 재활용품 수거 실적(2014, 2015, 2016년 작성), 처리내역
- 선별장내 구청 자산 목록(구입 시기, 내구연한, 구입비 등)
- 재활용품별 가격 산정단가(폐지, 공병, 플라스틱, 캔 등)
17.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8.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9.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20.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망 관리내역
<table>
<tr><th>동 명</th><th>거점망
관리장소수</th><th>관리단체</th><th>지정일</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1. 공공용 마대 제작 내역 및 사용 내역
22. 한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td><td></td></tr>
</table>

(건설도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건 설 과</td><td>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th><th>내 용</th><th>처리결과</th><th>완료일자</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불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
(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 현황)
9.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10.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1. 동천강변 내 각종 식재 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생존율
12.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5.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16.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17. 옥동~농소 2구간 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18.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및 저소득층 가사도우미 운영실적
19.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추진실적
20.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
21. 하천부지 현황, 불법 점유 현황 및 관리내역
22.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23. 농소수질개선사업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현황
24.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체납현황 포함)</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안전정보과	1.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4.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 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5.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6.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7.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8.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0. 도로 등 현장 작업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안전 매뉴얼 11.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 12. 통일 및 안보교육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행정과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 현황, 민원 현황 및 지원 실적 3.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5.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평창아파트 부지) 명의이전 관련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6.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염포양정 도심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8.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등 각종 주민편의사업 추진실적 (2015년~2016년) 9.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현황 10. 도시계획사업지구 사업변경 현황 11. 산업단지 추진상황 12. (가칭)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및 활용방안 13. 철도이설 후 철로 활용방안 14. 지난 2년간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장, 담당주무관, 담당자 등 변경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원녹지과	1.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2.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3.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4.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5.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6.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7.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8.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9.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 향후 추진계획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1.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2. 국화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투입 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 현황 13.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포함 14. 명촌, 신천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15. 재선충 방재 관련 인력운영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16.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실적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교통행정과</td><td>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 현황
2.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table>
<tr><th>구 분</th><th>건 수</th><th>과태료부과액</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자투리땅 활용 포함)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5.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6.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table>
<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 소재지</th><th>차고지 면적</th><th>용 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table>
<tr><th>단속일자</th><th>단 속
차량대수</th><th>행정처분 실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7.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8.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개선사업 추진실적
9.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10. 과태료 체납 현황, 징수(정리) 실적
1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체납 포함)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5.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그간 세부 진행사항, 소송 대응 방안 6.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7.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8.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6. 9. 30 현재) 9.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0.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11. 불법광고물 관리 차량 현황 및 업무처리 과정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 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 수 (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 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9.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10.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임산부 지원 현황 포함 11. 2자녀·3자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1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3.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 현황, 대상자 선정 기준 14.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출산 지원내역 15.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 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시행 이전과 비교 실적, 이용자 홍보 실적, 관리대상자 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6.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7.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18.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19.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20.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21.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22.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3.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 ※ 2016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 포함 24.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25. 노인 의치 지원사업 26.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5, 2016년 월별 비교) 27. 금연지도원 현황 및 금연단속 실적 28 우리마을 치매사랑방 운영실적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 현황 4. 의원 발의 결의안, 자유발언, 구정질문 (서면질문 포함) 현황 5. 의회 방청 현황 6. 의회 견학 현황 7. 언론 홍보, 보도 현황	

제2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6. 11. 22. ~ 11. 30.(9일간)

4. 감사대상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 동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정 복 금	강 진 희	이상육 안승찬 이수선 윤치용 백현조	김 용 종 박 은 정	정 은 희

② 감사일시 및 장소

일시 \ 구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16. 11. 22.(화)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6. 11. 23.(수)	10:00	〃	○행정지원국 •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 농소1동·농소3동 ·효문동·양정동) • 도서관과	
2016. 11. 24.(목)	10:00	〃	○행정지원국 • 총 무 과 • 문화체육과 • 민원지적과 • 세 무 과	
2016. 11. 25.(금)	10:00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2016. 11. 26.(토)		휴 회		
2016. 11. 27.(일)		휴 회		
2016. 11. 28.(월)	10:00	소회의실	○복지경제국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6. 11. 29.(화)	10:00	〃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안전정보과 • 도시행정과	
2016. 11. 30.(수)	10:00	〃	○건설도시국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동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50	29	
공 통 사 항	25	-	
기 획 홍 보 실	24	1	
행 정 지 원 국	138	7	
동		4	
복 지 경 제 국	140	7	
건 설 도 시 국	88	7	
보 건 소	28	2	
의 회 사 무 과	7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8	22	66
공 통 사 항	4	2	2
기 획 홍 보 실	5	1	4
행 정 지 원 국	27	10	17
복 지 경 제 국	21	3	18
건 설 도 시 국	26	6	20
보 건 소	3	0	3
동	1	0	1
의 회 사 무 과	1	0	1

6. 감사결과

공 통

시정요구

①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우선 설치

- 동 주민센터나 구청사 등 공공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장애인 이동에 불편한 곳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시정 바람.
- 그 외 의회 본회의장, 박상진호수공원 관리동 등 기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 및 개선을 요구함.

② 지방보조금 정산 철저

- 보조금 예산은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몇몇 단체는 아직까지 정산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므로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을 반드시 지도·교육시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

① 부서별 인력 조정 배치

- 우리구는 개청 당시에 비해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복지·보건·건설·재난·동주민센터 등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음. 사업부서 및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업무 처리 상황 등을 검토하여 인력의 증원 및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하며, 민간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매년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개최 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음.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 및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주민참안제도의 적극적 운영

-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로(국민신문고, 생활공감모니터 등)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각종 주민교육을 통해서도 제안 제도를 홍보하여 참여도를 제고해 주기 바람.
- 주민들의 단순한 제안이나 건의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격려를 통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하며, 민간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매년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음. 안건의 심의만을 위해 개최하지 말고 위원회를 통해 각종 계획 및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② 지역축제예산의 적정한 운영

-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매년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색있는 축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통폐합하여 우리 구 전체 축제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축제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③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적정한 배분 요구

- 부서별로 편성된 보조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공모과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단체가 있으므로 전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다음해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④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찾아가는 예산 학교 운영은 해마다 여성·노인·청소년·다문화·장애인으로 바꾸어가면서 교육하기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성과가 있음. 특히, 여성·장애인·청소년은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여성보건휴가 이용 재고 촉구

-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용률이 저조한 부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위해 매분기 새올게시판에 실적을 게시하여 주시고, 일괄 결재실적도 함께 점검하여 주기 바람.

② 공유재산 용도에 맞는 대부·사용

- 공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하천부지 등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대부·사용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용도에 맞게 대부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③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우선 설치

- 동 주민센터나 구청사 등 공공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장애인 이동에 불편한 곳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시정 바람.
- 그 외 강동사랑길, 박상진호수공원 등 기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 및 개선을 요구함.

건의사항

① 국내 도시 간 교류 검토

- 우리 지역의 인접도시인 경주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행정 업무와 각종 문화교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유기적인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내 도시간 교류를 검토해 주기 바람.

② 공공청사 관리 용역의 일원화

- 공공청사 청소용역, 엘리베이트 유지보수관련 등 청사관리용역이 시설물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유지비용의 절감 및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③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계획 검토

- 농소2, 3동, 효문동 주민센터는 인구의 증가 등으로 청사 협소,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연차별 청사 건립계획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완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 나타나고, 안건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미흡한 점이 많음. 회의록 작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②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 당부

-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보조금 집행을 많이 개선하고 있으나 일부 자율방범대는 아직도 정산이 미흡함에 따라 반드시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통장,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화

-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응 매뉴얼이나 비상 전달체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기 바람.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 기존 회원들의 장기수강으로 신규회원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회원들의 동아리 활동 보장이나, 권역별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하는 등 자치센터 내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프로그램 수강 접수시, 컴퓨터로 접수하는 경우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접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③ 주민 참여형 사업의 지속 추진

-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④ 교육경비 지원 사업내용의 다양화 노력

-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단순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이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유해성 물질 검출 체육 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물 중 유해성 물질이 포함된 체육시설물이 있으며, 이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빠른 시일 내 교체를 완료해 주기 바람.

② 체육센터 프로그램 접수방법 개선

- 체육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컴퓨터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접수방법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함.

③ 하천 부지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 개선

- 하천 부지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고, 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 조치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계획 수립

- 기박산성, 관문성, 유포석보, 달천절창 등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보존의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많이 있음.
- 형식적인 문화재의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문화 컨텐츠화 시키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② 지역축제예산의 적정한 운영

-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매년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색있는 축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통폐합하여 우리구 전체의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축제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③ 달천철장 주변 쇠부리 축제 개최 검토

- 달천철장유적공원이 정비되고 나면 그 주변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달천철장을 하나의 콘텐츠로 살릴 수 있으며, 보다 완벽한 우리구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임.
- 쇠부리 축제가 완벽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주변정비, 기타 주차시설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④ 국민체육센터 주차문제 및 통행로 확보

- 국민체육센터의 진입로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랫동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의견수렴 철저

-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의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도서관과

시정요구

① 농소1동 도서관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 농소1동 도서관의 위치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아직

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② 숲속작은도서관 등 시설 개선 및 보수

- 화동못수변공원 작은도서관, 뚜벅이 작은도서관 등 습기, 바닥꺼짐이 염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위치 조정이나 빠른 시일내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 바람.

건의사항

① 매곡도서관 건립 마무리 철저

- 도서관 건립 마무리시 주변환경(산책로, 매곡천 다리 등)도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개관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매곡도서관 건립과 함께 뚜벅이 작은 도서관의 운영 여부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 바람.

② 도서관별 용역 개선

- 도서관별로 청소 및 엘리베이터 용역 계약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예산의 절감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통합해서 일괄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③ 책잔치 참여자 확대

- 책잔치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단체·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동구 등 타 지자체의 경우처럼 평일에도 책잔치를 개최함으로써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길 바람.

세 무 과

건의사항

①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체납징수실적이 좋지 않음.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선 및 야간민원실 운영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설치된 장소마다 운영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현재 야간민원실 운영의 경우 이용자가 많은 데 이에 따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 검토

-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장애인,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 자립해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지원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에 실무협의체, 분과회의 등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회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기 바람.

③ 지역 참전기념비, 충혼탑 등 이전

- 지역에 있는 참전기념비, 충혼탑 등이 흩어져 있어 기념비 등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음. 공공장소 등 한 곳에 모아 지역주민들도 그 역사적 의의를 배우고 기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자원봉사 추진 활성화

- 자원봉사홈타운을 통해 지역사회를 소통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책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동지역보장협의체와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원봉사동아리,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공모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사회복지시설의 내진설계 보강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진 발생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개선 검토

- 일반 경로당의 시설개선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경우 시설 개선이 누락되고 있음. 공동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지속 돌봄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용자에서 제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됨.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돌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바람.

③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검토

- 고령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노인 정책의 문제가 일반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지역의 경로당시설 건립에 머물지 말고 복지관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④ 시간제 보육시설의 확대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창조경제과

건의사항

① 달천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 달천농공단지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식당이나 주차시설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달천농공단지내의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②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 활성화

-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 시기를 맞아 재취업, 교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예년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예산 증액 및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③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교육의 확대

- 청소년들에게 근로기준법 교육은 가장 기본 되는 교육임에도 아직까지 많이 알지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음. 천소년들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④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평가 철저

- 2015년, 2016년에 걸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투입이 되어 왔으며,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문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부서에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주체의 의지가 없다고 방치해 놓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체험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설계 하거나 기본 운영계획을 재검토하여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건의사항

① 직거래 장터 운영 관리 개선

- 직거래장터개설에 따라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나, 편백산림욕장, 화동못에 열리는 직거래장터의 경우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로 하고, 마트에 설치된 장터의 경우 조기에 제품이 품절되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사례가 있어 유지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

② 봄꽃전시회 운영 개선

- 농촌 화훼 마을의 소득증대와 우수한 화훼작목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봄꽃전시회가 쇠부리 축제와 같이 운영하다보니 장점도 있지만 특화된 축제로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전시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여 봄꽃전시회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바람.

③ 친환경급식센터의 운영 내실화

- 친환경급식센터가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단순한 유통만을 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체험이나 교육을 활성화 하고,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를 모색 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바람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홍보 철저

- 건축용 자재 석면 슬레이트가 교체되지 않고 지역에 많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대한 많은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② 야생동물 피해예방 적극 노력

-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렵활동기간 연장, 각종 안전장치를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장기 방치된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 천곡동 525-1번지, 매곡동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내 방치된 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점검

- 자원의 나눔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사람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 자원의 재활용, 경제개념의 형성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접수시 신경을 써 주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음에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신고센터가 있음을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② 동별 공사 안내 공문 통보 철저

- 동에 통보된 공사안내 공문이 실제 공사 건수에 비해서 매우 적으며, 지역의 공사현황을 동 주민센터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지역의 관심 사업들에 대한 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통보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재해에 대비한 하천의 종합 정비

- 하천부지에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하천복구시 안전에 대비하여 정비 바람.

-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폭, 수로의 구조 등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바람.

② 동천강 교량 설치 건의

- 동천강에 있는 시례잠수교, 제전보, 속심이보는 통행길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폭우시 통행을 차단해 주민들이 고립되고 불편함을 호소함. 보를 통행길로 이용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교량 설치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③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 마련

-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나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복구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예산편성목적에 맞지 않음.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을 수립해 집행해야 할 것임.

④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

- 디자인 거리 조성시 타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봉사거리 주변사업들(화봉공원주차장, 화봉시장 공사, 공원재정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추진해 주길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천곡마을회관~하늘땅유치원까지 도로개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까지 도로 확장
- 태풍 피해에 따른 이화천 보행데크의 조속한 복구
- 매곡도서관 준공에 맞춰 월드메르디앙에서 매곡도서관 연결 다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안전정보과

시정요구

① 자율방재단 활성화

- 각종 재해 재난이 발생시 가장 우선적으로 연락되고 활동하여야 하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나 임무 등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자율방재단의 교육 등을 통해 역할이나 임무 등을 숙지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건의사항

① 재난 유형별 매뉴얼의 재점검

- 재난 유형별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 각종 전달체계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통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반복적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몸에 익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
-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철저히 작성되고, 주민대피로의 확보, 장비, 방호복, 마스크 등을 준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도 노력바람..

② 실행가능한 방사능 및 각종 재난 홍보물 제작·배포

- 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각종 대책이나 대응 매뉴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홍보물이 필요함.
- 또한, 홍보물외에도 주민들이 손쉽게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각종 대응매뉴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어플 제작을 검토하기 바람.

도시행정과

건의사항

①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교육 및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서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②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북구는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임. 북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 갈 것인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시에 건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③ 천곡동 지역 도시계획 입안

- 인구의 증가, 개발행위의 증가 등 무분별하게 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빠른 시일 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도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① 가로변 화분 관리 방안 검토

- 마을 가로변에 환경정비나 주차방지용 목적으로 큰 화분을 배치해 놓고 있으나 설치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도로의 기능도 저해하고 있음. 화분 관리방안을 모색하거나 필요 없는 곳의 화분은 철거를 검토 바람.

② 등산로 주변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주요 등산로 주변에 각종 사업을 실시한 후,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고 산림이 훼손 되어 비가 오면 절개지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시설물들(운동기구, 팔각정자 등)을 설치만 해놓고 방치되어 유지관리가 필요함.

건의사항

① 국화전시회 개선 방안 모색

- 타 구군에서도 각종 초화류 식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국화전시회 볼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새로운 초화류 식재를 통해 북구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농소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 안내 철저

- 농소근린공원내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광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③ 산림지역 관리 철저

- 올해 태풍 차바 강습시 벌채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 벌채목 등의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산림지역에 일어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④ 산하지구 주변 등산로 정비 요청

- 산하지구가 완공되지 못해 주민 쉼터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하지구 주변 등산로의 정비 가능한 지역을 현장 확인 후 주민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교통행정과

건의사항

①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조정 적극 노력

- 우리 구는 도시주거지역 신설, 인구증가,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 신설등으로 대중교통 증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음. 현재 울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선조정 용역에 우리구의 현황이 적극 검토되어 노선조정(환승 포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② 등하굣길 교통안전사업 확대 방안 검토

-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보행안전지도사업의 경우,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확대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을 검토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기타사항

- 신답교 부근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
- 양정힐스테이트 ~ 양정초등학교 구간 등하교 안전대책 강구(보도차도 분리, 태양광 조명 도입 등)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 북구 관내에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허가 뒤 철저한 관리·단속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입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공고를 내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사전에 인허가나 공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바람.

② 공동주택내 경로당 지원 검토

-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로당의 유지보수 지원 사례는 없음. 공동주택내 경로당에 대하여 유지보수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③ 내진설계 반영여부 등 확인 방안강구

- 내진설계의무대상 건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내진설계여부 및 수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중앙부처 건의를 바람

보 건 소

건의사항

① 재활프로그램운영시설 확충

- 장애인재활훈련을 필요로 하는 대기수요가 많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각종 종합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이 계획될 때 재활훈련시설도 같이 검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② 요양병원 관리 철저

- 요양병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요양병원 관리하는 체계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③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로 사업을 종료시키기 보다 매년 시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① 동별 축제,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

- 동에서 이루어지는 경로행사, 체육대회, 축제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그 참가대상이나 내용에 구분이 없음.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는 대상과 성격, 그리고 지역적 특색이 잘 반영된 차별화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경주시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 경주시의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쇠부리 축제시 경주시 방문이후 교류한 실적이 없으므로 정기적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제3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5. 10. 1. ~ 2016.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450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88건이며, 시정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66건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7년 2월 22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제4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88	22	9	13		66	21	43	2
공 통		4	2		2		2		2	
기획홍보실		5	1	1			4		4	
행정지원국	소 계	28	10	1	9		18	6	10	2
	총 무 과	6	3		3		3		2	1
	자치행정과 (동)	6 (1)	2		2		4 (1)	(1)	4	
	문화체육과	8	3	1	2		5	4	1	
	도서관과	5	2		2		3		2	1
	세 무 과	1					1		1	
	민원지적과	1					1	1		
복지경제국	소 계	21	3	2	1		18	8	10	
	복지지원과	4					4	2	2	
	사회복지과	5	1	1			4	3	1	
	창조경제과	4					4		4	
	농수산과	4	1		1		3	1	2	
	환경위생과	2					2	2		
	환경미화과	2	1	1			1		1	
건설도시국	소 계	26	6	5	1		20	4	16	
	건설과	7	2	2			5		5	
	안전정보과	3	1		1		2		2	
	도시행정과	3					3		3	
	공원녹지과	6	2	2			4	1	3	
	교통행정과	3					3		3	
	건축주택과	4	1	1			3	3		
보 건 소		3					3	3		
의회사무과		1					1		1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기획홍보실

구 분	시정 · 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주민창안제도의 적극적 운영** -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로(국민신문고, 생활공감모니터 등)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각종 주민교육을 통해서도 제안 제도를 홍보하여 참여도를 제고해 주기 바람. - 주민들의 단순한 제안이나 건의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격려를 통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구청 홈페이지 구민창안아이디어 코너에 국민신문고 연계운영 안내와 링크를 연계 조치하였으며, 주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채택을 상향조정하였음. 다양한 홍보와 제안경로를 확장하여 창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내실을 기하였음.	**완 결**
건의사항	①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중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매년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음. 안건의 심의만을 위해 개최하지 말고 위원회를 통해 각종 계획 및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각종 위원회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위원 (재)위촉 시, 위원회 운영의 타당성, 참여계층 다양화, 다수 중복위원 활동 배제 등 위원회 고유기능과 성격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법령 및 조례 등)하는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였음. ○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서로 공문을 통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음. ○또한 매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적기에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지역축제예산의 적정한 운영** -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매년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색있는 축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통폐합하여 우리 구 전체 축제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축제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에 의거 2017년에는 행사·축제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방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총액한도제를 운영하였으며, 신규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 평가와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적절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하에 적극 이행하였음.	완 결
	③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적정한 배분 요구 - 부서별로 편성된 보조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공모과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단체가 있으므로 전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다음해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7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10월 중 다음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심의를 실시하였음. 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사업평가를 면밀히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④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찾아가는 예산 학교 운영은 해마다 여성·노인·청소년·다문화·장애인으로 바꾸어가면서 교육하기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성과가 있음. 특히, 여성·장애인·청소년은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동 지역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 지역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으로서 지역토론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였음.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시 직장인 등 보다 많은 계층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간, 야간 과정을 개설하고, 179명중 120명이 참석하는 등 참여율을 높였으며,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 117명은 대구, 군산 등 4개 지역에 다양한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켰음. ○청소년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청소년문화의 집에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건의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음.	**완 결**

□ 총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여성보건휴가 이용 제고 촉구**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용률이 저조한 부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분기 새올게시판에 실적을 게시하여 주시고, 일괄결재실적도 함께 점검하여 주기 바람.	○분기별 보건휴가 실적을 새올게시판에 게시 및 부서별 보건휴가 일괄 결재 시행여부를 점검하였음.	**완 결**
	② **공유재산 용도에 맞는 대부·사용** 공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하천부지 등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대부·사용함으로써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용도에 맞게 대부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공유재산 대부 시 용도에 맞게 대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업무협업을 통해 공유재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결**
	③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우선 설치** 동 주민센터나 구청사 등 공공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장애인 이동에 불편한 곳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시정 바람.	○점형블럭 교체, 핸드레일 재설치 등의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국내 도시 간 교류 검토** 우리 지역의 인접도시인 경주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행정 업무와 각종 문화교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유기적인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내 도시간 교류를 검토해 주기 바람.	○현재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해오름 동맹'을 결성하여 경주시와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어, 경주시에서 우리구와의 교류를 원치 않음.	불 가
	② **공공청사 관리 용역의 일원화** 공공청사 청소용역,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관련 등 청사관리 용역이 시설물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유지비용의 절감 및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공공청사는 관련 규정(공유재산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설별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시설 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한계 등을 위하여 재산관리관별 관리용역 시행이 타당함.	불 가
	③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계획 검토** 농소2, 3동, 효문동 주민센터는 인구의 증가 등으로 청사 협소,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연차별 청사 건립계획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8개 동주민센터는 2001년 이후 건축된 공공시설로서 건축된지 채 20년이 되지 않아 신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 일부 동주민센터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신축계획 수립은 구 재정여건, 직원 수, 인구증가 추이, 적합부지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 자치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완**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 나타나고, 안건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미흡한 점이 많음. 회의록 작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필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표준 회의록 작성양식에 맞게 작성, 보관될 수 있도록 동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교육 및 행정지도 함.('17. 2. 6./16명)	**완 결**
	②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보조금 집행을 많이 개선하고 있으나 일부 자율방범대는 아직도 정산이 미흡함에 따라 반드시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율방범대 보조금 정산서 영수증 첨부, 유류비·급식비의 지출 및 정산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원범위는 초소운영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보조금 정산 절차에 맞게 집행하도록 담당공무원과 방범대 사무국장 교육 및 행정지도 실시('17. 2. 21./16명)	**완 결**
건의사항	**① 통장,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화** -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응 매뉴얼이나 비상 전달체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기 바람.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역량 강화 교육함('17. 9. 21.~9. 22./35명) ○통장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교육함. - 전체 통장 : '17. 3. 21, 220명 - 신규 통장 : '17. 10. 13, 44명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 기존 회원들의 장기수강으로 신규 회원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회원들의 동아리 활동 보장이나, 권역별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하는 등 자치센터 내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프로그램 수강 접수 시, 컴퓨터로 접수하는 경우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접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일부 주민의 프로그램 장기 수강을 막기 위한 수준별 반 구성, 동아리 활성화, 수료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장 방문 접수만 실시하고 있음. 향후 온라인 접수 시행 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동별 자체 지원 방안마련을 요청함. [자치행정과-20286('16.12.27.)호]	완 결
	③ 주민 참여형 사업의 지속 추진 -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소규모 신규 주민모임의 마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 신규시책으로 "든든한 이웃사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및 마을박람회 등 전국적인 행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주도 벤치마킹을 유도함. ○향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공동체한마당 참여 등을 통해 전국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하여 확대·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음.	완 결
	④ 교육경비 지원 사업내용의 다양화 노력 -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단순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이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프로그램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단순 교재교구 구입의 경우 대부분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누리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사업신청 시 유치원, 각급 학교에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 사업계획 수립토록 지도하였으며, 지도·점검 시 내년 사업에 지역사회 공유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줄 것을 지도함.	완 결

□ 동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동별 축제,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 - 동에서 이루어지는 경로행사, 체육대회, 축제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그 참가대상이나 내용에 구분이 없음.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는 대상과 성격, 그리고 지역적 특색이 잘 반영된 차별화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농소1동** -호계역과 홈골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100년의 호계역과 홈골의 만남 축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였고, 마을방송인 '호계다방'을 보는 라디오로 마을주민들이 직접 진행하여 다른 축제와 차별화 하였음 -시낭송 등 은행나무 작은음악회를 '17. 10월말 개최예정으로 축제 참여대상을 다양화 함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 추진시 행사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추진함. ○ **농소3동** -농소3동의 모태산인 순금산보물지도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고, 별빛극장, 쇠부리나눔장터&프리마켓 행사를 개최하여 농소3동만의 특색있는 행사 추진함. ○ **효문동** -그동안 추진해오던 자생단체 위주의 체육대회를 2016년부터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룡산과 연계한 행사로 변경하여 산오름 체육대회로 개최하였고, 경로잔치는 주민프로그램 발표회와 연계하여 추진함. ○ **양정동** -2017 한여름 밤의 힐링음악회, 동민산행 및 숲속음악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와 함께하는 어르신 효 큰잔치 등 올해 동에서 추진한 행사는 각계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완 결**

□ 문화체육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유해성 물질 검출 체육 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물 중 유해성 물질이 포함된 체육시설물이 있으며, 이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빠른 시일 내 교체를 완료해 주기 바람.	○17년 8월 명촌다목적 구장 인조잔디 교체, 17년 9월 달천운동장, 명촌 농구장, 효문운동장 우레탄 포장 교체를 완료하였음. ○현재 농소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는 입찰 진행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 마무리 할 예정임.	**추진중**
	② 체육센터 프로그램 접수방법 개선 - 체육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컴퓨터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접수방법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함.	○현재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방문접수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방문접수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안내 팝업창을 실행하고 있음.	**완 결**
	③ 하천 부지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 개선 - 하천 부지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고, 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 조치하기 바람.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과와 협의하여 향후 설치되는 체육시설물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도록 협의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계획 수립** - 기박산성, 관문성, 유포석보, 달천절창 등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보존의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많이 있음. - 형식적인 문화재의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문화 컨텐츠화 시키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관문성 종합정비는 울산광역시에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2017년도 시비 보조금은 미확보(7억원) 되었으나,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 달천철장 정비는 38억 예산으로 2018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 하겠음.	**완 결**
	② 지역축제예산의 적정한 운영 -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매년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색있는 축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통폐합하여 우리구 전체의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축제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행사축제예산 관련 우리지역만의 특색있고 고유의 행사축제는 내실을 다지고,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소모적 낭비성 행사축제는 통폐합하여 축제의 내실화 및 예산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완 결**
	③ 달천철장 주변 쇠부리 축제 개최 검토 - 달천철장유적공원이 정비되고 나면 그 주변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달천철장을 하나의 콘텐츠로 살릴 수 있으며, 보다 완벽한 우리구 대표 축제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임. - 쇠부리 축제가 완벽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주변정비, 기타 주차시설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그간 쇠부리축제 개최장소가 축제 모티브의 원류지가 아닌 곳에서 개최되고, 장소의 협소성 등의 문제로 축제의 본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면이 있었음. ○ 달천철장 정비 및 보존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견, 주변 학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쇠부리축제 개최여부를 결정하겠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④ 국민체육센터 주차문제 및 통행로 확보** - 국민체육센터의 진입로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랫동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센터 이용자에 비해 주차면수(70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천공원 조성시 공원 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천공원 사업 시행부서에 지속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 의견수렴 철저 -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의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시설개선 사업 추진시 문화예술아카데미 회원 의견 수렴 반영 - 유아실 방음벽 설치 - 전 강의실 수납공간 확장 설치 - 음악실, 일반 강의실 학습용 TV 설치	**완 결**

□ 도서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농소1동 도서관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농소1동 도서관의 위치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 농소1동·농소2동 주민센터에 농소1동도서관 위치 및 이용안내, 프로그램 및 행사 등 홍보배너 비치('17 2. 24.) ※농소1동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 총 4개(시장2리 사거리 1개, 시장2리 버스정류장 1개, 유황사우나 앞 1개, 호계초등학교 근처 사거리 1개)	완 결
	② 숲속작은도서관 등 시설 개선 및 보수 화동못수변공원 작은도서관, 뚜벅이 작은도서관 등 습기, 바닥 꺼짐이 염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위치 조정이나 빠른 시일 내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 바람.	○ 천마산편백산림욕장 숲속 작은도서관, 화동못 수변공원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색을 실시('16. 12. 7.)하였으며, ○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화동못수변공원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공원내 위치를 조정('16. 12. 16.) 함. ○ 관리주체인 자원봉사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완 결
건의사항	**① 매곡도서관 건립 마무리 철저** 도서관 건립 마무리 시 주변환경(산책로, 매곡천 다리 등)도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개관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매곡도서관 건립과 함께 뚜벅이 작은도서관의 운영 여부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 바람.	○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도서관을 준공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7. 9. 1. 도서관을 개관함. ○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변 환경 정비 및 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동안 매곡지역의 구립도서관 역할을 다하여 온 뚜벅이작은도서관은 행정예고를 거쳐 '17. 10. 1.자로 폐관 함.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도서관별 용역 개선** 도서관별로 청소 및 엘리베이터 용역계약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예산의 절감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통합해서 일괄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청소 등 용역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 및 개별 법령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계약 법령에 따라 도서관별 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함.	완 결
	③ 책잔치 참여자 확대 책잔치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단체·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동구 등 타 지자체의 경우처럼 평일에도 책 잔치를 개최함으로써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길 바람.	○ 다양하고 많은 단체·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사 준비 단계부터 학내 포스터 부착, 안내공문 발송 등 소통·공감의 홍보 활동 강화로 참여율 제고에 노력함. ○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 청년실업 연극, 북 뮤지션 공연 등을 마련함.	완 결

□ 세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는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체납 징수실적이 좋지 않음. -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별부서에서 각자 관리하는 체납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함. ○2014년 행자부에서 세무과 내 세외수입 전담조직를 신설하는권고사항이 내려온 이후 현재 전국 지자체의 71%(특별·광역시의 경우 95%)가 이미 전담조직을 만들었으며, 울산의 경우 북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였음. ○따라서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은 전국적인 추세로 우리구도 이행되어야할 과제이므로, 조직담당부서와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추진중**

□ 민원지적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선 및 야간민원실 운영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설치된 장소마다 운영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현재 야간민원실 운영의 경우 이용자가 많은 데 이에 따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주기 바람	○현재 금융기관 24시 코너와 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음. ○민원편의를 위하여 야간 민원실 운영은 각 구군에서 요일별로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완 결**

□ 복지지원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 검토** -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장애인,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 자립해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지원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을 위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주거복지제도 및 신설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거 공간이 없는 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긴급주거비 또는 울산광역시 위기가정 긴급주거비를 즉시 지원하여 최장 3개월 동안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한 후 『기초주거급여』, 『긴급매입임대주택 지원제도』 및 '17. 5. 18.부터 시행된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제도』등을 이용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 마련이 가능함. ○또한, 주거 취약계층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이웃돕기를 통한 임대보증금 지원, 복지대상자 책정을 통한 입주 자격 부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토록 하겠음.	완 결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에 실무협의체, 분과회의 등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람.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는 7개 실무분과 분야별 검토 후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함. ○실무분과에서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분과 사업 및 공동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계층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지역 참전기념비, 충혼탑 등 이전** - 지역에 있는 참전기념비, 충혼탑 등이 흩어져 있어 기념비 등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음. 공공장소 등 한 곳에 모아 지역주민들도 그 역사적 의의를 배우고 기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국가유공자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시설로 박상진의사 생가 및 동상, 6.25참전유공자 선양비, 농소6.25전몰군경 충혼비 등 4개의 시설과 4·19 정임석 열사 추모비가 있음 ○농소6.25전몰군경충혼비는 1991년 유족회 소유부지에 건립되어 있으며, 순직하신 163위의 위패를 인근 호봉사에 모시고 있으며, 6.25참전유공자 선양비는 보훈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5년 건립하였음. ○그리고, 4·19정임석열사 추모비는 열사묘소에 후손들의 의견으로 2001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음. ○또한, 박상진의사 생가는 LH공사에서 조성중인 송정지구 역사공원에 위치하는 시 지정문화재로 이전이 불가능하며, 항일 독립을 테마로 하는 송정역사공원부지에 성격이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심의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북구 신천동 일원에 조성 계획중인 신천공원 내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생태복원 중심의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현충시설 이전이 어렵게 되었음. ○아울러, 기념비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기에 앞서 보훈단체 등 유족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나, 사전 접촉결과 일부단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향후,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이전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공공장소(공원 등)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④ 자원봉사 추진 활성화** - 자원봉사 홈타운을 통해 지역사회를 소통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책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동지역보장협의체와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원봉사동아리,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공모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자원봉사홈타운은 공동주택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재 20개소를 지정·운영 중임. '15년 이후 부터는 사전 신청 후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지정토록 계획이 변경되어 신규 지정이 미뤄져 왔고, 향후 추가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아울러, 지정된 자원봉사홈타운의 주민 참여 자원봉사활동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역할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16년에는 14개 단체에 15,000천원을 기 지원한 바 있음. 하지만, 30개 이상의 단체가 공모를 신청하고 해마다 사업별 완성도가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 향후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등 유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유사 사업 신청도 적극 참여 안내하여 보다 많은 단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결

□ 사회복지과

구 분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 보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진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2016. 11월 수립한 사회복지시설 내진성능평가계획에 의거 2017년부터 시설 우선순위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내진보강 예정임	**완 결**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개선 검토** ○일반 경로당의 시설개선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경우 시설 개선이 누락되고 있음. 공동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개선은 2017. 6. 29일자 조례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음	**완 결**
	②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지속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용자에서 제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됨.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돌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바람.	○2016.12.1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변경에 따른 실태조사 완료함 ○조사대상아동 4명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2명, 교회방과후이용 1명,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시설 이용신청 안내 하였음	**완 결**

구 분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검토** ○ 고령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노인 정책의 문제가 일반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지역의 경로당시설 건립에 머물지 말고 복지관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2016. 3월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및 2016. 6월 "사회복지시설 건립 종합 계획", 2017. 9월 "노인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종합적,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제2노인복지관,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2020년 준공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음.	**완 결**
	④ 시간제 어린이집의 확대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2016년도 사회복지법인 매곡 어린이집 1개소 신설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 파악하여 지역별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결**

□ 창조경제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달천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 달천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식당이나 주차시설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달천농공단지 내의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 달천농공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건축물 노후화로 현 건물에 증축을 통한 시설확충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부지(현 부지 신축 포함) 확보 문제, 예산 확보 문제 등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주차시설은 2015년도에도 공영주차장(44면) 및 개구리주차장(69면)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사내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작업장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주차시설 문제는 농공단지 내 근로자지원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사내 주차장 활용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음 ○ 공단식당의 경우 기업체별 식사 시간대를 달리하여 현재는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 활성화**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 시기를 맞아 재취업, 교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예년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예산 증액 및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퇴직자들의 인생 후반기 재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 22백만원을 확보하여 인생이모작교실을 분기 1회 운영하여 총3회 실시하였으며, 귀농귀촌교육 1회, 사회적기업경제교육 2회, 중장년 생애 설계프로그램 3회 실시하여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 추진을 4개 과정, 9회 실시하였음. ○4분기 인생 이모작 교실 운영은 11월 중에 운영할 예정임.	**완 결**
	③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교육의 확대 ○청소년들에게 근로기준법 교육은 가장 기본 되는 교육임에도 아직까지 많이 알지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청소년 인권교육은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요조사 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방학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5회 121명을 교육하였음. 또한,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수강생 35명을 교육하였음. ○지난 7월 울산마이스터고와 산업실습생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학교 전담 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실습생들의 노동인권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 ○수능 이후 관내 학교,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④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평가 철저** ○2015년, 2016년에 걸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투입이 되어 왔으며,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문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부서에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업체의 매출액과 매출 증가율, 근로자 수 변동사항,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만족도 등 이용실태 조사"를 2017. 6. 12.부터 7. 14.까지 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 79개사에 대하여 실시하여 이 중 57개사가 응답함. ○조사결과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 악화와 조선업 위기로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매출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금의 주 사용내역의 조사결과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가 주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였으며, 자재구입비(23개사, 40.3%), 기업운영비(20개사, 35.1%), 인건비(14개사, 24.6%) 순으로 사용 ○근로자 채용에 대한 계획은 기업별·주력산업별로 상이하나 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들의 매출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43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딛고 매출신장 및 신규고용을 창출하는데 우리 구 경영안정자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관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향후 계속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완 결**

□ 농수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직거래 장터 운영 관리 개선** -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라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나, 편백산림욕장, 화동못에 열리는 직거래장터의 경우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마트에 설치된 장터의 경우 조기에 제품이 품절되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사례가 있어 유지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	○편백산림욕장, 화동못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주말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중임.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전 8시경 제품을 진열한 후, 운영자가 재고를 수시 파악하여 상품 재입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농소농협 직매장의 경우 매장 내 CCTV로 모니터링하여 농가 스스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음. 제품 조기 품절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완 결**
	② 봄꽃전시회 운영 개선 - 농촌 화훼 마을의 소득증대와 우수한 화훼작목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봄꽃전시회가 쇠부리 축제와 같이 운영하다보니 장점도 있지만 특화된 축제로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전시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여 봄꽃전시회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바람.	○쇠부리 축제와의 별도 운영에 대해 봄꽃전시추진위원회와 개최시기, 장소, 전시기간 연장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협의하여 '17년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18년 행사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봄꽃전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친환경급식센터의 운영 내실화** - 친환경급식센터가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단순한 유통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체험이나 교육을 활성화 하고,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바람	○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급식재료 현지실사를 통한 품목 등록, 식재료 검품·검수, 공급가격 결정, 친환경생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을 통하여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을 확대 실시하였음. ○ 생산 농가의 안정된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학교를 통해 연간 공급물량을 파악하여 농가와 계약 재배를 추진하였음.	**완 결**

□ 환경위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홍보 철저** - 건축용 자재 석면 슬레이트가 교체되지 않고 지역에 많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대한 많은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홈페이지 게시, 주민만남의 날 홍보, 건축물대장 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대상 신청 안내문 발송(603개소)으로 홍보 강화	**완 결**
	② 야생동물 피해예방 적극 노력 -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렵활동기간 연장, 각종 안전장치를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연장 - 16년 : 7월~11월 - 17년 : 7월~12월(1개월 연장) ○방지단 지원사항 확대 - 탄환 추가지원, 야간 피아식별조끼 및 방지단 활동기간 수렵보험 가입비 지원 등	**완 결**

□ 환경미화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장기 방치된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 천곡동 525-1번지에 방치된 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천곡동 525-1번지 일원의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처리 완료 하였음.	**완 결**
건의사항	**①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점검** - 자원의 나눔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사람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 자원의 재활용, 경제개념의 형성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접수시 신경을 써주기 바람	○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문화 실천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클린환경 나눔장터의 취지에 맞게 나눔장터 참가 신청 접수시, 신제품판매 행위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	**완 결**

□ 건설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음에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신고센터가 있음을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7. 1. 16. 계약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각종 공사계약, 주민만남의 날,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안내문을 배부토록 요청하였음. 또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건설업 관리 안내문 배부 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여 홍보하도록 요청하였음.	**완 결**
	② 동별 공사 안내 공문 통보 철저 - 동에 통보된 공사안내 공문이 실제 공사 건수에 비해서 매우 적으며, 지역의 공사현황을 동 주민센터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지역의 관심 사업들에 대한 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통보 바람.	○공사 착공 전 관할 주민센터에 공사계획을 통보하여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완 결**
건의사항	**① 각종 재해에 대비한 하천의 종합 정비** - 하천부지에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하천복구 시 안전에 대비하여 정비 바람.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우기 전 하천복구를 완료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폭, 수로의 구조 등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바람.	○소하천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소하천 전반적인 시설 규모 및 기능에 대해 검토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소하천 내 유수지장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하천 순찰을 통해 제거토록 하겠음.	
	② 동천강 교량 설치 건의 - 동천강에 있는 시례잠수교, 제전보, 속심이보는 통행길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폭우 시 통행을 차단해 주민들이 고립되고 불편함을 호소함. 보를 통행길로 이용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교량 설치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현재 제전보 및 속심이보의 통행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17. 8월)을 완료하였으며, '18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착공 할 계획에 있음.	**추진중**
	③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 마련 -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나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복구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예산편성목적에 맞지 않음.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을 수립해 집행해야 할 것임.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은 시설물 단가계약을 통해 도로패임등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과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 민원신고 즉시 보수조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긴급도로정비비는 예산 집행 기준을 재검토(구청장 방침)하여 내실 있게 집행하고 있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④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 - 디자인 거리 조성시 타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봉사거리 주변 사업들(화봉공원주차장, 화봉시장 공사, 공원재정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추진해 주길 바람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시행 전 관련부서에 주변사업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음.	**추진중**
	⑤ 기타 건의사항 - 천곡마을회관~하늘땅유치원까지 도로개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천곡본동 일원 도로개설은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도시개설공사 시행 시 설치예정임. (2017년~2019년)	**추진중**
	-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까지 도로 확장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까지 도로확장은 약 2,000백만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농소1동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호수지구에서 국도7호선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2030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음.	**완 결**
	- 태풍 피해에 따른 이화천 보행데크의 조속한 복구	○이화천에 설치된 보행데크는 정비완료 하였음. ('17. 4.)	**완 결**
	- 매곡도서관 준공에 맞춰 월드메르디앙에서 매곡도서관 연결 다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매곡천 인도교의 설치는 특별교부세 확보('17. 3.)하여, '18.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시공 중에 있음.	**추진중**

□ 안전정보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자율방재단 활성화** -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가장 우선적으로 연락되고 활동하여야 하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나 임무 등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자율방재단의 교육 등을 통해 역할이나 임무 등을 숙지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5. 16. 재난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방재단의 역할 등을 주지시켰으며 매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완 결**
건의사항	① **재난 유형별 매뉴얼의 재점검** - 재난 유형별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 각종 전달체계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통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반복적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몸에 익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 -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철저히 작성되고, 주민대피로의 확보, 장비, 방호복, 마스크 등을 준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도 노력바람.	- 상반기 재·개정예정이었으나, 주민소개방법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市 매뉴얼 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개정된 매뉴얼을 인쇄할 예정임. - 3월 민방위통대장을 대상으로 주민행동요령을 교육하였고, 6월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주민교육을 통해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8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그간 교육한 것을 토대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을 실시하였음. - 단계별대응이 가능하도록 주민소개 방법의 다양화와 주민소개 주요수단과 보조수단을 나누어 선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상태임.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개정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실행가능한 방사능 및 각종 재난 홍보물 제작·배포** - 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각종 대책이나 대응 매뉴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홍보물이 필요함. - 또한, 홍보물 외에도 주민들이 손쉽게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각종 대응매뉴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어플 제작을 검토하기 바람.	- 방사능방재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책자 및 팸플릿, 리플릿 등 5,000부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고, 각종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도 주민행동요령을 교육하였음. - 울주군의 방사능방재 어플 이용객 및 방문자가 적어 올해 9월에 서비스를 종료하였음. 어플 제작 검토결과 실효성이 매우 낮고, 안전디딤돌 어플을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완 결**

□ 도시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교육 및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서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현장지원센터에서 총괄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주민소통 및 각종 자료 수집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 및 상인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예비주민·상인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역자원발굴을 위해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운영과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음.	**완 결**
	②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북구는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임. 북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시에 건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근 옥동~농소간 도로의 일부 구간 개통,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 등으로 울산 북구와 인근지역과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등으로 광역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므로 장래 북구가 울산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신설되는 송정역(가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지역 개발계획과 교통거점시설로서의 장래 송정역 이용수요 및 인근 주변 개발수요, 연계성을 파악하여 송정역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017년 10월에 송정역(가칭) 주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북구의 신도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천곡동 지역 도시계획 입안** ○ 인구의 증가, 개발행위의 증가 등 무분별하게 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빠른 시일 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도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현재 천곡동 일원은 개발행위가 매년 증가하여 난개발의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 구는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자연녹지, 계획·생산관리지역이 그 대상이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 우리 구는 2017년 4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10월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천곡동, 달천동, 대안동 일원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추진중**

□ 공원녹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가로변 화분 관리 방안 검토** - 마을 가로변에 환경정비나 주차방지용 목적으로 큰 화분을 배치해 놓고 있으나 설치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의 기능도 저해하고 있음. 화분 관리방안을 모색하거나 필요 없는 곳의 화분은 철거를 검토 바람.	○주차 및 무단쓰레기 방지를 위해 동별 자체적으로 설치한 화분에 대하여 초화식재 후 관수작업 등 관리철저 공문발송(2017. 1. 9)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중인 상방사거리 등 6개구간 500개 화분은 3월, 10월 초화를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완 결**
	② 등산로 주변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주요 등산로 주변에 각종 사업을 실시한 후,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고 훼손되어 비가 오면 절개지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시설물(운동기구, 팔각정자 등)이 방치되어 유지관리가 필요함.	○주요 등산로 일원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하여 진창구간 정비(0.5km), 목재 휀스 교체(10경간), 편의시설(정자2, 벤치6) 도색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주1회 이상)을 실시하여 등산로변 시설물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음.	**완 결**
건의사항	**① 국화전시회 개선 방안 모색** - 타 구군에서도 각종 초화류 식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국화전시회만의 차별화된 내용이 필요. 새로운 초화류 식재를 통해 북구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전시회 기간중 타부서 행사(2017년 재난대응 안전훈련 등) 연계와, 억새를 활용한 다채로운 작품전시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농소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 안내 철저** - 농소근린공원내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광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市 녹지공원과, 市 농축산과에 농소근린공원 관련 주민설명회 협조 요청하였음.(2016. 12. 1.) ○또한 수성마을 주민 구청장면담(2017. 2. 20.)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부지 구청장 현장방문(2017. 3. 6.)을 하였으며, 市 녹지공원과에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재차 협조요청하였음.(2017. 3. 8.)	완 결
	③ 산림지역 관리 철저 - 올해 태풍 차바 강습시 벌채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산림 벌채목 등의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산림지역에 일어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 최대한 수집·파쇄처리하고, 부득이 훈증 처리 시 계곡부 등 유실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겠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단, 산불감시원 등의 인력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발견 시 즉시 원상복구 및 고발(불법산지전용 사전송치 2건) 등 행정조치하였음.	완 결
	④ 산하지구 주변 등산로 정비 요청 - 산하지구가 완공되지 못해 주민쉼터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하지구 주변 등산로 등 정비 가능한 지역을 주민쉼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신규 등산로 개설은 산주동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므로, 기존 등산로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노면정비 200m, 침목계단 20EA, 풀베기 등)실시하였음.	완 결

□ 교통행정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조정 적극 노력** - 우리 구는 도시주거지역 신설, 인구증가, 주요도로 및 간선 도로 신설등으로 대중교통 증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음. 현재 울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선조정 용역에 우리구의 현황이 적극 검토되어 노선조정(환승 포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용역」 시 북구 지역 대규모 공동주택입주 시기에 맞추어 노선개편 요청 - 신천·매곡·중산지구 등하교 시간대 지선버스 증차 건의	**완 결**
	• **등하굣길 교통안전사업 확대 방안 검토** -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보행안전지도사업의 경우,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확대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을 검토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에서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한 16개 초등학교에 51명을 배정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7년 보행안전지도사업은 양정초등학교 1학년생 16명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지도사 9명이 참여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홍보를 통해 확대추진할 예정	**완 결**
	• **기타** - 신답교 부근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	- 2016. 11월 건설과에서 시행한 "신답교 일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추진완료로 투광기 설치 불필요	**완 결**
	- 양정힐스테이트 ~ 양정초교 구간 등하교 안전 대책 강구	- '17. 4. 21. 양정초교 ~ 양정힐스테이트 1차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 '17. 4. 20. ~ '17. 8. 10. 양정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 동부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협의와 자문을 실시하여 보행로 도막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완 결**

□ 건축주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 북구 관내에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허가 뒤 철저한 관리·단속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	○건축사대행 사용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단속강화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상태 유지	**완 결**
건의사항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입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공고를 내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사전에 인허가나 공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바람.	○2016.5.19. 울산광역시에서는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설립인가 전 조합원 모집과정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구도 이 지침에 따라 설립인가 전 주택조합 추진주체에 대한 광고물·홍보관 및 토지확보율 등에 관한 지도 업무를 하고 있음.	**완 결**
	② 공동주택내 경로당 지원 검토 -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로당의 유지보수 지원 사례는 없음.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대하여 유지보수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최근 10년간 공동주택 경로당 보수공사에 지원된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은 총 24개 아파트에 137백만원 가량이 지원된 바 있으며,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노후경로당 보수사업을 지원할 경우 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 사례가 늘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완 결**
	③ 내진설계 반영여부 등 확인 방안 강구 - 내진설계의무대상 건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내진설계여부 및 수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중앙부처 건의를 바람.	○내진능력을 공개토록하는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1.19. 공포, 2017.1.20.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상 내진성능을 표시토록 시행 중에 있음.	**완 결**

□ 보건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재활프로그램운영시설 확충** ○장애인재활 훈련을 필요로 하는 대기 수요가 많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각종 종합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이 계획될 때 재활훈련시설도 같이 검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지역사회 유관기관 6개소(울산북구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울산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사회복지과, 울산시티e병원, 세민병원)와 협약 체결하였으며, 천곡문화센터 및 인애아동발달센터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재활사업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장애아동 대상 재활프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찾아가는 아동 재활운동교실, 장애가족 나들이 체험 등을 개발하여 운영중임.	**완 결**
	② 요양병원 관리 철저 ○요양병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요양병원 관리하는 체계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현재 관내 요양병원은 6개소로 시·구·군 합동 단속 1회, 상·하반기 의료업소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과 선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임.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로 사업을 종료시키기 보다 매년 시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시설 및 의료급여, 생계급여수급자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162명을 대상으로 생리대 3개월분 지급 완료하였으며, ○9월 28일 식약처에[서 생리대 유해물질 관련 1차 조사결과, 시중 유통중인 생리대는 인체 유해물질 10종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타당성 인정함. ○사업 대상자 192명 중 생리대 반품 대상자 50명에게 생리대 지급 재개함. ※ 2018년 부터 생리대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업무 전환되어 추진.	**완 결**

□ 의회사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경주시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경주시 의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쇠부리 축제시 경주시 방문이후 교류한 실적이 없으므로 정기적 교류가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바람	○경주시의회와 협의결과 2017년 하반기에 신라문화제(10.12.~10.15.), 2017.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10.31.~11.3.),경주농축수산물 대축제(11월중)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중 2017.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기간 중 경주시의회를 방문하고 세계총회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주시의회와 협의하였음. 또한 정기적 교류 외 공동관심사항 협력을 위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제5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7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기간 :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 11. 21. ~ 2017. 11. 29.〕

라.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정 복 금
○ 부 의 장 : 강 진 희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김용종, 황영지
○ 사무직원 : 정 은 희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고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정호동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총무과장	박경란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도시과장	정갑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보건소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고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전 동	농소1동장	김 현 동		
		농소2동장	허 사 영		
		농소3동장	김 도 원		
		강동동장	최 해 관		
		효문동장	안 희 수		
		송정동장	김 정 열		
		양정동장	서 준 영		
		염포동장	이 태 희		

o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 11. 21. ~ 2017. 11. 29., 9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17. 11. 21.(화)	10:00	소회의실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017. 11. 22.(수)	10:00	〃	○ 행정지원국 •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 농소2동·강동동 ·송정동·염포동) • 관광해양개발과 • 도서관과	
2017. 11. 23.(목)	10:00	〃	○ 행정지원국 • 총 무 과 • 문화체육과 • 세 무 과 • 민원지적과	
2017. 11. 24.(금)	10:00	〃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2017. 11. 25.(토)		휴 회		
2017. 11. 26.(일)		휴 회		
2017. 11. 27.(월)	10:00	소회의실	○ 복지경제국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7. 11. 28.(화)	10:00	〃	○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안전정보과 • 도 시 과	
2017. 11. 29.(수)	10:00	〃	○ 건설도시국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74	26	27	147	142	98	27	7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 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기본 현황(기구, 정원·현원, 분장사무현황) : 실·국·소, 과·동별 작성
  -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16. 10. 1. ~ 2017.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동주민센터 작성은 연초 구청장 동순시 업무보고 서식 적의 조정 작성
- 감사범위 : 2016. 10. 1. ~ 2017.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7. 9. 30. 현재

○ 작성요령 : 「붙임 3」 참조

○ 제출기한 : 2017. 11. 6.(월)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일괄 실시 - 34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2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행정지원국장

○ 선서문 : 「별첨 4」 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운영 총괄 : 전문위원 김용종, 황영지

○ 감사장 설치 : 전문위원(6급) 황영지, 전직원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5」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전문위원(6급) 황영지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속기사 엄현주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 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8. 동주민센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비 고
계	4개동	4개동	
농소1동		○	
농소2동	○		
농소3동		○	
강동동	○		
효문동		○	
송정동	○		
양정동		○	
염포동	○		

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구건수	비 고
합 계		474	
공 통 사 항		26	
기 획 홍 보 실		27	
행정지원국	소 계	147	
	총 무 과	29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42	
	문화체육과	31	
	관광해양개발과	9	
	도 서 관 과	12	
	세 무 과	11	
	민원지적과	13	
복지경제국	소 계	142	
	복지지원과	12	
	사회복지과	40	
	창조경제과	16	
	농 수 산 과	29	
	환경위생과	22	
	환경미화과	23	
건설도시국	소 계	98	
	건 설 과	25	
	안전정보과	17	
	도 시 과	14	
	공원녹지과	17	
	교통행정과	12	
	건축주택과	13	
보 건 소		27	
의 회 사 무 과		7	

【전부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공정률</th><th>시공업체</th><th>예 산
확보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종류</th><th>용역비</th><th>착수일자</th><th>완료일자</th><th>용역결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2017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6.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해당동</th><th>통보일자</th><th>공사명</th><th>공사개요</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통사항]	14. 지방보조금(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16. 10. 1. ~ 2017.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환수일	사업명	환수대상		환수사유	금액	비고
		성명 (업체,기관,단체명)	주소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비고
						일자	내역	비용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 기간	사역 목적	단가 (원)	채용 방법	비고
				○구 ○○동					

- 작성기간 : 2016. 10. 1. ~ 2017. 9. 30.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	목적	비고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23. 국가·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 기획홍보실 개별사항'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자료 중 당선(채택)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24.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
<tr><th>위원회명</th><th>개최일시</th><th>주요안건</th><th>심사방법</th><th>심사결과</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5.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사 업 명</th><th>개최일시</th><th>장 소</th><th>예산액
/집행액</th><th>주요내용
(요약)</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6.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인쇄 및 온라인 홍보물 모두 포함, ※ 홍보물 별도 제출)
<table>
<tr><th>평가년도</th><th>사 업 명</th><th>홍보주제</th><th>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7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7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행정지원국	총무과			:												
		…			: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															
	…	…															
의회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7.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7.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홍보실</td><td>
1.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현황, 공약이행율, 향후계획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3.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 운영 실적과 내용 및 구정반영여부 (최근 3년간)
4.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5. 구민창안제도 운영 실적
6.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7. 9. 30. 현재)
<table>
<tr><th>구 분</th><th>계</th><th>법령</th><th>조례</th><th>기타 규정</th></tr>
<tr><td>설치근거별</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계</th><th>심의</th><th>의결</th><th>자문</th><th>협의</th></tr>
<tr><td>성격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② 위원회 위원 현황
<table>
<tr><th rowspan="3">위원회명</th><th rowspan="3">위원장</th><th colspan="6">위 원 수</th><th rowspan="3">임기</th></tr>
<tr><th rowspan="2">계</th><th rowspan="2">남</th><th rowspan="2">여</th><th rowspan="2">당연직
임명직</th><th colspan="3">위 촉 직</th></tr>
<tr><th>공무원</th><th>시·구의원</th><th>민간위원
(시민단체)</th></tr>
<tr><td>총계</td><td>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td><td></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퇴직공무원 참여 현황
③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
<tr><th rowspan="2">위원회명</th><th rowspan="2">회의주기</th><th rowspan="2">개최횟수
(서면)</th><th rowspan="2">회의록</th><th colspan="3">예산집행내역</th></tr>
<tr><th>예산액
(천원)</th><th>인원
(명)</th><th>집행액
(천원)</th></tr>
<tr><td>총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
④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위원회명</th><th>설치일자</th><th>설치근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집행내역
<table>
<tr><th rowspan="2">소관부서</th><th rowspan="2">위원회명</th><th colspan="4">집행내역</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시</th><th>장소</th><th>참석인원</th><th>소요금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홍보실	7.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성과, 워크숍 개최 현황, 예산집행액, 워크숍 내용 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2016년, 2017년)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7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황 및 실적(일정, 교육대상, 주제, 참석인원)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현황, 회의록, 소규모 사업 및 정책사업 제안 주민 의견 수렴 자료 - 연구회 연구 현황, 회의록 및 연구실적 10. 주민참여예산제 2017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 개최 현황, 회의록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승진점수 가산,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3.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4.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5.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 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16.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 17.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18.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9.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0.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 21. 구정성과, 구정홍보 영상물 예산집행 내역 (※ 영상물 별도 제출) 22. 규제개혁 사업 추진 현황 23. 구청장 공약 변경사항(변경 전, 후 발췌 작성) 24. 국민신문고 접수현황, 처리절차, 수상현황 등 25. 2027 용역 관련 향후 활용방안 26. 북구 출범 20주년 관련 행사 현황(기념식, 토론회 등) 27. 북구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서(정부 제출한 보고서 등)	

(행정지원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
1.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사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시설 공사 현황 및 결산 자료
3.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
4.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직 직원현황과 급여 지급내역
(기준단가, 성과금,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현황)
6.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 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 승진자 현황
(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 비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2017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6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5년도(9.30기준)</th></tr>
<tr><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부서별, 월별 현황(2016년, 2017년)
8. 5급 공무원 전보내역
<table>
<tr><th>대상자</th><th>부서명</th><th>근무기간</th><th>비 고</th></tr>
<tr><td rowspan="2"></td><td></td><td></td><td></td></tr>
<tr><td></td><td>~ 현재</td><td></td></tr>
</table>
9.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직급</th><th>임용약정
기간</th><th>업무</th><th>채용방법</th><th>월평균급여</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10. 인사관련 민원 또는 직원고충 처리현황(건수, 처리결과)
※ 건수 : 주요내용별 건수
11.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6년, 2017년)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
12. 공개입찰 계약 현황 -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table>
<tr><th>발주부서</th><th>계약일자</th><th>건명</th><th>사업량(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입찰참여업체수</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3. 관급공사 계약 현황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4. 수의계약 현황 -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부서명,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15.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16.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7.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7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18.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19.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지목</th><th>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건물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건축면적(㎡)</th><th>건축연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20.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대회의실 대여 현황(대여 단체, 행사명 등)
21. 구청사 개보수 내역
<table>
<tr><th>사업명</th><th>사업기간</th><th>사업내역</th><th>사업비</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2.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23.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6년, 2017년 월별 비교)
24. 중산행복샘 운영현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25. 최근 3년간 한마음 연수 현황(무기계약직, 소수직렬 참가율 등), 심사실적 및 구정 반영 여부
26. 수의계약 구별 업체 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단위 : 건)
<table>
<tr><th>구 분</th><th>물 품</th><th>공 사</th><th>용 역</th></tr>
<tr><td>계</td><td></td><td></td><td></td></tr>
<tr><td>북 구</td><td></td><td></td><td></td></tr>
<tr><td>중 구</td><td></td><td></td><td></td></tr>
<tr><td>남 구</td><td></td><td></td><td></td></tr>
<tr><td>동 구</td><td></td><td></td><td></td></tr>
<tr><td>울 주 군</td><td></td><td></td><td></td></tr>
<tr><td>울 산 외</td><td></td><td></td><td></td></tr>
</table>
27. 제한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와 사유
28. 2016~2017년도 비서실 직원 민원 처리 현황, 업무 분장 현황
29. 동 주민센터 내 카페 시설 계약 현황(계약방법 등)</td><td></td></tr>
</table>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7. 9. 30. 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7. 9. 30. 기준)

구 분		지방공무원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										
	:										
의회사무과											
보 건 소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7.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 분		업 무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180일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국	총무과	:												
		:												
		:												
	자치행정과													
	:													
:	: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td><td>
1. 주민참여 추진 현황
2. 주민참여학교 운영 실적
3.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 상황
4.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추천기관, 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 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자부담 포함)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구청장 (연초)동순회방문 주민건의내용 처리 현황
7.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상황
8.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9.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실적, 향후계획
10.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2017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요약분),
예산 포함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2.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실적, 식전공연 추진내용 및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13.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14. 제3대학 졸업 후 활동실적
15.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 현황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16.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7.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18. 방범대 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정산서 19. 생활공감모니터 운영 현황 20. 창의놀이터 운영 실적 21.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실적 (접수 및 선정, 진행현황, 공동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22.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 해외연수 관련 실적, 정산, 사진 등 23. 구청장 공동주택 등 주민간담회 주민건의내용 및 처리현황 24. 통장 문화탐방 운영 실적 25.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26. 각 동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현황(2016년, 2017년 월별 비교) 27. 지역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정산내용, 활동일지 28.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 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강사계약기간(최초계약일 표기), 보조금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 현황(많은 경우 주요한 부분만), 잔액 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 표기 - 동별 취합) 29.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성명, 성별, 직업, 연령, 주소) 및 위원의 타 단체 가입 현황, 여성위원 현황, 사무국장 현황, 주민자치위원장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td><td>30.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 내역(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제목(안건)
※ 2017. 1월~9월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출
31.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32.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체계 개선실적
33. 소통과 공감의 힐링문화 조성(양정동) 실적
34. 농소3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
35. 주민자치위원회내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록
※ 회의록 제출은 2017. 1월~9월 분
36.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사업실적
37.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
38.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39. 2017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40.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table>
<tr><th rowspan="2">설립일</th><th rowspan="2">기업명</th><th rowspan="2">주생산품</th><th colspan="3">투 자 비</th><th rowspan="2">종사자수</th><th rowspan="2">월평균매출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1. 협동조합 등록 현황
42. 협동조합 생산제품 우선 구매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문화체육과</td><td>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향후 사업 운영 계획
(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외부 감사 받은 결과 보고서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 현황
4. 문화쉼터 몽돌 운영 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5.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 조 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농소3동, 강동동, 양정동 물놀이장 운영 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7.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8.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9.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0. 운동장별 대여 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1.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동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정산결과, 후원금(물품) 현황
12. 2016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3. 체육회 관련
- 운영비 보조금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모든 행사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각종 수당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15.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 16.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 운용 현황 17. 문화예술회관·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가스·전기·수도)월별 사용량, 요금 및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 (2016년, 2017년 월별 비교) 18.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공사 개요 및 예산 내역, 정산결과 19.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프로그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20. 투게더콘서트 운영 현황(당초 계획서 및 진행 결과), 예산액, 집행내역(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21.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 22.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동아리 현황과 추진사업 23. 체육회 조직도, 조직현황, 임원, 이사회, 대의원 현황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활동경력) 24. 쇠부리 복원사업 관련 실적 및 정산 25. 생활체육시설 현황, 운영주체, 수익금 26. 장애인 실업팀 운영실적 27.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실적 28.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적, 관련 공문(최근 3년간) 29. 서머페스티벌 실적 및 정산 30. 염포예술창작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31. 쇠부리체육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관광해양 개발과	1. 관광주간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맞춤 관광 책자 제작 및 홍보 실적 3. 관광 특산품 상품개발 용역 실적 4.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실적 5.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6. 강동관광단지 조성 지원 TF팀 구성 현황 7. 추억의 학교 운영 실적 8.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 상황 9.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 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삭제)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울산 북구의 책 사업 추진성과 - 도서 대출 현황 - 독서 감상문 참여 현황 및 독서릴레이 참여현황 - 주민 홍보 현황 -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전략 6.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7. 7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6년, 2017년 월별 비교) 8.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사업내역 등) 9. 자원봉사자 현황, 활동내역 10. 자원봉사자(도서관 친구들 포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지원 현황 11. 공중전화부스 활용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실적 12. 주민·자원봉사자 교육 현황 및 내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세 무 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세목별 부과, 징수, 예산편성액)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 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단위:천원)

체 납 자		결손내역			결손처분 일 자	결손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결손액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선진지 견학 추진상황
9. 주민세 종업원분 기업별 현황

(단위:천원)

자본금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계					
10억이하					
50억이하					
100억이하					
100억초과					

10.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기업별 현황

(단위:천원)

자본금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계					
10억이하					
50억이하					
100억이하					
100억초과					

11. 기부금품 접수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지적과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6.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8.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 1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2.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13. 최근 3년간 지적 재조사 현황(예산, 필지수 등), 사업 효과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복지지원과</td><td>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세부지출내역(사업별, 사업기간)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체별 구분 작성,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지원월,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5.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
- 국비, 시비129 구분(지원금액 등)
6.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7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2016년~2017년 사업실적
- 총 매출액 및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 자활사례관리 추진현황
7.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8.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
1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직업) 및 활동 현황
11.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
12. 주거급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실적</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복지과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주소, 이용인원, 건물형태, 소유형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6.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근무시간 등 7. 2017년도 양성평등정책 기본시책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8. 북구 양성평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9.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 현황 10.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11.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13.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14. 다문화가족 현황(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예산지원, 지원사업 현황, 중점 추진시책,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15.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복지과</td><td>16.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 내역
17.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상세 내역 및 점검 내용
18.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에 대한 현황
19.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20.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현황
21.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22.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23.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24.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25.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기본 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2016년~2017년)
- 직원 현황(작성일 현재)
<table>
<tr><th>성명</th><th>나이(성별)</th><th>부양가족수</th><th>장애유형</th><th>장애등급</th><th>월 평균임금</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2016년~2017년)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2016년~2017년)
- 자원봉사 현황(2016년~2017년)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2016년~2017년)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2016년~2017년)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 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복지과</td><td>26.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 연도별,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지체</td><td colspan="3">지적장애</td><td colspan="3">정신장애</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2016, 2017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6, 2017년 현재까지 사업 실적 및 정산서
- 2016, 2017년도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27.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28.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29.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30. 노인대학 운영실적
31.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현황
32. 관내 아동학대 사건 현황
33.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
34. 어린이집 관련 민원 현황
35.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
36.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현황, 관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 예방사업 실적
37. 구청내 성희롱 상담 및 접수 건수, 기타 성희롱 관련 실적, 성희롱 예방사업 교육 현황(6급 이상 공무원 참석자 현황)
38. 2자녀・3자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39. 노인건강체육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4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사업 실적</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창조경제과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 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비정규직 관련 지원 사업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상담 및 지원 사업) 6.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7.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8.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9.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10.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11.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1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실적 13.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실적 14. 퇴직자 지원 교육 사업 실적 15.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실적 16.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일시, 지원내용, 수급자, 지원금액)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8.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 현황 10.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 실적 11.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성과, 시장대비 가격 비교 12.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현황 13.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실적 15.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6.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 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17.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18.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19.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0.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21.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22.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농수산과</td><td>23.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 학교별 세부지원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각종 간담회 포함)
24.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
25. 친환경 작목반 현황 및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납품현황
<table><tr><th rowspan="2">농가명</th><th rowspan="2">농가규모</th><th rowspan="2">농산물종류</th><th colspan="2">납품현황</th></tr><tr><th>납품여부</th><th>납품실적</th></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26.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정책 분과 등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현황
27. AI 살균제 계란 파동 관련 피해상황, 추진 실적, 대책
28. 태풍 차바 피해지역 및 복구 현황 및 실적, 미복구 현황 및 사유, 기타 민원 현황
29.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 내역 등</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환경오염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계약 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5년, 2016년, 2017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 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8.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9.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 현황, 사업내용 10.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1.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 결과 보고 - (2015년, 2016년, 2017년 작성) 12.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소재지) 13. 음식문화 개선 추진 실적 -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식단, 위생영업주 교육 등 ※ 모범음식점 포함 14.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 현황 포함) 15.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6.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 최근 3년(2015년 ~ 2017년) -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17.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18.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19.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 실적 2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 21. 송정지구내 분진 등 민원 접수 현황, 처리 결과 22.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현황(2015~2017년) - 건물 현황, 년도별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대책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미화과	1. 기본 현황(2017.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정규직, 비정규직 등)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7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3.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청소차량 현황 및 운행 실적, 청소위탁업체 차량 현황(지난 3년간 간접비용 중 차량수리비 금액과 비율, 차량년식, 차량 수리비, 차량등록증) ※ 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과태료 부과내역 등) 8.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0.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6년~2017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6년~2017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 현황 (2016년~2017년)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16년~2017년)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2.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미화과</td><td>
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5, 2016, 2017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ㅇㅇ년도)
<table>
<tr><th>구 분</th><th>계</th><th>1월</th><th>2월</th><th>…</th><th></th></tr>
<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4. 음식물폐기물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민원 발생내용 등
15.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 정책 실패 이후 추진 현황
16.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
- 위탁 실적 현황(기간, 업체명, 위탁금액)
- 입찰계약서, 입찰조건, 인건비, 소요인력
- 재활용품 선별장 수익 현황
- 재활용품 수거 실적(2015, 2016, 2017년 작성), 처리내역
- 선별장내 구청 자산 목록(구입 시기, 내구연한, 구입비 등)
- 재활용품별 가격 산정단가(폐지, 공병, 플라스틱, 캔 등)
17.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8.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9.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20.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망 관리내역
<table>
<tr><th>동 명</th><th>거점망
관리장소수</th><th>관리단체</th><th>지정일</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1. 공공용 마대 제작 내역 및 사용 내역
22.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손바닥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23. 농소권, 강동 재활용 분리수거 방식 변경(거점 수거⇒내 집 앞 수거)에 따른 운영 및 민원 현황
</td><td></td></tr>
</table>

(건설도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건 설 과</td><td>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th><th>내 용</th><th>처리결과</th><th>완료일자</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불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 현황)
9.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10.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1. 동천강변 내 각종 식재 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생존율
12.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5.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16.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17. 옥동~농소 2구간 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18.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및 저소득층 가사도우미 운영실적
19.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추진실적
20.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
21. 하천부지 현황, 불법 점유 현황 및 관리내역
22.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23. 농소수질개선사업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현황
24.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체납현황 포함)
25.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 현황 및 실적, 미복구 현황 및 사유, 기타 민원 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안전정보과	1.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사회복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 사회복무요원 고충 상담 및 민원 처리 현황 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4.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 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5.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6.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7.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8.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10. 도로 등 현장 작업 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안전 매뉴얼 11.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 ※ 책자 모두 제출 12.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13. 지진 및 관련 대책, 추진사항(대피소 등) 14. 최근 3년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 15. 최근 3년간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출현황 및 예산 절감 대책 현황 16.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교육 실적 및 예산 17.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관련 실적 및 예산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 시 과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 현황, 민원 현황 및 지원 실적 3.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5.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평창아파트 부지) 명의이전 관련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6.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염포양정 도심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8.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등 각종 주민편의사업 추진실적 (2016년~2017년) 9.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현황 10. 도시계획사업지구 사업변경 현황 11. 산업단지 추진상황 12. (가칭)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및 활용방안 13. 지난 2년간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장, 담당주무관, 담당자 등 변경 현황 1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련 추진 현황(변경 포함)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원녹지과	1.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2.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3.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4.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5.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6.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7.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8.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9.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 향후 추진계획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1.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2. 국화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투입 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 현황 13.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포함 14. 명촌, 신천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15. 재선충 방재 관련 인력운영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16.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실적 17.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 현황 및 실적, 미복구 현황 및 사유, 기타 민원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교통행정과</td><td>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 현황
2.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table>
<tr><th>구 분</th><th>건 수</th><th>과태료부과액</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자투리땅 활용 포함) 및 향후계획(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임대사업 분석(수입지출, 저소득노인 참여 여부, 향후 개선 방안)
5.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6.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table>
<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 소재지</th><th>차고지 면적</th><th>용 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table>
<tr><th>단속일자</th><th>단 속
차량대수</th><th>행정처분 실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7.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8.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개선사업 추진실적
9.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10. 과태료 체납 현황, 징수(정리) 실적
1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체납 포함)
12. 철도이설 후 철로 활용방안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6.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7.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7. 9. 30. 현재) 8.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신고현황 및 포상금 내역 (과태료 부과 등) 9.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10. 불법광고물 관리 차량 현황 및 업무처리 과정 11. 동별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향후 대책 12. 지진관련 대책 및 추진상황 13.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건축인허가 관련 자료 (반려 처리 포함)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 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 수 (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 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9.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10. 모자보건사업 현황 및 사업 추진 내역 1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12.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 현황, 대상자 선정 기준 13.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출산 지원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4.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 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시행 이전과 비교 실적, 이용자 홍보 실적, 관리대상자 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5.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6.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17.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18.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19.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20.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21.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2.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 ※ 2017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 포함 23.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24.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6년, 2017년 월별 비교) 25. 금연지도원 현황 및 금연단속 실적 26. 우리마을 치매사랑방 운영실적 27. 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현황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 현황 4. 의원 발의 결의안,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5. 의회 방청 현황 6. 의회 견학 현황 7. 언론 홍보, 보도 현황	

제6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7. 11. 21. ~ 11. 29.(9일간)

4. 감사대상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의회사무과 ○ 보 건 소 ○ 동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정 복 금	강 진 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김 용 종 황 영 지	정 은 희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7. 11. 21.(화)	10:00	소회의실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017. 11. 22.(수)	10:00	〃	○ 행정지원국 •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 농소2동·강동동 ·송정동·염포동) • 관광해양개발과 • 도서관과	
2017. 11. 23.(목)	10:00	〃	○ 행정지원국 • 총 무 과 • 문화체육과 • 세 무 과 • 민원지적과	
2017. 11. 24.(금)	10:00	〃	○ 복지경제국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 복지지원과	
2017. 11. 25.(토)		휴 회		
2017. 11. 26.(일)		휴 회		
2017. 11. 27.(월)	10:00	소회의실	○ 복지경제국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7. 11. 28.(화)	11:00	〃	○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안전정보과 • 도 시 과	
2017. 11. 29.(수)	10:00	〃	○ 건설도시국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③ 감사순서

- ○ 감사 선언(의장)
- ○ 의장 인사
-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동장
-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74	31	
공 통 사 항	26	1	
기 획 홍 보 실	27	1	
행 정 지 원 국	147	8	
동		4	
복 지 경 제 국	142	7	
건 설 도 시 국	98	7	
보 건 소	27	2	
의 회 사 무 과	7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5	15	70
공 통 사 항	1	1	-
기 획 홍 보 실	5	1	4
행 정 지 원 국	28	5	23
복 지 경 제 국	23	3	20
건 설 도 시 국	23	5	18
보 건 소	4	-	4
의 회 사 무 과	1	-	1

6. 감사결과

공 통

시정요구

① 각종 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성별영향분석 평가 지침 변경에 따라 홍보물 및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구청 홈페이지, 실과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살펴보면 여전히 성 역할에 대한 편중된 그림들이 많음. 향후 인쇄물 및 동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사업 추진 시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총괄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철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구는 특별실태조사 및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여 우리 구만이라도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동안 많이 개선되고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시민위원이 되면 사업 자체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

어 그 지역 실정을 모르면 사업 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소규모 사업을 심의하는 동 지역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후 편성된 예산도 지역을 위해 집행되니 책임감도 가지도록 방향 설정하여 주기 바람.

-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도 본인의 정확한 의사와 의지에 따라 시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특히 청소년은 시민위원, 동지역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는 세대이니 "청소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성과물 적극 구정 반영

- 창의정책 연구모임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활성화 되었지만 뚜렷하게 사례들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적이 미비함.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는 발전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결과물이 구정시책에 반영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③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계한 준고속열차(ITX) 노선 신설 추진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구간을 연계하는 준고속열차(ITX) 운행을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주기 바람.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신설되는 송정역(가칭) 일대를 울산 동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와 전통,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칭 송정역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④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활용 추진

- 타 자치단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도 점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하여 향후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물품 수의계약 운영 철저

-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실적이 저조하며 동일한 업체와의 집중 계약이 많으니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내 업체를 분산하여 계약바람.

② 직원 한마음 연수 내실있는 운영

-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하는 한마음 연수가 미국, 유럽 등 주요 관광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후 결과도 시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조편성, 연수국가, 연수내용 등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독일 자동차 박람회 등 우리 구 현안 해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내실있는 국내, 국제교류 협력 추진

- 우리 구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주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문화 사업과 행정 업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교류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없음.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

- 저출산문제가 사회적 문제인만큼 출산장려를 위해서 자유로운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음. 이에 따른 결원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한 인원 보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③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 최근 리모델링한 구청 광장 상설무대를 각종 행사시 적극 활용하여 광장 및 주차장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공공청사 승강기에 지진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법정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청사내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정기 점검으로 소화설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④ 관용차량 운영관리 개선

- 관용차량을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 구청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차량 정비, 운행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체 관용차량 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매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기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들의 장기수강으로 신규회원이 진입하기 어려움이 있음.
- 정원 미달로 폐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중 수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리 수강 신청하여 수강인원을 늘리려 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강생 모집 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강사는 1년마다 공개 채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담은 세칙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 바람.

②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 당부

- 운영비 예산의 집행과 정산 부분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반드시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

- 2014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별다른 운영 성과가 미비하며 지원비 중 인건비가 70% 이상 지출되어 실효성이 거의 없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자치회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② 구민대상 선정 기준 확립

- 구민대상 심사 시 심사위원 보안, 서류외 현장 조사 등 엄격한 공적 검증을 통해 구민대상의 권위 확보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③ 교육경비 사용 내실화

-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유치원의 경우 매년 일괄 지급해서인지 집행 정산서류가 너무 미흡하여 제대로 사업을 시행했는지 의구심이 생김.

- 교육 경비가 적재적소에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④ 사회적 기업 내실있는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분야 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큰 성공 사례가 거의 없음. 마을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시에는 안정적인 매출과 경제성이 있는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지 지역 특산품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연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가족 중심 커뮤니티 및 친환경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무·그물놀이터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공간임. 좀 더 확대하여 주변의 동천강, 순금산 등 자연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 학습의 장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동 체육대회 내실있는 운영

- 경비사용에 있어 뒤풀이 비용, 식대 등 과다 지출한 부분이 없도록 사업별로 내실있게 진행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기 바람.
- 올해 이사회에서 동 체육대회 주최를 북구체육회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계속적으로 동에서 진행해 오던 것이니만큼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기박산성 의병제 효율적 개최

- 추모식과 부대행사,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본 취지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례와 공연을 과감하게 분리하고, 또한 학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지역 문화재의 홍보물 제작 및 지속적인 관리

- 중산동 고분, 관문성, 어물동마래여래좌상 등 지역문화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북구를 안내하는 책자의 내용도 미흡함. 지역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내판 설치, 홍보물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활성화

- 지역가수들, 문화예술회관 동아리, 각 동의 문화예술활동팀 등 다양한 예술단체에 야외공연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기 바람.

④ 달천철장 주변 정비사업 조속한 추진

- 달천철장 정비사업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철기문화의 원류인 시 지정문화재 달천철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비사업인 만큼 향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람.

관광해양개발

건의사항

① 강동관광단지 개발 사업 지속적 추진

- 강동관광단지를 8개 지구로 나누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관광진흥법 문제로 강동관광단지 사업 전체를 무산 위기로 내몰고 있음. 시와 중앙기관 등의 원활한 협의로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개발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점진적 실행

- 관광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관광 자원 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이것을 토대로 산업, 해안, 해양관광부분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자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에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책잔치 참여자 확대 방안 검토

- 올해 책잔치를 10월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해 운영하여 시기적으로도 좋았으며, 기념식 구연동화, 북 콘서트, 다양한 주제의 체험부스 등 내실있게 운영된 것 같음.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참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자원봉사자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 모색

-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높은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대표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세 무 과

건의사항

① 세외수입 징수방안 적극 모색

-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데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불부합토지 개선

- 쇠부리체육센터 인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민원이 많은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②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현재 구 무인민원발급기 15대 설치 운영으로 민원발급이 신속해지고 편의성이 향상되었음.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강동지역에 행정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 통합조사와 나눔문화 활성화로 소외계층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정임석 열사 선양과 예우 강화

- 정임석 열사 추모행사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인의 뜻과 넋을 기리는 선양사업 및 묘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정임석 열사의 묘역에 대한 부지 매입 등 선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③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기회 확대

- 인적·정보 교류 등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예산 확보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향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기 바람.

④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활성화 제고

-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체험·홍보 부스의 다양화 등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었음. 남녀노소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나눔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거듭 발전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 운영 개선

- 청소년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 위탁하지 말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 전수 조사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비, 물품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아동 양육 여건이 조성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 개선

-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이 많음.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의 지속적인 기능보강 및 개보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③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 철저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찾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음.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기 바람.

④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에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통합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 현재 이원화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주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창조경제과

건의사항

①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 교육 확대

- 최근 청소년들의 근로현장 실습 중 불이익 사례 등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발생함.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현장에서 인권 침해 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철저

-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관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사후 관리 및 컨설팅도 추진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 무등록 전통시장 안전 점검 강화

- 무등록 시장인 경우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하여 화재,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무등록시장이라도 안전 점검 실시와 안전기기 등 보급으로 시장 상인의 생활 안전 도모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선창골못 저수지 환경 정비 만전

- 태양열 집열판, 녹슨 철근, 폐의자 등이 방치되어 있고, 저수지 옆으로 조성된 운동시설과 정자에도 각종 쓰레기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적인 절차대로 환경 정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 개선

-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실정임.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시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기 바람.

② 정자활어직매장 화장실 상시개방 추진

-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층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바람.

③ 로컬푸드 매장 지속적인 관리

- 로컬푸드 매장 운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이용 가능하지만 먹거리가 일부 품절되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주기 바람.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고

- 화암주상절리 화장실 경우처럼 출입구 턱이 너무 높거나 주출입구에 장애물이 있는 등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이 많음. 처음 설치할 때부터 관련부서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점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②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확대

- 3년 동안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낮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전하게 철거 처리하여 주기 바람.

③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 제고

- 동별 그린리더 환경정화활동, 녹색생활실천활동 등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생활쓰레기 수거 철저

-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넣는 경우가 있음.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분리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를 거부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여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청소지휘소 안전점검 등 관리 철저

- 청소행정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한 청소지휘소 시설을 개선하였지만 일부 청소지휘소에서 근무자 작업 배치 후 소등 및 전열 관리가 되지 않으니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②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개선

- 물물교환, 판매를 통한 환경 제고, 경제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나 지금도 전문업체에서 상업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패널티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여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안전한 자전거 타기 정책 추진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상해 보험 지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안전한 자전거 타기 운동에 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며 보호장비 미착용 등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자전거 도로 불법 적치물과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산업로(7번국도) 확장공사 시 통과박스(도로) 설치 건의

- 이화천, 신천천, 약수천 3개 하천 하단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산업로(7번국도) 확장 공사 설계도면을 보면 통과박스가 없음. 도로로 이용 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니 주민들의 이동통로인 통과박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자전거 보관대 정비

- 염포초등학교 앞 자전거 거치대 45대가 집중 설치되어 보행로가 좁아 위험의 요소가 있음. 도시 미관상 어울리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정비하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 창평동 오토밸리로 하부 마을입구 비포장 도로 포장 건의

-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관련 우회 등산로 개설 및 가로수 식재 건의
- 명촌교 다리 위 배수관 낙수로 사고 우려, 배관 추가 연결 및 교량 주변 청소 건의
-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및 소하천심의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건의

안전정보과

시정요구

① 재난대응 태세 확립

- 타 지자체의 이재민관리시스템 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의 재난안전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 지진행동 매뉴얼에는 지진 발생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발생 즉시 대피요령이나 예방 조치에 대한 방법은 없으니 보완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 교육 등 행동 매뉴얼을 숙지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후 시설 개선 지원

-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안전의 공동 관심을 유도하였음. 시설 설치 후 예산 등의 문제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니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옥외대피소 현황 재정비

- 학교 운동장, 공공건물, 광장 등 옥외대피소가 65개 있는데 매산초등학교의 경우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 쌓여 있어 재해 시 매몰의 위험이 있음. 지진대피소 현황을 재조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확대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점검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에 기여하였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안전 점검하도록 대상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도 시 과

건의사항

①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확대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염포, 양정지역에 소금포 역사관, 자동차 테마가로, 통쾌한 시장 등을 조성하여 노후화된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주민, 현대자동차 등 기업체 노사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② 강동산하지구 강동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 추진

- 강동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 인도는 있지만 주변 장애물이 많고 안전휀스는 안전도로가 없어 유명무실함.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저류지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철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시 해당지역의 재산권 행사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각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건의사항

① 산림 방제 및 예찰 활동 강화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은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드론 등을 활용한 예찰 방안을 검토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의 대응방법처럼 피해목을 전부 제거하고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람.

② 오치골 주민쉼터 등 공원 조성 시 의견 수렴 철저

- 양정생활체육공원 일원에 주민쉼터 공간을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처럼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자연 상태 그대로 활용해서 조성하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가 직접 디자인하고 참여하여 특색있는 놀이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 송정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화봉, 연암동 일원 물놀이장 조성 건의
- 천곡동 산 122번지 일원 산림 훼손 및 공장건립을 위하여 부지 조성된 천곡동 산 149-10번지 일원 행정조치 및 복구 건의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등산로와 기존 진입도로 이정표 정비 건의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법규위반 화물자동차 지속적 단속

- 약수초등학교 인근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아직 주거 밀집지역 등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주차하여 민원 발생이 있으니 차고지 주차 홍보 및 지속적 점검으로 선진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

- 우리 구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계속 건설 중에 있고 이미 입주를 시작하여 많은 인구유입이 있음. 이에 따른 교통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대중교통 노선 증설 등 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업 확대 운영

- 현재 양정초등학교 1개소 운영하여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사업 신청 시 알기 쉬운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확대 운영하기 바람.

③ 안전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

- 버스승강장에 태양발전장치가 일몰 일출시간대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간에 조명시설이 꺼져 있음. 지속적인 승강장 시설물 유지 관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④ 기타사항

- 오토밸리로 램프구간 이정표 점검 건의
- 야간시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
- 천곡IC ~우방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 강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건의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동별 빈집 현황 파악 및 조치

- 북구 관내 빈집 때문에 화재 등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많음. 동별 빈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람.

②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

- 최근 호수지구 한양수자인 1, 2차 동별 사용승인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음. 향후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시 면밀히 점검함은 물론, 많은 입주민들을 고려하여 행정적인 절차대로 처리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건축허가 관련 행정은 민원처리기간이 길고 복잡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높지 않음. 건축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편 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행정지도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임대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료가 공동주택별 격차가 크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관계자 교육 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집행부 각종 주요행사 및 위원회의 회기 중 지양

- 의회 회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12월 회기 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행사 및 북구의회 의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가 의회 회기와 겹쳐 의원의 참석에 차질이 있으므로 집행부과 협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일정과 중복을 지양하여 주길 바람.

보 건 소

건의사항

① 금연 환경 조성 철저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하겠으나 아직까지 흡연자들이 베란다나 복도 등에서 흡연하여 공동주택의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대표자 교육과 홍보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금연아파트가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 바람.

-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미흡함.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금연 상담 교실을 운영하여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고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주기 바람.

② 제세동기 사용 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교육은 구청 각종 행사 시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으나, 심장제세동기는 교육 현장에서 쉽게 보고 배우고 실습하기 어려운 실정임. 향후 연습용 기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말 긴급한 사항 발생 시 대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

-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등 최소 배치기준을 살펴 보면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정신보건요원 등 인력이 미충족되고 있음.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④ 여성보건휴가 이용 권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 여성 직원이 많이 근무하는데 실적이 저조함.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 출장, 교육 등으로 여건이 어렵겠지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개선 바람.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① 동별 경로잔치 등의 내실 있는 추진

- 동에서 경로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뷔페를 이용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어르신들이 손수 음식을 갖다 드시는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자생단체 등에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뷔페를 이용하더라도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자리에 갖다드려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으면 함.
- 각종 기념식 등 행사 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지역구 의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인사하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동별 표준화된 매뉴얼 배부

- 회의록, 각종 보고, 행사 진행 등에 따른 순서와 내용이 동마다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배부하여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 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람.

③ 공모사업 문화 행사 등 지속적 지원

- 영화제 행사, 섶다리 축제 등 일부 행사들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지원받아 추진되고 있음. 문화적 가치도 있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화합해 나가는 좋은 행사이니 공모사업 지정 이후에도 축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농이예술단은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 예술단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부진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제7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6. 10. 1. ~ 2017.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47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85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70건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8년 2월 8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제8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85	15	4	11		70	23	47	
공 통		1	1		1					
기획홍보실		5	1		1		4	1	3	
행정지원국	소 계	28	5	3	2		23	1	22	
	총 무 과	6	2		2		4		4	
	자치행정과(동)	7(3)	2	2			5(3)		5(3)	
	문화체육과	5	1	1			4		4	
	관광해양개발과	2					2	1	1	
	도서관과	2					2		2	
	세 무 과	1					1		1	
	민원지적과	2					2		2	
복지경제국	소 계	23	3	1	2		20	9	11	
	복지지원과	4					4	3	1	
	사회복지과	3					3	1	2	
	여성가족과	3	1		1		2	1	1	
	창조경제과	3					3		3	
	환경위생과	4	1	1			3	3		
	환경미화과	3					3		3	
	농수산과	3	1		1		2	1	1	
건설도시국	소 계	23	5		5		18	6	12	
	건설과	4	1		1		3		3	
	안전정보과	4	1		1		3		3	
	도 시 과	3					3	2	1	
	공원녹지과	3					3	2	1	
	교통행정과	5	1		1		4	1	3	
	건축주택과	4	2		2		2	1	1	
보 건 소		4					4	4		
의회사무과		1					1	1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기획홍보실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철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구는 특별실태조사 및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여 우리 구만이라도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하기 바람.	○ 2017. 7월 가이드라인 시달이후, 2017. 8월 기간제근로자 특별실태조사 실시, 2017. 9월 ~ 11월까지 3차에 걸친 기간제 직무분석후, 2017. 12. 1.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함. ○ 2017. 12. 27. 제1차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작성일 현재 제2차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조율중임. ○ 가이드라인대로 2018. 상반기 중 전환대상 기간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동안 많이 개선되고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시민위원이 되면 사업 자체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어 그 지역 실정을 모르면 사업 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소규모 사업을 심의하는 동 지역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후 편성된 예산도 지역을 위해 집행되니 책임감도 가지도록 방향 설정하여 주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의 역할중 하나로 다음연도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것으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10월중 총 3일간에 걸쳐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1일차에는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2일차에는 대상 사업 현장확인, 3일차에는 1, 2일차 사업설명과 현장확인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여 최대한 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또한, 동 지역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 소규모 사업발굴, 선정 등 다양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효율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 담당자 간 업무연계는 물론 주민참예산학교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위원의 역할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성과물 적극 구정 반영** - 창의정책 연구모임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활성화 되었지만 뚜렷하게 사례들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적이 미비함.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는 발전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결과물이 구정시책에 반영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 2017년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은 저출산 대책, 구국도 31호선 활용방안, 하천개선 방안 등을 지정주제로 제시하고 ○ 구국도 31호선 활용방안,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공간정보 정책지도 개발, 호계천 하천경관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우수과제로 선정하였음. ○ '구국도 31호선 활용방안'은 올해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공간정보 정책지도 개발 및 호계천 하천경관 개선사업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하여 신규시책으로 추진중임. ○ 올해 창의정책 연구모임도 구정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지정과제로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추진중
	③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계한 준고속열차(ITX) 노선 신설 추진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구간을 연계하는 준고속열차(ITX) 운행을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주기 바람.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신설되는 송정역(가칭) 일대를 울산 동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와 전통,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칭 송정역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중앙선(청량리~신경주) 복선전철사업 완료 시(2020년 예정), 동해남부선과 직접 연결하는 신설 준고속열차 노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계획 변경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내용 중 준고속열차 운영을 전제로 한 가칭 송정역사 규모 확장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④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활용 추진** - 타 자치단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도 점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하여 향후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빅데이터 활용은 현재 "공통모델 시스템(혜안)(안전정보과)",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융합 정책지도(민원지적과)", "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도서관과)" 등 부서에서 운영중인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 전 부서에 '각종 기본계획 수립 시 빅데이터 활용협조'(기획홍보실-743('18.1.11)호) 공문 발송하였고 ○ 앞으로도 각종 정책수립시 공공데이터 분석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음.	**완 결**

□ 총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물품 수의계약 운영 철저** -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실적이 저조하며 동일한 업체와의 집중 계약이 많으니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내 업체를 분산하여 계약 바람	○ 관내 업체를 파악하여 계약실적을 높이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늘려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직원 한마음 연수 내실 있는 운영 -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하는 한마음 연수가 미국, 유럽 등 주요 관광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후 결과도 시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조편성, 연수국가, 연수내용 등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독일 자동차 박람회 등 우리 구 현안 해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원 이해도 향상과 자동차 관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박람회, 라스베가스 자동차 박람회 등 국제자동차 박람회와 연계하는 등 한마음연수 내실화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내실 있는 국내, 국제교류 협력 추진** - 우리구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주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문화 사업과 행정 업무 등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교류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없음.	○ 2018년 하반기 중 경주시와의 분야별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경주시와의 교류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예정 ※ 실무진 간담회 교류 분야 - 하천관리 - 폐선부지 활용방안 등 ○ 중국 외교갈등, 터키 폭탄테러 등으로 중국, 터키와의 국제교류에 애로가 많은 상황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현재, 중국과의 외교갈등이 완화되고 있어, 우리 구와 중국 비성시간 대표 축제 상호 교류를 추진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비성시 복숭아축제, 우리 구 쇠부리 축제) - 베트남 롱쑤엔시의 경우, 산업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관내 산단협의회와의 간담회 등 산업교류를 확대토록 추진 - 터키의 경우 폭탄 테러로 인해, 여행유의국가(외교부 지정)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터키 지역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교류 추진	
	②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 -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인만큼 출산장려를 위해서 자유로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음. 이에 따른 결원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한 인원 보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사용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없애고 부서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자 직원 충원, 대체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조사를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미연에 방지하여, 2017년에는 휴직자 22명 중 정규직 충원이 21명에 달하였음. ○ 휴직사용 독려를 위한 공문 발송 등 〔총무과-1723(2018.01.15.)〕 앞으로도 지속적인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 최근 리모델링 구청 광장 상설무대를 각종 행사시 적극 활용하여 광장 및 주차장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공공청사 승강기에 지진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법정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청사 내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정기 점검으로 소화설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금년 초에 상설 무대를 리모델링 하였음. 상설 무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광장 및 주차장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승강기 안에서 위험상황 감지시 자동으로 멈추고 가장 가까운 층에서 문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기록관, 전산실, 통신실 등 특정장소는 법정기준에 맞는 청정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음.	추진중
	④ 관용차량 운영관리 개선 - 관용차량을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 구청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차량 정비, 운행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체 관용차량 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공용차량 보험가입, 소수리, 유류비 지출 등은 총무과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음. ○ 공용차량 주행거리, 운행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 1회 이상 공용차량 운전자 및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겠음.	추진중

□ 자치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매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기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들의 장기수강으로 신규회원이 진입하기 어려움이 있음. - 정원 미달로 폐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중 수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리 수강 신청하여 수강인원을 늘리려 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강생 모집 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강사는 1년마다 공개 채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담은 세칙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 바람.	○ 장기수강을 예방하고 신규회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동 실정에 맞는 수료제 및 동아리 활성화 등 방안 모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개선하고, ○ 대리 수강, 수강 후 취소 등 편법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및 감독 철저토록 조치함. [자치행정과-20946('17. 12. 28.)호] ○ 2018년부터 모든 동이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접수하고 동별 실정에 맞게 강사도 1~2년 단위로 공개 채용해서 계약토록 동별 운영 세칙 제정 권고 [자치행정과-20946('17. 12. 28.)호]	**완 결**
	②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 당부 - 운영비 예산의 집행과 정산 부분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반드시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과 정산 부분에 있어 관리 감독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음. ○ 방범대 사무국장과 동 담담공무원으로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 실시('17. 12. 8./16명)	**완 결**
건의 사항	**①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 - 2014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별다른 운영 성과가 미비하며 지원비 중 인건비가 70% 이상 지출되어 실효성이 거의 없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자치회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폐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성과를 위해 사업신청서 검토 후 사업별 지원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독토록 조치. [자치행정과-20946('17. 12. 28.)호]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② 구민대상 선정 기준 확립** - 구민대상 심사 시 심사위원 보안, 서류외 현장 조사 등 엄격한 공적 검증을 통해 구민대상의 권위 확보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구민대상 심사위원회 구성단계부터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겠으며, 세부 심사기준 및 원칙을 마련하고 현장조사 등 공적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구민대상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교육경비 사용 내실화 -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유치원의 경우 매년 일괄 지급해서인지 집행 정산서류가 너무 미흡하여 제대로 사업을 시행했는지 의구심이 생김. - 교육 경비가 적재적소에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유치원의 경우 단순 교구구입으로 차별성을 두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괄지급하고 있음. 내실 있는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 시 유치원 담당자 대상으로 정산교육 실시하겠음. ○ 보조금 사업신청 시 초중고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등 방향성 제시와 특성화고에 맞는 사업추진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④ 사회적 기업 내실있는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분야 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큰 성공 사례가 거의 없음. 마을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시에는 안정적인 매출과 경제성이 있는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지, 지역 특산품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신청시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울산광역시 및 울산경제진흥원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지원, 판로지원, 아카데미 운영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육성 하겠으며, ○ 아울러 협동조합내 기술 및 브랜드개발과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하는 우리구 자체사업 "협동조합 자립화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연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가족 중심 커뮤니티 및 친환경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무·그물놀이터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공간임. 좀 더 확대하여 주변의 동천강, 순금산 등 자연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 학습의 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 창의놀이터 1박2일 프로그램 운영 시 동천강 생태탐방 등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 동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동별 경로잔치 등의 내실 있는 추진** - 동에서 경로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뷔페를 이용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어르신들이 손수 음식을 갖다 드시는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자생단체 등에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뷔페를 이용하더라도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자리에 갖다드려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으면 함. - 각종 기념식 등 행사 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지역구 의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인사하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가 행사의 성격과 목적에 맞도록 행사를 준비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하겠으며, ○ 또한, 각종 행사시 지역구 의원들이 인사하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동별 표준화된 매뉴얼 배부 - 회의록, 각종 보고, 행사 진행 등에 따른 순서와 내용이 동마다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배부하여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 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람.	○ '18년 구청장 동순회방문시 동정현황보고 등 통일함과 같이 사안별로 표준 서식을 배부하겠으며, ○ 총무과에서 작성한 매뉴얼인 '주요 내빈 초청 대규모 각종 행사·축제 의전 계획'을 배부하여 행사 진행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공모사업 문화 행사 등 지속적 지원 - 영화제 행사, 섶다리 축제 등 일부 행사들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지원 받아 추진되고 있음. 문화적 가치도 있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화합해 나가는 좋은 행사이니 공모사업 지정 이후에도 축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농이예술단은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 예술단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부진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동의 대표적인 행사·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 문화체육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동 체육대회 내실있는 운영** - 경비사용에 있어 뒤풀이 비용, 식대 등 과다 지출한 부분이 없도록 사업별로 내실있게 진행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기 바람. - 올해 이사회에서 동 체육대회 주최를 북구체육회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계속적으로 동에서 진행해 오던 것이니만큼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 주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이니만큼 식대비가 필요하나, 과도한 지출에 있어서는 지도, 감독을 통해 보조금이 내실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북구체육회에 해당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동 체육대회의 정통성 등을 고려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사안을 재검토 하겠음	**완 결**
건의사항	**① 기박산성 의병제 효율적 개최** - 추모식과 부대행사,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본 취지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례와 공연을 과감하게 분리하고, 또한 학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는 여타 축제행사와 달리 공연, 부대행사 등이 추모제와 어울어지기 힘든 면이 있음. ○ 올해부터는 추모제와 의병행사를 별도 분리하여 본래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북구 문화원과 계획수립 단계부터 협의, 진행토록 하겠음.	**추진중**
	② 지역 문화재의 홍보물 제작 및 지속적인 관리 - 중산동 고분, 관문성, 어물동마래여래좌상 등 지역문화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북구를 안내하는 책자의 내용도 미흡함. 지역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내판 설치, 홍보물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홈페이지 내 지역문화재 소개사진과 연혁 등은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추진하겠음. 관광홍보물 제작시 문화재 현황을 수록하여 배부, 홍보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활성화** - 지역가수들, 문화예술회관 동아리, 각 동의 문화예술활동팀 등 다양한 예술단체에 야외공연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기 바람.	○ 문화예술아카데미 동아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색소폰 동호회 등),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등 적극 홍보하겠음 ○ 주민들에게 친근한 지역가수 공연개최로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색하겠음.	**추진중**
	④ 달천철장 주변 정비사업 조속한 추진 - 달천철장 정비사업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철기문화의 원류인 시 지정문화재 달천철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비사업인 만큼 향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람.	○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착공이 늦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18. 5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 관광해양개발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강동관광단지 개발 사업 지속적 추진** - 강동관광단지를 8개 지구로나누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관광진흥법 문제로 강동관광단지 사업 전체를 무산 위기로 내몰고 있음. 시와 중앙기관 등의 원활한 협의로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개발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강동관광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와 중앙기관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완 결**
	② 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점진적 실행 - 관광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관광 자원 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이것을 토대로 산업, 해안, 해양관광 부분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자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에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 우리구만의 특화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으로 관광비전을 도출하고자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뿐만 아니라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먹거리인 관광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임.	**완 결**

□ 도서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책잔치 참여자 확대 방안 검토** - 올해 책잔치를 10월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해 운영하여 시기적으로도 좋았으며, 기념식 구연동화, 북 콘서트, 다양한 주제의 체험 부스 등 내실 있게 운영된 것 같음.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참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공감의 축제를 위한 아이템 발굴 및 부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자원봉사자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 모색 -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높은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대표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도서관 자원봉사자와의 협업을 통한 상생의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도서관자원봉사자로 구성 되어 있으며, 도서관별 자체 논의를 거친 대표를 위원으로 추천 받아 구성하고 있음.	**완 결**

□ 세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세외수입 징수방안 적극 모색** -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데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연간 상·하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전담조직의 신설 등을 적극 건의하고 있음.	**추진중**

□ 민원지적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현재 구 무인민원발급기 15대 설치 운영으로 민원발급이 신속해지고 편의성이 향상됨.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강동지역에 행정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람.	○ 강동권은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강동주민센터에 우선 설치하고 3월에는 운영 예정에 있음. 또 아파트가 밀집한 산하지구는 강동문화센터 준공예정에 맞추어 설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음.	**추진중**
	② 불부합토지 개선 - 쇠부리체육센터 인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민원이 많은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 불법성토로 인해 지적불부합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대로) 개설시 법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민원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조기 개설을 요청한 상태임.	**추진중**

□ 복지지원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 통합조사와 나눔문화 활성화로 소외계층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겠으며, 이를 위해 이동복지상담을 확대 추진하고, 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민간 복지기관 및 시설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민간 자원연계를 위해 나눔가게 발굴과 이웃돕기 모금, 희망천사운동, 매지매지(SNS) 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추진중**
	② 정임석 열사 선양과 예우 강화 - 정임석 열사 추모행사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인의 뜻과 넋을 기리는 선양사업 및 묘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정임석 열사의 묘역에 대한 부지 매입 등 선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정임석열사 추모비는 2001년에 후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천곡동 산 17번지 일원 열사 묘역 내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음. ○ 17년 4월,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기존 위령비 옆에 열사의 출생과 4.19혁명 당시 활약상 등을 담은 추모비를 새롭게 제작·설치하였음. ○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열사의 업적에 대한 홍보를 다양화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고, 묘역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 결**
	③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기회 확대 - 인적·정보교류 등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예산 확보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향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기 바람.	○ 청소년 및 자원봉사 리더워크숍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 앞으로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부서와 지속 협의하겠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④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활성화 제고** -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체험·홍보부스의 다양화 등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었음. 남녀노소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나눔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거듭 발전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다채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박람회를 통하여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완 결**

□ 사회복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 개선** -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이 많음.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의 지속적인 기능보강 및 개보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2018년 경로당 개보수 예산에 공동주택 내 경로당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조사 후 2월부터 착수할 예정임	**추진중**
	②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 철저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찾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음.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기 바람.	○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연2회 시설안전점검 및 운영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기능보강, 종사자 수당도 지원하고 있음 ○ 노인여가시설인 제2노인복지관, 노인회관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국가치매책임제와 연계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③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에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 북구 관내 전 실·과·소·동에 보행약자 편의시설 및 유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사회복지과-1016(2018.01.05.)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철저(2017년 1,971건 170,139천원)	**완 결**

□ 여성가족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공통 시정 요구	① **각종 홍보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 - 성별영향분석 평가 지침 변경에 따라 홍보물 및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구청 홈페이지, 실과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살펴보면 여전히 성 역할에 대한 편중된 그림들이 많음. 향후 인쇄물 및 동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사업 추진 시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총괄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바람.	○각종 홍보사업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협조 공문을 전 부서 발송 - 홍보물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무 사항 강조 - 특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 사업부서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실시여부 확인 협조 요청 ○ 또한 분기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실시 여부를 점검하겠음.	**추진중**
시정 요구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 운영 개선** - 청소년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 위탁하지 말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상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역량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함. ○ 청소년 정책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 전수 조사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비, 물품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아동 양육 여건이 조성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구비 추가 지원중이며 '18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비 30천원 인상 지원됨. ○ '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센터별 2,000천원을 구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어 소규모수선이나 물품구매 가능함.	**완 결**
	②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통합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 현재 이원화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주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다문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미 투자된 사업비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 바, 향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중**

□ 창조경제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 교육 확대** - 최근 청소년들의 근로현장 실습 중 불이익 사례 등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발생함.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현장에서 인권 침해 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산업실습생 보호를 위하여 울산마이스터고와 학교 전담 노무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인권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17. 12. 12. 울산마이스터고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음. ○ 산업실습생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체 인식 개선 홍보 및 산업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중**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철저 -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관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사후 관리 및 컨설팅도 추진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를 위해 2018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1월 8일부터 선착순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자금 신청 시 사후컨설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월경쯤 참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후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마케팅 기법 및 정보가 부족한 점포에 대해 맞춤형 지도를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을 강화하고 점포변화 촉진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무등록 전통시장 안전 점검 강화** - 무등록 시장인 경우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하여 화재,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무등록시장이라도 안전 점검 실시와 안전기기 등 보급으로 시장 상인의 생활 안전 도모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무등록 전통시장은 코끼리시장, 신전시장이 있으며, 전기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통해 명절대비 전통시장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분야는 인근 119안전센터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이와 별개로 2018년 2월경 무등록시장 개별점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농수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선창골못 저수지 환경 정비 만전** - 태양열 집열판, 녹슨 철근, 폐의자 등이 방치되어 있고, 저수지 옆으로 조성된 운동시설과 정자에도 각종 쓰레기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적인 절차대로 환경 정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7년 12월 저수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철거를 완료하였고, 방치된 폐의자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음. ○저수지 주변의 정기적 환경정화활동은 행정인력 부족으로 동 주민센터의 협업과 함께 폐영농자재 수거 인력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음.	**완 결**
건의 사항	**②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 개선** -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실정임.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시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기 바람.	○'17년 유기동물은 345두 발생하였으며 지역 내 인구증가로 인해 유기동물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신속한 포획과 구조 및 안전한 보호처리를 위해 동물병원 1곳을 추가 지정하여 총 4곳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환경개선토록 지도점검하고 있음. ○또한 매월 유기동물 처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입양률을 늘리고 동물보호정책 수립에도 활용토록 하겠음.	**완 결**
	③ 정자활어직매장 화장실 상시 개방 추진 -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층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바람.	○금년 말 완공되는 정자활어직매장을 상시 개방하여 관광객 편의도모토록 하겠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④ 로컬푸드 매장 지속적인 관리** - 로컬푸드 매장 운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이용 가능하지만 먹거리가 일부 품절되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주기 바람.	○ 로컬푸드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협직원이 매대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매장 CCTV 확인 및 판매현황 문자 서비스로 농가가 직접 재고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음.	**완 결**

□ 환경위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고** - 화암주상절리 화장실처럼 출입구 턱이 너무 높거나 주출입구에 장애물이 있는 등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이 많음. 처음 설치할 때부터 관련 부서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점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 2018년 신규 설치하거나 보수공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음.	**추진중**
	②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확대 - 3년동안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낮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빠른 시일내 안전하게 철거 처리하기 바람.	○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주민만남의 날 및 언론 홍보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음.	**추진중**
	③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 제고 - 동별 그린리더 환경정화활동, 녹색생활실천활동 등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 실천운동 확산을 목표로 가정, 상가 등의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및 감축을 위한 컨설팅, 감축량에 따라 탄소포인트 지급, 기후교육 및 동별 녹색생활실천교육,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음.	**추진중**

□ 환경미화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생활쓰레기 수거 철저** -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넣는 경우가 있음.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를 거부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여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수거 거부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청소지휘소 안전점검 등 관리 철저** - 청소행정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한 청소지휘소 시설을 개선하였지만 일부 청소지휘소에서 근무자 작업 배치 후 소등 및 전열 관리가 되지 않으니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 안전교육 및 반장회의를 통하여 소등 및 전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4개 청소지휘소에 대하여 전자키를 부착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완 결
	②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개선 - 물물교환, 판매를 통한 환경 제고, 경제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나 지금도 전문업체에서 상업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패널티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여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클린환경 나눔장터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상업적 목적의 전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함을 물론 행사 당일 현장 적발시는 퇴장 조치 및 향후 참가를 제한토록 하겠음.	추진중

□ 건설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안전한 자전거 타기 정책 추진**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으로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였지만상대적으로 상해 보험 지급 건수가증가하고 있음. 안전한 자저거타기 운동에 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며 보호장비 미착용 등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바람. - 자전거 도로 불법 적치물과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18년 당초예산에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사업 민간보조금(10,000천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 및 교육용 리플렛, 이론교재 제작, 현수막 및 인터넷 배너, 신문지면 등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 자전거 도로 상 불법 적치물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정비토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산업로(7번국도)확장공사 시 통과박스(도로)설치 건의** - 이화천, 신천천, 약수천3개 하천 하단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산업로(7번국도)확장공사 설계도면을 보면 통과박스가 없음. 도로로 이용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니 주민들의 이동통로인 통과박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확장공사 시행청인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해당구간 통과박스 설치를 검토요청('17.12.21.)하였으며, 울산광역시에서 교량 하단부에 별도 통과박스설치계획은 없으나 기존 교량 하부 통과를 하고 있는 약수천 및 이화천은 기존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임을 회신 받음. ○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추진중**
	② 자전거 보관대 정비 - 염포초등학교 앞 자전거 거치대 45대가 집중 설치되어 보행로가 좁아 위험의 요소가 있음. 도시미관상 어울리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일제조사 후 정비하기 바람.	○ 염포초등학교 앞 자전거거치대는 이용이 많은 다른 위치로 기 조정('17.10.)하였으며, 기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를 일제 점검하여 필요시 정비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기타 건의사항** - 창평동 오토밸리로 하부 마을입구 비포장 도로 포장 건의 -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관련우회 등산로 개설 및 가로수식재 건의 - 명촌교 다리 위 배수관 낙수로사고 우려, 배관 추가 연결 및 교량 주변 청소 건의 -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및 소하천심의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건의	○ 해당구간은 오토밸리로 개설공사 시 조성된 시유지 법면 구간으로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와 협의 후 검토토록 하겠음. ○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상 가로수 식재 및 달천마을 우회등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에 검토('17.12.21) 요청하였음. - 수목활착 및 생육시기를 고려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후 식재공간 확보된 구간에 한하여 편백나무 식재 검토 - 등산로 신규개설은 숲길의 조성 및 관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산주의 동의를 득하여 가능하며, 도로개설 이후 지속적인 신규 등산로 개설 요구 시 등산로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검토 ○ '18년 도로시설물 정비 시 낙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량 배관을 정비토록 하겠음. ○ 소하천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이기 위촉되어 있으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 재위촉 시(1월중)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 안전정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재난대응 태세 확립** - 타 지자체의 이재민관리시스템 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의 재난안전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 지진행동 매뉴얼에는 지진 발생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발생 즉시 대피요령이나 예방 조치에 대한 방법은 없으니 보완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 교육 등 행동 매뉴얼을 숙지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울주군에서 개발한 이재민관리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향후 실효성 검증 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지진행동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서식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매뉴얼 마련을 위하여 검토·작성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완료 예정임. ○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 원전 매뉴얼이 개정되면 우리 매뉴얼도 바로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후 시설 개선 지원** -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안전의 공동 관심을 유도하였음. 시설 설치 후 예산 등의 문제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니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동 예산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설 유지·보수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옥외대피소 현황 재정비** - 학교 운동장, 공공건물, 광장 등 옥외대피소가 65개 있는데 매산초등학교의 경우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 쌓여 있어 재해 시 매몰의 위험이 있음. 지진대피소 현황을 재조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2018년 상반기 지진 옥외대피소 전수 점검 시 주변 건물의 내진성능 확인 등 세세한 검토를 통하여 지진 옥외대피소의 변경 또는 추가 지정 예정	**추진중**
	③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확대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점검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에 기여하였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안전 점검하도록 대상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시 청소년 이용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 도시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 확대**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염포,양정 지역에 소금포 역사관,자동차 테마가로, 통쾌한 시장 등을 조성하여 노후화된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주민, 현대자동차 등 기업체 노사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여주기 바람.	○ 2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 주민참여 협력 네트워크 실행하고, ○ 2018년에는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용역 후 착공하여 202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음.	**추진중**
	② 강동산하지구 강동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 추진 - 강동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 인도는 있지만 주변 장애물이 많고 안전휀스는 안전도로가없어 유명무실함. 관련기관과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저류지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강동초 학생의 통학로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요청 등 행정지도 하였으며, ○ 저류지는 되메우기 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였음.	**완 결**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철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시 해당지역의 재산권 행사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기 바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 제도 시행에 따라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시설해제 및 변경을 시행중에 있으며, ○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음.	**완 결**

□ 공원녹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산림 방제 및 예찰 활동 강화**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은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드론 등을 활용한 예찰 방안을 검토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의 대응방법처럼 피해목을 전부 제거하고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람.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계획 수립시 드론을 활용하여 예찰방제 하였으며, 소나무를 일정구역 전부 제거하고 수종갱신하는 방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산불피해지나 집중피해지는 모두 베기 후 수종갱신을 확대하겠음.	**완 결**
	② 오치골 주민쉼터 등 공원 조성 시 의견 수렴 철저 - 양정생활체육공원 일원의 주민쉼터 공간을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처럼 기존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자연 상태 그대로 활용해서 조성하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가 직접 디자인하고 참여하여 특색있는 놀이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오치골 주민쉼터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시 각종 단체 및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놀이시설 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인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임.	**완 결**
	③ 기타사항 - 송정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화봉, 연암동 일원 물놀이장 조성 건의	○ 현재 송정택지개발사업 내 공원조성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물놀이장 설치는 불가하나, 추후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물놀이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 천곡동 산 122번지 일원 산림 훼손 및 공장건립을 위하여 부지 조성된 천곡동 산 149-10번지 일원 행정조치 및 복구 건의	○ 북구 천곡동 산122번지 산림훼손 • 복구명령 통보(2017. 12. 8.) • 구조물철거(2018. 1. 9.한) • 수목식재(2018. 3월한) ○ 북구 천곡동 877-10번지 일원 • 해당부지에 관광농원 건립신청이 있어 산지전용협의(2017.2.7.) 하였으나, 사업주가 신청을 취하 하였으며, 추후 재신청 등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을 시 허가 및 복구기준에 따라 조속히 산지복구가 되도록 하겠음.	추진중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등산로와 기존 진입도로 이정표 정비 건의	○ 천마산 등산로변 이정표 일제정비(도색 등)를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개설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음.	

□ 교통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법규위반 화물자동차 지속적 단속** - 약수초등학교 인근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아직 주거 밀집지역 등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주차하여 민원 발생이 있으니 차고지 주차 홍보 및 지속적 점검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바람.	○ 약수화물자동차휴게소 준공 시부터 주2회 단속반원이 야간주차 단속 시 화물자동차 불법 차량에 대하여 약수화물자동차휴게소 이용 안내문을 부착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차고지외 밤샘주차한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월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민원을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밤샘 주차가 되풀이 될 경우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임	**추진중**
건의사항	**①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 - 우리 구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계속 건설 중에 있고 이미 입주를 시작하여 많은 인구유입이 있음. 이에 따른 교통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대중교통 노선 증설 등 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시 대중교통 노선개편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요청하고 있고, 주민건의사항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에 요구하고 있음. 앞으로 더 많은 버스노선이 증설되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추진중**
	②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업 확대 운영 - 현재 양정초등학교 1개소 운영하여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사업 신청 시 알기 쉬운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확대 운영하기 바람.	○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함께 언론보도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개별 홍보를 통해 2018년도에는 3개교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안전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 - 버스승강장에 태양광발전장치가 일몰 일출시간대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간에 조명시설이 꺼져 있음. 지속적인 승강장 시설물 유지 관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12월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정비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완 결**
	④ 기타사항		**추진중**
	- 오토밸리로 램프구간 이정표 점검 건의	○ 오토밸리로 램프구간 이정표에 대하여 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 결과, 송정지구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 전체적으로 점검 후 변경 검토할 계획임.	
	- 야간시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	○ 12월에 산업로 확장구간 투광기 설치 완료하였음.	
	- 천곡IC ~ 우방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 우방아파트 인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천곡IC에서 우방아파트 진입 구간을 주·야간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차후 불법 주·정차가 개선되지 않을 시 단속을 실시하겠음.	
	- 강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건의	○ 2018년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사장 등 통학로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기관)에 안전조치 요청하였음.	

□ 건축주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동별 빈집 현황 파악 및 조치** - 북구 관내 빈집 때문에 화재등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많음. 동별 빈집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관리계 (2018. 1. 신설)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8.2.9.)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고 조치 예정임.	**추진중**
	②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 - 최근 호수지구 한양수자인 1, 2차 동별 사용승인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음. 향후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시 면밀히 점검함은 물론, 많은 입주민들을 고려하여 행정적인 절차대로 처리하여 주기 바람.	○ 대규모 아파트 사용검사 시 각종 도시계획 관련 조건사항이 사전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상시 감리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건축허가 관련 행정은 민원처리 기간이 길고 복잡하여 만족도 조사결과가 높지 않음. 건축민원처리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고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기존 건축행정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부서간 협업을 통한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법령해석 분쟁 최소화, 민원알림 서비스 제공 등 VISION 3S (신속, 정확, 간편) 건축행정서비스를 추진하여 건축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행정지도**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임대운영과 관련하여 임대료가 공동주택별 격차가 크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관계자 교육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안내 사항을 2017. 11. 30.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시 참여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배부·홍보하였음. ○ 또한, 2017. 12. 18.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의 5% 이내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에 대해, 지원사업 조사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여토록 계획 수립하여 개선을 유도함. ○ 아울러,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 시,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준칙에 맞춰 규약을 개정토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음.	**완 결**

□ 보건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금연 환경 조성 철저**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하겠으나 아직까지 흡연자들이 베란다나 복도 등에서 흡연하여 공동주택의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대표자 교육과 홍보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금연아파트가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 바람. -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미흡함.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금연 상담 교실을 운영하여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고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주기 바람.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법령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으나, 베란다는 사적인 영역으로 공동주택 관리인과 협력하여 금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음. ○ 17년 청소년흡연예방교육프로그램을 학술용역을 통하여 개발하고, 3개 시범 학교를 선정, 적용하여 효과성을 입증하였고, 18년에는 5개 학교를 선정,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 중이며, 또한 청소년 방과 후 금연상담 교실 운영을 학교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할 예정임.	**완 결**
	② 제세동기 사용 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교육은 구청 각종 행사 시 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으나, 심장 제세동기는 교육 현장에서 쉽게 보고 배우고 실습하기 어려운 실정임. 향후 연습용 기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말 긴급한 사항 발생 시 대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17. 12월에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용 마네킹을 구입하였으며, 향후 심폐소생술 교육 시 지역주민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위기사항 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 -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등 최소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정신보건요원 등 인력이 미충족 되고 있음.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북구보건소-38272(2017.12.26.)호로 보건소 전문인력 정원 책정 검토 협조요청(기획홍보실 공문발송 및 협의)하였으며, 정원 조정사항은 구청 전체 총액임금과 연관되어 단기간 내 조정이 어렵고 타 보건소의 정원계획을 검토 정원관리 부서와 장기적으로 논의하여 조정하고자 함.	**완 결**
	④ 여성보건휴가 이용 권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 여성 직원이 많이 근무하는데 실적이 저조함.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 출장, 교육 등으로 여건이 어렵겠지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개선 바람.	○ 보건 휴가를 분기1회 이상 반드시 사용 하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보건-38280, 2017.12. 26) 보건휴가 사용을 관리하여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음.	**완 결**

□ 의회사무과

구분	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집행부 각종 주요행사 및 위원회의 회기 중 지양** ○ 의회 회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12월 회기 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행사 및 북구의회 의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가 의회 회기와 겹쳐 의원의 참석에 차질이 있으므로 집행부과 협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일정과 중복을 지양하여 주길 바람.	○ 각종 행사(특히 다수 구민 참여 행사나 보조금 교부단체 주관 행사) 일정이 회기 중 개최되고, 행사 일정 및 변경 내용이 의회로 잘 전달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공유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집행부로 두 차례 발송 완료('17. 10월/'18. 1월)	**완 결**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제3절 5분 자유발언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제6절 의정활동일지

제1절 결의안

1. 결의안 현황

의안 번호	본회의 의결일	의 안 명	결의안 발의자	처리 결과
26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1.)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강진희의원	원안가결
273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22.)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안승찬의원	원안가결
281	제165회 임시회 (2017. 2. 22.)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윤치용의원	원안가결
287	제166회 임시회 (2017. 4. 1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강진희의원	원안가결
357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이수선의원	원안가결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ㅇ 본회의 의결일 :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1.)

ㅇ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 의원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28km 떨어진 곳에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경주방폐장 등 위험천만한 원전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논란이 되었던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원전 산업계는 양산단층은 아주 오래전 움직였던 단층으로 원전설계에 반영할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었다.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이 위치한 경주, 울산, 부산 지역 육지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140km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 등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8개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설계에는 이와 같은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를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1643년에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규모 7~7.3의 지진이 기록된 바 있으며, 한반도 최대지진 규모는 7.45라고 평가한 논문도 있다. 원전 내진설계기준으로 적용된 규모 6.5~7.0 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활성단층대에 심상치 않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단계에서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을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은 즉각 철회

하고,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주변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ㅇ 본회의 의결일 :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22.)
ㅇ 결의안 발의자 : 안승찬 의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강동 산하동에 154kV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과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공동주택에 너무 근접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 건립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 산하지구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이 입주를 시작하였고, 현재 인구 1만명에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와 강동중학교가 정자동에서 이전하여 개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산하변전소가 산하지구 등 강동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2013년 9월 10일 기공식을 하였고, 2014년 개교, 임시로 울산동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 2015년 2월 지금의 강동 산하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고 운동하는 글로벌 스포츠 인재를 전문 육성하는 공립체육학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울산북구청에서 조성한 산음수변공원은 산하변전소 건립예정지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하변전소는 2011년 산하지구 개발단지 내에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2013년 12월 지금의 산하동 산835번지 일원으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산하변전소와 주요 시설과의 거리는 개략적으로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와는

135m, 산하 블루시티 2차 푸르지오 단지와는 450m, 강동중학교와는 870m, 강동초등학교와는 1,000m, 강동블루마시티 1차 푸르지오와는 1,700m 거리입니다.

그리고 송전철탑과의 이격거리는 8호기의 경우, 스포츠중고 남자기숙사와는 292m, 원반연습장과는 195m, 주렴마을회관까지는 741m, 주렴마을 양계장까지는 288m라고 합니다.

9호기에서는 스포츠중고등학교 남자기숙사와는 254m, 원반경기장 174m, 육상트랙 134m이고 산음마을은 355m, 푸르지오 2단지는 519m 거리입니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에 의하면, 학교주변 인근 300미터 이내에는 고압전선로 및 송전탑, 그 밖의 유사 위험 시설(변전소, 주요소 등)의 위험요소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울산교육청은 변전소 건립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학교보건법에 따른 평가기준에 맞게 조사하고 평가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조사하고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대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책위는 전자파, 철탑 및 송전선로로 인해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운동능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변전소 위치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 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철탑 8, 9호기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학부모 요청시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증명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현행 법령상 지중화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전소 위치 변경에 대하여 강동권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변전소 건설은 불가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변전소 건설이 승인된 지역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학부모와 주민의 갈등은 한전의 불가 입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에서 제시하는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증명 실험은 주민들과 학부모들

로서는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며, 그 실험이 신뢰할 만하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수준이므로 여러 논문과 주장으로 볼 때 여전히 찬반에 대한 입장이 상호 대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북구의회는 주민과 학부모 민원을 모른 체 할 수 없고,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볼 때 산하지구 아파트와 학교를 이전 할 수 없다면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이전 또는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는 방안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실적 환경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산하 변전소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이전하여 건립해야 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철탑 8, 9호기를 지중화 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야 한다.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ㅇ 본회의 의결일 : 제165회 임시회
(2017. 2. 22.)
ㅇ 결의안 발의자 : 윤치용 의원

최근 경주 지역의 큰 지진과 여진으로 핵 발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의문과 만일의 원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활성단층대에 지어진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지역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듯,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전사고를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월성1호기가 가동 중일 때 삼중수소 피폭량은 가동을 멈추었을 때보다 3배 이상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월성 나아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심지어 5살 아이의 소변검사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용하고 있는 식수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지역주민들은 30년 동안 삼중수소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수원은 오염되지 않은 상수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월성1호기가 너무 위험하니 당장 폐쇄하길 원합니다. 독일의 칼카르 핵발전소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5조 이상을 들여 완공한 칼카르 원전을 폐쇄조치했으며, 중국 역시 후쿠시마 핵 사고를 지켜보면서 2011년 4월경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를 거울 삼아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은 지난 2월 7일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결과, 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내진설계가 허술해 위험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지난 해 유례없는 강진으로 월성 1, 2, 3, 4호기가 수동 정지 됐을 때, 전기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 수급량의 0.8%밖에 차지하지 않는 월성1호기, 다른 핵발전소보다 방사능물질을 20배나 많이 방출하고 10만년 보관해야 하는 핵쓰레기도 5배나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괴물, 월성1호기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말고 태양과 풍력을 이용한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정부에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울산 주변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핵발전소 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재판부의 판결과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운전을 즉각 가동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핵발전소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 법제 정비, 방사능 감시와 대응체계, 핵사고 대처방법과 대피요령 등을 포함하는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울산 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ㅇ 본회의 의결일 : 제166회 임시회
(2017. 4. 14.)
ㅇ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 의원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 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주민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ㅇ 본회의 의결일 :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ㅇ 결의안 발의자 : 이수선 의원

울산과 언양간의 울산고속도로는 지난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69년 말에 유료도로로 건설해 개통되었고 이후 1974년 11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받아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에 시민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추진되었으나 10년이 넘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지만,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개통된 지 벌써 50년에 가깝게 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통행료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수익은 3,443억원이고 총 비용은 1,681억원이며 이에 따른 총 누적이익은 무려 1,762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현재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순수 건설투자액 720억을 제외하고, 건설유지비 총액보다 1천 42억원을 더 걷어들였다. 전국 27개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 투자비를 넘어 회수율 100%를 초과한 곳은 도합 4개 노선이고 이 4개 노선 가운데 울산고속도로의 회수율은 244.9%로 회수율로 따졌을 때,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통합채산제라는 조항을 들어 지난 수십 년간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걷고 있다. 이 통합채산제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다.

또, 현재 울산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협소하여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단순히 언양 등 서부권과 울산을 연결하는 지방도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또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고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선확대나 도로선형구조 개선사업도 진행하지 않는 형편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울산 핵심 동서축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유료도로법 취지에 맞게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이내 통행료 수납의 규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채산제에 관한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 이상을 넘어 부당·불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해야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울산톨게이트를 언양으로 이전하고, 울산고속도로는 일반국도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1.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ㅇ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62회 임시회(2016. 9. 5.)
ㅇ 질문요지 : 북구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우리 구 지역 중 농소3동의 천곡동, 달천동, 농소2동의 중산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빠르게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은 159.24 제곱킬로미터이며 이미 시가화가 이루어졌거나 개발이 어려운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면적이 20.66 제곱킬로미터로 전체면적의 1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의 시가화 가능 면적은 구 전체 시가화 가능 면적인 20.66 제곱킬로미터 중 7.97 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39%에 이르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개발행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천곡동의 경우에는 2016년 6월까지의 개발행위의 건수가 2015년 전체

개발행위 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개발행위가 매년 증가하여 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균형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이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말하며, 대상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해당됩니다.

우리 구는 2016년 1회 추경에 4천만원의 성장관리방안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울산발전연구원과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성장관리방안 구역의 최적 대상지를 선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장관리방안 구역 검토대상 밖의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구역 설정 등을 검토하여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62회 임시회(2016. 8. 25.)
ㅇ 질문요지 : 북구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새로 창립한 북구체육회를 회장인 구청장은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요?

▶ 구청장 답변

먼저,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 구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전 북구생활체육회 임원 등 다양하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체육회 임원 및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일부 임원 들 중에는 체육관련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나 북구 체육회 규정에도 선수출신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생활체육의 경우 체육전문가만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체육전문가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사회활동으로 지역주민과 단합하고 화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북구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저변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문성 부분이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아직 창립초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하나씩 준비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북구 체육회가 어느 자치단체 체육회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립 5개월이 지나도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사유와 이사 추가 선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창립 대의원 총회당시 감사선임 논란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회 당시 대의원 한 분께서 감사선임에 대하여 언급은 있었으나, 부의장님 질의처럼 논란이 일어 난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감사는 이사회 구성 후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임원에 대한 시 체육회 승인이 8월 18일자로 내려옴에 따라 지난 주에 감사 인선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과 체육경력이 있는 이사의 추가선임에 대하여는, 이사정수가 규정상 35인이고 현재는 회장, 부회장 5명, 이사 20명, 사무국장 1명으로 총 27명이기 때문에 여유정원 8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유정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체육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며, 아울러, 체육회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우리지역의 체육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회 규정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설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북구 체육회 규정 제17조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에 대한 시 체육회 승인이 8월 18일자로 내려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체육회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심의와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구청장기 대회와 체육회장기 대회 두 대회를 통합할 것인지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통합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는 4개 구·군 중 중구와 울주군은 체육회장기 대회가 없으며 우리 구와 남구의 경우 구청장기 대회와 체육회

장기 대회를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 통합은 체육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뿐만 아니라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 연합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표창의 경우에도 남구와 울주군의 경우에는 체육회장 표창이 없으나 중구와 동구, 우리 구의 경우는 구청장 표창과 체육회장 표창을 동시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장이 회장인 경우 출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 부족해진 출연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구청장 답변

민간인이 회장이었던 기존 생활체육회의 경우 해산직전 회장 포함하여 이사가 총 43명으로 연간 이사 출연금이 회장 5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이사가 30만원으로 연간 2천 8백 십만원이 생활체육회의 출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로 통합되면서 회장 1천만원, 부회장 3백만원, 이사 50만원으로 출연금을 기존 생활체육회보다 상향하였기 때문에 현재 35명의 이사정원을 다 채울 경우 출연금은 생활체육회 때보다 290만원이 증액된 3천백만원이 적립됩니다. 물론 구청장이 아닌 민간인이 회장을 한다면 1천만원의 출연금이 더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립초기인 만큼 체육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종목별, 연합회별 단합을 위해서는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인보다는 구청장이 초대회장을 맡는 것이 초기 체육회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1차 추경에 편성한 사무보조원 인건비와 채용 상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서 기존 생활체육회 업무정리와 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운영 등 관리업무가 증가하였고 체육회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기에 5월부터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예산승인 전까지는

체육회 내 자체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예산이 승인된 후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하여는 북구 체육회 규정 제22조에 부회장 중 상근 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앞서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의에서도 구청장인 회장은 구정전체를 살피기에도 여념이 없는데 체육회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체육회 창립 전부터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회장을 대신하여 각종 종목별 연합회와 생활체육인들의 유대강화 등 대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체육회 업무를 맡을 책임감 있는 직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근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근부회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절차와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에 대한 시 체육회 승인이 8월 18일자로 내려옴에 따라, 시 체육회의 승인 전에 상근 부회장 채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채용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근부회장은 체육회 운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할 계획이며,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고 충분한 내부토론을 거쳐 인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질문의원 : 이상육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63회 임시회(2016.10.11.)
ㅇ 질문요지 : 호계 호수지구 사업승인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첫째, 호수지구 내 일반건축 최초 인·허가 시기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내 최초 일반건축 허가는, 2012년 5월 29일자로 21블럭 10로트 상에 다가구 용도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통상, 진행 중인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라도 건축허가 신청시 해당 대지가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건축주가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시까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건축허가 신청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건축용도에 적합하였고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이 2007년 9월 8일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개별 건축공사를 승낙하는 대지위치 및 소유자를 결정한 환지계획도와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를 2011년 11월 21일 발급하여,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호수지구 내 진입로, 교량 등 부대시설 사업승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구청장 답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승인 조건은 사업시행 인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지구 진입로인 대로 3-59호선 및 중로 1-76호선에 호계천을 횡단하는 교량 반폭과 구역내 도로 29개 노선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어린이공원 3개소와 녹지 1개소를 조성하고 노외주차장 1개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호수지구 준공조건 중 미이행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구청장 답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조건 중 주 진입로인 대로 3-59호선의 일부 구간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양수자인 1,2차 공동주택사업 승인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로 1-76호선상의 호계천 횡단교량 설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설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양수자인 2차 공동주택 진입로 및 주변도로 6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양수자인 2차 공동주택 승인조건에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의하여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중에는 어린이 공원 3개소와 노외주차장 1개소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설은 누락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는 등 호수지구 조성사업 완료 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수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과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 구청장 답변

호수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은 한양 수자인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2개소로 한양 수자인 1차 아파트에 대하여는 2016년 9월 9일, 공사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시행하였고 2차 아파트는 2017년 10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위 공동주택 사업의 승인조건 전문은 별도 제출하고 먼저, 문제가 되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은 사업지 주변 도로개설, 도로부지 기부채납, 호수지구의 배수설비완료확인서 등으로써, 이 조건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전 시공사가 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소송 중에 있고, 체비지를 사실상 현 주택조합에 전부 매각하여 사업비가 없어 사업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체비지를 취득한 현 주택조합의 대행사 실 소유자가 사실상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전 시공사의 소유자이므로 주택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공동주택 입주자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구청장 답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대신에 관련 법령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 사용검사"는 공사 완료된 일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나 사업 전반에 대한 사용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사용승인"은 준공을 의미하는 사용검사가 아니며 임시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대지 모두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 사항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 어떠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 구청장 답변

한양 수자인 1차 아파트는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의 갈등으로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동별 사용검사" 처리되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양 수자인 2차 아파트와 관련 주택사업승인 조건에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구에서 주택건설사업 공사중지 명령하였고,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이에 불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였지만 승인조건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주변도로도 개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양 수자인 1·2차 사업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의 원만한 합의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에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문제점은 두 조합의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점을 찾아야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육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ㅇ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64회 임시회(2016. 12. 15.)
ㅇ 질문요지 :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첫째, 친환경급식센터의 민관협치 운영방식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 구청장 답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을 포함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주민, 농가, 행정, 관련 단체 및 기관간의 상호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에 있어 민간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금까지 민관협치의 정신에 따라 시민단체, 농업인 단체, 영양사가 참여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민관협의를 통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모니터링단과의 간담회, 친환경작목반 및 학교 영양사 선생님과의 간담회,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친환경급식센터 등록물품 품목수가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구청장 답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등록품목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현지 실사 한 후 일선 영양사와 조리사, 한살림, 아이쿱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와 규칙에 따라 친환경급식의 취지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등록물품 품목수가 감소한 사유는 등록된 물품 중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식재료와 친환경 원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목을 취소함에 따라 품목이 줄어들었으며 현재, 등록물품 품목의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원·부재료를 사용하는 가공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작목반도 작년에 비해 농가수가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고 납품량도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가요?

▶ 구청장 답변

2015년 19가구이던 친환경작목반의 농가수가 2016년 현재는 17가구로 감소하였고 친환경급식자재의 생산량과 납품량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움,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 등과 특히, 올해 경우는 폭염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주된 감소이유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예측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여 학교에서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공급량을 연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해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산프로그램 교체사유와 향후 운영방식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현재 사용중인 '도농' 프로그램은 행정전산망과 연계되지 않아 학교에서는 직접 수발주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별도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센터로 보내면 센터 전산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그 발주내역을 출력해서 일일이 대조작업을 하고 다시 업로드해서 수발주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는 등 운영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경비도 월 18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안에도 취약한 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교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이 에이 티 학교급식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프

로그램과 달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나이스 프로그램과 행정의 새올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어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온라인 처리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용료도 월 50만원 정도로 저렴하여 예산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만 2천여 학교 중 9천 7백여개 학교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호환성과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일선 학교 영양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예산, 보안, 행정망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변경되더라도 센터에 등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친환경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친환경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수검품 업무 담당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 구청장 답변

현재 검수·검품은 계약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자는 검수·검품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수·검품 및 계약재배의 성공과 친환경작목반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진단을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청장 답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을 포함한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농가, 행정, 관련 단체 및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5분 자유발언시 요구하신 재발방지책 주문과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근무경력이 20년이 넘은 농업직 공무원으로 급식업무를 위해 매일 새벽 6시면 출근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성으로 전문관으로 임명되어 자부심을 갖고, 조례와 규칙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급식센터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다 보니, 일에 대한 의욕이 넘쳐 과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의정질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ㅇ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65회 임시회(2017. 2. 9.)
ㅇ 질문요지 :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첫째,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상인 대상 교육, 디자인 전문인력 보충, 신전시장 내 도로 및 시장~성원상떼빌 아파트 연결 도로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주민이 함께하는 활기 넘치는 염포·양정으로의 변화를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도시재생사업의 협업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사업지구 내인 염포동 신전시장에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총괄코디네이터 등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확충하고 9월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12월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참여 인식 확산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 전문가, 행정협의회 주민 등이 참여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업추진방향과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컨텐츠 보완을 위한 지역 및 인근기업 자원조사 연계방안 용역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실시 및 상인협의체도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온 아카데미 교육을 상인까지 확대하여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아카데미 운영시 주민들과 함께 대구 선진지역을 다녀온 사례와 같이 상인들과 더불어 광주 1913송정역 시장 등 우수사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지원센터에는 총괄코디네이터 1명, 부코디네이터 1명, 상근인력 1명, 청년활동과 주민활동을 위한 현장활동가 2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부코디네이

터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과 주민참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시 디자인 뿐만 아니라 도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전시장 내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전문가, 상인 등과 함께 검토하여 신전시장과 주변지역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 단위사업별 착공과 202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사회복지시설 건립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권역별 복지관 운영 방안 의견, 건립예정인 제2노인복지관 규모 의견, 복지인프라 총량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 여부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북구는 1997년 신설 후, 매년 인구가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인구는 19만 5천여명으로 올해는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복지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복지에 대한 욕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여건,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2026년까지의 사회복지시설 종합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차적, 순차적 복지시설 건립 계획을 통하여 안정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권역별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별복지관 사업은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2012년부터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양정·염포권은 염포동주민센터, 명촌·효문권역은 명촌문화센터

를 중심으로 거점화 운영중이며 송정, 농소2·3동, 강동권역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동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복지관 운영이 중요해 지고 있어 2017년 당초예산에 권역별 복지관 운영비를 1천만원 증액하여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고자 공공시설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도 협의를 꾸준히 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송정권역의 경우 송정동 주민센터 2층 프로그램실을 강동권역은 동주민센터 지하1층 프로그램실과 푸르지오 2차내 회의실 공간을 확보하여 '16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역별 복지관 사업 추진을 위해 농소2·3동 권역도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건립할 제2노인복지관 규모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호계동에 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써 일일 평균 이용자가 약 800여명으로 포화상태인 만큼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리적으로 우리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정·염포 권역에는 현재 새마을금고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올해 중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 초에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며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2020년 개관을 목표로 부지매입, 국시비 확보 등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복지관 건립 시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의 이동을 최대한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수립시 추세를 감안하여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진행하면서 인구분포도,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시기를 좀더 당겨야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인구 19만 5천여명 대비 약 4%인 7천 7백여 명이 등록장애인이며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타 구·군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

리구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분관, 제2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순으로 기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또한 시급하므로 가능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인프라 총량제에 관한 지역사회 공론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립된 사회복지시설 건립 종합 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 예산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회복지시설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북구예술창작소 위탁 선정과 관련하여 현 위탁단체가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와 명칭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북구 예술창작소는 지난 2014년 염포동주민센터가 이전됨에 따라 염포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구 염포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 레지던스 공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현재 위탁단체가 기존 예술창작소에서 해 온 지역연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단체가 바뀐다고 해서 예술창작소의 사업이 확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지역연계사업 중에 반응이 좋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도록 우리구에서 위탁단체를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도 사업주관 부서인 도시행정과와 위탁업체가 잘 협

력해 추진해 나가도록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관련부서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현재 위탁단체가 문화예술 전문인이 전무하다고 우려하시는데 현재 위탁단체는 비영리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법인단체이며 그동안 행정기관의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선정,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교류와 소통의 경험을 가진 단체로 예술창작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격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레지던스사업의 경험부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북구 예술창작소를 염포예술창작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예술창작소가 북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인 염포동에 위치하다 보니 구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명칭만으로도 쉽게 기억하고 예술창작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면서 염포라는 지명이 조선시대 삼포개항지의 한곳으로 울산 지역을 방어하는 군사기지로서의 큰 역할을 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염포예술창작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 문화·예술을 꽃피우는데 있어 염포예술창작소가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번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친환경무상급식센터 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을 채용할때보다 마급을 채용하는 데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 임기제 공무원은 2명으로 그 중 전산 수발주가 주 업무인 임기제 공무원 "마"급이 3월 4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2011년 최초 시작하여 2014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친환경급식은 물론, 5, 6학년 무상급식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에 맞춰 8억원의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전 학년까지 친환경급식을 확대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교사들은 외관상 고르고 깨끗한 관행 농산물을 선호하였고 품질도 고르지 못하고 수시로 결품이 발생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급식지원센터와 농가 간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중학교 10개 학교의 친환경급식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이 확대된다면 이 문제는 다시금 불거질 것이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과 친환경 농가 육성에도 차질이 예상되기에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번 계약직 직원 채용에 "영양사"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급식업무 1년 이상 근무한 식품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기존 전산 수발주 업무를 포함하여 학교 현장 행정으로 영양교사들과 실무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급식 사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ㅇ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66회 임시회(2017. 4. 28.)
ㅇ 질문요지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와 무용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첫째,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현황 및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대로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 구청장 답변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총 29개소로 그 중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24개소이며 관리규약이 필요 없는 임대아파트 단지와 국공립 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 9월 8일 울산시에서 개정한 관리규약준칙에는 어린이집의 임대에 관한 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범위 이내로 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파트 24개 단지 중에 개정된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거친 아파트는 17개소이며 이 중 7개소는 준칙을 반영한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 구청장 답변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약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에 따른 준칙·규약의 적용시기와 규약변경 시 계약 변경여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국민임대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구청장 답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적으로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는 바,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는 타 분양아파트에 준하여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준칙과 달리 임대료를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한 「울산시 관리규약준칙」을 반영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15일,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행정안내(건축주택과 - 12704)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준칙을 반영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규약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2개 단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난 4월 11일 시정명령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준칙과 규약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인센티브 방안과 관리·감독 및 향후 대책 여부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준칙과 규약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인센티브 방안과 관리·감

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시에 울산시 관리규약준칙 제87조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관리규약에 강제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강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법부(서울지방법원)에서는 각 광역시도의 관리규약준칙은 강행법규가 아닌 참조 규정일 뿐 공동주택관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준칙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대로 각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 아파트 현장에서는 분쟁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타 광역단체(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2017. 3. 31)한 바 있는데 법제처의 최종해석이 국토교통부 해석과 같이 강행적으로 관리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울산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각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시정명령 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하는 경우 행정(시정)명령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감점 등의 패널티를 적용 할 계획에 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울산시 관리규약준칙을 잘 반영·개정하고 관리규약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서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룡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2009년 10월, 9억원의 예산으로 구. 무룡분교에 현재의 무룡운동장을 준공하고 3년마다 교육청과 계약을 갱신하여 강동지역 유일의 생활체육시설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13,000여명의 지역주민과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개원예정인 강동유치원 설립

을 위해 5월부터는 무룡운동장 임대계약을 해지한다고 우리 구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룡운동장 지속사용을 위해 대부계약 연장 및 강동유치원 설립부지 변경을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정식 요청함과 동시에 교육청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에는 강동지역 주민 1,960명이 서명한 무룡운동장 지속사용 및 강동유치원 설립부지 변경 요청 청원서를 교육청에 주민들이 직접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동유치원 대체부지인 구. 강동중학교와 동해분교는 향후 학생해양수련원 건립부지로써 유치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현재 구. 무룡분교를 대상으로 강동유치원 설립 실시설계 용역이 5월초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육동호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 무룡운동장 지속사용 및 강동유치원 설립부지 변경을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구. 강동중학교나 강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추억의 학교 운영과 당사해양관광개발을 위해 임대하고 있는 동해분교의 매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추억의 학교 설치를 위한 동해분교의 대부계약과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은 폐교재산 활용방안 수립을 감안하여 1년간 계약연장 허가를 제시하였으며 2009년 9월 21일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년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8월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한정된 공간과 새로운 콘텐츠 부재로 동해분교 건물 및 부지 전체를 임대하여 울산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청소년 시설」,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기존 대부 받는 자(세계곤충류체험 박물관 및 창고 개인대부자) 모두 대부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학교 시설 전체 대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0일 시 교육청에서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됨

에 따라 동해분교를 가칭「울산학생해양수련원」분원으로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2019년까지는 동해분교를 대부할 계획이나 그 이후에는 동 수련원 설립 추진과정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검토예정에 있음을 통보해 왔기에 동해분교 매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 대부 만료 이후에는 전시물품 등을 유관기관을 통해 재 기증하거나 관내 대체시설을 활용하여 이전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추억의 학교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까지 추억의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67회 임시회(2017. 6. 12.)
ㅇ 질문요지 : 지방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첫째, 현재 체육센터, 문화센터, 운동장, 공영주차장 등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 수, 운영 예산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구청장 답변

체육센터와 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오토밸리체육센터 관리 6명, 국민체육센터 관리 5명,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관리 2명과 그 외 기간제 근로자 28명 등 총 41명이며 중산문화센터 등 3개소에는 공무원 5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공익근무요원 4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상방복개천 등 유료주차장 6개소, 무료주차장 64개소 등 총 70개소로 주차장 담당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6개소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017년 체육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오토밸리복지센터 18억 1,957만 5천원, 국민체육센터 15억 8,627만 1천원,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4억 972만 1천원 등 총 38억 1,556만 7천원이며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은 중산문화센터 9,341만 3천원, 천곡문화센터 7,531만 4천원, 명촌문화센터 1억 678만 7천원 등 총 2억 7,551만 4천원이고 공영주차장 연간 운영 예산은 시설물 정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6,995만 5천원입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과 설립계획 및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1997년 자치구 출범 이후 비약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및 주차장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욕구 역시, 다양해짐에 따라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통한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효율성 극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3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4년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4년 11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수지 비율이 50% 이상으로 설립요건은 충족되나 공단위탁 시에도, 매년 적자가 증가하여 공단설립에 따른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 보류의결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 용역을 금지하고 있어 2017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길게 늘어진 지형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와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대비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하고 있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관리공단 용역 사전준비작업 등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최대한 빨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책임 있게 공공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빠른 시일내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기술을 확보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공공사무의 위탁 중에 발생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수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ㅇ 질문의원 : 안승찬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68회 임시회(2017. 9. 5.)
ㅇ 질문요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북구청의 계획 및 북구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첫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청장 답변

2017년 7월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로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852개소이고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이며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 전환대상입니다.

단계별 추진시기는 1단계 전환대상은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 2단계는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18년 상반기에 3단계는 2018년 중 고용노동부가 계획 중인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별도의 전환기준에 따라 추진됩니다.

금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①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용증가 및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② 합리적 전환 기준·방안 마련 및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며,
③ 모범사례 확산 및 기업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의 직무를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우리 구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 근로자 현황,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의 민간위탁 계획, 향후 용역사업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이 어떠한지요?

▶ 구청장 답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에 있어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전환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간제 특별실태 조사를 통한 직무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직무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전환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고용안정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증가, 민간의 일자리 감소, 형평성 논란 등 우려 요소가 있어 전환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합리적인 전환결정을 위해 전환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도 민간위탁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별도의 전환기준이 마련되는 2018년 이후 시점에 검토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민간위탁 사무는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등 24개 사무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수탁기관의 근로자는 20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편의 제공 및 거점수거장소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농소・강동권을 대상으로 재활용 문전수거를 민간위탁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문전수거 실시 후 도시환경이 전반적으로 깨끗해져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거점수거방식으로 운영중인 효문,

송정, 양정, 염포지역에 대해서도 수거체계 개선을 바라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전수거로 전환하고 그 운영방식으로는 청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 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전환인원 선정, 시기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어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별도로 근로자 대표 및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규직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용역근로자는 시설물 청소원 37명, CCTV 관제원 20명, 청사 경비원 2명, 청사 안내원 1명으로 총 60명이고, 파견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직무분석 및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환결정을 하고 이후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의 지침 및 우리 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기준과 민선5기 출범 후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은 어떻게 되며, 이후 정규직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구청장 답변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인 전환대상 직무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시·간헐적인 업무 외 7개 항목의 전환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부서 71개의 기간제 근로자 종사 직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하고 있으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직무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을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3년 기간제 근로자 종사 7개 직무, 16명에 대해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 없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안승찬 의원님의 의견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에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구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 구청장 답변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여부는 직접고용 근로자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고 불이익 취급이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최종결정 기구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6 내지 10명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2분의 1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등 노동관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현재 71개의 기간제 근로자 종사 직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직무분석을 마치는대로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관련 계획은 어떻게 되며, 무기계약직 결원시나 신설 고용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구청장 답변

먼저, 정원관리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수를 정하고, 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정수 관리 규정」과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용절차, 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 정액급식비는 매달 13만원이며, 복지포인트 지급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 및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다른 구에 우선하여 장기재직휴가, 특별휴가 등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자녀입영일 휴가제

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정수관리규정에 의거 50명 정원으로 결원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의거 여러 가지 후생복지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지급기준수당의 60%를 연2회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 120만원에 가산포인트를 포함하여 지급하며 정액급식비는 매달 1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 의견 수렴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무직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의 결원 및 신규 충원시 정규직 고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의 채용은 기준인건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결원에 대한 충원 및 신규채용은 일반직의 필요성에 대한 직무분석은 물론이고 일반직 채용 대상 직무라 하더라도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공무직 및 신규 충원이 필요할 시 직무분석 및 기준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구 용역사업 중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수탁자를 2개 업체로 한 사유와 경기도 업체를 선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본 사업은 예정금액 6억 9,417만 6천원으로 총 사업비 5억 이상에 해당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규모 용역이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진행하여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울산 지역 업체가 수탁자가 되었으나 올해 사업의 경우 2016년 09월 1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진행을 못하고 전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와 울산, 2개 업체가 수탁자로 결정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북구체육회가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자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청장 답변

쇠부리체육센터는 지난 6월 23일 제10차 본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초과 문제로 인해 직영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의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구)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비정부 비영리 체육단체이며 체육운동을 범 구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여 구 및 국위선양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북구체육회는 울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제5조, 제36조에 따라 시 체육회의 지회이며 체육회 회장은 통합체육회 권고안에서 구청장을 추대토록 하여 그 회장직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위촉된 사항입니다. 북구체육회 뿐만 아니라 울산을 제외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50개 구군 체육회장 선임 현황을 조사해본 바 서울 노원구, 강북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49개 체육회장이 단체장으로 위촉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단체장이 체육회장인 49개 지자체의 체육센터 위탁 운영사례도 조사해 본 결과 직영운영 6개, 시설공단 위탁운영 22개, 민간위탁 3개 외 11개의 지자체는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탁기관 모집시 북구청장이 회장인 북구체육회의 신청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북구체육회는 현재 구 관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종합대회 참가,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및 강동해변 몽돌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확보 등 체육관련 인적 네트워크 및 경험이 풍부한 단체로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및 구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사업에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북구체육회의 참여는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중시하고 공정해야 할 자치단체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처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청장 답변

북구 체육회의 민간위탁 사업 참여 자체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쇠부리체육센터의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것이며 타 지자체의 사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그 법적 절차 및 근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단체 선정 과정에서 수탁 신청기관의 범위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 공개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회계, 행정, 체육, 시설관리 분야 전문가로 한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 공개모집 후 3배수 후보자를 만들어 수탁 신청기관이 직접 번호를 추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채점 시에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의 점수를 평가점수로 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홉 번째, 앞으로 쇠부리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구청장 답변

쇠부리체육센터는 민간위탁 운영키로 하였으나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생활체육센터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의거 그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용에 관하여 절차 및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용료 또한 조례에 의하며 구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초

기이니 만큼 직영으로 운영 중인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생활체육센터와 같이 안정적인 시설운영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수인계,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협약을 위해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시 우려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사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 근로자 관리,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비의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안) 마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할 것이며 운영 또한 지도 감독, 지휘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올해 동 체육대회 개최에서 주최를 '북구체육회'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생활체육회 발족 이후 동 자생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체육회가 주최하는 것에 대해 조례를 어겼다거나 빼앗아 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지며 농소1동, 강동동 체육대회는 주민들의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화합의 장으로 성황리에 잘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70회 임시회(2017. 11. 20.)
ㅇ 질문요지 : 농소2동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농소2동 운동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 궁금하며 향후 운동장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괄목할 만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우리 구가 포함된 북부대생활권은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등으로 계획인구가 24만 9천명이며 그 중 농소2동은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을 비롯한 지역개발로 인해 현재 인구가 3만6천명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인구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구는 주민들의 문화·체육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고 여가선용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6년 8월 지역 구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뒤 동천강변 신천동 67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2억원, 부지면적 26,000㎡ 규모로 농소2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소2운동장의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 12월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시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 중으로 현 부지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비로 경지정리 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고 구획 정리되어 식량생산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매우 높은 우량농지로 주변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용 가능한 토지가 많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운동장을 조성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없다는 시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10,000㎡ 이상) 해제 대상으로 1차 협의부서인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 관련부서 협의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 방문협의를 통해 농소2운동장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공감으로 구정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수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o 질문일시 : 제171회 임시회(2018. 1. 29.)
o 질문요지 : 북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첫째, 북구체육회 회장인 박천동 구청장은 북구체육회 소속으로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14명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였습니까?

▶ 구청장 답변

2017년 근무평정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18조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14명에 대해 평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까?

▶ 구청장 답변

생활체육지도자 평정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18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무성적 평정표 중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를 0점 처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별지 제3호에는 평정요소, 배점, 평정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평가요소 중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 항목의 점수기준에 감점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 생활체육지도자 근무평정 시 체육회 사무국에서 요약한 근태관리현황표와 별지 제3호 점수기준에 근거하여 평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북구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0점 처리하였습니까?

▶ 구청장 답변

사무국장 1차 평정은 근태관리기록부 및 근태관리현황표 등을 기준으로 평정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요약한 근태관리현황표를 참고하여 평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하지 않고, 해당 지도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이 사실입니까?

▶ 구청장 답변

생활체육지도자 평정 후, 근무성적 평점 70점 미만인 지도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 체육회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해당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원회 개최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절차의 흠결을 인지하여 해당 사항을 당사자에게 3회 고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규정에 의거하여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규정을 어긴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며, 이후 절차의 흠결을 인지하고 최종적으로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근무성적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태관리기록부'를 잘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수업을 받는 회원들의 담당과 면담이 있은 후에 근태관리기록부에 '출근지각'이라는 글자를 10개 적어 공문서를 위조했던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태관리기록부"와 "생활체육지도자 근태현황표"로 관리하여 왔으며 2017년 12월 근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근태관리기록부 비고 부분에 지각 및 조퇴 등의 사항을 이기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도적인 공문서 위조가 아닌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2017년 5월경 해당지도자에게 000금고에 요가수업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 구청장 답변

따로 보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생활체육지도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북구체육회 이사장을 역임한 000금고에 수업을 강요한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생활체육지도자는 비록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많게는 20년 가까이 우리 북구에서 일한 사람들이고 모두 스포츠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너거, 니, 해라' 반말을 통상적으로 하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은 엄연히 폭언인데, 이에 대해 체육회 회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부터 많게는 20여년 가까이함께 일해온 식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반말, 폭언 등은 직원 사기 저하 및 능률향상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회장으로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체육회 사무국 내에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의하면 위원은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학계도 없고, 주무부처 담당관도 없고, 외부 전문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지도자에게 부당해고를 한 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구청장 답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3조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4월, 당시 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해당 사무국장이 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시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1일 개최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은 의결 요구권자로써 참석하였으며,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추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본의원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박천동 구청장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체육회 회장에서 사퇴하고, 사무국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들이 체육회가 아직 행정적으로 기대 못 미치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점을 엄중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구체육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업무 및 행정능력을 배양하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면질문 및 답변요지

ㅇ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ㅇ 질문일시 : 제171회 정례회(2018. 2. 1.)
ㅇ 질문요지 :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시 도로 밑 통과박스 설치 관련

산업로 확장공사시 3개천(신천천, 이화천, 약수천) 도로 밑으로 통과 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는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시 도로 밑 통과박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85,580백만원(국비42,790, 시비42,790)으로 2016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9월 준공예정인 도로확장[L=4.63km, B=20→30m(6차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이화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등 위험한 산업로를 횡단하여 등·하교하고 있는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구간(이화천, 약수천, 매곡천) 내 도로하부 통과박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행청인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이화천, 약수천, 매곡천 구간의 도로하부 통과박스 설치를 수차례 건의(서면협의 3회, 방문협의 등 5차례)하였으며 울산광역시로부터 약수천 및 이화천 구간은 기존 통행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량하부 통행로 설치가 기 설계 반영되었으며, 매곡천 구간은 교량 재가설 후 단절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연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8. 2. 13.(화) 현장방문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한 이화천 구간 내 기 계획된 통행로 외 별도의 도로횡단 통과박스의 설치는 현장 확인한 바와 같이 토지 추가 보상, 송유관 및 가스관, 상수관의 지하매설물 저촉에 따른 이설, 소요 사업비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과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승인절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및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을 위하여 이화천 구간에 대한 도로하부 통과박스 설치가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절 5분 자유발언

o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o 발언일시 : 제162회 임시회(2016. 8. 25.)
o 발언요지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울산북구청의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600여 북구청 직원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대의정치로서, 지방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만큼 주민의 요구와 이해에 맞는 행정과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그들의 요구와 뜻에 따라 행정과 정치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자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정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마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가 생활정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과 보다 밀착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울산북구청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 개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 골목경제를 책임지고자 하는 단체장의 소신있는 행정을 공권력과 법의 잣대로 유린하는 것이며, 주민의 요구와 뜻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신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노동자국회의원이자 진보정치인에 대해

공안검찰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적인 선거법 위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새누리당 구청장에 의한 구상금 청구는 공안검찰의 정치탄압에 대한 동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역발전을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도 없이 북구청의 일방적 진행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며, 단체장 스스로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 개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처음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에도 집단민원과 행정사이에 이번과 같은 서로간의 입장차로 인한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21년 전 처음으로 단체장을 선출한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단체장의 소신있는 행정과 정치적 결단으로 인한 문제부터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단체장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으로 선출된 순간 개인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주민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직의원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는 그 결과를 떠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집단민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나름의 정책 실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재로 남을 것입니다. 단체장은 앞으로 어떠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 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윤종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입점을 반대한 것은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골목상권을 위한 지방단체장의 판단이고 상인과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장의 판단과 권한을 소송으로, 법으로 걸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지방단체장은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동대산 풍력발전소, 변전소와

송전탑 문제 등 주민들이 환경과 건강권을 주장하며 반대하지만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주민민원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은 모든 사업을 구청장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다면 주민의 요구에 대한 어떠한 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구청장이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법 때문에 들어 주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주민들의 요구를 법의 이름으로 짓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국가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소신을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광역의원을 거쳐 단체장을 하시고 계시는 박천동 북구청장은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그동안 해오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순간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단체장으로 이번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지방자치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구정 업무를 소신있게 해 가시는 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깊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충성어린 충고를 사심 없이 받아들이신다면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보나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차원에서나 도움이 되고 올바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o 발언일시 : 제163회 임시회(2016. 10. 11.)
o 발언요지 : 울산북구청은 지진과 태풍,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먼저, 태풍 '차바'로 인해 순직하신 고 강기봉 소방관과 2명의 울산시민에게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지의 울산 북구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복구에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례없는 대형 재난을 연거푸 겪으면서 지금 울산 북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또 '인재'사고의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는 대비 가능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 주민들은 더 참담함을 느낍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자연재해, 또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재난을 생각하며 불안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실시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국회 미방위의 윤종오의원실, 산자위의 김종훈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진재난과 핵발전소에 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울산시민들은 규모 6.5가 넘는 지진가능성에 대해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의 피해에서는 49.9%가 핵발전소로 인한 2차 피해를 가장 두려운 피해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 · 6호기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반대가 60.5%로 찬성 13.7%보다는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역대 최대의 지진을 수 차례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몸소 경험한 지

진의 공포는 대단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숙지하지 못한 매뉴얼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비를 질질 맞으며 학교운동장에 삼삼오오 모였지만, 누구하나 주민들을 안심시키거나 유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민들 곁에는 행정기관도 대의기관도 없었습니다. 지진발생시에는 모두가 우왕좌왕했지만, 북구청에서 지진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주민행동요령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한 것은 발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북구의회에서도 강북교육청 담당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필요시 옥외음수대와 조명을 켜게 하고, 화장실 이용을 제한적으로 유도하에 개방하기로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후속 작업으로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안된 농소2·3동, 효문동 주민센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내 공동주택 내진 설계 현황을 빠른 시일내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학교에 대해서는 피해현황과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지진 때도 그랬고, 태풍 때도 그랬고, 재난문자를 받아본 주민들은 더 분노해했습니다. 태풍 '차바' 때 적절한 시기에 재난 문자를 보냈더라면 지하에 있는 차량을 빨리 대피시켰을 테고, 아깝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재난문자를 보내야 함에도 뒤늦게 보낸 문자로 인해 주민들은 더욱더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우리 북구지역에서 발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진과 태풍보다 더 공포스러운 핵발전소 사고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질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반영도 하지 않고 신고리 5 · 6호기를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울산 북구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거대한 담론도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 요구도 아닙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은 울산 북구 주민

들의 생명, 안전의 문제입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어서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으면 비상사태시 울산북구주민들의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를 묵살하거나, 방치하거나, 해태한다면 대량 인명 피해 앞에서 '천재지변'을 빙자한 사실상의 살인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진과 여진, 그리고 태풍 등으로 건물과 지반은 약화된 상태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합니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합니다.

인구 20여만명이 살고 30km 내에 대도시는 없으며 산지로 둘러싸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6기가 단 한차례의 지진으로 전국토를 재앙의 땅으로 몰고 갔습니다. 340만명이 살고 있고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면서 얕은 산지와 평지로 이루어진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12기는 단 한차례의 지진에도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혹한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o 발언일시 : 제163회 임시회(2016. 10. 11.)
o 발언요지 : 지진 및 핵시설, 노후 화학단지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울산지역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지진 및 자연재해로 인한 핵시설과 노후 화학단지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진에 이은 태풍 피해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자연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던 울산이 하루아침에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나 태풍의 수해를 입은 아픔보다 울산시와 정부에서 보여주는 실질적인 대책 하나 내놓지 않는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불신으로 수해를 당하신 농민들과 상인,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경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발생한지 석 달,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이보다 훨씬 앞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설치한 국민안전처는 국민 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자 하나도 제때 보내지 않아서 온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로 인한 수해 복구에도 예산 타령으로 늑장 대응이다 보니 정작 수해를 당하신 농민들과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도시라는 허명아래 세금은 최고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울산 시민의 안전문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고, 자연재난 대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울산광역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울산시교육청은 태풍이 들이닥치는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등교를 시키는가 하면, 하굣길 위험에 대해서도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며 모든 학부모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울산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는 모두 88개교인데, 이는 전체 학교 437개 가운데 20%나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자율학습을 강행하는 안전 불감증을 보이고, 지진대비 교육이나 그 어떤 재난대응 매뉴얼이나 시나리오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학교가 무너져 어린아이들만 떼죽음을 당하는 최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내진 보강 공사는 현재의 예산대로 집행한다면 완료하는데 10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울산시민들과 어린학생들은 대재앙 앞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예상을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사고로 우리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땅과 물, 공기 등 한 국가의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그야말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울산은 고리와 월성에 가동 중인 14기의 원전이 있는데, 정부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체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가동 연장했고,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고, 고준위폐기물이 임시저장시설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원전 납품비리가 채 기억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험성적서 위조가 의심되는 허위 부품을 가동 중인 원전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진으로 불안한 민심에 원자력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가짜라면, 큰 지진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재앙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불안한 원전은 오늘도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반경 30km에 위치한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등 수백만 명에게 재앙이 닥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6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민 여론조사 결과, 120만 울산시민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인 80%이상의 시민들은 6.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2차 재해인 핵발전소 사고(49.9%)와 화학공단 사고(21.7%)를 가장 치명적인 위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울산시장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유독물 취급업체는 471곳에 달하며, 한해 유통한 유독물은 3,445만 톤으로 그 종류만도 초산, 염산, 염소, 암모니아 등 138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류를 비롯한 액체 위험물도 6,185개 시설에 2,116만 kℓ가 저장돼 있고, 석유화학단지 지하에 위험시설인 가스 화학물질 배관이 1,000km 넘게 매설되어 있으며, 이중 54.4%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들입니다. 그런데 50년 된 노후 화학공단과 울산도심의 거리는 정작 5km에 불과합니다. 1984년 인도 보팔의 농약제조공장 유독물 누출 사고로 2만명이 사망한 사건 또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들은 지진이나 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만일을 사태에 최소한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 울산시민들은 누구나 대피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아울러 재난대응 및 대피 매뉴얼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지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양산, 울산, 경주지역이 활성단층이란 사실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지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 가동중단과 추가적으로 건설 중에 있는 원전시설에 대하여 공사 중단을 촉

구하는 울산시와 울산시민의 청원을 중앙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0년된 화학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점진적인 내진설비 시설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이행 강재와 촉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는 충정에서 지진 및 핵시설 · 노후화학공단 안전대책 수립에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o 발언일시 : 제163회 임시회(2016. 10. 13.)
o 발언요지 : 태풍 차바 피해 복구사업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에 땀 흘리고 주민들의 하소연도 들으면서 노심초사 하시는 박천동 구청장임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돌며 안타까움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정복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과 두 번 다시는 이번 태풍 “차바”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복구사업과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크고 많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천재지변과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인재가 겹친 피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로 인한 그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흘러 듣지 말고 현장을 가보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에 근거하여 피해복구 사업을 시행해야 똑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두 번 세 번 입지 않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고치는 외양간 제대로 고쳐 두 번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먼저, 주민들은 <하수구 정비와 설치에 대하여 민원을 제가 하였는데 처리 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감당이 안 되기는 했겠지만 하수시설이 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하수시설에 대한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우선 검토하여 북구를 하면서 정비를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상방지하자도의 경우, 이번기회에 상방사거리일대 상습적 침수 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두 번 다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울산시 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를 개선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주민들은 < 호계 매곡 지역 등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과 오토밸리로 공사 등 도로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산에서 벌목 작업 후 후속 처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벌목 등을 방치함으로 생긴 피해>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 공사 전에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생한 것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공사현장이 모든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사업 후 후속 처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사현장의 안전 점감을 철저히 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인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곡 사당골 저수지의 경우처럼 D등급을 받고도 공사를 지연하는 가운데 붕괴사고가 생겨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수지 붕괴는 큰 피해와 사고를 가져 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수지에 대한 안전은 중요합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24곳 중 4군데가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C등급도 9군데입니다. 이번 달곡 사당골 저수지처럼 농어촌 관리공사 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더 한다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보수, 정비공사를 시급하게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천강과 지천 등에 설치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정비 공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야기 나오는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를 두고 하수 처리에 대한 진단속에서 각각의 하천과 교량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비를 해야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복구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는 속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 져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지원이 시급한 세대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구에서 총괄적 복구사업 계획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진행 하도록 건의드립니다.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지원은 모금운동을 통한 민관의 기금과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우선순위와 집중성을 정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빨리 복구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복구사업이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대충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도 "예전 그대로"의 복구가 아니라 "다시는 소를 잃지 않는 튼튼하고 안전한 외양간을 짓는" 복구사업이 되도록 신중에 신중을 다해 줄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5분 자유발언 방식으로 건의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번 임시회가 오늘 로 끝나면 5주후에나 의회가 열려 별도의 기회가 없어 이렇게나마 주민들의 마음으로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건의가 이번 태풍"차바"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 이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2016. 11. 21.)
ㅇ 발언요지 :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합니다.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이게 나라냐?" 온 국민들이 절망합니다. "박근혜 하야하라" " 박근혜 사퇴하라!" 100만개의 촛불이 호소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최순실 이야기만 듣고 나라를 운영했음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국민들은 절규합니다. "하야"하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 속에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는 책임감과 의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노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 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 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1. 국민의 이야기,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무당 최순실의 말에 따라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입니다. 연설문에서부터 외교까지 오로지 최순실이 짜 준 대사와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것은 한 국가의 원수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요?" 이 나라가 우주의 뜻에 따라 사는 미신의 나라입니까?

2. 세월호 304명의 아이들과 국민이 죽어 가던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할 그 시간에 도대체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차디찬 바다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304명의 아이들과 가족, 국민들이 원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 설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힘들게 가는 대학을 '돈 많고 권력 있는' 부모 만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이나 타면서, 고등학교 17일 등교하고도 졸업장을 받고 일류대학에 들어간 정유라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헬조선에 살 때 정유라는 천국에 살았습니다. 헬조선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당신은 "헬조선은 없다. 세계가 부러워 하는 대한민국만 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한민국, 당신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우리 다수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 국민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당신이 필요없기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4.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의 돈 800억원을 거두어들이고, 재벌들을 노동탄압과 임금착취 등 불법적 행동을 봐주고, 노동악법을 개정하여 재벌을 도와주는 등 오로지 박근혜와 최순실을 위한 경제를 해 오면서 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인과 도시 빈민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5. "통일대박"을 이야기 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극단적 긴장관계로, 전쟁위험으로 몰고 간 이유가 최순실이 2년 안에 북한은 붕괴한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이라면 박근혜 당신은 대통령으로 자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6. "13명의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는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국민이 뽑은 5명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무소속이 되어버린 지방의원들과 당원, 지지한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에 대하여 회복하고 위로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 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 요즘 국민들은 텔레비전 뉴스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뉴스를 보려고 8시면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매일 새롭게 터져 나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상상도 하지 않은 일, 설마 한 일들이 사실이 되면서 막장 드라마, 코미디 프로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파도 파도 끝없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똑바로 알고 제대로 조사하고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요구대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박근혜 하야" 이유 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몇 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2의 최순실이 나오고, 제3의 문고리 3인방이 나오고, 제4의 7인회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최순실과 비선의 범죄와 국민우롱, 국정 농단의 중심에 선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면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도 열지 못할 뿐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에게 행복한 가정,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해야 합니다.

100만개의 촛불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의 행진을 길어 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국민들의 마음이고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자 하니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 농단을 보고도 모르는 체한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기업들에게 돈을 모아 상납하는 전경련도 해체해서 다 같이 다정하게 손잡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그 첫 걸음이 "박근혜 사퇴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듣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2016. 11. 21.)
ㅇ 발언요지 : 최순실 국정농단, 비선실세 헌정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jtbc 뉴스 보도로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정권의 실체에 대해 국민 모두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급기야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연이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재벌기업이 연루된 각종 비리와 부정입학 특혜 관련한 뉴스 보도를 접한 국민들의 허탈한 탄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법과 원칙을 얘기 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인가,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다는 말인가?" 기가 막히는 뉴스 보도에 망연자실 하면서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바르게 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며 이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은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대통령의 자발적 퇴진을 요구하는 길 밖에 없다라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희생만 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공부해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으로 올 곧은 역사의 주역으로 새롭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며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는 대학생들과 나이어린 중.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앞에는 100만 촛불의 성난 민

심들이 모여 거대한 민중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난 민심의 저 밑바닥에는 박 대통령께서 그 간에 국정 운영에서 보여왔던 실망스런 독선과 아집, 불통의 국정 운영의 원인들이 결과로 나타났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생때같은 아이들을 국민 모두가 10시간이 넘는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망망대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던 절망 속에서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도록 했던 처참한 기억에서부터,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킨 사실상의 '국가 살임'임에도 여객선 사고로 치부했고, 나아가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편 가르기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통제하면서 거짓과 증오의 말들을 확산하고자 국가기관을 총동원했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3,000원 남짓 한 초등생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고, 보육예산은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 재정을 위기에 빠뜨렸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학문의 자유를 질식시켜왔던 반역의 국정운영에서 실망을 넘은 힘없는 국민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포와 방관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였던 성난 민심의 파도였습니다.

또한 대선 공약에서 쌀 수매가 인상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맨몸으로 시위에 나섰던 농민에게 물대포로 화답하며 한 분의 농민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었음에도 사망원인을 단순 병사로 은폐 조작하려 했던 후안무치의 제왕적 절대 권력자 모습에서 실망과 분노를 넘어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박 대통령께서는 1차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필요 시 자신도 검찰 수사, 나아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였고, 지난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시한 11월 16일까지의 조사 시한에 불응하고, 결국 조사연기를 요청하면서 대통령 출석조사는 헌법상 특권으로 회피하였고, 수사 받겠다던 본인의 말을 법률대리인의 입을 빌어 번복하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그동안 법과 원칙을 외쳐왔던 대통령을 향한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어 정녕 현 시국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기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국정농단, 헌법 파괴를 일삼은 대통령이 또 다시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며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그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며, 대통령의 그 말에는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지지율이 5%로 역대 대통령중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박 대통령 탄핵과 자진사퇴 여론이 74%로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최순실 게이트' 정국과 관련해 박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거나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국민들의 마음에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00만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에 부응하는 대신, 2선 후퇴'도 '하야'도 거부하면서 국민과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의 마음에는 박대통령을 지워갈 것입니다.

자발적인 퇴진만이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루어졌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습니다.

우상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제 자리에서 맡은바 임무에 묵묵히 복무해 왔던 국민들의 그간의 노력에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아집을 버리고 국민 앞에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죄하고 죄 값을 받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퇴진하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2016. 12. 8.)
ㅇ 발언요지 :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마라

존경하는 정복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주민을 위해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11월 21일에 시작된 2016년 제2차 정례회도 이제 오늘로 반을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내년 당초예산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보냅니다.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담하지만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당사자로서 마음 같아서는 당시 즉각적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울산 북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역대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라 개인적 감정을 억누르고, 지난 1주일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힙니다.

지난 11월 28일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원이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의 행정의 현황을 살피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주민들이 저에게 위임해주신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궁금한 점과 우려되는 지점을 물어보고 확인하였고, 담당 과장님도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를 들어가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담당업무 공무원이 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습니다. 피켓의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따라 행한 것이니, 제대로 알고 질의하라'는 내

용이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례나 규칙을 어겼다고 지적한 것 없습니다. 왜 급식센터에 들어오는 품목이 줄었는지, 친환경농가수가 줄고 생산량이 왜 줄었는지, 왜 전산프로그램을 바꾸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제5대 의회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밤늦게 정산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퇴근했는데 다시 구청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업무를 하고 본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공무원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이는 단순히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에 저는 자중 또 자중했습니다. 그 담당업무 공무원은 행감 중에도 저 개인 핸드폰으로 두차례에 걸쳐 강압적인 문자를 보냈으며, 사과하라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설령 억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공식적인 결재라인을 통해 의원에게 해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면 될 일이지 막무가내로 피켓시위를 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게 과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대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과 행감이 있었던 다음 다음날 마지막 행감날인 11월 30일입니다. 아예 그날은 아침부터 부의장실 앞에서 항의성 글을 부착하고 연좌농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의회에 항의하고 협박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북구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안하무인인 공무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도대체 박천동 구청장은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마침 방청했던 기자가 있어서 연좌농성하는 것이 버젓이 언론에까지 나왔습니다. 굳이 저의 명예훼손까지 들먹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공무원의 전횡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11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의무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전국급식지원센터의 모범인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민관협치의 정신에 맞게 정상운영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장에 난입하여 문제를 호도하고 지역언론을 활용하여 계속

문제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늘어놓아 지금 언론에는 북구친환경급식센터가 마치 규정도 지키지 않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왜곡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민관협치로 운영되어야할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자격이 없습니다. 대의기관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신의 업무에 대해 지적했다고, 이렇게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자신의 업무를 방어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킨 공무원에게 엄중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이자 북구청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구청장님도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북구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과 더불어 현사태를 이지경으로 몰고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은 2차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재발방지책과 엄중한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이수선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2016. 12. 15.)
ㅇ 발언요지 :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일 개최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본 의원의 발의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교류협력에 노력해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범위는,

-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손상 예방 및 안전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련 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상호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국제 안전도시 WHO 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나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북구의회의 심의결과, 저를 포함해서 이상육, 백현조 의원이 찬성을 하였고 4명의 의원이 기권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를 통과시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저의 소망과 안전행정을 기대했던 북구 주민들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고유의 임무이자 권한입니다만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기권한 의원님들은 북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지, 왜 기권을 하였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는 북구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64회 제2차 정례회(2016. 12. 22.)
ㅇ 발언요지 :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민관거버넌스 정신에 맞게 운영하라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뿔이 났습니다. 뿔난 국민들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 주말마다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234만의 촛불이 국회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답변서에 국민들의 촛불은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특검도 국민촛불의 힘으로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리정치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정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못하면, 또 국민의 대의기관이 제대로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민관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민관협치, 민간인 주민들과 관인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정치를 해 나가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민관협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참여가 중요시 되는 요즘,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을 추진하면서 운영되었습니다. 센터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급식운동을 해 온 전문가가 맡았습니다. 농수산과에 친환경급식계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울산북구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민관거버넌스를 훌륭히 해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급식지원센터는 농사를 짓는 작목반을 설득하여 친환경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 한명의 작목반이 20여명의 작목반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영양교사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모양이 못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쓰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을 다니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 친환경 및 생태친화적인 식재료로 만든 품목들을 늘려가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는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말 경 민간의 센터장이 계약만료로 그만 둔 이후로 공무원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센터장은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성이었는데,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오면서 민관거버넌스의 정신들이 하나둘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농수산과는 시행규칙마저 변경하여 이제 공무원만 센터장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관거버넌스의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도 그간의 급식시민단체를 배제하여 큰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아 매번 회의 때마다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을 행정의 들러리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은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다보니, 급식센터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영양교사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작목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센터 전산담당자와 학교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센터 검수검품 담당자와 친환경작목반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급식지원센터에 앉아서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발상이면 당장 센터장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친환경작목반을 잘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친환경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 농사짓는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기술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어떻게 매출의 3배를 올리고, 계약재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안전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 급식센터 품목을 늘리는 것도 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울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시대가 도래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빨리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정상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65회 임시회(2017. 2. 9.)
ㅇ 발언요지 :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여 수명 연장된 월성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라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윤치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월 7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국민소송원고단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승소 판결된 월성1호기의 즉각 가동 중단을 요청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원전 안전 관리가 '개판'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원전(핵발전소)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7일 내려져 정부의 원전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명 연장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만, 핵심은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관리망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으로 밝혀졌다는 데 있습니다.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이미 지난 2012년에 적법한 절차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동을 중단했지만, 재가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원안위의 판단에 의해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휘둘려 온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이 원자로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당시 원안위는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울산과 부산 지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핵발전 시설 밀집지역이며 인구 밀집 정도를 감안해 보더라도 최대 인구 밀집지역에 최대의 핵발전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 또 후손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물려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규정과 절차마저 무시하고 졸속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던 울산 동구 앞바다의 지진으로 불거진 지진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작년 9월 12일에 일어났던 경주지역의 5.8의 강진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무수한 활성단층이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 만큼은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울산과 부산 시민들을 위해 재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재난전문안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작금의 안전불감 상태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은 법원의 판결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셈입니다.
따라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원안위라면 더 이상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인류와 후손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노후원전의 재가동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법원판결로 잘못이 드러난 이상 즉시 가동중단 되어야 합니다.

지진불안과 핵발전 시설의 재앙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위협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재차 요청합니다. 원안위는 재판부 판결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운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일어났던 강진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 한다면 핵발전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핵발전소 건설 중단 입법화는 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정치권과 차기 대선주자들도 신규 핵발전소 계획 폐지 및 기존 원전시설의 단계적 폐기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주지진이 발생하고 관련 정밀지질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대 핵발전단지에 신규 건설은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o 발언일시 : 제165회 임시회(2017. 2. 17.)
o 발언요지 : 현대중공업과 김기현 울산시장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과 탈울산으로 울산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북구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승찬의원입니다.

새해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에 국내외 정세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불안을 하루 빨리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7년 한국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경제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분사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타 지역 이전 소식은 울산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생존에 대한 더한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그린에너지, 서비스사업 등 6개 법인의 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잠정 영업이익 1조 6,419억 원을 흑자 기록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회사 측의 발표와는 달리 엄청난 흑자가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위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강행, 노동자와 지역 상공인의 생존을 심각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과 분사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이 아니라 재벌 지배체제 강화와 편법 경영권 승계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현재 34세인 정기선 전무의 재벌 3세 후계 작업을 위한 포석인 것입니다.

정몽준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지분 10.15%를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13.4%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사주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가 자사주 비율만큼 신주를 배정받게 돼 의결권이 생깁니다. 현대중공업 자사주가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로 이관돼 의결권이 생기면 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분할되는 회사의 본사가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과 현대건설기계는 서울로, 현대로보틱스는 대구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부산으로 총 4,400명이 분할을 통한 탈 울산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에 이어 많은 노동자가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울산을 떠나는 사태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분사와 탈 울산은 울산 동구 뿐 아니라 울산 지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원·하청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조성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화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협의하여 공사비와 보상비 등 1,025억원 을 투입하고 부담금 역시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양과정에서 분양가 특혜논란까지 일으키며 현대중공업의 이화산업단지 이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혈세를 특정 재벌에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노동자의 삶과 지역 경제에 큰 상처를 주면서도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오로지 대기업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사회적 적폐입니다. 청산되어야 할 재벌 폐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벌들의 무책임한 갑질을 청산하는 것은 촛불민심의 요구이며 국민의 요구입니다.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울산경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120만 울산시민의 행정을 책임진 김기현 시장과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5개 구군 단체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세우지 않는다면 김기현 시장은 120만 울산시민의 시장인지,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한 시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탈 울산을 막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 중소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를 죽이고 재벌을 위한 구조조정, 분할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은 현대중공업 분할 중단에 책임 있게 나서 120만 울산시민의 삶을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o 발언일시 : 제166회 임시회(2017. 4. 28.)
o 발언요지 : 박천동 구청장은 북구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사랑하는 북구 직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받아 보고서 놀랐습니다. 중요한 구정사안을 의회와 사전에 한마디 언급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를 요구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집행부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기에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하거나 예민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논의하고 좋은 방향의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안을 올리면 좋을 텐데 무조건 의안을 상정하여 압박하는 것 같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가 없는 것인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 안 되는 관계인가? 사전에 공유하면 오히려 일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경청하면서 여러 직원들과 쟁점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도 묻고 토론을 하면서 해결 방안이나 다른 좋은 방향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박천동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구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공동으로 할 일과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동의 일은 북구지역 발전과 북구주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북구청은 주민의 혈세로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구정 살림을 잘

해 나가는 것이고, 북구의회는 북구청이 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운영될 때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주민"입니다. 주민을 우선 생각하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행복한 사업을 해간다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행정 중심이 아니라 주민중심의 구정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운영비 7억원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면서 '참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떠나 먼저 필요한 사람이 다가가 소통을 해 가면 되는데 왜 북구청과 의회간의 소통이 어려운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의회를 앞두고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묻거나 소통을 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박천동 구청장님께 의견을 전하고 들을 자리가 없어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쇠부리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진솔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로지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니 진심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쇠부리체육센터에 대한 시설 운영은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초기부터 건물의 하자 보수문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여러 문제의 보완 등을 초기에 잘 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여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쇠부리체육센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행정편의적인 사업 및 구상, 현실적 문제를 되풀이하면서 아무런 계획과 생각없이 쇠부리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의회가 올린 수정안인 "외청시설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비 1억원과 쇠부리체육센터 운영비 6억원"에 대하여 박천동 구청장님이 동

의해 주시고 의회는 의결하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외청시설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은 쇠부리 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우리 구의 외청 시설을 주민중심,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운영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하는 기간에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 엄정하고 정밀한 점검을 통해 하자보수·보완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북구청이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개관하여, 여러 운영방안을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방향을 찾고자 하는 저희들의 진심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동의함으로써 향후 방향을 함께 찾고 소통하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원생활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주민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기초의원들의 부정부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일처럼 여기고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가 북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언제나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또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저보다 의원으로서 선배이신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후배 의원들에게 좋은 의견과 상호 소통을 통한 구정 운영의 기회를 주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박천동 구청장님이 주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구청장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68회 임시회(2017. 9. 5.)
ㅇ 발언요지 :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하라

존경하는 정복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민중정당의 강진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18년 당초예산편성을 앞두고 박천동 구청장님께 우리 북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정책을 생산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경기도와 서울시는 혁신학교를 통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의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있어 서울의 같은 대학을 다니는 혁신학교 출신의 대학생과 지방의 일반고 출신의 대학생이 엄청난 격차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의 지자체들은 혁신교육지구니, 마을교육공동체니 하면서 마을과 학교가 만나고 있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문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타구로 이사 가는 것을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듯 교육여건은 정주여건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북구입니다. 타구로 인구유입이 안되도록 우리 북구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살아있는 북구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을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더 많은 고민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4조 보조기준액 등을 보면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데 대폭 인상할 수는 없는 문제지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구의 교육경비보조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처음 시행된 2007년에는 1억, 2008년 1억5천, 2009년에는 4억, 2010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3억으로 8년 동안 동결입니다. 2010년 당시 구세 결산 징수액이 307억원이고, 2016년 구세 결산 징수액은 657억으로 무려 2배가 늘어났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은 여전히 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면 구세의 0.45%밖에 되지 않습니다. 657억원의 2%이면 최대 13억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울산지역에 있는 타구군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울주군이 27억, 남구가 12억, 동구가 7억5천, 중구와 북구만 3억원입니다. 각 구군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보조기준액이 남구와 중구가 구세의 6퍼센트 이내, 동구와 울주군이 구세의 3퍼센트 이내입니다. 우리 북구는 보조기준액이 구세의 2퍼세트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점차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홍보실과 자치행정과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여 2017년에는 확대해 보겠다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집행부는 올해도 3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2월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도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앵무새처럼 알겠다는 답변만 되뇔 뿐,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5호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

화공간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른 타 구군에서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경우 미리 수요조사를 하여 교육청 예산과 매칭하여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교육청이 할 일이야, 이 일은 시가 해야 할 일이야 나누기 전에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고 시행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특성화 교육시설 지원 강화' 구청장님 공약사업 맞으시죠? 4개 해당학교에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예산 편성 안하시고, 교육경비보조금 3억원에서 나가는 것 맞죠? 공약사업이면 예산을 따로 편성하셔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교육경비보조금 3억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특성화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는 예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처음 시행할 때보다 지금 우리 북구 인구가 20%가 더 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처음 시행할 때보다 구세가 30% 더 늘어났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인상하여 우리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68회 임시회(2017. 9. 5.)
ㅇ 발언요지 :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이제 6대 의회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주민들께서 부여해 주셨던 권한과 임무는 저에게 한없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고, 반성할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제대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 하였는가 라는 성찰 속에서 반성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력들 가운데 성과와 보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이 저와 우리의회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 우리 북구 지역발전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생각이 다르고 그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목표는 동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가 앞으로도 북구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해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 라면 구민들로 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해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 5·6 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공론화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지는 일정이 진행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 주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가진 소통과 토론 속에서 올바른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단순히 신고리 5·6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부분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의 토론 속에서 결정되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신고리 5·6 호기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기에 국민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당장의 경제논리로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안전 문제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모험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적으로 판명된 핵발전소의 위험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위험 요소를 없애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추가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울산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울산단층, 일광단층, 양산단층 등 울산 인근에는 62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7월 5일 규모 5.0,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을 겪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진의 여진은 8월 26일 기준 총 633회가 발생했습니다.

▶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울산 100만, 부산 250만, 양산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지역에 이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없습니다. 또한 한 곳에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은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과정에 지진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안정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핵발전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저장소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만약 위험상황이 닥치면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소처럼 위험한 것임에도 아무 대책도 없이 고준위폐기물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이 28.8%라며, 짓던 것은 짓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률은 9%에 불과합니다. 설계와 구매까지 합해서 28.8% 공정률이라고 한 것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18.8%의 공정률을 기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2조가 넘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만 2조 7천억원, 폐로비용 2조원, 사고대응비용 58조원 등 60조원이 넘게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안 된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 언론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관해 전력수급문제, 전기요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설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스발전소는 가동률 30%대로 절반 이상이 가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비용 낭비입니다.

▶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세계 평균 핵발전 비중은 1996년 전체 발전량의 17.6%를 차지하다가, 2015년 10.7%로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 재생에너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핵발전 전력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일자리가 3만명이었는데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이 30%가량인 지금 일자리는 30만개로 늘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다가 안전성, 경제성, 탈원전 정책 결정 등

으로 중단한 원전은 92기에 달합니다. 미국은 최근 건설 중인 4기 중 이미 5조 원이 투입된 2기를 경제성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재벌의 이익, 핵피아들의 이익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안전을 저당 잡히고 불안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앞서 울산시민들의 올바른 정보 속에서 판단하기를 바라며 공론화 과정에는 반드시 울산과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o 발언일시 : 제168회 임시회(2017. 9. 18.)
o 발언요지 :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결과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20만 북구 주민여러분!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민중정당의 '윤치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위한 소신행정 결과가 손해배상 지급 결정이라는 결과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4일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진장유통조합에서 제소했던 손해배상에 대하여 북구청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청구액의 20%에 해당하는 1억 14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선고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소신행정에 대하여 단체장의 정책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반민주적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북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소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대형마트의 입점 거리제한, 의무휴업일 등이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득이 된 행정이었음에도 윤종오 구청장은 퇴임 이후 벌금 1천만 원과 자택마저 가압류 당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윤종오 전구청장은 재임기간 내내 누구보다 친서민적인 정책으로 주민 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소신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에 따른 사건의 본질은 외국계 대형유통기업의 끊임없는 탐욕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북구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1년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 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에 코스트코 마저 허가할 경우 3만 6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불을 보듯 뻔(명약관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의 코스트코 입점반대 농성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었고, 윤종오 당시 구청장은 상인보호 장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건축 허가를 반려하게 되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형마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경제와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때 정치와 행정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누가 유통재벌들의 행태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시세를 넓혀가고 있었던 유통대기업들의 문지마 확장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든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피력할 수 없게 만든 반민주적이고 반공공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코스트코 허가반려에 따른 구상권 청구결정 판결은 법리적 공방을 떠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성장을 후퇴시키고 단체장의 소신행정에 대하여 발목잡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소신 행정과 주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임 단체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의 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판결로 높아가는 지방자치 확대요구가 제약받지 않을지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또한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고 스스로 지방정부 권한을 훼손하며, 믿고 선택해 준 주민들을 향한 정책의무마저 저버린 것은 도의가 아닙니다.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결정에 따른 1심 선고 결과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단체장의 사리사욕이 아닌 골목상권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 속에 판단된 정책적 결정과 소신행정이었기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발언의원 : 백현조 의원
o 발언일시 : 제169회 임시회(2017. 10. 18.)
o 발언요지 : 신고리 5, 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현조 의원입니다.

울산의 미래는 울산에서 결론 지어야 합니다. 울산시민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공론화 위원회는 울산 미래에 대한 문제를 결정지을 권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울산은 가난한 어촌마을에 불과했지만 지난 60년대 공업도시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간다는 사명감 하나로 울산시민은 묵묵히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공해도시'로 낙인찍히고, 공장부지로 삶의 터전을 내주면서도 나랏일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온 울산의 현재는 공단건설로 인해 위험성 건물이 집중되어 있고 울산 주변으로는 울산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많은 원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울산이 이젠 정부를 믿고, 우리 원전기술을 믿어 대한민국 원전건설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벗고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자율유치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울산경제를 살리고 백년대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양보해온 울산시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탈원전정책'이란 미명하에 1조 6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공정율 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과 동시에 완장을 차고 휘두른 졸속 에너지정책에 니편내편으로 갈린 채 대한민국이, 울산이 멍들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할 것을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저렴하여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세 번째, 일본, 영국,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석탄과 신재생에너지를 골고루 운영하면서 원전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영국, 일본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네 번째, 신고리 5·6호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내진설계는 물론 최악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량의 방사능 외부누출을 막도록 설계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율 30%에 가까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면 보상 및 매몰비용을 포함해 약 2조 8천억원에 대한 추가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될 경우 향후 공사기간동안 예상되는 연인원 7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신고리 5·6호기는 정부를 믿고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자율유치로 신청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울산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이런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전의 대체에너지로 거론되는 LNG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증가, 조기사망자가 석탄화력발전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온실가스 증가로 환경 오염을 가중시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전세계적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여덟 번째,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적 절차상 원전건설중단 결정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아홉 번째, 수십년간 노력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원전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수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원전건설이 중단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원전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성과가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5년임기에 지나지 않는 정권의 독단적 잣대에 모든 성과가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백년대계로 계획되어야 할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전력공급에 대해 당분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실제로 문제가 될 신고리 5·6호기 준공시점인 2022년 이후를 대비한다면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국가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정책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소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며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실험대상으로 생각해선 결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울산 시민들의 울부짖는 외침을 무시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69회 임시회(2017. 10. 18.)
ㅇ 발언요지 : 문재인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입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안전한 울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북구주민여러분!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여러분! 민중당 안승찬 의원입니다.

사람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도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돈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서로 어울려 안전하고 평화롭게, 가족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현대사회가 만든 것은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 등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보다 돈을 중시한 우리가 만든 사회는 결국 우리 자식들에게는 '헬조선'이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세상이 만든 것은 인간성과 공동체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본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안전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땀 흘려 만들어 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스리마일 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전력실

험 중에 일어난 인재이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일어난 재난 사고였습니다.

핵발전소는 누구도 100%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5.8의 지진을 경험한 울산은 결코 지진으로부터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단 0.0001%의 위험에 대한 가능성에도 우리는 탈핵정책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하나,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천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땅위에 핵폭탄'을 올려놓고 우리는 그 옆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면 국민의 안전에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듯이 핵발전소 옆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울산시민의 마음을 공약에 담아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약속하며 '원전제로'인 '탈핵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하였고, 탈핵시민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 정책협약도 진행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표를 주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론화위원회는 국민들에게 갈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찬반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약을 이행하도록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해야 합니다. 소련정부, 일본정부와 같이 정보를 틀어쥐고 국민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어기지 말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탈핵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갈 국가의 책무이자 대통령으로 최우선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나라를 망쳐 온 핵마피아 적폐를 청산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올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가동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없어도 충분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고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건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는 탈핵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 중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지구의 무한한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원이 되는 시대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세상과 다르게 가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나라가 건설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에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핵발전소에 머물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싸다고 하지만 핵발전소 해체와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할 핵 폐기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핵 쓰레기를 그냥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십만년 백만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다면 더 싼 전기, 더 안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목숨 걸고 핵발전소를 주장하는 핵 마피아들은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세상은 달아 집니다.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 중 "불시불(佛示佛)과 돈시돈(豚示豚)"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지만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기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바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면 모두가 죽음을 부르고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몰락하는 에너지 정책 핵발전소를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똑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주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발언의원 : 백현조 의원
o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2017. 11. 20.)
o 발언요지 :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현조 의원입니다.

염포·양정동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까지 울산의 주력 산업인 현대자동차와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번화한 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인구 유출, 협소한 지역 여건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근무방식 변경과 지역 개발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74%나 되는 등, 2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이 개량 없이 노후화가 지속되어 환경이 열악해지고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 염포·양정동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보면 염포·양정 일원에 국비 50억에 시비 25억, 구비 25억원을 합하여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면, 2015년 12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제1차, 2차 관문 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10월에는 도시재생특위 심의결과, 활성화 국가지원 사항이 확정되었고, 2020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염포·양정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토목, 건축 등 물적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덧입힌 문화 콘텐츠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는 도시재생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인공물과 역사적 장소 등을 중심으로 그 곳에 깃든 이야기를 콘텐츠화 하는 방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염포동은 '소금나는 갯가'라 불리며 부산포, 제포와 함께 삼포개항지로서 교역의 중심지였으나 공단 조성으로 인해 역사성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성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 단절된 지역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소금포 역사관 조성, 콘텐츠 개발, 기록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로 변모한 과정을 담은 복합 문화전시 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정동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변모한 과정을 스토리텔링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상품화 하고,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 등 지역의 상징 거리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사업 계획인 구 양정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생활 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포·양정의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대학 운영, 싱글벙글 오치로드 만들기, 벽화거리 조성, 제1·2차 안전마을 만들기 준공 등 차근차근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2018년도 완공 예정의 염포운동장 건립 사업도 주민의 여가생활과 체육 동호인의 취미 활동은 물론, 마땅한 행사 장소가 없던 염포동 주민들이 마음 놓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됨으로써 이 또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 기대했고 노력했던 염포·양정동의 상권 활성화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염포·양정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매력을 더해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쇠퇴했던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염포·양정동이 떠나는 동네가 아닌 찾아오는 동네가 되기를 바라며 거듭된 재생사업으로 새롭게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이상육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2017. 11. 20.)
ㅇ 발언요지 :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믿음과 신뢰로 거듭나는 북구의회가 되길 바라며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상육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주민의 뜻을 모아 꿈과 희망의 이름으로 출발한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정운영을 평가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를 사랑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아쉬움과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회 임원과 선수단 유니폼 구매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매업체 선정과정 및 구매방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타당하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과도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공금횡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공무원도 연루돼 있다는 것이네요.” 라는 발언, 또한 답변하는 부서장에게 “사람이 살살 봐주면서 제대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지”라는 등의 발언은 너무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의원은 합리적 의문이 드는 업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이 확인된 이후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마치 죄인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듯한 발언은 의원 스스로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북구의회 민중당 소속 의원들의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9월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

견을 하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으로 접한 시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이 뇌물 수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혹을 제기한 어느 한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사자가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 맞는지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된 사실을 말함으로서, 구청과 공무원들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북구의회 민중당 소속 의원들은 10월 보도자료를 내고,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을 제기해 관련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북구청과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북구청 직원들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더 이상 인용하기도 민망할 뿐 아니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원들 및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민의를 받들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은 구 행정의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나 오해를 받을 때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스무살 성년을 맞이한 북구의회입니다. 이제는 한층 더 성숙된 자세로, 진정한 구민의 눈과 귀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로 거듭나는 북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잘못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도 부족한 점은 없는지 숙고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는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더욱 발전하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 의원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2017. 11. 20.)
ㅇ 발언요지 : 포항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복금의장님과 동료의원, 박천동 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 민중당 안승찬 의원입니다.

지난해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가져다준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발생 한지 1년 2개월 만에 또 다시 예고 없이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결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여 차례 여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지진의 여진이 640회 이상 나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사상 처음으로 대입 수능시험이 연기되었고, 포항 주민 1,500여명은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땅도 건물도 흔들리고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주민들이 국가의 아무런 안내 없이 포항을 벗어나려 하다 보니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까지 벌어 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으로 인해 '땅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지진과는 다른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땅이 6.5㎝ 밀리고, 내진설계를 한 영일만항 부두의 한쪽이 10㎝ 넘게 주저앉아 하역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북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영향을 미친 이번 포항지진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재앙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 0.0001%의 가능성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이번 지진은 규모 7.5까지 예상 가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23기가 6.5로, 신고리 7.4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7.5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안

전위원회는 보강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 북구에서 월성핵발전소는 42km, 신고리핵발전소는 86km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지진으로 월성핵발전소와 신고리핵발전소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심 할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울산, 경주, 포항 등에서 대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방송을 통해 전문가들이 7.5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이 경주지진과 연결된 양산단층일 가능성과 주변 다른 단층일 가능성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제기된 활동성단층과 지질정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지진과 이번 포항지진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양산단층이 활동성단층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두가 공동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갑론을박 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재앙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 가동 중단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되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 관한 지질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5개 구군은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공공건물, 그리고 학교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내진 검사를 실시하고, 지진 대비 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진에 고층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지진 감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

행되고 사람들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진이 나면 승강기를 수동으로 정지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치를 점검하고 정비하며 주민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대한 소식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지진에 대비한 주민 생명보호와 대피에 필요한 이동경로 확보와 훈련, 지진으로 인해 일어나 수 있는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주민 생명 보호매뉴얼과 대피소와 이동경로 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항상 "주민생명" 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주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아이들과 국민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소중한 교훈,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끝으로 이번 포항지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과 교사들, 어른들의 대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체 자기만 밖으로 몰려나오는 공무원들, 아이들을 귀가시키는 학교,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교육받고 훈련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 차례의 교육과 훈련으로 20% 이상의 재난 대응에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과 같이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희망이고 훈련은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지진과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 안전한 북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2017. 11. 20.)
ㅇ 발언요지 :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모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복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민중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조선산업의 위기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급격한 인력감축을 야기하며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거제, 창원, 울산, 목포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지원을 통해서 조선업이 집중된 지역경제의 침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부터 조선업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미리 완화하고, 선제적 고용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부재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1순위로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동구의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고, 지역에 닥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들을 미리 차근차근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 울산북구는 자동차산업중심 도시입니다. 현대자동차 완성차기업과 부품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태를 교훈 삼아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제대로 준비해야 울산 동구와 같은 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과 경

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기술의 변화가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시스템의 변화가 향후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의 변화, 완성차와 부품사의 변화, 이를 컨트롤할 정부정책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삶의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부품 등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품들을 제조하는 부품사들 역시 크고 작은 지각변동을 맞이할 것입니다. 전기차로 바뀌면 엔진/배터리, 소음기/배기, 연료계통 등의 부품들이 불필요해 질 것이고, 이를 생산하던 부품사들 역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미래차의 변화는 한미FTA의 재협상 등 국내외적 상황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의 큰 파도를 넘기기 위해서는 기업, 노동조합, 지방정부, 연구기관, 정치권을 망라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상생을 위한 공동운명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공동체의 구성이 요구됩니다.
울산이 가진 다양한 자동차 관련 기업과 소비자, 연구기관,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모든 기술, 정보와 역량을 결합한 현대자동차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지역자동차발전공동체 개념의 '울산자동차산업플랫폼'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주는 3,030억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전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제주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히는 등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2015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등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3년차를 맞이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자동차산업구조 변화에 방향을 맞추어 북구 관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시급합니다.

울산 북구가 미래 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안 모색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2017. 12. 22.)
ㅇ 발언요지 : 지역실정에 맞는 노동-일자리정책을 수립하라

존경하는 정복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민중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은 취임당일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였고, 지시 6일만인 5월 16일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5월 2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 현황 등 18개 지표로 구성된 '일자리상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되고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회의가 개최되어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 '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정책들은 지방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내용들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울산시와 울산북구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로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양질의 일자리부족으로 청년들은 백수로, 중년들은 조기명퇴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계층별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청년의 경우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고,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부담과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참여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저조하며, 신중년의 경우 조기퇴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이 미흡하여 준비 없는 창업과 질 낮은 일자리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지방정부는 노동정책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 충남, 아산, 안산, 고양, 성남,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등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노동권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각 영역별 비정규직 지원사업, 생활임금 도입, 일자리 중간지원조직인 노동권익센터 설치, 감정노동, 청년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울산북구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박천동 구청장은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외치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과 R&D산업을 유치하여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창조경제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대자동차의 내수산업과 중국시장 수출부진 등으로 시세인 지방소득세가 무려 454억원이 감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과 일자리정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큰 틀은 같겠지만, 서울의 일자리와 광주의 일자리가 다르듯이 울산은 울산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울산북구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와 관련된 정확하고 세밀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제조업 및 사업체조사를 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로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연령별, 성별 등 상세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변화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책대상별 통계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사가 밀집해 있는 울산 북구에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이 동반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창조경제과를 확대개편해야 하며, 일자리지원팀의 역할 또한 '공공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수준을 뛰어 넘어 더 높아져야 합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하면 청년창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자리업무에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였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빠진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2월 19일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들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보입니다. 울산은 여성고용률 전국 최하위, 청년고용률도 최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울산의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창조경제과에서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적은 인력이지만 알차게 사업을 해 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담당과의 확대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인력확충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안 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제 겨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첫 방도라고 생각하고, 공공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시비로 임금비가 지원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자' 등 정부에서 1차 전환대상자라고 별도의 공문까지 보낸 직종은 최우선 전환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당장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우개선이 되도록 기획홍보실과 각 과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데, 북구청 기간제 모집에 조선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을 겪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을 하고,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절실합니다. 울산북구청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일자리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2017. 12. 22.)
ㅇ 발언요지 : 거짓정보로 결정된 상안동 모텔 건축 허가와 시례 소방도로 노선변경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여러분, 민중당에 안승찬의원입니다.

2017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해를 보내면서 정리해야 할 것, 청산해야 할 것, 새해에 더 잘해야 할 것 등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북구의회 6대의원들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당초예산 심의, 2017년 결산 추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가 북구발전과 주민행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것 중 반드시 고치고 가야 할 문제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공사를 할 때 기초를 잘못 세우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사가 잘못되면 안전 진단을 하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잘못된 것은 반드시 제대로 고쳐야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해를 넘기지 말고 정리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정보로 결정된 농소3동 상안동 모텔 건립과 상안동 시례 소방도로 노선 변경입니다.

저는 상안동 모텔건립 관련하여 “학교”가 아닌 이유로 교육환경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무방비로 위험과 유해 환경으로 노출되는 어린이집과 학원을 법률로 보호하자는 청원을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두 번 다시는 우리 북구 상안동처럼 인근에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 학원이 밀집된 곳에 모텔이 건축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도록 저는 북구 상안동 모텔 건축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울산시민과 전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의 힘으로 모텔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과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북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가야하는 기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정보를 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위조하여 결정된 행정은 그 결정이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고 거짓된 것입니다. 행정은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럴 때 공신력도 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서는 주민들과의 사업, 북구의 운영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행정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소3동 상안동 모텔 건축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해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그 심의 과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말하고,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업지역이라는 사실과 바로 앞에 주민이 거주하는 빌라시설이 있다는 사실 등을 빼고 학원 등에 대한 법적 검토만 한 사실 등은 잘못된 심의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건축심의와 차이가 있는 이유입니다.

상안동 시례 소방도로 노선변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조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 노선에 문제가 없고, 변경된 노선에 대하여 주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마치 다수의 주민이 동의 한 것처럼 왜곡하여 변경한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밝은 미래가 있듯이, 잘못된 행정도 청산해 나가야 밝은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잘못을 덮고 가면 모여서 적폐가 됩니다. 그 적폐는 우리아이들에게 큰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적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적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적폐청산의 과정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차고 부강한 조국과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지는 못할지라도 아이들이 우리가 남긴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남겨진 적폐를 청산해야하는 부담은 남겨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그냥 덮고 가거나 방치하면 다음에 또 그 잘못을 하게 되고, 쌓이고 쌓이면 적폐가 됩니다. 그 적폐는 진실이 아닌 거짓이 되고, 불신이 되고, 부정이 되고, 부패가 되어 우리 사회 발전과 주민공동체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잘못을 바로 고치고 간다면 적폐가 될 이유도 없고, 주민들의 불신을 받거나 부정부패한 행정으로 가는 길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주민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거짓으로 꾸미고 왜곡해서 주민들의 뜻과 반하는 쪽으로 간다면 주민들은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멀어 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상호 협력과 단합 속에서 발전해야할 지역에 불신과 갈등을 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신과 부정이 판을 치고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정치와 행정이 잘못을 그때그때 고치지 않고 뭉개고 무시해 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17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우리 모두는 개인과 우리 사회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풀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소주 한잔 마시며 풀고, 풀지 못한 사회적관계가 있다면 매듭이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시 소통하며 풀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상안동 모텔 건축허가와 시례 소방도로 노선변경입니다. 단순한 건축과 도로 노선의 변경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주민간의 갈등이 만들어 졌으며,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을의 공동체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원위치로 되돌려 주민과의 소통과 마을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를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새해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ㅇ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ㅇ 발언일시 : 제171회 임시회(2018. 1. 29.)
ㅇ 발언요지 : 울산시는 버스공영제 실시로 주민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안승찬 의원입니다.

울산 북구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구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북구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공동주택단지가 건립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봅니다. 지금도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며,
입주 예정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좋아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늘어난 인구가 울산북구에 정주하도록 해야 하고 또 다른 인구가 유입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현재 인구가 20만이지만 이후 인구가 더 늘어나도록 도시 전체를 점검하고 계획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 교육, 문화, 교통, 생활체육 등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 요청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 신설과 안전・도로・대중교통・환경문제 등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우리 북구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울산시와 교육청 사무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에 더욱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기되는 교육・문화・체육・휴양시설 등 많은 민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이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항상 “울산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는 말만 수 백 번 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주민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장님과 울산시에 조금이나마 저의 마음을 전달하고 울산시 대중교통정책이 전체적으로 점검되고 바뀌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주택단지에는 반드시 대중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사 와서 살게 되면 당연히 교통 및 이동수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행정에서는 대단지 주거지역 조성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차 없이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겨우 버스 2대 증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 데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 자가용이 늘어나고 주차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혁신으로부터 주차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연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무료버스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북구는 신설 이후 농소3동, 화봉지구, 매곡지구, 호계지구, 호수지구, 강동산하 지구, 송정지구까지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족하지만은 오토밸리로, 농소 옥동간 도로, 7번국도 확장 등 주요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재작년에 버스 2대 증차된 것 외에는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의 울산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인구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살기 좋은 울산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전한 울산

과 함께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및 주민 휴식 문제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 합니다.

현재의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과 논의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대담하게 버스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20년 전 광역시가 되기 전의 울산 대중교통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울산광역시에 맞는 대중 교통정책을 세우고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거동에서 방어진, 무거동에서 모화로 가는 버스 노선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인구 변화와 증가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통정책이 필요하기에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완전 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안 해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울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공론의 계기가 되고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72회 임시회(2018. 3. 27.)
○ 발언요지 : 매곡공원 축소계획 철회하고 조기조성하라

존경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매곡초등학교 앞에 조성될 매곡공원 조성계획이 축소되어 공원기능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울산시는 매곡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변경안」을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매곡공원의 기존 부지 계획이었던 11,400㎡ 중 1,909㎡ 축소하여 9,491㎡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소를 발표한 부지는 산골연못 부분을 제외한 전체 60% 중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부지입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상가가 들어오면 나머지 부지도 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매곡공원의 축소 이유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적소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원, 도로, 유원지, 항만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개인이 저마다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공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1일에 일시에 해제된다고 해서 '공원 일몰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핑계로 매곡공원의 부지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은 울산시와 북구청이 지금껏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지주의 요청에 끌려가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울산시와 북구청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까지는 아직 2년이 넘는 시

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며, 지주에 대한 특혜의혹이 생길 소지마저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원이 부족한 울산 북구에 공원을 더 빨리 조성해주지는 못할망정 축소하여 실질적인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북구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홀대입니다. 게다가 상가를 지어 막대한 수익을 남길 지주만을 위해서 인근 학교와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의 크지도 않은 공원부지마저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즉시 매곡공원의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공원을 조성하여 북구 주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많은 북구 주민들이 매곡공원의 축소반대의사를 민원창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주민의 뜻을 수용하고 울산시와 북구청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다가오는 4월에 개최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016. 7. 1. ~ 2018. 6. 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중	불 가
계	14	14	2	1	11
2016	3	3	1	1	1
2017	8	8	1		7
2018	3	3			3

2.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6. 7. 15. 중산동 현대글로리아아파트 입대의 회장해임 요청 (불가)	이ㅇㅇ	○ 중산동 현대글로리아아파트 입대의 회장의 해임 요청 - 서동국 입대의 회장은 지난 6월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주택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업자 일방적 교체 및 관리비 유용 등의 불법행위가 시정되고 있지 않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곤란케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320세대의 주민의	○ 2016. 7. 15. 의회사무과→ 건축주택과 - 관련 자료 및 집행부 의견 요청 ○ 2016. 7. 27. 건축주택과→의회사무과 - 집행부 의견 회신 ※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이하, 영')제50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서명을 받아 입대의 회장의 해임을 건의하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등의 절차에 위법이 없도록 관리를 요청함.	장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음. ○ 또한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16. 7. 27. 북구 강동동의 방학 기간 중 버스 정상운행 요구 (완료)	이○○	○ 북구 강동동의 방학 기간 중 버스 정상운행 요구 - 여름 방학 기간 중 버스 감차 운행은 강동동 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의 현실적 수요에 맞지 않으므로 감차 운행을 중단하고 정상운행을 요청하며, 강동권의 대중교통 수단 확대와 노선 검토를 바람.	○ 2016. 7. 27. 의회사무과→구 교통행정과, 시 버스정책과 - 관련 자료 및 집행부 의견 요청 ○ 2016. 8. 5. 시 버스정책과→의회사무과 - 의견 회신 ※ 회신내용 ○ 강동지역 운행 전 노선(121, 411, 441, 421번)에 대해서는 방학감차 운행은 하지 않고 있음. 단, 121번, 411번 노선은 현대자동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차,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등 기업체 휴가기간(8. 1.~8. 5.)동안 5일간 휴일감차 운행을 하고 있음 ○ 현재 노선개편을 포함한 시내버스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동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
'16. 11. 8. 대안동 아랫마을 배수로 확장 및 교체 공사, 하수구 정비공사 요청 (완료)	김○○	○ 대안동 아랫마을 배수로 확장 및 교체 공사, 하수구 정비공사 요청 - 대안동 아랫마을(대안동 71번지 앞길)의 배수로 막힘에 대한 조치 및 하수구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조치되지 않아 태풍 '차바' 때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태풍 피해 복구와 정비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비 및 조치를 요청함.	○ 2016. 11. 8. 의회사무과→건설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6. 11. 10. 건설과→민원인 및 의회 회신 ※ 회신내용 ○ 해당 배수로에 대한 준설작업은 지난 2월 동 주민센터를 통한 주민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시행한 바 있음. 배수관 확장 등 배수로 정비는 마을안길 도로정비와 동시에 수반되어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마을안길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토지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함. ○ 2016. 7월 토지사용승락서(포장에 대한 내용만 제시)가 제출되었지만 추가로 마을안길 정비와 관련한 토지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하여 제출이 필요함을 알려드림.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7. 1. 10. 귀영하이야트아파트 앞 도로침하 복구공사 등의 요청 (불가)	귀영하이야트 입주자 대표 회의	○ 귀영하이야트아파트 앞 도로 침하 복구공사 등의 요청 - 귀영하이야트아파트(호계로 327-3) 정문 앞 도로 침하와 배수관로 파손으로 인하여 아파트 정문 기둥이 넘어가고 있고 집중호우 시 배수가 안돼 단지 내에 빗물이 범람함. - 침하된 도로 복구 및 파손된 배수관로 교체, 정문 기둥 보수를 요청함.	○ 2017. 1. 11. 의회사무과→건설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7. 1. 16. 건설과→민원인 및 의회 회신 ※ 회신내용 - CCTV 관로조사 등 현장 확인(2017. 1. 12.)결과, 아파트 경계 도로침하로 정문 기둥 기울어짐 현상의 원인은 아파트 내부 우수관로 파손에 따른 지반침하로 판단되므로, 정문 기둥 보수는 귀 아파트 측에서 보수를 검토하여야 하며, 도로경계 담장은 옹벽 설치기준에 맞는 배수파이프가 없고 철근배근이 안된 시설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균열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도로시설물로 판단될 경우 보수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임. [참고] 경비실 옆 놀이터 하부 우수맨홀 존재(CCTV관로확인)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1992년 4월) 아파트 측의 우수처리계획 확인하였으며, 배수설비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배수설비의 설치자가 유지 관리해야 함.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7. 1. 31.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주차장 상실 피해호소 및 대체주차장 확보요청 (불가)	엄ㅇㅇ	ㅇ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주차장 상실 피해호소 및 대체주차장 확보요청 - 현재 공사중인 「산하천~신명IC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민원인 소유 건물(산하동 963 소재)의 주차장 부지 수용에 대해 실질적인 시세보상과 영업 손실 보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대체 주차장 설치 또는 기타 보상 방안 요청함.	ㅇ 2017. 2. 1. 의회사무과→건설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ㅇ 2017. 2. 2. 건설과→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ㅇ 2017. 2. 7. 종합건설본부→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 본 도로확장공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은 물론이고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보도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향후 강동해변 경관개선사업이 완료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 상가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장여건 상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임차한 인접 필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안내함.
'17. 4. 12.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토지(미불용지)에 대한 수용 및 보상 요청 (추진중)	안ㅇㅇ	ㅇ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토지(미불용지)에 대한 수용 및 보상 요청 - 달천동 560-1(도), 560-3(답) 지번의 토지는 민원인 소유의 토지로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도로와 하천에 편입되어 각종 시설물 설치와 제방 정비공사 등	ㅇ 2017. 4. 12. 의회사무과→건설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ㅇ 2017. 4. 18. 건설과→민원인 및 의회 회신 ※ 회신내용 : 도로부지 일부 보상 가능하며, 하천부지의 경우 현재 보상이 어려우나 향후 하천정비공사 시 보상 가능함.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이 행해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미불용지 수용 및 보상을 요청함.	○ 도로편입 사유지(달천동 560-1번지) 보상 - 지적공부 확인결과 민원인 토지의 경우 일부분이 상안~가대간 군도확장공사(1991년 추정) 도로면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18년 미불용지 보상 예정임 ※ 도로부지에 대한 지적측량 후 시행, 민원인과 면담 시 사전 설명 드림 - 그 외 도로부지는 농로 확장 등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상이 어려우며, 기타 버스정류장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토록 안내함. ○ 하천편입 사유지(달천동 560-3번지) 보상 - 현재 시행중인 하천정비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수해복구 공사로 당장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어려우며, 향후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정비공사 시행 시 토지(사유지) 보상이 가능함. - 토지보상 전 공사시행을 반대할 경우 구조물(석축) 설치가 불가하므로, 하상정비 및 기존 제방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구조물(석축)의 설치는 취소토록 하겠음.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7. 5. 11. 친환경급식센터의 '학교급식 수산물(멸치류)' 납품업체 교체결정에 대한 철회 요청 (불가)	김ㅇㅇ (㈜넥스트코리아 대표)	○ 친환경급식센터의 '학교급식 수산물(멸치류)' 납품업체 교체결정에 대한 철회 요청 - 당사는 그 간 친환경급식센터에 수산물을 공급하던 업체로 정책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품목의 공급계약 중단을 통보받았음. - 이에 따라, 공급업체 교체 결정과정에서 절차상 부당함을 호소함. 신규업체를 선정한 판단 근거 회신 요청하며, 연중 사용량을 사전 구매해놓은 상황임(6월부터 공급중단 시 경영난 예상)을 고려하여 업체교체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 2017. 5. 11. 의회사무과→농수산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7. 5. 17. 농수산과→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 그동안 울산 해상 일원에서는 멸치류가 생산되나 소포장 등 전처리가 되지 않아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2014. 4. 24. 북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구 소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서 소포장 등 전처리 후 학교급식 납품코자 건의한 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지역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을 근거로, 센터 정책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 변경 사유는 방사능안전관리 문제가 아니며, 변경된 업체도 방사능검사 이행하여야 함. - 4 ~ 5월 간 4회 현장 확인 결과, 변경된 업체에서는 지역에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멸치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 회의 당시 복수등록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멸치류는 지역 생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되었음. - 우리구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농어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넓은 이해바랍니다.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7. 7. 12. 호계7길 기존 도로와 호계IC 입구의 도로 연결 요청 (불가)	박○○ 등 62명	○ 호계7길 기존 도로와 호계IC 입구의 도로 연결 요청 - 현재 진행 중인 호계IC공사의 램프도로가 기존 마을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다수 기업인 및 주민들이 고립·통행불편을 호소함. - 당초 계획대로 램프도로를 마을과 연결 요청.	○ 2017. 7. 12. 의회사무과→건설과 2017. 7. 13. 건설과→시 종합건설본부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7. 7. 17. 시.종합건설본부→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 오토밸리로 설계(2012.~2013. 3.) 시 호계동 일원에서 오토밸리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호계IC를 계획하였으며, 당시 호계·매곡지구도시개발사업이 인가(2008년)는 되었으나 착공되지 않았고 착공 시기 또한 불투명한 실정으로 부득이 호계IC를 기존 현행도로에 임시적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단기 안)하고 향후 개발사업이 시행될 시 교통처리계획 및 도로시설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IC 설치를 계획(장기안)하고 설계를 완료함 ○ 오토밸리로 착공 후 2014. 7월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어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 호계IC를 장기안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 ○ 진정민원인들께서 거주하시는 호계7길 끝에서 호계IC로의 연결은 ‘도로시설기준 및 교통처리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계획' 상 불가하며, 호계7길과 연결되는 호계·매곡지구도시개발사업의 도로 가로망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함. ○ 참고로, 오토밸리로는 2017. 9월 말 개통예정이며, 도시개발사업은 2017. 10월 완료예정임을 알려드림.
'17. 8. 28.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 자진철거 및 일부 증·개축 허가 요청 (불가)	이○○	○건축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 자진철거 및 일부 증·개축 허가 요청 - 민원인 소유의 사찰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 및 시정명령(철거)을 통보받았음. - 건축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2003년 10월 이전에 건축된 종교시설을 일부 증개축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증개축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 -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점유면적, 시가표준액, 요율, 감경비율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해 회신 요청. (특히 점유면적에 대한 실측 방법에 시정 요청)	○ 2017. 8. 28. 의회사무과→건축주택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7. 8. 31. 건축주택과→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가.「건축법」 검토 내용 1) 해당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다시 징수할 예정이며, 2)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서 상 각종 감경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하며, 3) 세부적인 부과 산식 중 법정요율이란 상기 호에서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비율이란 같은 법시행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제1항에 따라 적용되고, 감경비율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나. 「산지관리법」 검토 내용 「산지관리법」 제10조의2 관련 [별표1의3]제3호가목제4호에 따라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허가나 개축하는 경우, 표고도 제한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및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가 필요하며, 현행 법률 상 불법 행위에 대해 양성화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3조(청무)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벌칙)제9호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 10. 25. 진정 도로 개설 요청 (불가)	황ㅇㅇ	○ 도로 개설 요청 - 어물동 1185 일원, 진정인의 농지에 농업용 전기 설치를 위한 공용도로 개설 요청(주전·당사 ~ 아랫율동마을 간 구길).	○ 2017. 10. 26. 의회사무과→농수산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7. 11. 2. 농수산과→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 도로(도시계획도로, 임도, 농로) 개설에 대해 전기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개설은 불가함. - 건설과 : 도시계획도로 미결정으로 개설불가 - 공원녹지과 : 산림경영·관리 등 공익목적의 임도개설만 가능 - 농수산과 : 개설지 내 경작면적이 없고 급경사면으로 농로개설 불가 ○ 인근 약천사(어물동 1236-3번지)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찰 사유시설이라 공용시설로 이용이 어려움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7. 11. 1. 진정 모텔 허가 및 인도 공사차량 진입로 사용 반대 (불가)	백○○ 등 25명	○ 모텔 허가 및 인도 공사차량 진입로 사용 반대 - 상안동 323-22번지, 진정인들의 거주지 인근에 모텔을 허가해 준 것과 주민들과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를 모텔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 승인해 준 것에 대해 반대 요청함.	○ 2017. 11. 1. 의회사무과→건축주택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7. 11. 8. 건축주택과→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 숙박시설 건축허가 중지·취소요청에 관한 사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이격하는 거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상기 건축허가 건은 「2016년 제1차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숙박시설 입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의결되어 건축허가 처리되었고 건축허가 중지·취소는 불가함. ○ 건축공사장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반대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일시)는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계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18. 1. 24 건축법위반 건축물 자진철거 및 일부건축물 증·개축 허가 요청 (불가)	이ㅇㅇ	○ 건축법위반건축물 자진철거 및 일부 건축물 증·개축 허가 요청 - 민원인 소유의 사찰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 및 시정명령(철거)을 통보받았으며 2003년 10월 이후에 건축한 조립건축물 일부를 철거완료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선처바람. - 2003년 10월 이전에 건축된 종교시설을 일부 증개축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증개축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	○ 2018. 1. 25. 의회사무과→건축주택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8. 2. 1. 건축주택과→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가. 위반건축물 1동 철거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이란, 해당 위반 건축물이 건축되기 이전의 상태(나대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해 위반건축물의 기둥,벽체 등 잔여 부분이 미철거 된 상태에서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적법성 인정에 대하여 - 2016. 6. 8.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3호 가목4)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정(2003.10.1.) 전의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를 하고 건축된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43971 2017. 8. 31 기회신사항임) - 다만 건축물의 건축은 귀하께서 유효성을 주장하시는 「산지관리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다수의 건축 관련법령에 적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며 이러한 관련법령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협의·검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건축물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완화 대상 건축물이 된다고 가정할지라도 상기 건축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아울러, 귀하의 위반건축물은 이러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축한 건축물로, 우리 구(건축주택과)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곧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8. 3. 19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통보 및 일부건축물 등록 및 사용허가 요청 (불가)	이○○	○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통보 및 일부 건축물 등록 및 사용허가 요청 - 건출물 자진철거시 미비하여 시정명령된 기둥, 벽체 사항에 대해 완전 철거 보완하였음 - 부처와 봉안당을 꾸민 토굴에 대한 등록 신청 및 사찰 추녀 끝아래 부분 비, 바람막이구조 허용 완화 요청 - 이동식 컨테이너 사용허가 및 태양광 발전시설 받침구조물 허용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람	○ 2018. 3. 19. 의회사무과→건축주택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8. 3. 26. 건축주택과→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가. 위반건축물 1동 철거에 대하여 - 2018. 3. 22자로 해당건축물[사찰(부속: 식당), 경량철골조, 110㎡]의 위반사항이 시정(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금회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철거된 위반건축물은 제외하고 잔존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그 외 위반건축물 처분에 대한 완화 요청에 대하여 - 귀하께서는 첫째, 봉안당의 철근콘크리트조 부분(면적 135㎡)은 본 사찰 건립 당시 토굴로 미등록하였으나 토굴로 인정하여 위반건축물 처분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 둘째 대웅전 처마 부분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증축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부분(면적 30㎡)은 비바람을 막기 위한 창호이므로 위반건축물로의 처분을 완호하여 줄 것을 요청, 셋째 컨테이너 식당(면적 50㎡)은 행사 시 임시 공양을 위한 시설이므로 위반건축물로의 처분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 넷째 봉안당의 경량철골조 부분(면적 61㎡)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상부에 설치되어있으므로 추가적인 구조물 제작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반건축물로의 처분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으나 귀하의 요청 사항을 건축법령 상 완화 규정이 없으며, 몇 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재차 확인된 상황으로 현재 기 처분된 내용에 대해 완화할 사항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18. 5. 10. 전봇대 이설 요청 (불가)	이ㅇㅇ	○ 전봇대 이설 요청 - 위치: 달천도담길 13(달천동 402-1) - 집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위치가 도로과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라 집을 지으면서 건축허가시 도로 시야확보를 위해 삼각형 모양 2평정도가 도로로 들어갔음. 이 부	○ 2018. 5. 14. 의회사무과→건설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8. 5. 18. 건설과→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 전봇대 이설 처리기관인 한전동울산지사 답변 - 해당 전주는 도로상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설 불가함 - 전주가 기존 도로와 막도의 경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분 꼭지점에 전봇대가 있는데 2평정도가 도로가 되면서 도로 중간에 전봇대가 서 있게 되었음. 전봇대를 이설하여주시기 바람.	계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도로의 선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교통흐름과 시야확보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18. 6. 8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통보 및 일부건축물 등록 및 사용허가 요청 (불가)	이ㅇㅇ	ㅇ 사찰, 토굴 등 일부 건축물 허용 요청 - 토굴에 대한 인정 요청 및 사찰 추녀 끝아래 2m 이내 비, 바람막이창 등 허용 요청 - 토굴 입구와 산신각 허용 요청, 이동식 컨테이너 사용허가 및 태양광 발전시설 받침구조물 허용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람	ㅇ 2018. 6. 11. 의회사무과→건축주택과 -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ㅇ 2018. 6. 21. 건축주택과→민원인 회신 ※ 회신내용 가. 위반건축물 처분에 대한 완화 재요청에 대하여 - 귀하께서는 첫째, 봉안당의 철근콘크리트조 부분(면적 135㎡)은 본 사찰 건립 당시 토굴로 미등록하였으나 토굴로 목격하였다는 주민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서 토굴로 인정하여 위반건축물 처분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고, - 둘째, 대웅전 처마 부문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증축 부분(면적 30㎡)은 비바람을 막기 위한 창호이므로 위반건축물로의 처분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으며, - 셋째, 컨테이너 식당(면적 50㎡)은 행사시 임시 공양을 위한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시설이므로 위반건축물로의 처분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넷째, 봉안당의 경량철골조 부분(면적 61㎡)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구조물 제작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반건축물로의 처분을 온화하여 줄 것을 2018. 3월에 이어 금회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귀하의 요청 사항은 건축법령 상 완화 규정이 없으며, 몇 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재차 확인된 사항으로 현재 기 처분된 내용에 대해 완화할 사항은 없음을 2018.3.23.자로안내(건축주택과-16353)하였으며, 금회 회신 또한 종전 회신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응대방법 안내 - 귀하께서는, 중산동 산 2-5 지번 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6월, 2018년 1월, 3월,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신 바 있으신데, 가장 최근 행정처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인 2018. 3. 2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건축주택과-16352) 등 일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29-2295)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북구청 처분의 무효 등의 확인 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기관인 울산지방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음을 재차 안내해 드립니다.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 2016년 하반기

01.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9월 12일 오전 관내 복지시설인 푸른희망지역아동센터와 엘림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생필품 및 생활용품을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02. 추석맞이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9월 12일 오전 북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북구의회 의원들은, 솔선수범하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참여와 소통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03. 북구의회 주관 지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주관으로 9월 22일 오전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구의회, 강북교육지원청, 북구청 관계자 총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 피해상황, 복구대책,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학교 운동장 개방과 화장실 사용을 강북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04. 태풍피해 복구현장 추진상황 점검

정복금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0월 12일 북구 관내 태풍 피해현장의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북구의회 의원들은 태풍 ‘차바’로 인해 마을 진입도로 유실, 교량 파손, 토사 유출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동 대안마을과 박상진 호수공원 일원 등을 돌며 피해 현황 및 복구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현장에서 만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간 관내 전 지역의 피해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복구 현장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11일 북구청 관계 담당자와 함께한 피해 상황 및 복구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통해 복구 지원방안 등 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05.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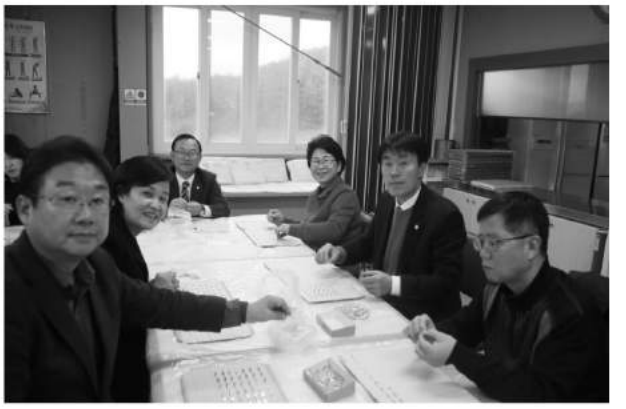

북구의회(의장 정복금)는 12월 21일 오후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체험 봉사활동에는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작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자동차 부품 관련 작업 등의 일을 체험했다. 한편 정복금 의장은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6.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종합심의의결

북구의회(정복금 의장) 제164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의의결을 마지막으로 32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부의안건,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2017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91억이 증가한 2,655억(일반회계 2,604억, 특별회계 51억)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5억 8,6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485억이 증액된 3,289억 규모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안승찬 의원이 제안한 '강동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2017년 상반기

01.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1월 24일 오전 관내 복지시설인 연암꾸러기 지역아동센터와 어울림 연암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잡곡 및 생활용품 등을 설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설을 맞이하여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02. 관내 농장 묘종 이식 자원봉사활동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 일동은 2월 22일 오후 관내 농장을 방문하여, 애호박 묘종 이식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에는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복금 의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각계각층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03. 월성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제165회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임시회가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165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했다. 한편, 이 날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 7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국민소송 원고단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 및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 수립,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치용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되었다.

0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북구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며, 4월 14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66회 임시회는 15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했다.

05. 관내 주요추진사업 추진상황 점검

북구의회(의장 정복금)는 4월 17일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 현장 등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태풍 '차바' 피해복구 현장인 호계천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66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북구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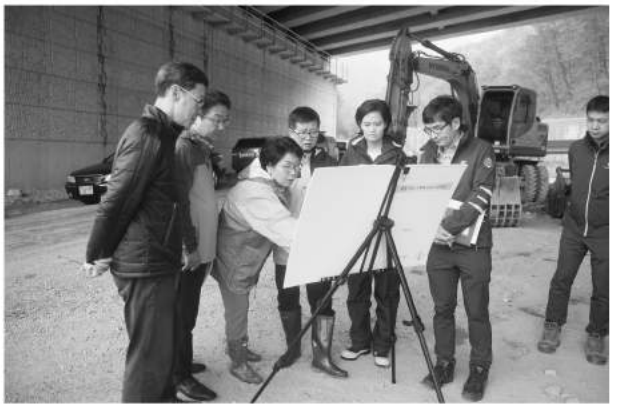

그간 북구는 달천동 1-7번지 일원의 한반도 철기문화의 대표적 유적지인 달천철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사면안정화 작업 및 외곽 순환 산책로 조성 등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날 의원들은 사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고대 철기문화의 상징인 달천철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함과 더불어, 여러 컨텐츠를 활용하여 앞으로 북구의 상징적인 역사문화시설로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제반사항을 면밀히 살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지난해 태풍 '차바' 피해로 복구공사가 한창인 호계천 일원 현장을 점검했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고,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 2017년 하반기

01. 강동 정자해변 환경정화활동 및 군부대 장병 위문 방문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7월 11일 강동 정자해변을 방문하여 해변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 기간을 대비하여, 깨끗한 모습으로 북구를 찾는 피서객 및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추진된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서 7명의 북구의회 전 의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환경정화 활동 직후 북구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7765부대 2대대 신명중대 장병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더위 속에서도 국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위문 방문은, 해안경계의 최전선에서 밤낮 구분 없이 초소 근무를 서는 장병들을 위해 특별히 대대본부를 방문하지 않고 해안초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위문품으로 수박, 다과류 등을 전달하며 신명중대 장병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 참석한 의원들은 "다가오는 무더위를 맞이하여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02. 개원 20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 추진

북구의회는 개원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친근한 열린 의회의 자세로 주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다. 먼저 7월 13일 오전 10시에는 북구청 광장에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20주년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했으며, 오후 2시부터는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성호 부산대학교 법학박사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여러 패널 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14일에는 자매결연도시 베트남 롱쑤엔시 방문단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해, 양 도시간의 국제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교류확대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5월 12일 열린 제13회 울산쇠부리축제장에서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지역축제에서 구의회가 홍보부스를 운영한 것은 울산시 자치구의회 가운데 처음이며, 스무살의 고백(go! back!)이라는 주제로 북구주민과 함께한 지난 20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소통을 통해 미래를 꿈꿔보자는 취지로 열린 바 있다. 의회를 배경으로 의사진행 체험을 할 수 있는 포토존 및 '의회에 바란다' 포스트잇 소통 게시판을 운영하고, 북구의회 의정활동 사진 및 서적류 전시, 의회 방청 및 견학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구의회는 지난 5월말부터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북구청 및 관내 8개동 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순회전시 하였다. 개원 이후 의회의 역사, 의정활동 사항 등을 담은 사진 36점을 주민과 함께 나누고자 기획된 이번 기념 사진전은 문화예술회관을 마지막으로 7월 14일까지 전시했다. 정복금 의장은 "지난 20년간 주민 여러분과 북구의회와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주민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여러 행사들을 마련했다"며,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도 20만 북구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북구의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3. 개원 20주년 기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추진

북구의회는 7월 13일 오후 2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원 20주년을 기념하고,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김성호 박사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여러 패널 들의 토론이 활발히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병철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장동 울산 YMCA 사무총장, 윤경일 울주군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의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 구민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 시대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에 다양한 의견과 관심 있는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북구의회 정복금 의장은 "의회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구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노력으로, 북구의회가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역할에 앞장서겠다"며,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도 20만 북구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북구의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4.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북구의회 견학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 9명 및 지도교사 2명은 8월 4일 오후 2시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홍보 영상물을 시청하고, 본회의장을 포함한 북구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을 인솔한 북구청소년문화의집 김유진 지도교사는 "북구의회를 견학하여 우리 학생들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뒤, 협의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견학에 참여한 변재희 울산외고 학생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최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견학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북구의회와 의원님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05. 민주주의를 배우다. 북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북구의회는 8월 16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양정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을 알림과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어린이 모의의회는 북구의회 견학에 참여한 지역 초등학생들이 직접 구의원 역할을 맡아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 의회의 기능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사전교육 후 실제 의사진행 방식에 따라, 최유림 어린이 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교사·학부모에 의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규제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린이 모의회의를 함께한 강진희 부의장은 "모의의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익히고, 정치 참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의장 역할을 맡은 최유림 학생은 "의장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

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모의의회 체험을 하면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이런 저런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진희 부의장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건 상정, 제안설명, 질의와 토론 등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우리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시절에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익히는 등 오늘의 소중한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6.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 봉사활동

북구의회는 9월 14일 오후 북구 상안동에 위치한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체험 봉사활동에는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작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자동차 부품 관련 작업 등의 일을 체험했다. 한편 정복금 의장은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통해 큰 틀에서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7.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7일 오후 관내 복지시설인 지체장애인자립센터 착한목자의 집 및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생필품 및 과일 등을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08. 쇠부리체육센터 정식개관 전 시설현황 점검

정복금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0월 18일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11월 정식개관을 앞둔 쇠부리체육센터의 시설물 현황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마을 진입도로 유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동 대안마을 피해현장의 복구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정복금 의장은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쇠부리체육센터의 준공은 단순히 문화체육시설 건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초석을 다지며 주민

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크다'라며, '정식개관에 앞서 모든 시설물을 재차 점검하고, 운영 시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최종결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백현조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반면 안승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한편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을 심의하였다.

09.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인권포럼 회원 북구의회 견학

11월 3일 오전 10시,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인권포럼 회원 11명은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강진희 부의장의 주재로 의회 홍보 영상물을 시청하고, 본회의장을 포함한 북구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을 인솔한 북구장애인인권포럼 김혁진 회원은 "북구의회를 견학하며 장애인을 위한 좋은 방청 시설도 체험해보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의원님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견학에 참여한 서권일 회원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최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견학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북구의회와 의원님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 2018년 상반기

01.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및 자원봉사활동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8일 오후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과 온유와 감사의집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과일 및 생활용품 등을 설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설날을 맞이하여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어울림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조립 자원봉사활동도 펼친 북구의회 의원들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02.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 점검

북구의회(의장 정복금)는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3월 29일 관내 주요추진사업인 염포운동장 조성공사 현장 및 강동문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의원들은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북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활용도가 높은 문화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 단계에서부터 여러 제반사항을 면밀히 살펴 차

질 없이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염포운동장은 염포동 377번지 일원에 39억을 투입해 축구장, 다목적구장, 주차장(43면) 등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강동 지역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강동문화센터는 강동산하지구 일원에 48억을 투입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제6절 의정활동일지

2016년도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7. 4.(월) 11:00	당사자연산 직판장	개장식	○당사자연산직판장 증축 개장식	
7. 4.(월) 14:00	북구문예회관 대공연장	기념행사	○201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 5.(화) 10:00	북구문예회관 대공연장	교육	○북구 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	
7. 15.(금) 2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투게더 콘서트(북구청)	
7. 20.(수) 10:30	북구문예회관 1층 전시실	사진전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주년 기념 사진전	
7. 21.(목) 10:30	농소 새마을금고	졸업식	○농소새마을금고 제20기 주부가요 교실 졸업식	
7. 22.(금) 16:30	양정생활 체육공원	개장식	○양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개장식	
7. 22.(금) 10:30	경주 나정해변	체험활동	○제17회 태연재활원 사랑의 바다체험	
7. 22.(금) 20:30	양정생활 체육공원	정기행사	○투게더 콘서트(양정생활체육공원)	
7. 27.(수) 20: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2016 울산 서머 페스티벌	
7. 28.(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교육	○2016 주민자치위원 방사능 방재 교육	
7. 28.(목) 15:00	강동119 지역대	개청식	○동부소방서 강동119지역대 개청식	
8. 6.(토) 20:00	강동해변	정기행사	○2016 강동해변 가요제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8. 10.(수)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8월 의원 간담회	
8. 10.(수) 11:30	북구의회 다목적실	보고회	○공무국외연수 사전보고회	
8. 11.(목) 10: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북울산청년회의소 회장 이영록 등 임원 북구의회 내방	
8. 14.(일) 9:00	정자항 일원	격려방문	○해병대전우회 울산연합회 수중 환경정화활동 격려 방문	
8. 15.(월) 10:00	박상진 의사 생가	정기행사	○박상진 의사 추모제	
8. 18.(목) 10:00	양정청소 전방지휘소	개소식	○양정청소전방지휘소 이전 개소식	
8. 19.(금)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민원상담	○일지리버아파트 입대위 관련 주민 민원상담	
8. 23.(화) 15:00	북구의회 의원실	민원상담	○북구 주민 토지보상 관련 민원상담	
8. 23.(화) 16:00	북구청 민방위교육장	격려방문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8. 25.(목) 15:00	북구청 광장	훈련	○2016 을지연습 실제훈련	
8. 25.(목)~ 9. 5.(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62회 북구의회 임시회	
8. 27.(토) 18:30	문수축구 경기장	정기행사	○K리그 북구데이 행사	
8. 31.(수) 15:00	북구의회 다목적실	보고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주민설명회	
9. 3.(토) 11:00	울주군 삼동면민운동장	격려방문	○시·구·군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 방문	
9. 8.(목) 10:30	북구문예회관 대공연장	특강	○경로당 회장 교육 초청 강사 특강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9. 12.(월) 11:30	북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식당 봉사활동	
9. 12.(월) 10:30	엘림종합복지센터 외 1개소	위문방문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9. 22.(목)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회의	○지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9. 22.(목) 14:00	북구문예회관 대공연장	정기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9. 22.(목) 19: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염포양정도서관 시낭송 콘서트	
9. 24.(토) 17:00	정자항 남방파제	정기행사	○강동 섶다리 축제	
9. 24.(토) 9: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사회복지시설·기관 한마음 대회	
9. 24.(토) 10:00	오토밸리복지센터 외 3개소	격려방문	○시민생활체육대축전 북구 선수단 격려	
9. 24.(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울산 북구 책잔치	
9. 26.(월) 14:00	신전시장	개소식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9. 26.(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조례입법연구회 및 9월 의원 간담회	
10. 1.(토) 19:00	동천초등학교	정기행사	○투게더 콘서트(농소3동)	
10. 2.(일) 11:00	송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정기행사	○송정·화봉동 어르신 경로잔치	
10. 4.(화) 16: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워크숍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예산 심의를 위한 워크숍	
10. 11.(화) 12: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10월 의원 간담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0. 11.(화)~ 10. 14.(금)	북구의회	임시회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10. 12.(수) 10:00	송정박상진호 수공원 외 1개소	현장방문	○주요 태풍 피해지역 현장 방문	
10. 15.(토) 10:00	오토밸리복지 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화합 한마당	
10. 17.(월) 11:30	울산광역시의 회 의장실	간담회	○제6대 후반기 시·구·군의회 의장 간담회	
10. 18.(화) 15:00	북구의회 의원실	면담	○백산그린아파트 경로당 임원진 면담	
10. 27.(목) 15:00	북구청 대회의실	강연회	○히로세 다카시 탈핵 강연회	
10. 28.(금) 10:00	강동구장	정기행사	○2016 하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10. 28.(금) 12:00	부산 벡스코	견학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10. 30.(일) 11:00	농소중학교	정기행사	○농소1동 경로잔치	
10. 30.(일) 9:3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제13회 북구청장배 축구대회	
11. 1.(화) 11:00	더파티 웨딩홀	정기행사	○2016 북구 보훈가족 합동 위로연	
11. 1.(화) 14:00	오토밸리복지 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제17회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11. 1.(화) 16:00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개소식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	
11. 4.(금) 10:00	울산광역시의 회 대회의실	세미나	○시의회 주관 예산안 심의 관련 세미나	
11. 5.(토) 9:30	북구의회	의회방문	○동대초등학교 초등학생 북구의회 견학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1. 7.(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교육	○의원 청탁금지법 교육	
11. 7.(월) 14:00	북구의회 다목적실	보고회	○2027 북구 발전 용역 보고회	
11. 7.(월) 17:00	북구청 상황실	설명회	○집행부 현안업무 및 2017 당초예산 설명회	
11. 9.(수) 11:00	국민건강보험 공단 중부지사	외부초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11. 10.(목) 11:00	북구청 대회의실	교육	○어린이집 원장 교육	
11. 10.(목) 14:15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북울산청년회의소 북구의회 방문	
11. 15.(화) 11:00	오토밸리복지 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효문동 경로잔치	
11. 17.(목) 10:30	북구의회	의회방문	○농서초등학교 초등학생 북구의회 견학	
11. 17.(목) 14:00	북구의회 다목적실	토론회	○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	
11. 21.(월)~ 12. 22.(목)	북구의회	정례회	○제16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 28.(월) 15:00	북구문화원	준공식	○북구문화원 영선 준공식	
11. 29.(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제3대학 제9기 졸업식	
11. 30.(수) 9:00	북구의회	의회방문	○베트남 롱쑤엔시 대표단 북구의회 방문	
12. 2.(금) 14:00	오토밸리복지 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2016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12. 2.(금) 19: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후원자의 밤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2. 5.(월) 11:00	북구보건소 지하주차장	정기행사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12. 7.(수) 14:00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12. 7.(수) 13: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현대제철 후원 김장 나누기 행사	
12. 7.(수) 15:00	북구의회 의장실	정기행사	○2016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12. 15.(목)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2016학년도 노인대학 졸업식	
12. 15.(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보고회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12. 16.(금) 14:00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12. 16.(금) 16:15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신임 울산중부경찰서장 북구의회 방문	
12. 16.(금) 17:0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정기행사	○바르게살기 북구 협의회 전진대회	
12. 19.(월) 14:00	정자해변	준공식	○미포산업로 개설공사 준공식	
12. 21.(수) 13:30	북구장애인 보호작업장	봉사활동	○자동차 부품 조립 자원봉사 활동	
12. 22.(목)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정기행사	○2016 북구의회 종무식	
12. 23.(금) 11:00	천곡문화센터	정기행사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12. 28.(수) 18:3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정기행사	○북구체육회 유공자 시상식	
12. 30.(금) 11:30	북구청 구내식당	정기행사	○2016년 집행부 송년다과회	

2017년도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 5.(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간담회	○2017 구정발전기원 간담회	
1. 16.(월) 17: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협의회 임원단 북구의회 방문	
1. 17.(화)~ 1. 19.(목)	제주도 일원	합동연수	○2017 북구의회 의원·직원 합동연수	
1. 20.(금) 11:20	원지경로당	준공식	○원지경로당 준공식	
1. 20.(금) 16:2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울산 북구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	
1. 24.(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1월 의원 간담회	
1. 24.(화) 11:00	연암어울림공동생활가정 외 1개소	위문방문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 9.(목) 12: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설명회	○월성원전 삼중수소 영향 관련 설명회	
2. 9.(목) 12:30	북구의회 다목적실	설명회	○강동산하변전소 설치 관련 설명회	
2. 9.(목)~ 2. 22.(수)	북구의회	임시회	○제165회 북구의회 임시회	
2. 15.(수) 9:30	북구의회 의장실	위촉식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2. 15.(수) 12:00	더파티 웨딩홀	이·취임식	○시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2. 15.(수) 14:00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생학습수림터	수료식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학교 수료식	
2. 21.(화) 11: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북구문화원 제13차 정기총회	
2. 22.(수) 11: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2월 의원 간담회	
2. 22.(수) 14:00	상안동 108번지 일원	봉사활동	○상안동 애호박 농장 모종심기 자원봉사	
2. 22.(수) 11: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울산시민안전체험센터 기공식	
3. 2.(목) 10:00	동광교회	개강식	○동광노인대학 개강식	
3. 2.(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이·취임식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3. 7.(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제3대학 제10기 입학식	
3. 8.(수)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	
3. 8.(수) 11:30	북구의회 의장실	간담회	○송정·화봉 아파트 회장단 간담회	
3. 17.(금) 10:00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정기행사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제20차 정기총회	
3. 17.(금) 10:45	북구의회 다목적실	보고회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 보고회	
3. 17.(금) 15: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동구 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	
3. 23.(목) 14:3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정기행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북구지부 정기총회	
3. 23.(목) 15:00	명촌둔치 일원	정기행사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3. 23.(목) 15:00	명촌둔치 일원	정기행사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3. 24.(금) 14:00	강동푸르지오 실내체육관	개강식	○2017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 개강식	
3. 24.(금) 10:30	화봉동 산35-1 일원	정기행사	○제72회 나무심기 행사	
4. 4.(화) 14:00	염포예술창작소	전시회	○소금 나는 갯가전	
4. 5.(수) 11:00	호봉사	정기행사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4. 12.(수) 14:00	강동 몽돌해변	준공식	○동해안로 확장공사 준공식	
4. 12.(수) 16:30	북구의회 본회의장	의회방문	○농소3동 한글교실 어르신 초청행사	
4. 12.(수) 16: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4월 의원 간담회	
4. 14(금)~ 4. 28.(금)	북구의회	임시회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4. 17.(월) 9:30	산업로 확장공사 사무실 외 1개소	현장방문	○관내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 (산업로 확장공사, 태풍 차바 복구 공사)	
4. 19.(수) 11:00	천곡동 열사 묘역	정기행사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제	
4. 22.(토) 10:00	진장파크 골프장	정기행사	○북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4. 23.(일) 10:00	매곡천 일원	정기행사	○제18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4. 24.(월) 16:00	북구청 대회의실	보고회	○2027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4. 28.(금) 10: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관련 농소3동 주민과의 간담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5. 5.(금)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북구 어린이 큰잔치	
5. 11.(목) 10: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봄꽃뜨레 이야기 개관식	
5. 12.(금) 10:30	북구노인복지관	정기행사	○어버이날 기념 효사랑 카네이션 축제	
5. 12.(금) 14:00	달천철장	정기행사	○쇠부리축제 고유제	
5. 12.(금) 14:00	달천철장	정기행사	○쇠부리축제 고유제	
5. 12.(금)~ 5. 14.(일)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제13회 울산쇠부리축제	
5. 13.(토) 9: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쇠부리축제 제련실험 고유제 및 화점식	
5. 13.(토) 9:30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체육대회	
5. 13.(토) 10: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구청장배 에어로빅스 체조경연대회	
5. 14.(일) 9:00	명촌근린공원	걷기대회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 걷기 대회	
5. 14.(일) 10:00	강동중학교 체육관	정기행사	○구청장기 동대항 배구대회	
5. 14.(일) 11:00	염포초등학교 체육관	정기행사	○새중앙새마을금고 효사랑 경로잔치	
5. 14.(일) 12:00	화봉경로당	정기행사	○화봉동 경로잔치	
5. 16.(화) 11:00	송정동 주민센터	기념식	○송화솔 식수 기념식	
5. 18.(목) 16: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	
5. 19.(금) 10:00	매곡도서관	발대식	○매곡도서관 자원봉사자 발대식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5. 19.(금) 11:00	북구보훈회관	정기행사	○무공수훈자회 회원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5. 26.(금) 11: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2017 북구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5. 26.(금) 13:00	양정생활체육공원	정기행사	○2017 상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5. 28.(일) 9: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효문동 한마음 체육대회	
5. 28.(일) 10:00	강동 몽돌해변	정기행사	○강동해변 몽돌 마라톤대회	
5. 28.(일) 11:00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5. 28.(일) 12:3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정기행사	○북구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5. 30.(화)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2017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	
6. 2.(금) 10: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북구 노인건강 체육대회	
6. 3.(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2017 제2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6. 3.(토) 10: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제6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6. 9.(금) 14:3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장 북구의회 내방	
6. 11.(일) 18:30	한솔근린공원	정기행사	○제6회 송화 축제	
6. 12.(월)~ 6. 26.(월)	북구의회	정례회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6. 22.(목)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6월 의원 간담회	
6. 23.(금) 12:00	북정자경로당	준공식	○북정자경로당 리모델링 준공식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6. 24.(토) 14:00	강동 주말 직거래장터	기념행사	○강동 농수산물 주말 직거래장터 5주년 기념행사	
7. 1.(토) 9:30	오토밸리복지 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2017 드림하이 명랑운동회	
7. 3.(월) 10: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신임 동부경찰서장 북구의회 내방	
7. 5.(수) 14:3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신임 중부소방서장 북구의회 내방	
7. 5.(수) 17: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울산여성신문사 사장 북구의회 내방	
7. 6.(목) 14:00	북구문예회관 대공연장	정기행사	○201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 7.(목) 14:00	북구문예회관 대공연장	정기행사	○평생학습 리마인드 콘서트	
7. 11.(화) 10:00	강동 정자해변	봉사활동	○강동 정자해변 환경정화 봉사활동	
7. 11.(화) 10:40	강동 신명중대	위문방문	○신명중대 군 장병 위문 방문	
7. 13.(목) 9:45	북구청 광장	기념식수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식수	
7. 13.(목) 10:30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정기행사	○제27기 농소농협 주부대학 수료식	
7. 13.(목) 13:30	북구문예회관 다목적실	토론회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	
7. 14.(금) 10:00	북구문예회관 대공연장	기념식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식	
7. 14.(금) 11:30	북구문예회관 전시실	사진전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 사진전	
7. 14.(금) 12:00	관내 식당	오찬	○베트남 롱쑤엔시 방문단과의 오찬	
7. 14.(금) 15:00	북구청 대회의실	토론회	○북구 미래비전 포럼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7. 14.(금) 19: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투게더 콘서트(구청)	
7. 15.(토) 10:00	강동 산하해변	정기행사	○강동산하해변 물놀이장 개장식	
7. 15.(토) 11:00	달천운동장	정기행사	○달천운동장 물놀이장 개장식	
7. 17.(월)~ 7. 19.(수)	정선 일원	견학	○2017 하반기 선진지 견학(정선)	
7. 20.(목) 14:30	달곡마을회관	개막식	○달곡, 제전마을 박물관 특별전 개막식	
7. 22.(토) 16:30	북구청소년 문화의집	정기행사	○북구청소년문화의집 한여름 밤의 꿈시장	
7. 24.(월) 13:00	새중앙 새마을금고	개점식	○새중앙새마을금고 본점 이전 개점식	
7. 25.(화) 10:00	오토밸리복지 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제1회 북구청장배 한궁대회	
7. 27.(목) 10:30	경주 나정해변	정기행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다체험	
7. 27.(목) 19:00	강동 정자해변	정기행사	○2017 울산 서머 페스티벌	
7. 28.(금) 11:40	북구의회 의장실	민원상담	○어린이 보행도로 설치 관련 민원 상담	
7. 28.(금) 14:00	염포운동장 신축현장	기공식	○염포운동장 조성공사 기공식	
7. 29.(토) 17:00	정자항 남방파제	정기행사	○제3회 강동 섶다리 축제	
8. 15.(화) 10:00	박상진 의사 생가	정기행사	○고헌 박상진 의사 순국 96주기 추모제	
8. 16.(수) 10:30	북구의회	의회방문	○양정초등학교 학생 북구의회 견학 및 모의 의회	
8. 17.(목) 15:00	염포동 일원	현장방문	○염포동 단수 피해 현장방문 및 애로 사항 청취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8. 18.(금)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8월 의원 간담회	
8. 24.(목) 13:30	북구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	
8. 25.(금) 15:00	강동청소지휘소	개소식	○강동청소지휘소 이전 개소식	
8. 30.(수) 11:00	송정동 주민센터	축하연	○송정동 쉼터 조성 축하연	
9. 1.(금) 14:00	매곡도서관	개관식	○매곡도서관 개관식	
9. 4.(월) 10:3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 내방	
9. 5.(화)~ 9. 18.(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	
9. 7.(목) 19:0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발대식	○시민생활체육대축전 북구선수단 발대식	
9. 8.(금) 15:20	북구의회 의원실	민원상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민원상담	
9. 9.(토) 16:30	문수축구 경기장	정기행사	○K리그 북구, 동구 데이	
9. 14.(목) 11:3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북구 사립유치원 연합회 북구의회 방문	
9. 14.(목) 11:30	아나율장애인 보호작업장	봉사활동	○자동차 부품 조립 자원봉사 활동	
9. 15.(금) 19:00	울산대공원	개회식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9. 18.(월) 10:45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9월 의원 간담회	
9. 18.(월) 17: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제18기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출범식	
9. 22.(금) 16:30	오토밸리로 화봉IC	준공식	○오토밸리로 준공식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9. 22.(토) 9:00	태연재활원 강당	정기행사	○사회복지시설·기관 직원 한마음대회	
9. 25.(화) 13:20	북구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관련 수사 촉구 기자회견	
9. 27.(목) 10:00	중구 성안교차로	준공식	○옥동~농소2도로 개설공사 준공식	
9. 27.(목) 13:00	울산남자단기청소년쉼터 외 1개소	위문방문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방문	
9. 27.(목) 10:00	북구노인복지관 희망공원	정기행사	○북구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10. 15.(일) 9:00	종하체육관	정기행사	○제17회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0. 18.(수) 11:00	쇠부리체육센터 현장 외 1개소	현장방문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 방문(쇠부리체육센터 신축, 신명천 복구공사)	
10. 18.(수)~ 10. 19.(목)	북구의회	임시회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	
10. 20.(금) 11:00	강동청소지휘소	정기행사	○2017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10. 21.(토)~ 10. 22.(일)	북구청 광장 일원	정기행사	○문화의 달 행사	
10. 21.(토) 11: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제4회 울산 북구 책잔치	
10. 21.(토) 11: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민주평통 통일국수, 주먹밥 먹기 행사	
10. 22.(일) 7:00	동천초등학교	정기행사	○동천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	
10. 22.(일) 16:00	북구문예회관 대공연장	정기행사	○어르신 문화축제 한마당	
10. 27.(금) 18: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노사화합 한마음 음악회	
10. 28.(토) 9:00	정자항 남방파제 일원	정기행사	○강동사랑길 걷기 축제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0. 29.(일) 10: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제14회 북구청장배 축구대회	
10. 30.(월) 15:30	북구의회 의원실	간담회	○염포동 주민자치 위원과의 간담회	
11. 1.(수) 15:00	무룡터널 입구	정기행사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	
11. 2.(목) 10:00	청량운동장	정기행사	○2018 시·구·군 선출직 체육대회	
11. 3.(금) 10:30	북구의회 다목적실	의회방문	○북구장애인인권센터 회원 북구의회 견학	
11. 7.(화) 11:00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제18회 북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11. 15.(수) 10:00	쇠부리 체육센터	개관식	○쇠부리체육센터 개관 기념식	
11. 16.(목) 10:00	북구의회	의회방문	○북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북구의회 견학	
11. 17.(금) 10:00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2017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11. 20.(월) 11:45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11월 의원 간담회	
11. 20.(월)~ 12. 22.(금)	북구의회	정례회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 28.(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제3대학 제10기 졸업식	
12. 1.(금) 14:00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정기행사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12. 4.(월) 11:30	북구보건소 지하주차장	정기행사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12. 8.(금) 14: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현대제철 후원 김장 나누기 행사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2. 12.(화) 15:00	북구의회 의장실	정기행사	○북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12. 13.(수) 14:30	상안동 야산 일원	대민지원	○상안동 야산 산불 진화 작업	
12. 14.(목) 13:30	북구노인복지관	정기행사	○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제	
12. 15.(금) 12:00	더파티 웨딩홀	정기행사	○북구 참전유공자 합동 위안행사	
12. 15.(금) 18:30	롯데시네마 삼산점	정기행사	○북구 보육인의 밤	
12. 19.(화) 14:00	염포119 안전센터	개청식	○염포119안전센터 개청식	
12. 21.(목) 11:00	시례경로당	준공식	○시례경로당 준공식	
12. 21.(목) 11:30	북구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북구노인복지관 행복식당 배식 봉사활동	
12. 21.(목) 13: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12월 의원 간담회	
12. 22.(금) 11: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12. 22.(금) 11:30	북구의회 다목적실	종무식	○2017 북구의회 종무식	
12. 26.(화) 11:00	남정자경로당	준공식	○남정자경로당 준공식	
12. 27.(수) 10:00	신전경로당	준공식	○신전경로당 준공식	
12. 28.(목) 18:0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시상식	○북구체육회 유공자 시상식	
12. 29.(금) 11:30	북구청 구내식당	정기행사	○2017 집행부 송년 다과회	

2018년도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 5.(금) 15:3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2018 구정발전기원 간담회	
1. 16.(화) 10:3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	
1. 16.(화) 18:3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2017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1. 17.(수)~ 1. 19.(금)	제주도 일원	합동연수	○2018 북구의회 의원·직원 합동연수	
1. 24.(수) 14:00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개점식	○농소농협 주유소 개점식	
1. 29.(월) 11: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1월 의원 간담회	
1. 29.(월)~ 2. 8.(목)	북구의회	임시회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2. 8.(목) 9:30	북구의회 의장실	정기행사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 8.(목) 13:30	울산명성노인 요양원 외 1개소	위문방문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 8.(목) 14:30	어울림 보호작업장	봉사활동	○자동차 부품 조립 봉사활동	
2. 20.(화) 11:3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북구여성합창단 회장 및 회원 북구의회 방문	
3. 2.(금) 18:00	강동 정자해변	정기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3. 6.(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제3대학 제11기 입학식	
3. 7.(수)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노인대학 개학식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3. 8.(목) 15:00	북구청 대회의실	이·취임식	○새마을 협의회·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3. 9.(금) 10:00	북구청 대회의실	발대식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3. 9.(금)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3월 의원 간담회	
3. 12.(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교육	○어린이집 원장 교육	
3. 13.(화) 13:30	정자활어 직매장	기공식	○정자활어직매장 건립 기공식	
3. 15.(목) 10:20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개강식	○농소농협 주부대학 개강식	
3. 16.(금) 14:30	북구청 대회의실	이·취임식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3. 23.(금) 10:30	화봉동 산 35-1 일원	정기행사	○제73회 나무심기 행사	
3. 27.(화) 14:00	명촌둔치 일원	정기행사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3. 27.(화)~ 4. 9.(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3. 29.(목) 11:00	염포운동장 신축 현장 외 1개소	현장방문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 방문(염포운동장 신축, 강동문화센터 신축)	
4. 3.(화) 11:00	농소농협 벼 육묘장	정기행사	○풍년농사 기원제 및 화합한마당	
4. 5.(목) 10:30	아름드리, 뜰안애 어린이집	개원식	○국공립 아름드리, 뜰안애 어린이집 개원식	
4. 5.(목) 10:30	호봉사	정기행사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4. 19.(목) 11:00	천곡동 열사 묘역	정기행사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제	
4. 20.(금) 10:30	매곡진입도로 일원	준공식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 준공식	
4. 20.(금) 11:15	양정생활 체육공원	정기행사	○2018 상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4. 23.(월) 10:00	매곡천 일원	정기행사	○제19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4. 29.(일) 8: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제15회 효문동 동민한마음 체육대회	
4. 29.(일) 8:30	상안테니스장	정기행사	○제21회 북구청장배 테니스대회	
5. 1.(화) 11: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현판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현판식	
5. 4.(금) 10:00	북구노인복지관	정기행사	○효사랑 카네이션 축제	
5. 4.(금) 13:00	북구청 대회의실	심포지엄	○쇠부리소리 학술 심포지엄	
5. 5.(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북구 어린이 큰잔치	
5. 8.(화) 16: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2018 북구의 책 선포식	
5. 11.(금) 17: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봄꽃뜨레 이야기 개관식	
5. 11.(금) 14:00	달천철장	정기행사	○쇠부리축제 고유제	
5. 11.(금)~ 5. 13.(일)	북구청 광장 일원	정기행사	○제14회 울산쇠부리축제	
5. 12.(토) 10: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북구청장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5. 13.(일) 9:00	강동 몽돌해변	정기행사	○강동해변 몽돌 마라톤 대회	
5. 14.(월) 11:00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	개원식	○국공립 수자인어린이집 개원식	
5. 15.(화) 11:00	강동힐스테이트 아파트	개원식	○국공립 마린힐어린이집 개원식	
5. 19.(토) 13:00	울산에너지고등학교	정기행사	○2018 청소년직업체험축제 꿈꾸잡	

부록

역대 의장단 명단
초대의원 명단
초대의원 사진
제2대 의원 명단
제2대 의원 사진
제3대 의원 명단
제3대 의원 사진
제4대 의원 명단
제4대 의원 사진
제5대 의원 명단
제5대 의원 사진
제6대 의원 명단
제6대 의원 사진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역대 구청장 명단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10.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17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재 건	1961. 2. 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8.7.3 ~2010.6.30	
제5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안 승 찬	1963. 5.29	2010.7.1 ~2012.6.30	
제5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윤 치 용	1966.11.18	2012.7.1. ~2014.6.30	
제6대 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이 수 선	1961.12.7	2014.7.1. ~2016.6.30	
제6대 후반기	비례대표	정 복 금	1952. 1.25.	2016.7.1. ~2018.6.30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25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문 석 주	1962. 8.27	2008.7.3 ~2010.4.21	
〃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인 목	1961.12.30	2010.4.22 ~2010.6.30	
제5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정 윤 석	1960. 9.20	2010.7.1 ~2012.6.30	
제5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이 수 선	1961.12.7	2012.7.1. ~2014.6.30	
제6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강 진 희	1970.5.12	2014.7.1. ~2016.6.30	
제6대 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강 진 희	1970.5.12	2016.7.1. ~2018.6.30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운영・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운영・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 소 동(읍)

한 성 두

진 장 동

정 석 수

효 문 동

이 병 우

양 정 동

진 한 걸

염 포 동

조 승 수

제2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1 ~2000.2.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1998.7.1 ~2002.6.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헌	1957.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7.1 ~2002.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7.1 ~2002.6.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0.6.8 ~2002.6.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14	1998.7.1 ~2002.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제2대 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윤 두 환**

농 소 3 동

의장 **박 춘 환**

양 정 동

의장 **진 한 걸**

강 동 동

부의장 **박 광 식**

□ 의 원

농 소 1 동

김 수 헌

농 소 2 동

강 혁 진

효 문 동

류 재 건

송 정 동

김 진 영

염 포 동

윤 종 오

제3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2.7.1 ~2006.6.30	전반기 의장
2	〃	염포동	하인규	1959. 9.17	2002.7.1 ~2006.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2동	김재근	1958. 9.11	2002.7.1 ~2006.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1동	이재경	1956. 4.25	2002.7.1 ~2006.6.30	후반기 부의장
5	의원	농소3동	김대영	1960. 2. 2	2002.7.1 ~2006.4.1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강동동	윤임지	1952.10.15	2002.7.1 ~2006.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2002.7.1 ~2006.6.30	
8	〃	양정동	류인목	1961.12.30	2002.7.1 ~2006.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3대 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김 진 영**

염 포 동

의장 **하 인 규**

농 소 2 동

부의장 **김 재 근**

농 소 1 동

부의장 **이 재 경**

□ 의 원

농 소 3 동

김 대 영

강 동 동

윤 임 지

효 문 동

류 재 건

양 정 동

류 인 목

제4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재건	1961. 2. 5	2006.7.1 ~2010.6.30	전반기 의장
2	〃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문석주	1962. 8.27	2006.7.1 ~2010.4.21	후반기 부의장
5	〃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인목	1961.12.30	2006.7.1 ~2010.6.30	후반기 부의장
6	의원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병석	1966. 9.25	2006.7.1 ~2010.6.30	
7	〃	농소2동, 농소3동	이은영	1966.10.16	2006.7.1 ~2010.3.22	
8	〃	비례대표	이영희	1963. 7.22	2006.7.1 ~2010.6.30	

제4대 의원 사진

□ 의장단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의장 **류 재 건**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의장 **윤 임 지**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문 석 주**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류 인 목**

□ 의 원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박 병 석

농소2동, 농소3동

이 은 영

비례대표

이 영 희

제5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안승찬	1963. 5. 29.	2010.7.1 ~2014.6.30	전반기 의장
2	〃	농소2동, 농소3동	윤치용	1966. 11. 18.	2010.7.1 ~2014.6.30	후반기 의장 전반기 운영위원장
3	부의장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정윤석	1960. 9. 20.	2010.7.1 ~2014.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이수선	1961. 12. 7.	2010.7.1 ~2014.6.30	후반기 부의장
5	의원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강진희	1970. 5. 12.	2010.7.1 ~2014.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이홍걸	1961. 2. 10.	2010.7.1 ~2014.6.30	
7	〃	비례대표	이혜경	1969. 3. 21.	2010.7.1 ~2014.6.30	

제5대 의원 사진

□ 의장단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의장 **안 승 찬**

농소2동, 농소3동

의장 **윤 치 용**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정 윤 석**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이 수 선**

□ 의 원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강 진 희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이 홍 걸

비례대표

이 혜 경

제6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농소2동, 농소3동	이수선	1961. 12. 7.	2014.7.1 ~2018.6.30	전반기 의장
2	〃	비례대표	정복금	1952. 1. 25.	2014.7.1 ~2018.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강진희	1970. 5. 12.	2014.7.1 ~2018.6.30	전·후반기 부의장
4	의원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이상육	1962. 6. 4.	2014.7.1 ~2018.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5	〃	농소2동, 농소3동	윤치용	1966. 11. 18.	2014.7.1. ~2017.12.22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안승찬	1963. 5. 29.	2014.7.1. ~2018.4.12	
7	〃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백현조	1964. 8. 26.	2014.7.1 ~2018.6.30	

제6대 의원 사진

□ 의장단

농소2동, 농소3동

의장 **이 수 선**

비 례 대 표

의장 **정 복 금**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강 진 희**

□ 의 원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이 상 육

농소2동, 농소3동

윤 치 용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안 승 찬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백 현 조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 이전)

연번	직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원	울산시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5.7.1 ~1997.7.14	제5대 경남도의회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31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4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5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헌	1936. 4.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3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 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10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 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29	1997.7.15 ~1998.6.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22	1998.7.1 ~2002.6.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15	2002.7.1 ~2006.5.24	
4	민선제3대	강 석 구	1960. 9.18	2006.7.1 ~2010.6.30	
5	민선제4대	윤 종 오	1963. 8.14	2010.7.1 ~2014.6.30	
6	민선제5대	박 천 동	1966. 3.20	2014.7.1 ~2018.6.30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 ~1998.9.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 ~2001.1.15	〃
3	〃	〃	최종식	1952.10.20	2001.1.16 ~2004.3.5	
4	〃	〃	송태호	1955. 1.10	2004.3.6 ~2006.1.11	
5	〃	〃	이상헌	1955. 2. 6	2006.1.12 ~2007.7.26	
6	〃	〃	홍장희	1956. 7.22	2007.7.27 ~ 2009.7.19	
7	〃	〃	윤규태	1959. 5.10	2009.7.20 ~2010.7.22	
8	〃	〃	이차범	1955. 9.17	2010.7.23 ~2011.12.31	
9	〃	〃	강걸수	1957.11. 5	2012.1.1 ~2014.8.6	
10	〃	〃	이태희	1959. 9.23	2014.8.7 ~2016.12.31	
11	〃	〃	홍성욱	1959. 5.19	2017.1.1. ~2018.6.30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2001.1.15	
4	〃	〃	김찬수	1955. 9.28	2001.1.16 ~2003.1.27	
5	〃	〃	이상찬	1971.12.25	2003.1.28 ~2006.1.8	
6	〃	〃	박민수	1957. 4.27	2006.1.12 ~2008.7.20	
7	〃	〃	윤규태	1959. 5.10	2008.7.21 ~2009.7.19	
8	〃	〃	김규석	1956. 7.26	2009.7.20 ~2011.2.13	
9	〃	〃	김종구	1956.10. 2	2011.2.14 ~2012.12.31	
10	〃	〃	공영옥	1955. 4.15	2013.1.1 ~2014.6.30	
11	〃	〃	김남희	1964. 1. 5	2014.8.7 ~2015.6.30	
12	〃	〃	이정걸	1957. 4.19	2015.7.1. ~2016.6.30	
13	〃	〃	김용종	1960. 6.19	2016.7.1. ~2018.6.30	

의 정 백 서 제11집

제6대 후반기

인 쇄 : 2018년 12월 일
발 행 : 2018년 12월 일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우)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편집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TEL : 052-241-8973
FAX : 052-241-8979